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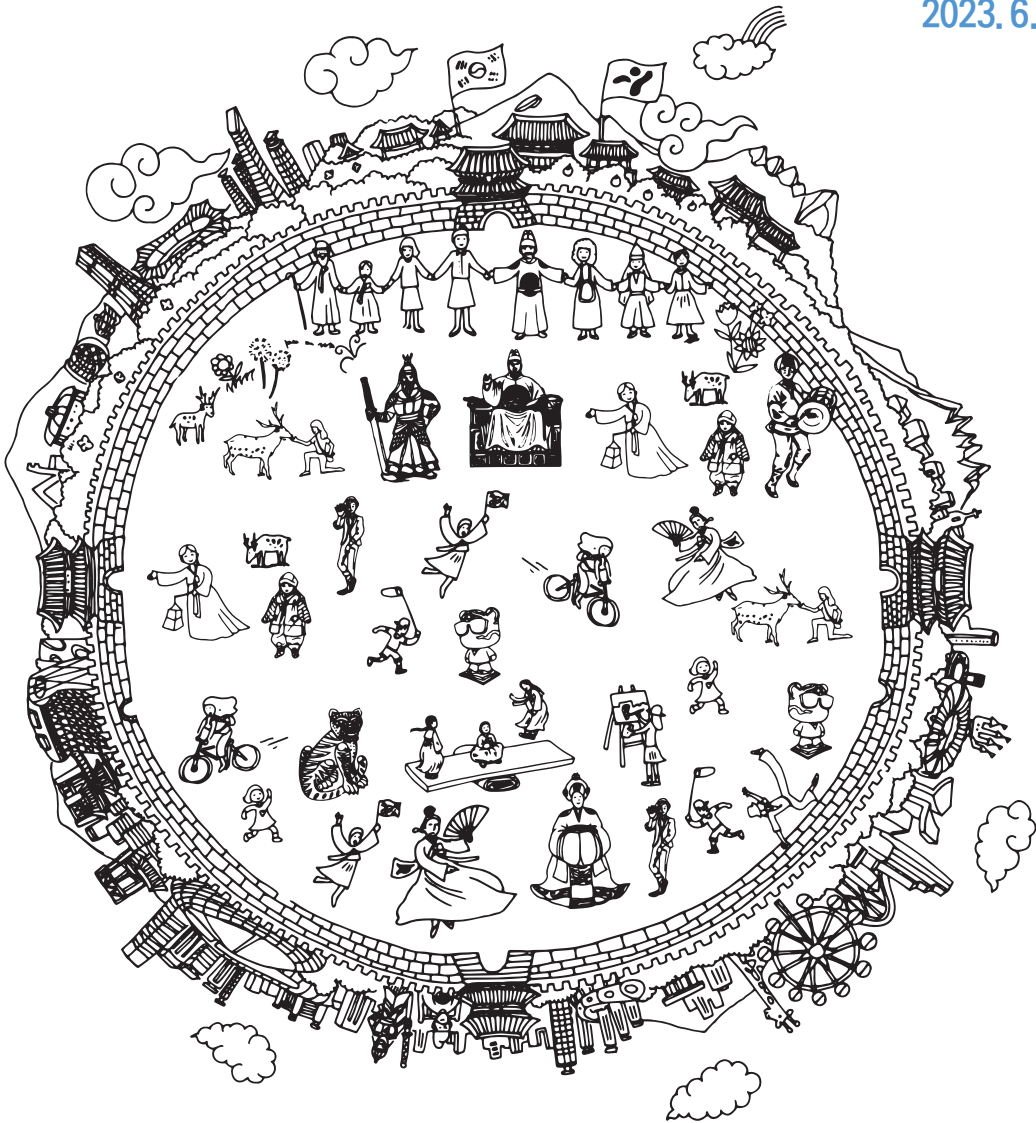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85호
2023. 6. 29.(목)



목 차

◆ 고 시

제2023 - 2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5
제2023 - 264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
제2023 - 265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6
제2023 - 266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66
제2023 - 267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69
제2023 - 268호	도시관리계획(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1
제2023 - 269호	성동구 용답동 230 - 4 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29
제2023 - 270호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32
제2023 - 271호	도시관리계획(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48
제2023 - 272호	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19
제2023 - 273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288
제2023 - 2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295
제2023 - 275호	전농 제9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96
제2023 - 276호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22

◆ 공 고

제2023 - 1799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49
제2023 - 1815호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351
제2023 - 1816호	청문조서 열람 ·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354
제2023 - 181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356
제2023 - 18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357
제2023 - 182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358

제2023 - 1824호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360
제2023 - 1825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362
제2023 - 1826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65
제2023 - 182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370
제2023 - 1835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72
제2023 - 1836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73
제2023 - 1837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74
제2023 - 1838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75
제2023 - 1839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76
제2023 - 1840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77
제2023 - 1841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78
제2023 - 1842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79
제2023 - 1843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80
제2023 - 1844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81
제2023 - 1845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82
제2023 - 1846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83
제2023 - 1847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84
제2023 - 1848호	측량업 등록 공고	385
제2023 - 1849호	측량업 등록 공고	386
제2023 - 1850호	측량업 등록 공고	387
제2023 - 1851호	측량업 등록 공고	388
제2023 - 1852호	측량업 등록 공고	389
제2023 - 1853호	측량업 등록 공고	390
제2023 - 1854호	측량업 등록 공고	391
제2023 - 1855호	측량업 등록 공고	392
제2023 - 1857호	도시관리계획(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393
제2023 - 185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394
제2023 - 1861호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395
제2023 - 186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396
제2023 - 1863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97
제2023 - 1864호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401
제2023 - 1866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404
제2023 - 1867호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406
제2023 - 1875호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408
제2023 - 1876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409

제2023 - 1878호	공인 등록 공고	410
제2023 - 1879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용마터널)	411
제2023 - 1880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강남순환로)	413
제2023 - 188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신월여의지하도로)	415
제2023 - 188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서부간선지하도로)	417
제2023 - 1885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419
제2023 - 1886호	행당 도시개발구역(2단계) 공사완료 공고	424
제2023 - 1889호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426
제2023 - 1890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428
제2023 - 189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31
제2023 - 1894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432
제2023 - 1895호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433
제2023 - 1898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435
제2023 - 1900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436
제2023 - 190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437
제2023 - 1904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438
제2023 - 1906호	2023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공고	440
제2023 - 1910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445
제2023 - 1911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446
제2023 - 191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464
제2023 - 1917호	측량업 등록 공고	465
제2023 - 1919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66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제105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467
제106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506
제106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12

◆ 구 고 시

제2023 - 6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랑구) ..	514
제2023 - 1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구로공단역1 완충녹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로구)	517
제2023 - 118호	도시계획시설(돌산체육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강남구)	519
제2023 - 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송파구)	522

◆ 구 공 고

제2023 - 840호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종로구)	524
제2023 - 1170호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527
제2023 - 1432호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소공원(27·29·30호) 조성계획결정(최초) 열람공고(서초구)	528
제2023 - 1149호	거여동 173 - 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송파구)	544

◆ 사업소고시

제2023 - 1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545
제2023 - 19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545
제2023 - 19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546
제2023 - 19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546

◆ 정 정

제2023 - 11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수정 고시 (마포구)	547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91 - 339호(1991.11.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134호(2020.4.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고시된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기간연장)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기간 변경)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67 - 108번지 일대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면적 : 5,225㎡
 - 규모 : 연결도로 1개소 설치 (L = 465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 수 일 : 2020년 4월 9일(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4년 2월 29일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용지도(변경없음)
- 7) 위치도 : 생략
-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9)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02 - 2133 - 8082), 도시 기반시설본부 토목부(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02 - 6438 - 216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64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호 - 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호 - 312호(2009.8.1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 - 325호(20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 - 78호(2013.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 - 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 - 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 - 43호(201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 - 128호(201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 - 241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 - 375호(2014.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 - 99호(2015.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 - 205호(2015.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 - 298호(2015.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 - 174호(2017.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 - 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 158호(2019.5.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 404호(2019.12.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31호(2020.1.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152호(2020.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300호(202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462호(2020.1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598호(202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124호(2021.3.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258호(2021.6.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421호(2021.7.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608호(2021.1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 139호(2022.3.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 180호(2022.4.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 315호(2022.7.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 463호(2022.1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 245호(2023.06.15.)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종량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604.2	-	505,604.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 357호 (2006.10.19.)	-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변경없음)

- 기 정 : 2028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비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505,604.2	-	505,604.2	100.00%	-
계		312,418.4	-	312,418.4	61.79%	-
주거 용지	소 계	165,878.6	-	165,878.6	32.80%	-
	도심주거	76,154.8	-	76,154.8	15.05%	-
	주거복합	89,723.8	-	89,723.8	17.75%	-
상업 용지	소 계	62,144.0	-	62,144.0	12.29%	-
	대형판매	19,428.0	-	19,428.0	3.84%	-
	근린상업서비스	42,716.0	-	42,716.0	8.45%	-
복합 용지	소 계	83,154.7	-	83,154.7	16.45%	-
	상업·업무·숙박	83,154.7	-	83,154.7	16.45%	-
기타	소 계	2,673.1	-	2,673.1	0.53%	-
	종 교	2,673.1	-	2,673.1	0.53%	-
	소 계	감)1,432.0	-	감)1,432.0	-0.28%	-
	철도용지	감)1,432.0	-	감)1,432.0	-0.28%	-
계		193,185.8	-	193,185.8	38.21%	-
계획 기반 시설	사회복지시설	1,506.7	-	1,506.7	0.30%	-
	광 장	2,340.7	-	2,340.7	0.46%	-
	공공공지	1,927.0	-	1,927.0	0.38%	-
	보행자전용도로	227.0	-	227.0	0.04%	-
	철 도	15,375.3	-	15,375.3	3.04%	-
	도 로	170,060.3	-	170,060.3	33.64%	-
	주차장	179.8	-	179.8	0.04%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	1,569.0	-	1,569.0	0.31%	중복결정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문화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	-	-	상봉7촉진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연면적 : 6,047.53㎡)

구 분		면 적 (㎡)			비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위 치	세부용도	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
						지하 1층	주차장	2,628.19	증) 61.86	2,690.05
						지상 1층	어린이집	814.07	감) 182.75	631.32
						지상 2층	여성문화 복지센터	904.73	증) 501.24	1,405.97
						지상 3층	어린이 종합 체험관	1,700.54	감) 380.35	1,320.19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 8,084세대 / 20,631인

○ 주택유형별 인구 수용계획 (변경)

주택유형		주택 수(호)			인구 수(인)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8,174	감) 90	8,084	20,869	감) 238	20,631	-
촉진 구역	소 계	2,925	감) 90	2,835	7,723	감) 238	7,485	세대당 2.64인
	60㎡이하	1,036	감) 147	889	2,735	감) 388	2,347	
	60~85㎡이하	1,070	증) 57	1,127	2,825	증) 150	2,975	
	85㎡초과	819	-	819	2,163	-	2,163	
존치관리구역		5,249	-	5,249	13,146	-	13,146	-

○ 구역별 주택 수용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인구수	주거비율 (%)
			소계	일반세대	임대주택		
촉진 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349	931	781	150	2,458	89.6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	497	473	24	1,312	45.9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999	802	197	2,638	89.9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127	498	382	116	1,315	90.0
존치관리구역		4,651	5,249	4,874	375	13,146	-
계		5,129	8,174	7,312	862	20,869	-

- 변경

구 분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인구수	주거비율 (%)
				소계	일반세대	임대주택		
촉진 구역	변경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349	841	719	122	2,220	89.1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	497	473	24	1,312	45.9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999	802	197	2,638	89.9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127	498	382	116	1,315	90.0
준치관리구역			4,651	5,249	4,874	375	13,146	-
변경	계		5,129	8,084	7,250	862	20,631	-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 촉진지구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교통 시설	도 로	148,052.2	(29.28%)	170,060.3	-	170,060.3	(33.64%)	-
	주차장	-		179.8	-	179.8	(0.04%)	-
	철도시설	15,375.3	(3.04%)	15,375.3	-	15,375.3	(3.04%)	-
	여객자동차 터미널	29,204.9	(5.78%)	1,569.0	-	1,569.0	(0.31%)	공공청사 중복결정
	보행자도로	-	-	227.0	-	227.0	(0.04%)	-
	소 계	192,632.4	(38.10%)	187,411.4	-	187,411.4	(37.07%)	-
도시 공간 시설	사회복지시설	-		1,506.7	-	1,506.7	(0.30%)	-
	광 장	-		2,340.7	-	2,340.7	(0.46%)	-
	공공공지	1,099.0	(0.22%)	1,927.0	-	1,927.0	(0.38%)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	-	-	-	-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문화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	-	-	-	상봉7축진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연면적 : 6,047.53㎡)				
						연면적(㎡)				
						위 치	세부용도	기정	증·감	변경
						지하1층	주차장	2,628.19	증) 61.86	2,690.05
						지상1층	어린이집	814.07	감) 182.75	631.32
						지상2층	여성문화 복지센터	904.73	증) 501.24	1,405.97
지상3층	어린이 종합체험관	1,700.54	감) 380.35	1,320.19						
소 계		1,099.0	(0.22%)	5,774.4	-	5,774.4	(1.14%)	-		
총 계		193,731.4	(38.32%)	193,185.8	-	193,185.8	(38.21%)	-		

※ 상기 면적비율(%)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505,604.2㎡) 대비 각 시설별 비중을 나타낸 것임

○ 촉진지구 공공 문화·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연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13,438.7	-	13,438.7	-				
문화 복지 시설 (공공)	문화시설	촉진7구역	6,047.5	-	6,047.5	상봉7촉진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연면적 : 6,047.53㎡)				
						위 치	세부용도	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
						지하1층	주차장	2,628.19	증) 61.86	2,690.05
						지상1층	어린이집	814.07	감) 182.75	631.32
	지상2층	여성문화 복지센터	904.73	증) 501.24	1,405.97					
지상3층	어린이 종합체험관	1,700.54	감) 380.35	1,320.19						
	소극장 / 갤러리	촉진8구역	2,448.6	-	2,448.6	조성 후 기부채납 완료				
	주민커뮤니티시설 (공공청사)	촉진9구역	2,891.8	-	2,891.8	건축물로 조성 후 기부채납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촉진10구역	2,050.8	-	2,050.8	건축물로 조성 후 기부채납				

※ 기부채납 대지면적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시설 면적을 계산하여 대지비율로 환산

※ 건축물로 기부채납 시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인지성이 높은 저층부(지하 1층~지상 2층)를 포함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되는 공간 배치 및 해당 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용 출입구 및 전용 엘리베이터 등 전용코어 설치

※ 촉진지구에서 설치하는 문화·복지시설은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위치 및 기부채납 면적 결정

※ 산정기준 :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0.11)

○ 촉진지구 민간 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5) 교통계획 - (도서 참조)

6) 경관계획 - (도서 참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변경없음)

지구명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정비수법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상봉 재정비 촉진 지구	기정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8번지 일대	14,996.3	-	14,996.3	전면개발	-
	기정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500번지 일대	25,334.6	-	25,334.6	전면개발	준공
	기정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3-1번지 일대	28,526.6	-	28,526.6	전면개발	-
	기정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50-1번지 일대	12,008.6	-	12,008.6	전면개발	-

○ 구역별 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최고높이 (m)	주용도	사업방식
					기준	최대			
기정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8번지 일대	14,996.3	60	600	900	140m이하	주거, 오피스텔, 판매, 문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8번지 일대	14,996.3	60	600	900	175m이하	주거, 오피스텔, 판매, 문화	
기정	상봉8 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500번지 일대	25,334.6	60	510	603	185m이하	주거, 판매, 업무, 교육연구	
기정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3-1번지 일대	28,526.6	60	700	738	175m이하	판매, 업무, 주거, 문화, 근린생활시설	
기정	상봉10 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50-1번지 일대	12,008.6	60	360	500	120m이하	주거, 판매, 근생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10) 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변경없음)

11) 촉진사업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 건축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주용도	비 주 거(㎡)						주 거(㎡)			건폐율
			판매	업무	교육연구	문화·기타	근린생활시설	계	준주택 (오피스텔)	주거 (공동주택)	계	
촉진 구역	상봉7 재정비 촉진구역	주거,오피스텔, 판매,문화	11,815.1 (6.9%)	-	-	6,047.5 (3.5%)	-	17,862.6 (10.4%)	9,572.0 (5.6%)	144,163.3 (84.0%)	153,735.3 (89.6%)	60%
	상봉8 재정비 촉진구역	주거,판매, 업무, 교육연구	101,147.7 (43.4%)	8,264.1 (3.6%)	13,618.5 (5.8%)	2,998.5 (1.3%)	-	126,028.8 (54.1%)	-	106,914.1 (45.9%)	106,914.1 (45.9%)	60%
	상봉9 재정비 촉진구역	판매,업무, 주거,문화, 근생	25,834.9 (8.9%)	-	-	2,985.4 (1.0%)	624.2 (0.2%)	29,445.5 (10.1%)	60,847.1 (20.9%)	201,394.7 (69.0%)	262,241.8 (89.9%)	60%
	상봉10 재정비 촉진구역	주거, 판매, 근생	-	-	-	-	5,534.31 (10.0%)	5,534.31 (10.0%)	-	49,803.14 (90.0%)	49,803.14 (90.0%)	60%

- 변경

구 분		주용도	비 주 거(㎡)						주 거(㎡)			건폐율
			판매	업무	교육연구	문화·기타	근린생활시설	계	준주택 (오피스텔)	주거 (공동주택)	계	
촉진 구역	상봉7 재정비 촉진구역	주거,오피스텔, 판매,문화	12,642.6 (7.4%)	-	-	6,047.5 (3.5%)	-	18,690.1 (10.9%)	3,357.5 (2.0%)	149,396.2 (87.2%)	152,753.7 (89.1%)	60%
	상봉8 재정비 촉진구역	주거,판매, 업무,교육연구	101,147.7 (43.4%)	8,264.1 (3.6%)	13,618.5 (5.8%)	2,998.5 (1.3%)	-	126,028.8 (54.1%)	-	106,914.1 (45.9%)	106,914.1 (45.9%)	60%

구 분	주용도	비 주 거(㎡)						주 거(㎡)			건폐율
		판매	업무	교육연구	문화·기타	근린생활시설	계	준주택 (오피스텔)	주거 (공동주택)	계	
상봉9 재정비 촉진구역	판매,업무, 주거,문화,근생	25,834.9 (8.9%)	-	-	2,985.4 (1.0%)	624.2 (0.2%)	29,445.5 (10.1%)	60,847.1 (20.9%)	201,394.7 (69.0%)	262,241.8 (89.9%)	60%
상봉10 재정비 촉진구역	주거, 판매, 근생	-	-	-	-	5,534.31 (10.0%)	5,534.31 (10.0%)	-	49,803.14 (90.0%)	49,803.14 (90.0%)	60%

12)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구역명	구역 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초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 시설 ④	순부담 면적 (①-②- ③-④)	순 부담률 (%)
			계	도 로	광 장	자동차 정류장	공공 청사 등					
민간 부문 (촉진 계획)	소 계	80,866.1	16,560.1	12,096.7	1,994.4	1,569.0	900.0 (5,599.6)	809.5	1,713.0	-	19,637.2	24.3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4,996.3	1,831.0	1,831.0	-	-	- (3,156.5)	789.6	1,117.8	-	3,080.1	20.5
	상봉8 재정비촉진구역	25,334.6	7,276.7	5,282.3	1,994.4	-	-	-	489.9	-	6,786.8	26.7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28,526.6	5,828.1	4,259.1	-	1,569.0	- (1,512.8)	-	-	-	7,340.9	25.7
	상봉10 재정비촉진구역	12,008.6	1,624.3	724.3	-	-	900.0 (930.3)	19.9	105.3	-	2,429.4	20.2
민간 부문 (기부 채납)	소 계	160,272.1	1,888.3	1,888.3	-	-	-	-	-	-	1,888.3	-
	상봉2 존치관리구역	24,383.4	548.6	548.6	-	-	-	-	-	-	548.6	-
	상봉3 존치관리구역	28,117.3	293.2	293.2	-	-	-	-	-	-	293.2	-
	상봉7 존치관리구역	25,467.7	454.4	454.4	-	-	-	-	-	-	454.4	-
	상봉8 존치관리구역	33,148.1	299.0	299.0	-	-	-	-	-	-	299.0	-

구 분		구역명	구역 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 시설 ④	순부담 면적 (① - ② - ③ - ④)	순 부담률 (%)
				계	도 로	광 장	자동차 정류장	공공 청사 등					
		상봉9 존치관리구역	49,155.6	293.1	293.1	-	-	-	-	-	-	293.1	-

※ 1) 상기 내역 중 공공청사 등 항목 “()” 건축시설 면적은 시설 기부채납할 건축물 연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면적과 대지 지분을 합한 면적임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3) 사업시행(변경)인가시 구체적 설계내역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환산부지 면적 확정 예정임

4)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의 건축시설 면적(1,512.8㎡)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물은 855.8㎡, 공공청사 건축물은 657㎡임

-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순부담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 (높이 완화로 적용)

5) 민간부문(기부채납)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은 각 구역 내 해당 대지의 건축허가 시 기반시설로 결정된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상한용적률을 부여 받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해당 가구(블럭) 또는 노선별 기반시설 설치 여건이 갖춰지거나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관리청)에서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일괄 시행함(필요시 부분별 물건보상에 의한 협의매수로 병행할 수 있음)

- 변경

구 분		구역명	구역 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 시설 ④	순부담 면적 (① - ② - ③ - ④)	순 부담률 (%)
				계	도 로	광 장	자동차 정류장	공공 청사 등					
민간 부문 (촉진 계획)	소 계		80,866.1	16,560.1	12,096.7	1,994.4	1,569.0	900.0 (5,600.5)	809.5	1,713.0	-	19,638.1	24.3
	촉진 구역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4,996.3	1,831.0	1,831.0	-	-	- (3,157.4)	789.6	1,117.8	-	3,081.0	20.5
		상봉8 재정비촉진구역	25,334.6	7,276.7	5,282.3	1,994.4	-	-	-	489.9	-	6,786.8	26.7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28,526.6	5,828.1	4,259.1	-	1,569.0	- (1,512.8)	-	-	-	7,340.9	25.7
		상봉10 재정비촉진구역	12,008.6	1,624.3	724.3	-	-	900.0 (930.3)	19.9	105.3	-	2,429.4	20.2
민간 부문 (기부 채납)	소 계		160,272.1	1,888.3	1,888.3	-	-	-	-	-	-	1,888.3	-
	존치 관리 구역	상봉2 존치관리구역	24,383.4	548.6	548.6	-	-	-	-	-	-	548.6	-
		상봉3 존치관리구역	28,117.3	293.2	293.2	-	-	-	-	-	-	293.2	-

구 분	구역명	구역 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 시설 ④	순부담 면적 (①-②- ③-④)	순 부담률 (%)
			계	도 로	광 장	자동차 정류장	공공 청사 등					
	상봉7 존치관리구역	25,467.7	454.4	454.4	-	-	-	-	-	-	454.4	-
	상봉8 존치관리구역	33,148.1	299.0	299.0	-	-	-	-	-	-	299.0	-
	상봉9 존치관리구역	49,155.6	293.1	293.1	-	-	-	-	-	-	293.1	-

- ※ 1) 상기 내역 중 공공청사 등 항목 “()” 건축시설 면적은 시설 기부채납할 건축물 연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면적과 대지 지분을 합한 면적임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3) 사업시행(변경)인가시 구체적 설계내역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환산부지 면적 확정 예정임
 4)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의 건축시설 면적(1,512.8㎡)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물은 855.8㎡, 공공청사 건축물은 657㎡임
 -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순부담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 (높이 완화로 적용)
 5) 민간부문(기부채납)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은 각 구역 내 해당 대지의 건축허가 시 기반시설로 결정된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상한용적률을 부여 받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해당 가구(블럭) 또는 노선별 기반시설 설치 여건이 갖춰지거나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관리청)에서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일괄 시행함(필요시 부분별 물건보상에 의한 협의매수로 병행할 수 있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 기 정

구 분	구 역 명	계 획 세대수	일반 주택 (세대)	임대주택 공급계획(세대)						비고
				소계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45㎡	전용면적 45~60㎡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초과	
계		2,925	2,438	487 (100.0%)	86 (17.7%)	124 (25.5%)	191 (39.2%)	86 (17.6%)	-	-
촉진 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931	781	150	-	89	61	-	-	-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497	473	24	-	-	24	-	-	-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999	802	197	50	35	42	70	-	-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498	382	116	36	-	64	16	-	-

- 변 경

구 분	구 역 명	계 획 세대수	일반 주택 (세대)	임대주택 공급계획(세대)						비고
				소계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45㎡	전용면적 45~60㎡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초과	
계		2,835	2,376	459 (100.0%)	123 (26.8%)	35 (7.6%)	190 (41.4%)	111 (24.2%)	-	-
촉진 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841	719	122	37	-	60	25	-	-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497	473	24	-	-	24	-	-	-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999	802	197	50	35	42	70	-	-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498	382	116	36	-	64	16	-	-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 정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8번지 일대	14,996.3	-	14,996.3	-

(2) 정비계획 (변경)

- 용도지역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4,996.3	-	14,996.3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831.0	-	1,831.0	12.2	-				
	도 로	1,831.0	-	1,831.0	12.2	-				
	문화시설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	-	-	-	-	상봉7축진구역 내 입체적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위 치	세부용도	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
						지하1층	주차장	2,628.19	증) 61.86	2,690.05
						지상1층	어린이집	814.07	감) 182.75	631.32
						지상2층	여성문화 복지센터	904.73	증) 501.24	1,405.97
지상3층						어린이 종합체험관	1,700.54	감) 380.35	1,320.19	
계		6,047.53	-	6,047.53						
획 지	소 계	13,165.3	-	13,165.3	87.8	-				
	획 지	13,165.3	-	13,165.3	87.8	-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	20	집산 도로	732 (130)	상봉동 402-35	상봉동 399-5	일반 도로	-	서고제425호 (84.7.31.)	면목천길
기정	중로	2	-	16	집산 도로	207	상봉동 88-93	상봉동 85-41	일반 도로	-	서고제312호 (09.8.13.)	상봉중앙길
기정	중로	2	-	15	집산 도로	255 (139)	상봉동 83-7	상봉동 402-4	일반 도로	-	서고제312호 (09.8.13.)	요람2길
기정	중로	2	-	15	집산 도로	140	상봉동 88	상봉동 88-11	일반 도로	-	서고제300호 (20.7.16)	상봉로25길

※ 연장 내 ()는 상봉7재정비축진구역 내 연장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①	문화 시설	상봉동 88번지 일대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3층	서고 제300호 ('20.7.16)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연 면 적 (㎡)	지하1층	2,628.19	증) 61.86	2,690.05	
					지상1층	814.07	감) 182.75	631.32	
					지상2층	904.73	증) 501.24	1,405.97	
					지상3층	1,700.54	감) 380.35	1,320.19	
					합계	6,047.53	-	6,047.53	

※ 문화시설의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중량구청과 협의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시 확정하여 준공시 기부채납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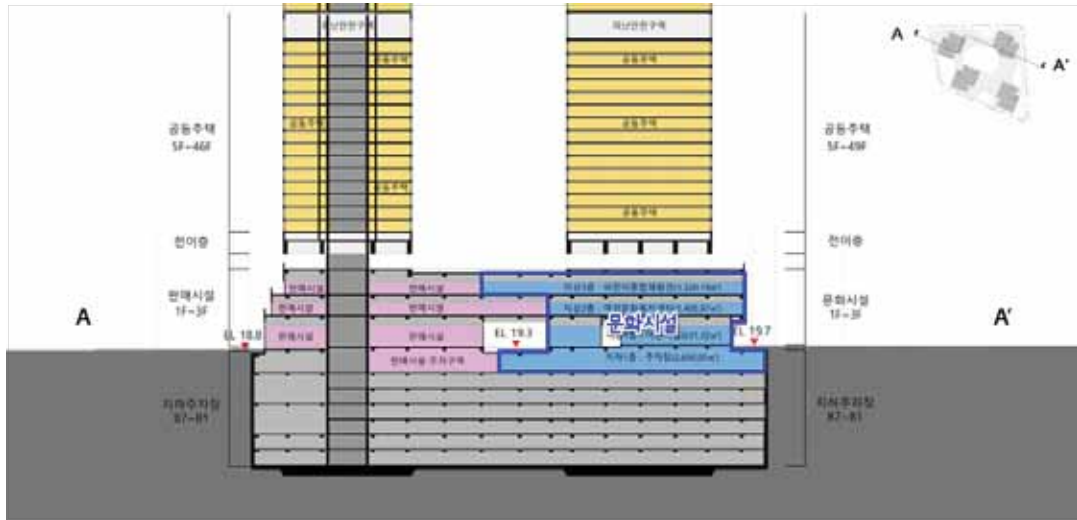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문화시설	- 문화시설 입체적 결정(변경) - 층수 : 지하1층 ~ 지상3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6,047.53㎡	건축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문화시설의 층별 위치·면적 변경

※ 입체적 결정하는 문화시설의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임

○ 기반시설결정도

기정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4,996.3	상봉동 88번지 일대	87	-	-	87	-	-

- 이하 여백 -

-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기정	상봉7 재정비축진구역	14,996.3	-	13,165.3	상봉동 88번지 일대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문화시설	60 이하 (57.36)	831 이하 (830.9)	140이하/ 43층이하
변경	상봉7 재정비축진구역	14,996.3	-	13,165.3	상봉동 88번지 일대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문화시설	60 이하 (59.78)	831 이하 (830.96)	175이하/ 49층이하

• 주택공급계획 : (기정) 931세대(임대150세대 포함) → (변경) 841세대(임대122세대 포함)

구 분		합계	분양(전용면적, ㎡)				임대(전용면적, ㎡)			
			소 계	85 초과	60~85 이하	60 이하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기정	세대수	931	781	-	473	308	150	150	-	-
	비율(%)	100.0	83.9	-	50.8	33.1	16.1	16.1	-	-
변경	세대수	841	719	-	505	214	122	97	25	-
	비율(%)	100.0	85.5	-	60.0	25.5	14.5	11.5	3.0	-

•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전체 연면적			171,597.89㎡		- 154.02㎡		171,443.87㎡	
임대주 택	합 계		세대수	연면적(㎡)	세대수	연면적(㎡)	세대수	연면적(㎡)
			150	17,222.82	- 28	44.95	122	17,267.77
	101동	39㎡	-	-	7	671.88	7	671.88
		44㎡	89	8,907.77	- 89	- 8,907.77	-	-
		59㎡	15	2,044.69	5	841.54	20	2,886.23
		84㎡	-	-	6	1,213.86	6	1,213.86
	102동	39㎡	-	-	16	1,535.72	16	1,535.72
		84㎡	-	-	8	1,618.46	8	1,618.46
	103동	39㎡	-	-	7	671.88	7	671.88
		59㎡	35	4,770.93	- 16	- 2,029.01	19	2,741.92
		84㎡	-	-	5	1,011.54	5	1,011.54
	104동	39㎡	-	-	7	671.88	7	671.88
		59㎡	-	-	21	3,030.54	21	3,030.54
		84㎡	-	-	6	1,213.86	6	1,213.86
	105동	59㎡	11	1,499.43	- 11	- 1,499.43	-	-

※ 서울시 재정비축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설편(19.03.12)

- 공공임대주택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토지 기부채납) → 대상지 공공임대주택 전체 연면적의 10.07%

건축심의 완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상봉지구 재정비축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한계선 지정
 - 봉우재로 33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상봉로 25가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 상봉로 25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 봉우재로 43길변 : 대지경계선로부터 3m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	기정	●재정비촉진구역 내 동측에서 서측 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 1개소 계획 (폭원 : 6m, 연장 : 122m) ● 구역 내 남측 1개소 공개공지 - 1로 지정(면적 : 1,010.24㎡) ● 구역 내 남동측 1개소 공개공지 - 2로 지정(면적 : 332.62㎡)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내 동측에서 서측 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 1개소 계획 (폭원 : 6m, 연장 : 130m) ● 구역 내 남서측 1개소 공개공지 - 1로 지정(면적 : 580.38㎡) ● 구역 내 남동측 1개소 공개공지 - 2로 지정(면적 : 479.54㎡)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기본방향 - 도시적 맥락에 따라 주변 지역과의 스카이라인 조화를 고려한 계획 - 간선가로변 등 입지특성에 따른 경관 조성 ○ 도시경관계획 - 간선가로변 : 고층의 시설배치로 스카이라인 형성 - 인근주거지역 인접부 : 주변의 정비구역을 고려한 높이계획 수립	-
환경보전	○ 우수 유출량 감소를 위해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빗물관리시설 도입·설치 ○ 투수성 포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지내 공지 관리 및 조성계획 수립	-
재난방지	○ 긴급재난구조 차량 접근 및 소방차 등의 접근로 확보 ○ 자연재해에 대비한 내진설계, 방재시스템 구축 및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의 합리적인 설계 반영	-

○ 재정비촉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 정	도시환경정비사업	2021년~2027년	토지등소유자	582	취약요인 없음	-
변 경	도시환경정비사업	2021년~2028년	토지등소유자	492	취약요인 없음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 정	-	13,165.3	-	상봉동 88-52 일대	13,165.3	-

○ 건축물 용도별 비율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비 주 거					주 거			비 고
		판 매	업 무	문 화	근린생활시설	계	준주택 (오피스텔)	주거 (공동주택)	계	
기 정	비율(%)	6.9	-	3.5	-	10.4	5.6	84.0	89.6	-
변 경	비율(%)	7.4	-	3.5	-	10.9	2.0	87.2	89.1	-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 정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4,996.3	3	17,222.82	150	85㎡이하	-
변 경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4,996.3	4	17,267.77	122	85㎡이하	-

- 나)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 사업완료
 다)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라)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변경없음)

- 17) 기타(광고물 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신재생에너지 적용계획, 특성화 계획, 여성친화적 건설계획, 친환경 건축물계획) : 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 주차장 (변경없음)
 (3) 공공공지 (변경없음)
 (4) 광장 (변경없음)
 (5) 도시철도 (변경없음)
 (6) 철도 (변경없음)
 (7)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8) 공공청사 (변경없음)
 (9) 여객자동차터미널 (변경없음)
 (10) 입체적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①	문화 시설	상봉동 88번지 일대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3층	서고 제300호 ('20.7.16)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연면적 (㎡)	지하1층	증) 61.86	2,690.05		
					지상1층	감) 182.75	631.32		
					지상2층	증) 501.24	1,405.97		
					지상3층	감) 380.35	1,320.19		
				합계	6,047.53	-	6,047.53		

※ 문화시설의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중량구청과 협의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시 확정하여 준공시 기부채납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문화시설	- 문화시설 입체적 결정(변경) - 층수 : 지하1층 ~ 지상3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6,047.53㎡	건축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문화시설의 층별 위치·면적 변경

※ 입체적 결정하는 문화시설의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임

- 기반시설결정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 2023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결과(' 23.05.16.) 및 조치계획

구분	자문의견	조치계획
1	지상 1층은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한 공유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지상 4층 조정 공간은 입주민 전용 공간 조성 필요성 검토 후 필요 시 동선 조정 검토	기존 지상4층에 계획한 개방시설인 경로당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상3층으로 이동하여 외부인은 3층까지 개방형 코어를 통해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입주민 전용시설인 휘트니스 및 주민회의실을 4층으로 배치하고 출입제한시설을 설치하여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음
2	북향으로 배치되는 임대주택의 개선 방안 검토	- 주동 평면 및 유닛 조정을 통해 기존 북향 세대를 최소화하였음 - 특히 102동 북측 39타입 세대는 북향으로 인해 거주환경이 불리하여 102동의 남측에 위치한 39타입 상부로 위치를 이동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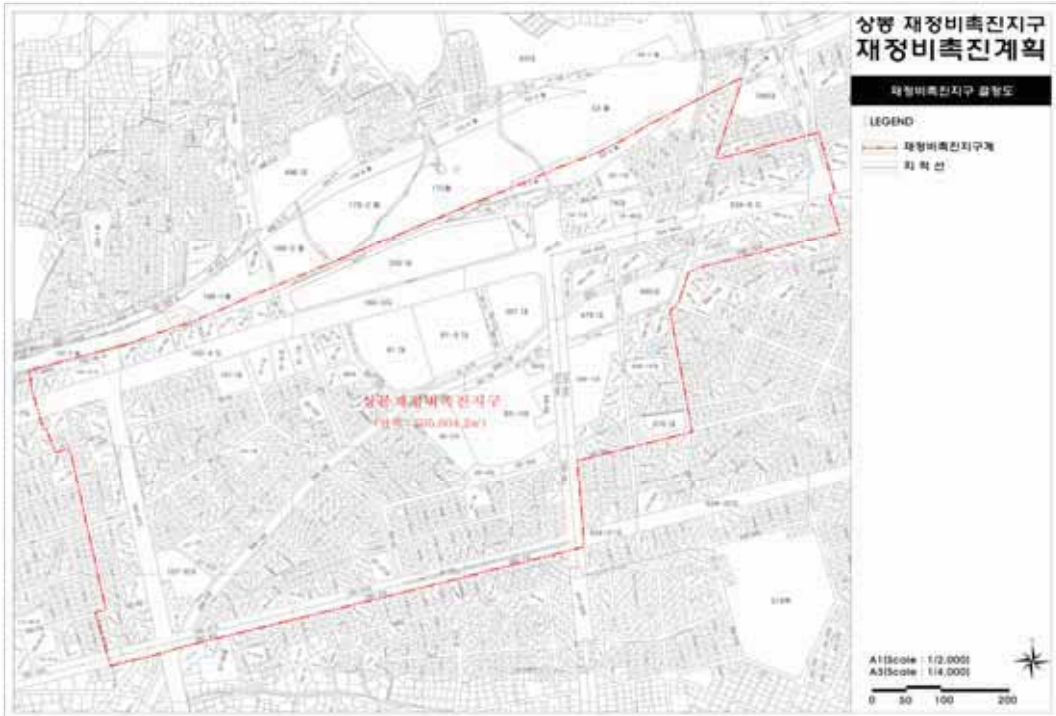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바. 관계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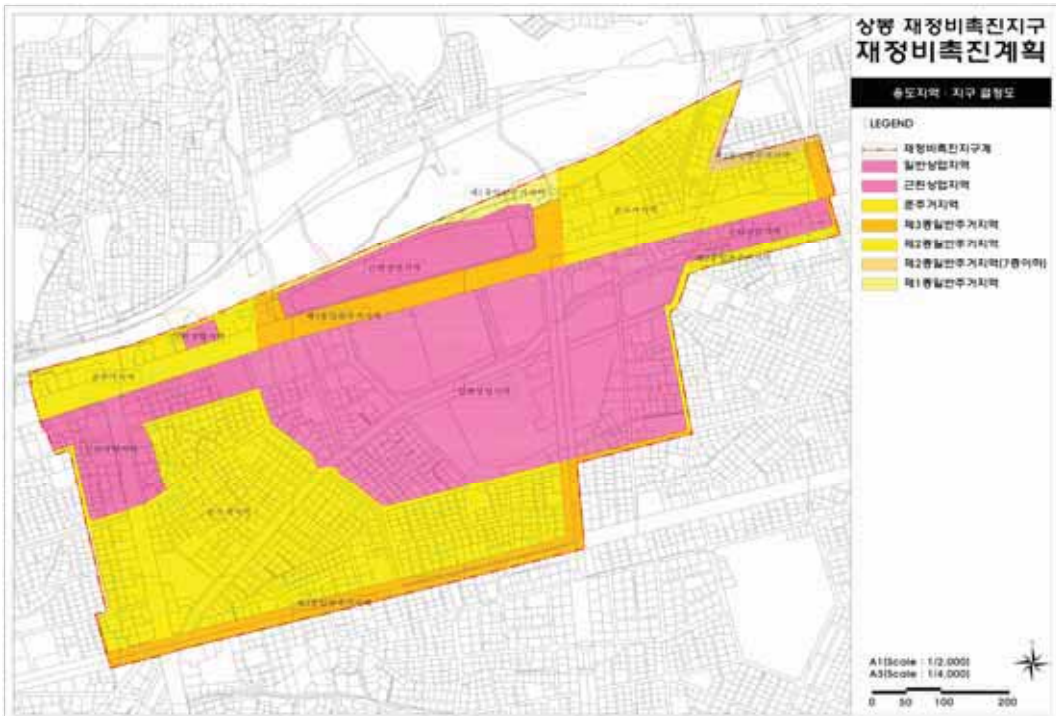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 - 2133 - 7227) 및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 - 2094 - 21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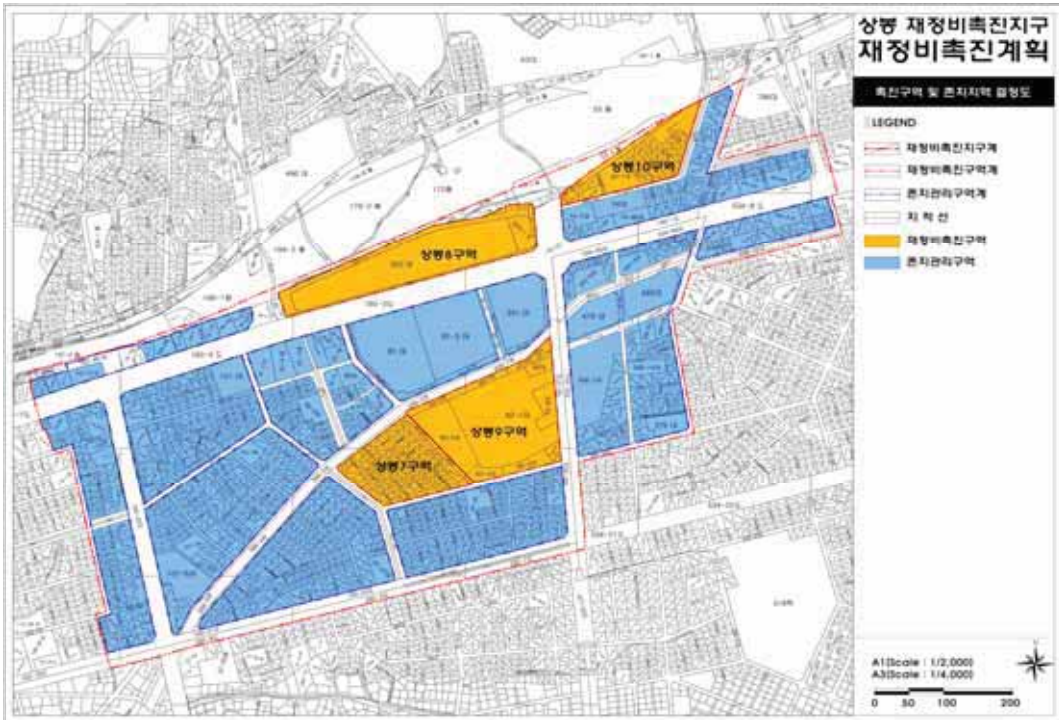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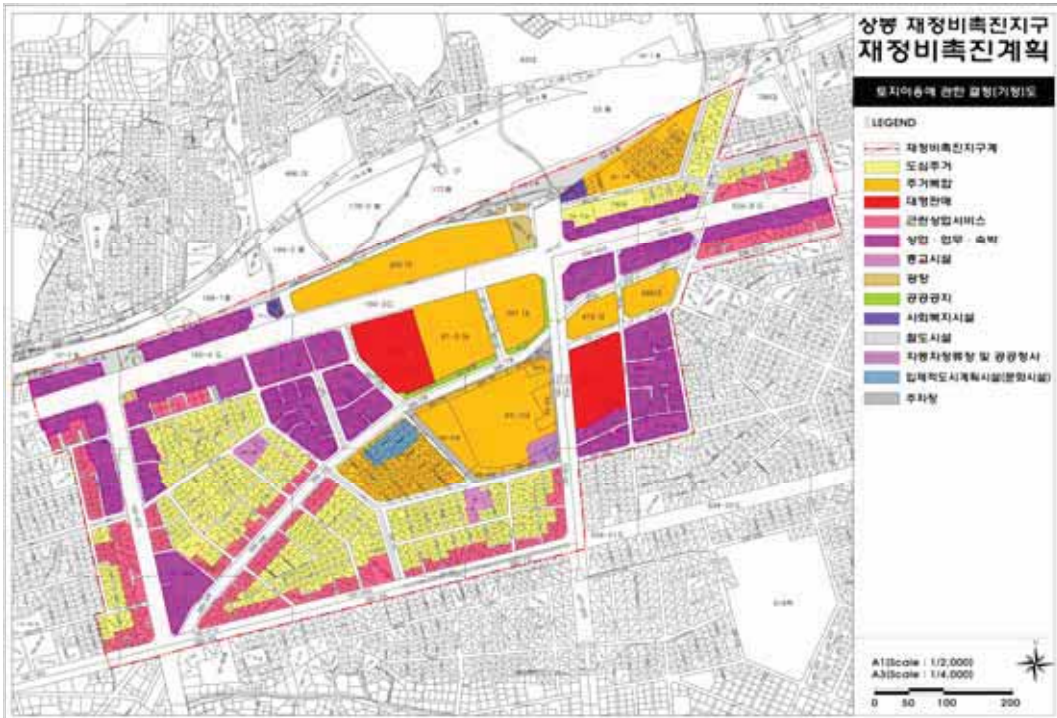


○ 촉진구역 및 준치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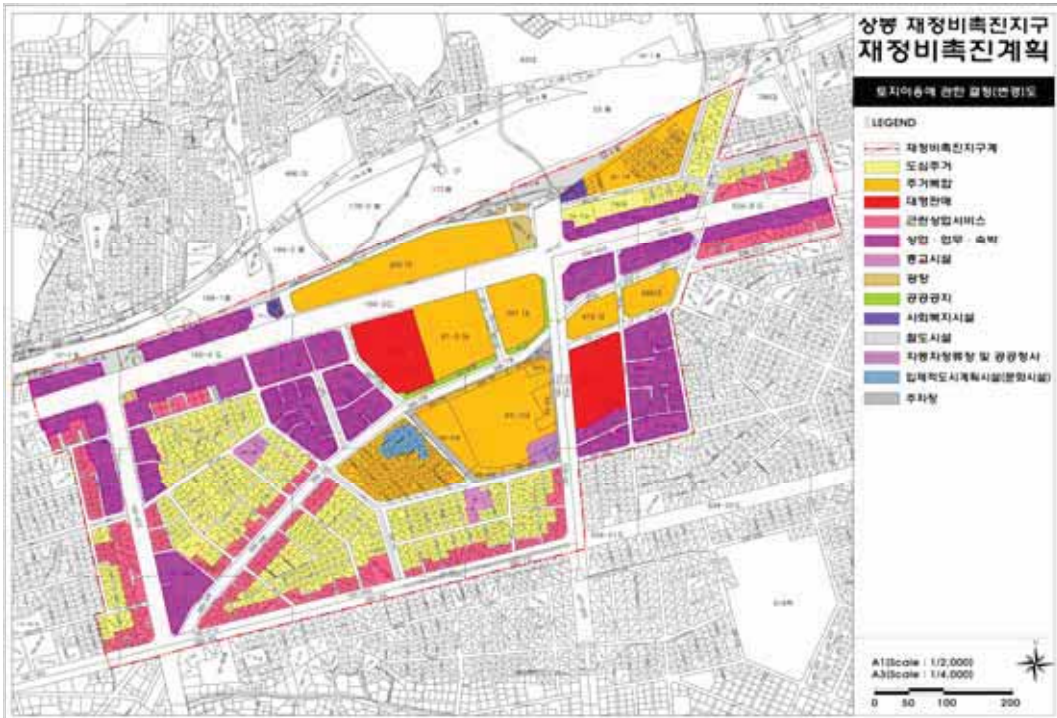


- 이하 여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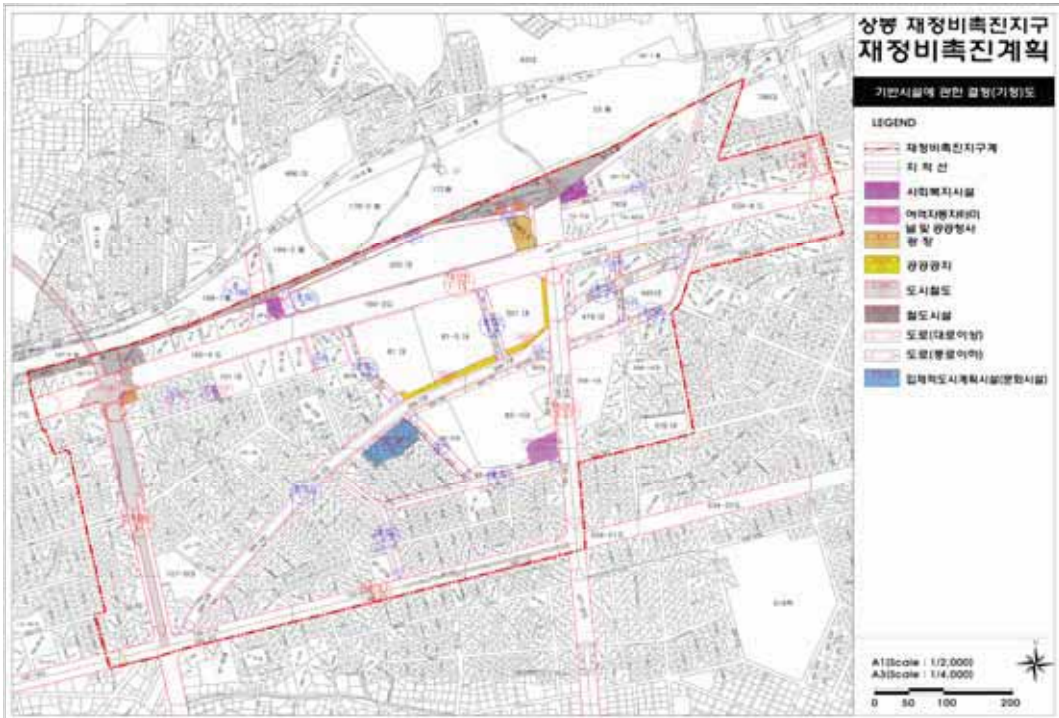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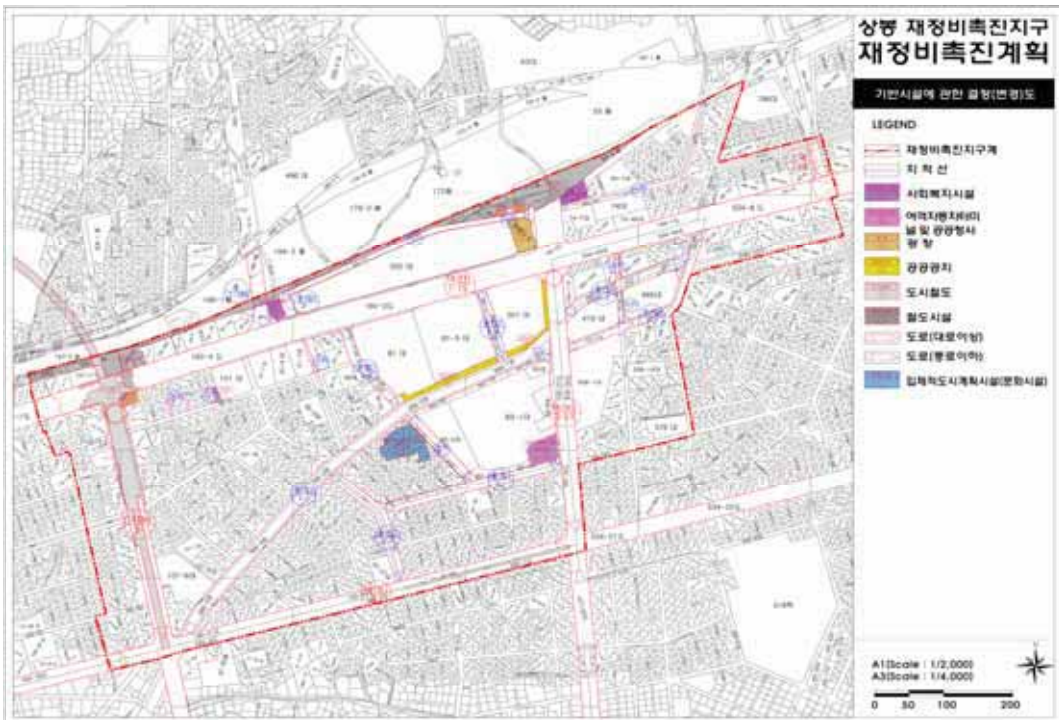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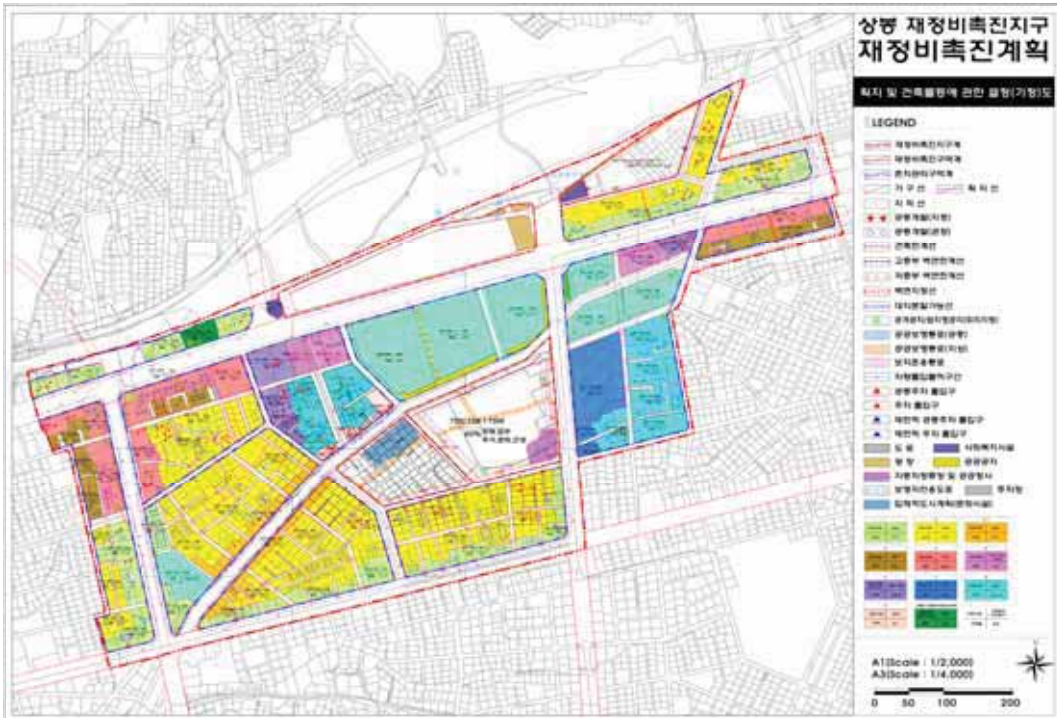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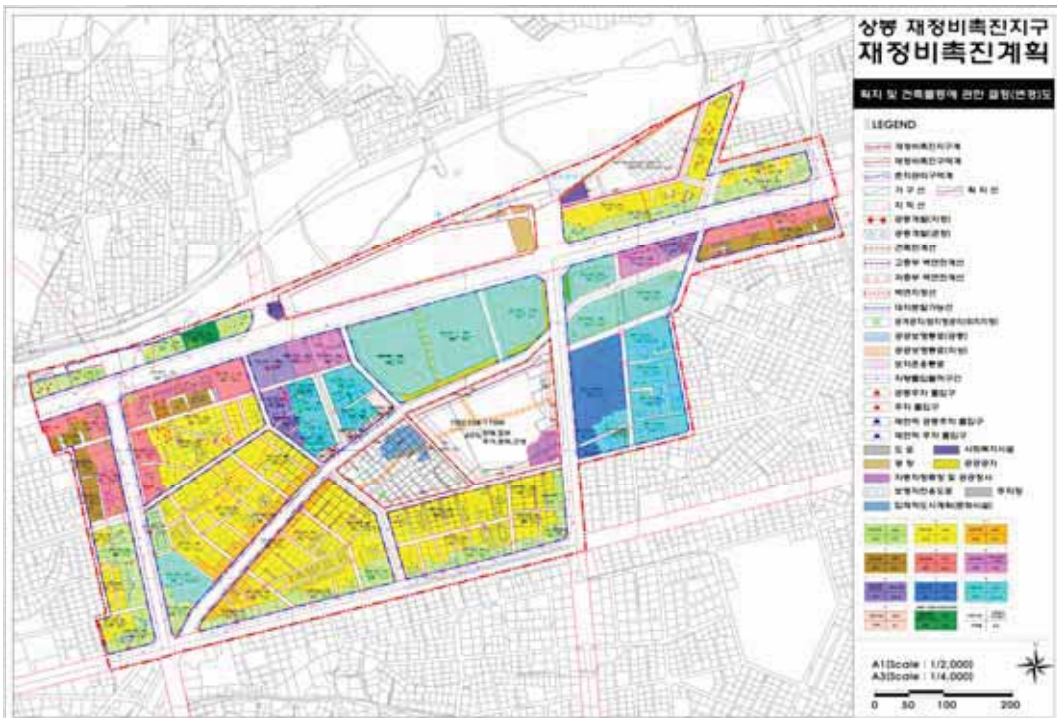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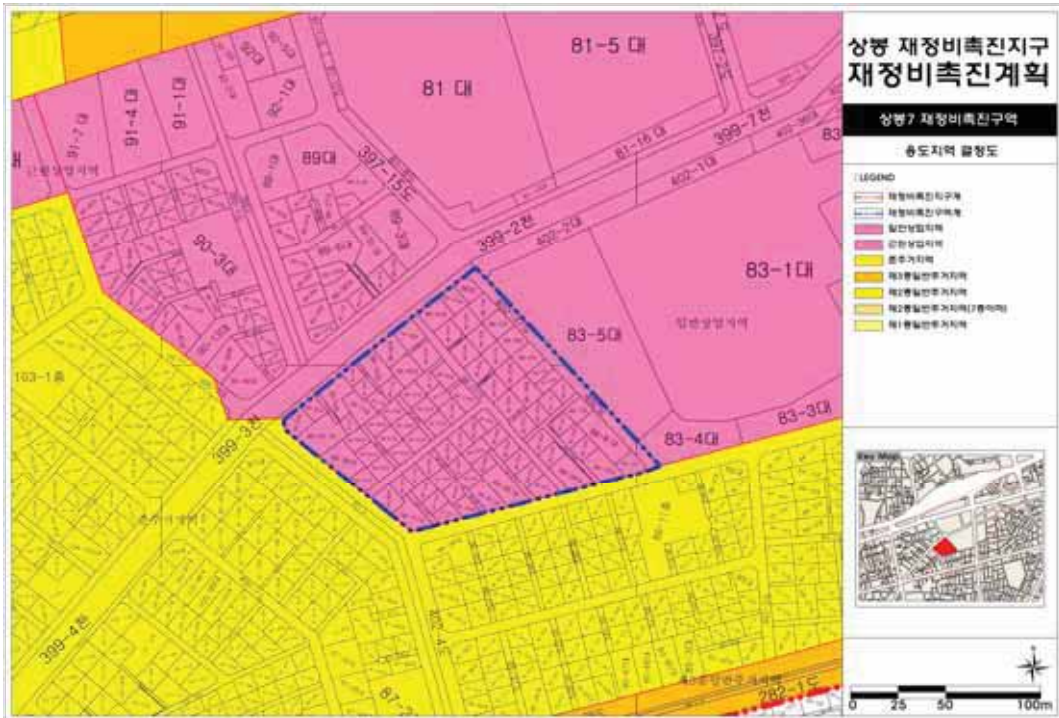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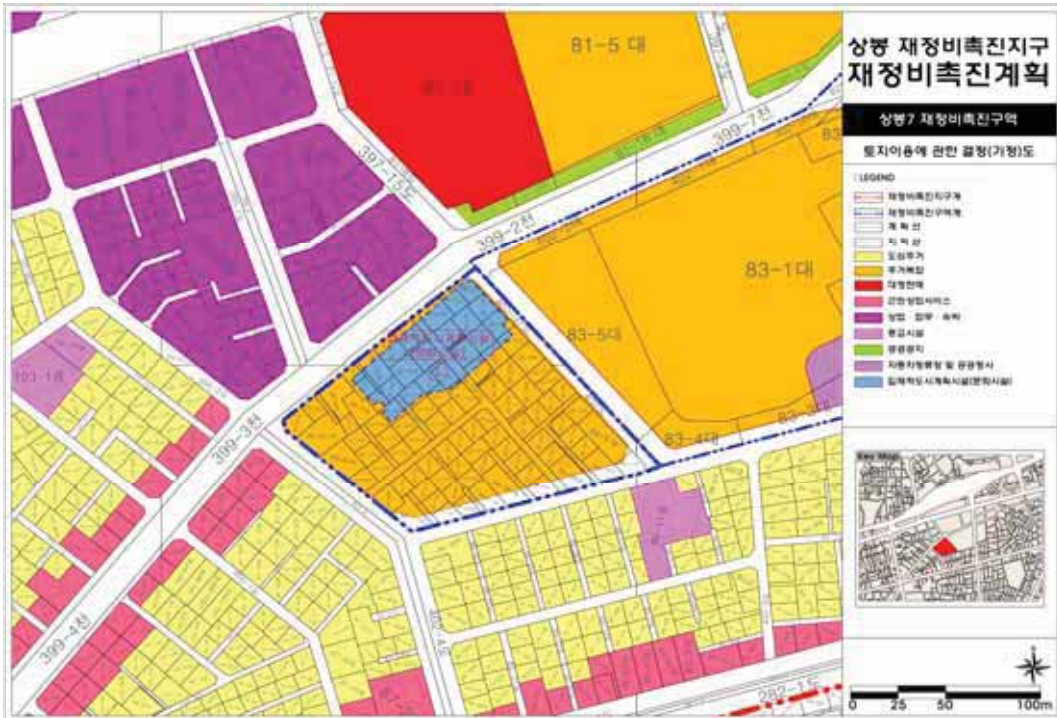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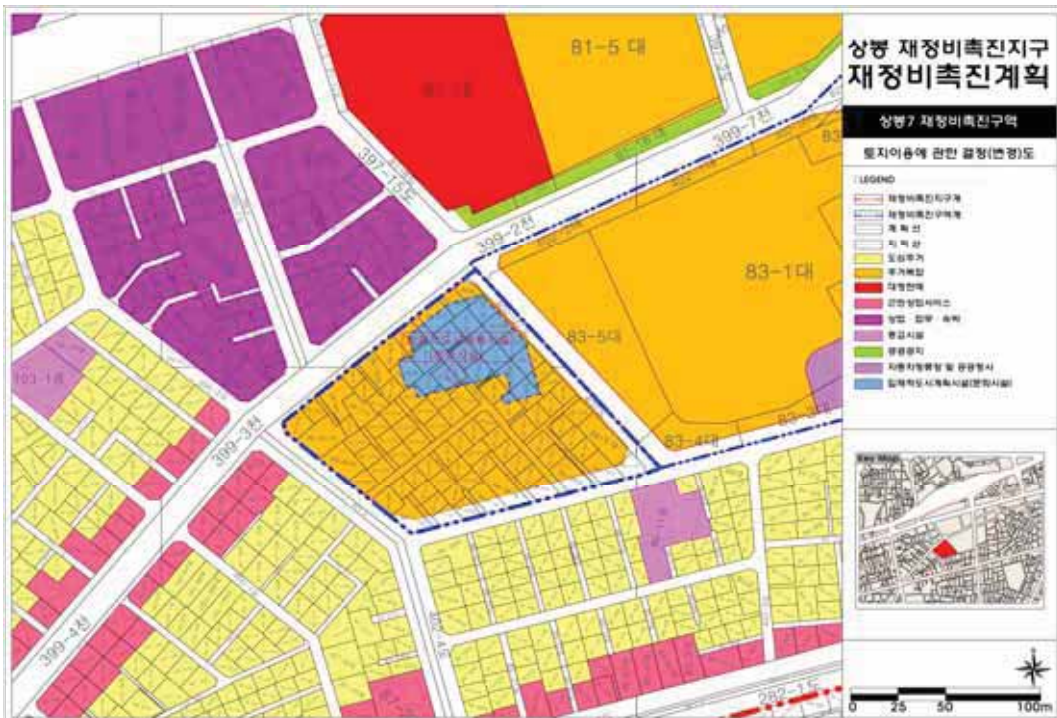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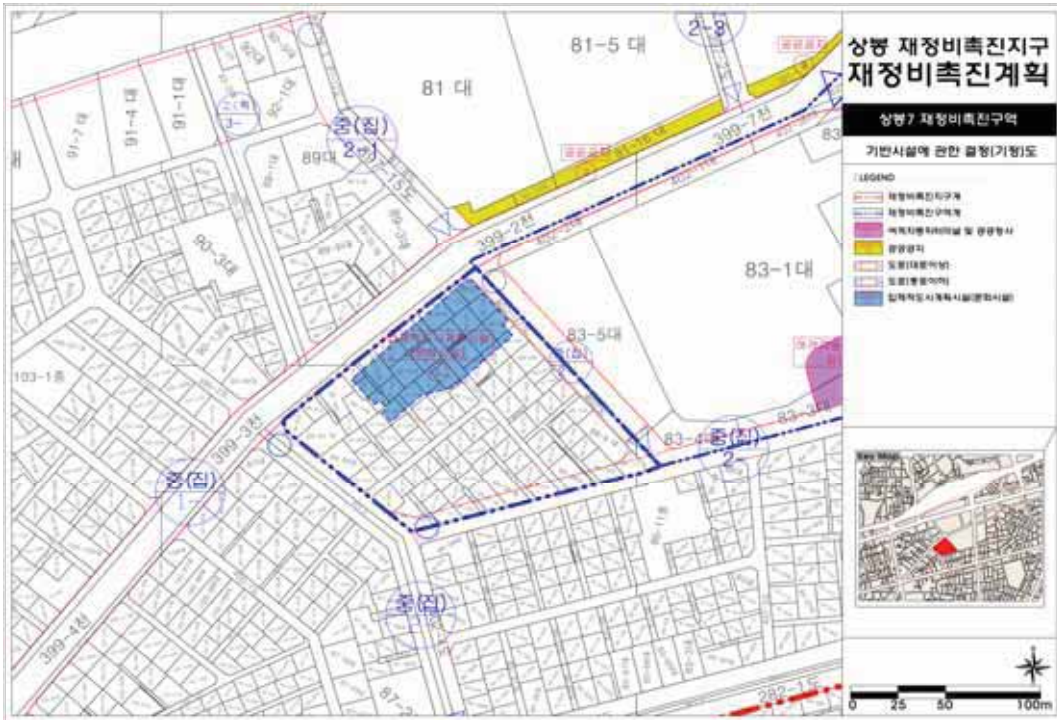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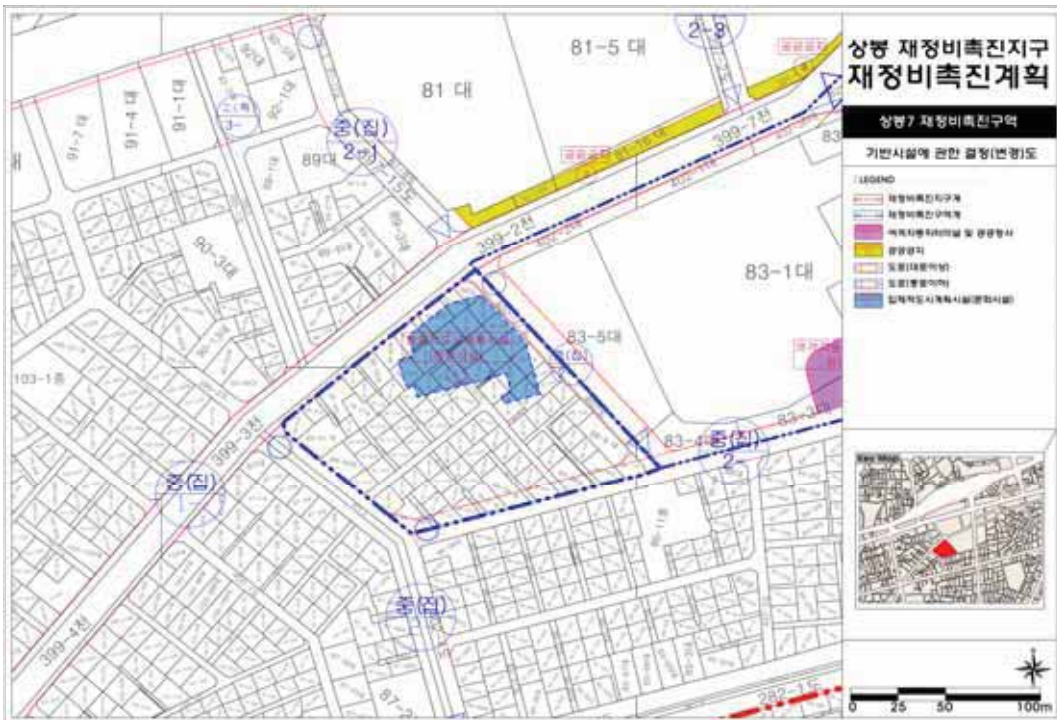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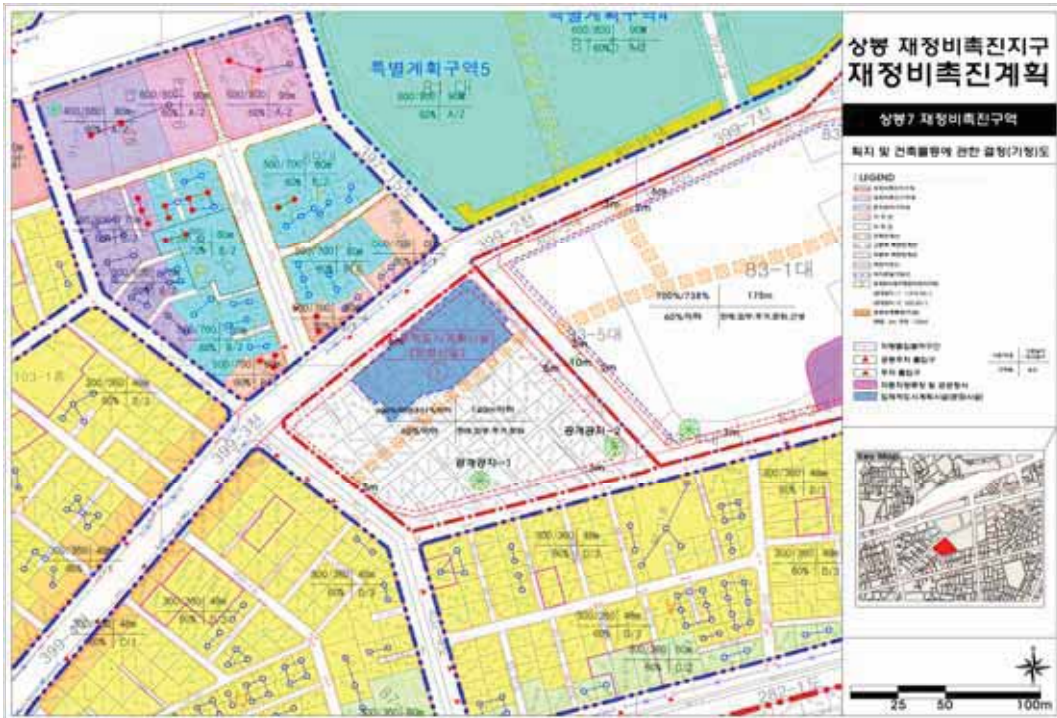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기반시설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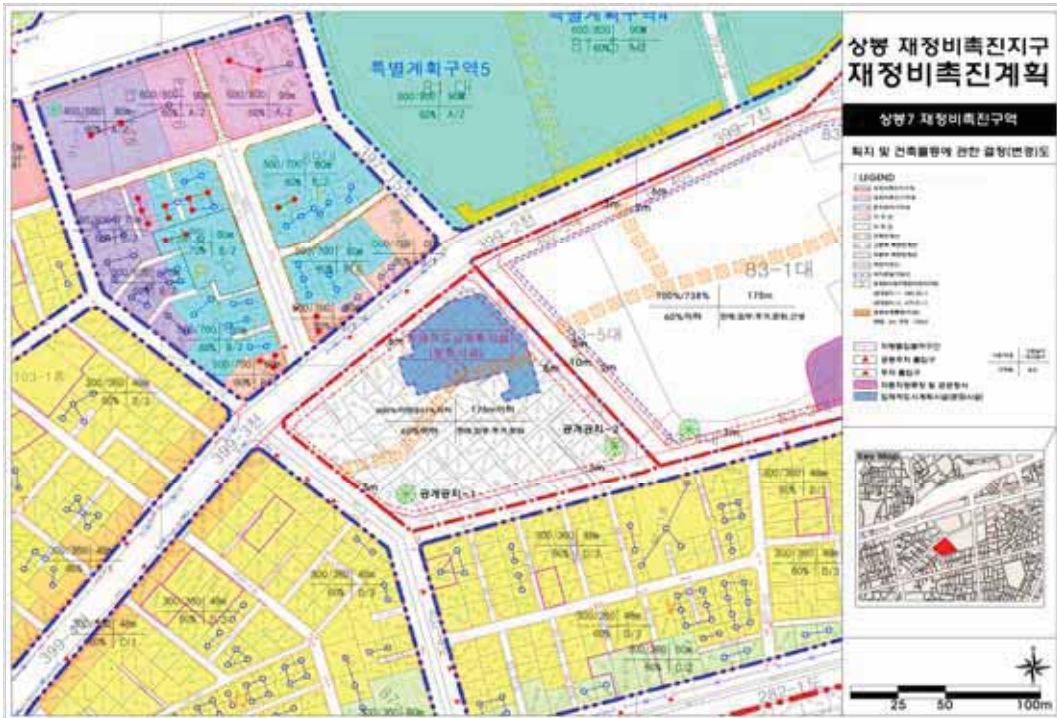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기반시설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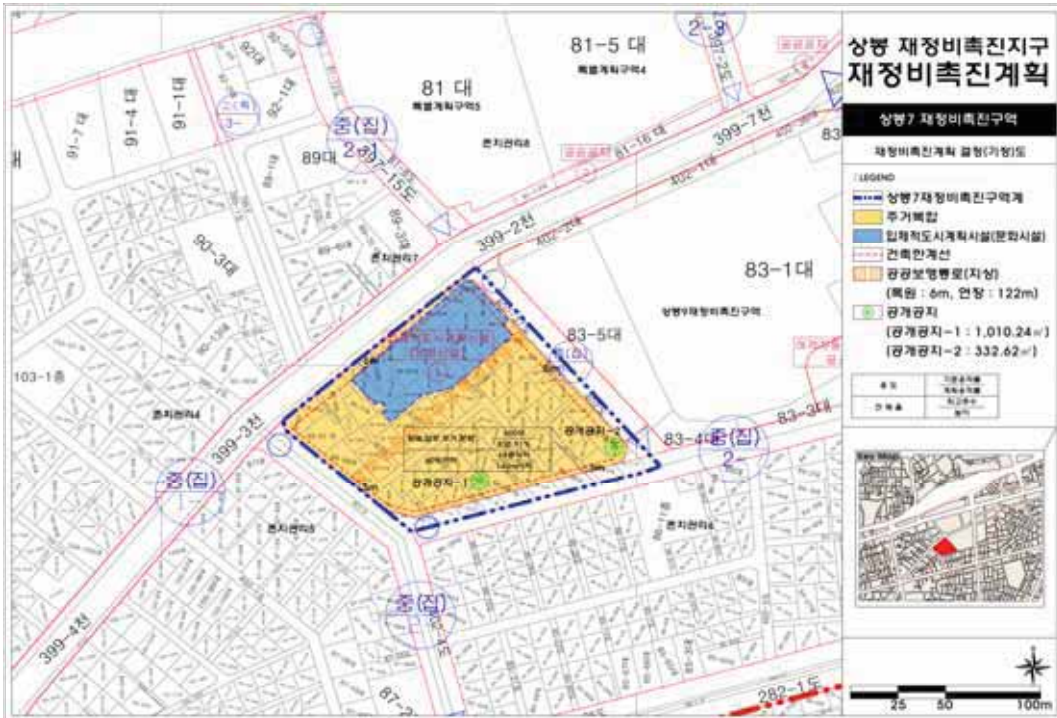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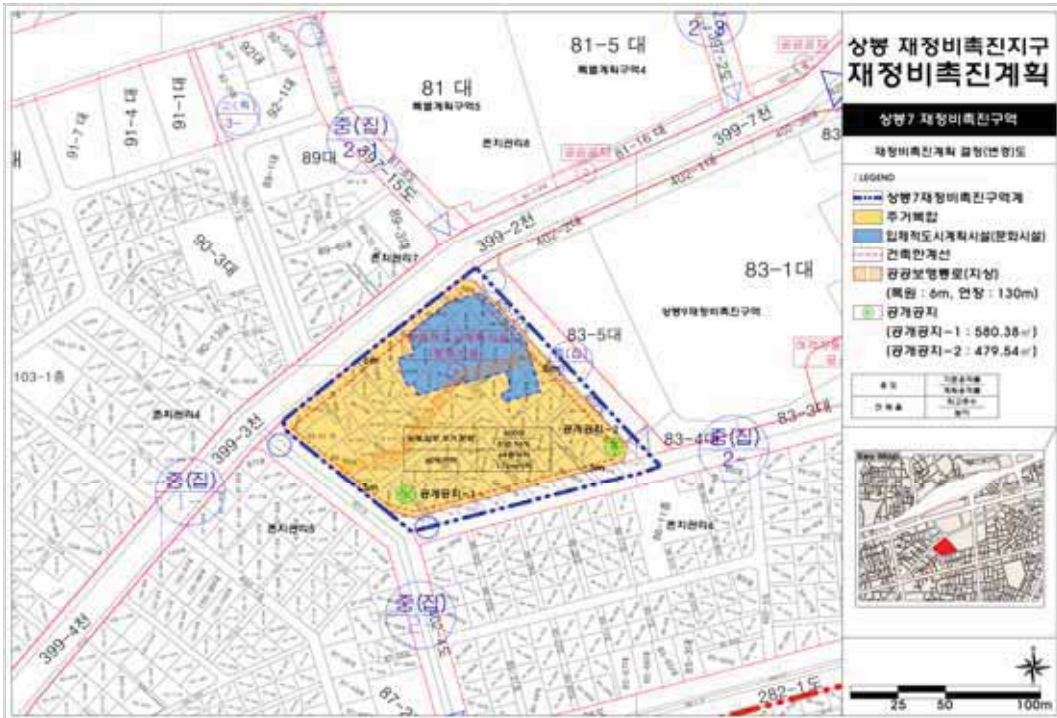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도 (기정)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도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65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98호(1971.8.1.)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3 - 68호(2023.3.2.)로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된 광진구 능동로 216 일대 능동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내 동물공연장을 다목적 문화공연장으로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가족 중심의 어린이대공원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자 함
 - 주요내용
 - ▶ 동물공연장을 공연장으로 변경(내부 리모델링)
(건축 연면적 2,123.01㎡ → 2,122.41㎡, 0.6㎡ 감)
 - ▶ 녹지 및 기타 : 339,352.47㎡ → 339,054.54㎡(감 297.93㎡)
공연장 진입로 변경(현황반영)으로 녹지면적(일부) 감소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일대
3. 면 적 : 560,552㎡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 - 2133 - 2068)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02 - 460 - 2958)

능동근린공원(어린이대공원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광진구 능동18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비면적(㎡)	연면적(㎡)				동수(동)	비면적(㎡)	연면적(㎡)		
계	560,552.00	221,199.53	72	24,263.76	52,670.65	667	560,552.00	221,497.46	72	24,263.76	52,670.05	667	
어린이 대공원지구	536,088.50	211,605.89	60	22,664.09	49,647.02	663	536,088.50	211,903.82	60	22,664.09	49,646.42	663	
어린이 회관지구	24,463.50	9,593.64	12	1,599.67	3,023.63	4	24,463.50	9,593.64	12	1,599.67	3,023.63	4	
시설율 (법정40%)	(221,199.53 / 560,552.00) × 100 = 39.46 %						(221,497.46 / 560,552.00) × 100 = 39.51 %						증 0.05%
건폐율 (법정10%)	(24,263.76 / 560,552.00) × 100 = 4.33 %						(24,263.76 / 560,552.00) × 100 = 4.33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합 계	560,552.00	221,199.53	72	24,263.76	52,670.65	667	560,552.00	221,497.46	72	24,263.76	52,670.05	667	연면적 감 0.6㎡
기 반 시 설	소 계	64,449.25					64,747.18	64,747.18					증 297.93㎡
	도로	51,459.39					51,757.32	51,757.32					증 297.93㎡
	광 장	12,989.86					12,989.86	12,989.86					
조경시설	17,331.29	17,331.29				5	17,331.29	17,331.29				5	
휴양시설	1,594.04	1,594.04	4	236.56	236.56		1,594.04	1,594.04	4	236.56	236.56		
유흥시설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운동시설	23,271.93	23,271.93	10	1,262.05	2,686.01	4	23,271.93	23,271.93	10	1,262.05	2,686.01	4	
교양시설	59,447.65	59,447.65	31	17,220.41	41,556.69	26	59,447.65	59,447.65	31	17,220.41	41,556.09	26	연면적 감 0.6㎡
편의시설	22,566.51	22,566.51	15	3,128.70	4,846.07	26	22,566.51	22,566.51	15	3,183.44	4,846.07	26	
관리시설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녹지,기타	339,352.47						339,054.54						감 297.93㎡
그밖의 시설 (동물놀이터)	747.00	747.00					747.00	747.00					

2. 조성계획 총괄표 (어린이대공원지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계		536,088.50	211,605.89	60	22,664.09	49,647.02	663	536,088.50	211,903.82	60	22,664.09	49,646.42	663	연면적 감 0.6㎡	
	기본 시설	소 계	62,852.72	62,852.72				63,150.65	63,150.65					증 297.93㎡	
		도 로	49,862.86	49,862.86					50,160.79	50,160.79					증 297.93㎡
		광 장	12,989.86	12,989.86					12,989.86	12,989.86					
	조경시설	17,267.39	17,267.39				5	17,267.39	17,267.39				5		
	휴양시설	1,579.84	1,579.84	4	236.56	236.56		1,579.84	1,579.84	4	236.56	236.56			
	유흥시설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운동시설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교양시설	58,943.03	58,943.03	27	16,715.79	41,052.07	25	58,943.03	58,943.03	27	16,715.79	41,051.47	25	연면적 감 0.6㎡	
	편익시설	22,566.51	22,566.51	15	3,128.70	4,846.07	26	22,566.51	22,566.51	15	3,183.44	4,846.07	26		
	관리시설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녹지,기타	324,482.61						324,184.68						감 297.93㎡	
	그밖의 시설 (동물놀이타)	747.00	747.00					747.00	747.00						

3. 시설조서(어린이대공원지구)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계			62,852.72	62,852.72						63,150.65	63,150.65				증297.93
	도 로	가	능동 18	42,344.59	42,344.59				가	능동 18	42,642.52	42,642.52				증297.93
	산책로	나	"	7,518.27	7,518.27				나	"	7,518.27	7,518.27				
	광 장	다	"	12,989.86	12,989.86				다	"	12,989.86	12,989.86				
	진입광장	다-1	"	(4,427.00)	(4,427.00)				다-1	"	(4,427.00)	(4,427.00)				
	빛의광장	다-2	"	(4,445.38)	(4,445.38)				다-2	"	(4,445.38)	(4,445.38)				
	판타지플라자	다-3	"	(1,465.58)	(1,465.58)				다-3	"	(1,465.58)	(1,465.58)				
	육각정광장	다-4	"	(2,281.90)	(2,281.90)				다-4	"	(2,281.90)	(2,281.90)				
	아와음악당광장	다-5	"	(370.00)	(370.00)				다-5	"	(370.00)	(370.00)				
	계			17,267.39	17,267.39			5			17,267.39	17,267.39			5	
조 경 시 설	연 못	①	능동 18	14,382.78	14,382.78				3 ①	능동 18	14,382.78	14,382.78			3	
	- 환경연못	①-1	"	(5,061.78)	(5,061.78)				(1) ①-1	"	(5,061.78)	(5,061.78)			(1)	
	- 생태연못	①-2	"	(8,700.00)	(8,700.00)				(1) ①-2	"	(8,700.00)	(8,700.00)			(1)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 생태계류	① - 3	"	(621.00)	(621.00)				(1)	① - 3	"	(621.00)	(621.00)				(1)	
	분수대	②	"	959.95	959.95				2	②	"	959.95	959.95				2	
	- 디지털분수	② - 1	"	(706.50)	(706.50)				(1)	② - 1	"	(706.50)	(706.50)				(1)	
	- 캐스케이드1	② - 2	"							② - 2	"							
	- 캐스케이드2	② - 3	"	(253.45)	(253.45)				(1)	② - 3	"	(253.45)	(253.45)				(1)	
	화 단	라	"	1,400.25	1,400.25					라	"	1,400.25	1,400.25					
	정 원	④	"							④	"							
	- 놀이마당	④ - 1	"							④ - 1	"							
	- 깃대원	④ - 2	"							④ - 2	"							
	- 솟대원	④ - 3	"							④ - 3	"							
- 정승원	④ - 4	"							④ - 4	"								
	실개천		"	524.41	524.41						"	524.41	524.41					
휴 양 시	계			1,579.84	1,579.84		4	236.56				1,579.84	1,579.84		4	236.56		
	육각정	1	능동 18	445.00	445.00	R.C	3	223.34		1	능동 18	445.00	445.00	R.C	3	223.34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ㄱ)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설	- 육각정 1	1-1	"	(210.00)	(210.00)	R.C (1)	(1)	(99.17) (99.17)		1-1	"	(210.00)	(210.00)	R.C (1)	(1)	(99.17) (99.17)	
	- 육각정 2	1-2	"	(210.00)	(210.00)	R.C (1)	(1)	(99.17) (99.17)		1-2	"	(210.00)	(210.00)	R.C (1)	(1)	(99.17) (99.17)	
	- 육각정 3	1-3	"	(25.00)	(25.00)	R.C (1)	(1)	(25.00) (25.00)		1-3	"	(25.00)	(25.00)	R.C (1)	(1)	(25.00) (25.00)	
	군자정	2	"	39.00	39.00	R.C 1	1	13.22 13.22		2	"	39.00	39.00	R.C 1	1	13.22 13.22	
	섬 터		"	135.84	135.84						"	135.84	135.84				
	이영장		"	960.00	960.00						"	960.00	960.00				
아 화 시 설	계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계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소 계	능동18		1,432.15	1,432.15		4	847.44 1,560.72		소계	능동18	1,432.15	1,432.15		4	847.44 1,560.72	
	매 포 소	5	"	136.08	136.08	R.C 1	1	136.08 136.08		5	"	136.08	136.08	R.C 1	1	136.08 136.08	
	과학오락관	7	"	287.89	287.89	R.C 1	1	287.89 565.16		7	"	287.89	287.89	R.C 1	1	287.89 565.16	
	- 과학오락관	7-1		(225.66)	(225.66)			(225.66) (225.66)		7-1		(225.66)	(225.66)			(225.66) (225.66)	
	- 입체영상관	7-2		(225.66)	(225.66)			(225.66) (171.01)		7-2		(225.66)	(225.66)			(225.66) (171.01)	
아 화 시 설	- 화장실 3	7-3		(62.23)	(62.23)			(62.23) (168.49)		7-3		(62.23)	(62.23)			(62.23) (168.49)	
	사무실	8	능동 18	332.75	332.75	R.C 1	1	332.75 729.88		8	능동 18	332.75	332.75	R.C 1	1	332.75 729.88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공작물	유령의나라	45	"	90.72	90.72	R.C	1	90.72	129.60	45	"	90.72	90.72	R.C	1	90.72	129.60	
	원터(아외무대)	46	"	584.71	584.71					46	"	584.71	584.71					
	소 계	소계		22,518.22	22,518.22					소계		22,518.22	22,518.22					
	스왕거	⑧	능동 18	176.63	176.63	철골				⑧	능동 18	176.63	176.63	철골				
	회전목마	⑨	"	86.55	86.55	철골				⑨	"	86.55	86.55	철골				
	회전킴	⑩	"	66.44	66.44	철골				⑩	"	66.44	66.44	철골				
	키다리이타 (미니카)	⑪	"	176.00	176.00	철골				⑪	"	176.00	176.00	철골				
	탱크전차	⑫	"	757.19	757.19	철골				⑫	"	757.19	757.19	철골				
	범 파 카	⑬	"	254.34	254.34	철골				⑬	"	254.34	254.34	철골				
	디노기차	⑭	"	392.24	392.24	철골				⑭	"	392.24	392.24	철골				
유형 시설	카니발 코 너	⑮	"	69.75	69.75	철골				⑮	"	69.75	69.75	철골				
	모노레일	⑯	"	762.54	762.54	레이				⑯	"	762.54	762.54	레이				
	기차여행	⑰	"	157.50	157.50	레이				⑰	"	157.50	157.50	레이				
	스페이스하이 터	⑱	"	86.59	86.59	철골				⑱	"	86.59	86.59	철골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뮤직이 스프레 스	㉑	"	346.70	346.70	철골			㉑	"	346.70	346.70	철골			
	트러스스테이션	㉒	"	87.92	87.92	철골			㉒	"	87.92	87.92	철골			
	문도딩고 (편하우스)	㉓	"	82.68	82.68	철골			㉓	"	82.68	82.68	철골			
	전자서적장	㉔	"	40.00	40.00	철골			㉔	"	40.00	40.00	철골			
	서스펜디드 미리코스터	㉕	"	2,377.89	2,377.89	철골			㉕	"	2,377.89	2,377.89	철골			
	드롭타워	㉖	"	178.69	178.69	철골			㉖	"	178.69	178.69	철골			
	웨이브스윙	㉗	"	422.42	422.42	철골			㉗	"	422.42	422.42	철골			
	슈퍼점퍼	㉘	"	285.27	285.27	철골			㉘	"	285.27	285.27	철골			
	후롤라이드	㉙	"	1,658.65	1,658.65	철골			㉙	"	1,658.65	1,658.65	철골			
	슈퍼라이징	㉚	능동 18	264.87	264.87	철골			㉚	능동 18	264.87	264.87	철골			
	개구리점프	㉛	"	61.83	61.83	철골			㉛	"	61.83	61.83	철골			
	컨터키	㉜	능동 18	225.03	225.03	철골			㉜	능동 18	225.03	225.03	철골			
	스윙베어	㉝	"	106.80	106.80	철골			㉝	"	106.80	106.80	철골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㉔)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㉔)	
	크레이지마우스	㉔	"	343	343	철골			㉔	"	343	343	철골			
	크레이지댄스	㉔	"	255	255	철골			㉔	"	255	255	철골			
	아쿠아보트	㉔	"	358	358	콘크리트			㉔	"	358	358	콘크리트			
	미니버킹	㉔	"	12.34	12.34	철골			㉔	"	12.34	12.34	철골			
	기 타			12,425.36	12,425.36						12,425.36	12,425.36				
본 이 단	소 계	소계	능동 18	5,962.29	5,962.29				소계	능동 18	5,962.29	5,962.29				
	본수놀이마당	11	"	1,660.76	1,660.76				11	"	1,660.76	1,660.76				
	감성놀이마당	12	"	4,301.53	4,301.53				12	"	4,301.53	4,301.53				
	계	계	능동 18	15,857.54	15,857.54	2	167.00	1	계	능동 18	15,857.54	15,857.54	2	167.00	1	
	축구장	13-1	"	(8,212.00)	(8,212.00)				13-1	"	(8,212.00)	(8,212.00)				
안 내 시 정	헬스파크	14	"	4,317.54	4,317.54				14	"	4,317.54	4,317.54				
	- 헬스파크1	14-1	"	(3,545.54)	(3,545.54)				14-1	"	(3,545.54)	(3,545.54)				
	- 헬스파크2	14-2	"	(227.00)	(227.00)				14-2	"	(227.00)	(227.00)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㉔)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㉔)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헬스파크3	14-3	"	(320.00)	(320.00)						14-3	"	(320.00)	(320.00)						
	- 헬스파크4	14-4	"	(225.00)	(225.00)					14-4	"	(225.00)	(225.00)							
	미니축구장	15	"	750.00	750.00					15	"	750.00	750.00							
	실외테니스장	44	"	1,588.44	1,588.44					44	"	1,588.44	1,588.44							
	실내테니스장-1	44-1	"	(794.22)	(794.22)					44-1	"	(794.22)	(794.22)							
	실내테니스장-2	44-2	"	(794.22)	(794.22)					44-2	"	(794.22)	(794.22)							
편 의 시 설	계		능동 18	22,566.51	22,566.51		15	3,128.70	4,846.07	26	계	능동 18	22,566.51	22,566.51		15	3,128.70	4,846.07	26	
		소계			22,493.71	22,493.71		15	3,128.70	4,846.07	20	소계		22,493.71	22,493.71		15	3,128.70	4,846.07	20
	판매시설	25	능동 18	1,955.37	1,955.37		3	940.03	940.03		25	능동 18	1,955.37	1,955.37		3	940.03	940.03		
	- 카페테리아	25-1	"	(818.85)	(818.85)	R.C (1)	(1)	(383.89)	(383.89)		25-1	"	(818.85)	(818.85)	R.C (1)	(1)	(383.89)	(383.89)		
	출내음가페테리아	25-2	"	(640.34)	(640.34)	R.C (1)	(1)	(340.14)	(340.14)		25-2	"	(640.34)	(640.34)	R.C (1)	(1)	(340.14)	(340.14)		
	- 복합판매시설	25-3	"	(496.18)	(496.18)	R.C (1)	(1)	(216.00)	(216.00)		25-3	"	(496.18)	(496.18)	R.C (1)	(1)	(216.00)	(216.00)		
	안내센터	26	"	717.70	717.70	R.C 1	1	636.50	636.50		26	"	717.70	717.70	R.C 1	1	636.50	636.50		
	화 장 실	27	"	1,688.34	1,688.34		10	907.87	965.41		27	"	1,688.34	1,688.34		10	907.87	965.41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7)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7)	
일반	- 화장실 2	27-1	"	(95.12)	(95.12)	R.C (1)	(95.12) (95.12)		27-1	"	(95.12)	(95.12)	R.C (1)	(95.12) (95.12)		
	- 화장실 3	27-2	"	(34.71)	(34.71)	조적 (1)	(34.71) (34.71)		27-2	"	(34.71)	(34.71)	조적 (1)	(34.71) (34.71)		
	- 화장실 6	27-3	"	(94.02)	(94.02)	R.C (1)	(94.02) (94.02)		27-3	"	(94.02)	(94.02)	R.C (1)	(94.02) (94.02)		
	- 화장실 7	27-4	"	(69.30)	(69.30)	R.C (1)	(69.30) (69.30)		27-4	"	(69.30)	(69.30)	R.C (1)	(69.30) (69.30)		
	- 화장실 9	27-5	"	(70.71)	(70.71)	R.C (1)	(70.71) (70.71)		27-5	"	(70.71)	(70.71)	R.C (1)	(70.71) (70.71)		
	- 화장실 11	27-6	"	(65.86)	(65.86)	R.C (1)	(65.86) (65.86)		27-6	"	(65.86)	(65.86)	R.C (1)	(65.86) (65.86)		
	- 화장실 13	27-7	"	(145.50)	(145.50)	R.C (1)	(145.50) (145.50)		27-7	"	(145.50)	(145.50)	R.C (1)	(145.50) (145.50)		
	- 화장실 17	27-8	"	(49.59)	(49.59)	조적 (1)	(49.59) (49.59)		27-8	"	(49.59)	(49.59)	조적 (1)	(49.59) (49.59)		
	- 복합화장실	27-9	"	(526.63)	(526.63)	R.C (1)	(188.58) (188.58)		27-9	"	(526.63)	(526.63)	R.C (1)	(188.58) (188.58)		
	- 코끼리화장실	27-10	"	(536.90)	(536.90)	R.C (1)	(141.36) (141.36)		27-10	"	(536.90)	(536.90)	R.C (1)	(141.36) (141.36)		
	팔각 당	28	"	644.30	644.30	R.C 1	644.30 2,304.13		28	"	644.30	644.30	R.C 1	644.30 2,304.13		
특별	주차 장	29	"	17,488	17,488			4	29	"	17,488	17,488			4	
	정 문	29-1	능동 18	(5,159.00)	(5,159.00)			(2)	29-1	능동 18	(5,159.00)	(5,159.00)			(2)	

첨가 시설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가)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가)
	후 문	29 - 2	"	(7,155.00)	(7,155.00)				(1)	29 - 2	"	(7,155.00)	(7,155.00)				(1)	
	후 문	29 - 3	"	(5,174.00)	(5,174.00)				(1)	29 - 3	"	(5,174.00)	(5,174.00)				(1)	
	간이판매시설(정문)		"	(31.36)	(31.36)				8		"	(31.36)	(31.36)				8	
		간이판매시설(후문)		"	(31.36)	(31.36)				8		"	(31.36)	(31.36)				8
	공작물	소계		72.80	72.80				6	소계		72.80	72.80				6	
	음 수 대	㉞	능동 18	72.80	72.80				6	㉞	능동 18	72.80	72.80				6	
	공중전화	㉞	"	(9.70)	(9.70)				(1)	㉞	"	(9.70)	(9.70)				(1)	
	의 자	㉞	"	(1,952.00)	(1,952.00)				(1)	㉞	"	(1,952.00)	(1,952.00)				(1)	
교 양 시 설	휴 지 통	㉞	"	(300.00)	(300.00)				(1)	㉞	"	(300.00)	(300.00)				(1)	
	계	계		58,943.03	58,943.03	27	16,715.79	41,052.07	25	계		58,943.03	58,943.03	27	16,715.79	41,051.47	25	연면적 감 0.6㎡
		소계		702.36	702.36				21	소계		702.36	702.36				21	
	동 상	㉞	능동18	579.36	579.36				12	㉞	능동18	579.36	579.36				12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가)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기 념 비	㉔	"	123.00	123.00					9	㉔	"	123.00	123.00					9
		소계		58,240.67	58,240.67		27	16,715.79	41,052.07	4	소계		58,240.67	58,240.67		27	16,715.79	41,051.47	4
	아외음악당	16	능동 18	7,662.23	7,662.23	RC+	4	1,664.99	2,193.28		16	능동 18	7,662.23	7,662.23	RC+	4	1,664.99	2,193.28	
	아외음악당	16-1	"	(7,327.60)	(7,327.60)	RC+	(1)	(1,395.05)	(1,926.10)		16-1	"	(7,327.60)	(7,327.60)	RC+	(1)	(1,395.05)	(1,926.10)	
	옥외화장실 1	16-2	"	(112.70)	(112.70)	R.C	(1)	(89.98)	(89.06)		16-2	"	(112.70)	(112.70)	R.C	(1)	(89.98)	(89.06)	
	옥외화장실 2	16-3	"	(112.51)	(112.51)	R.C	(1)	(89.98)	(89.06)		16-3	"	(112.51)	(112.51)	R.C	(1)	(89.98)	(89.06)	
	옥외화장실 3	16-4	"	(109.42)	(109.42)	R.C	(1)	(89.98)	(89.06)		16-4	"	(109.42)	(109.42)	R.C	(1)	(89.98)	(89.06)	
	식 물 원	17	"	1,600.00	1,600.00	R.C	1	1,598.00	2,492.00		17	"	1,600.00	1,600.00	R.C	1	1,598.00	2,492.00	
	동 물 사	18	"	27,346.14	27,346.14		16	5,334.39	6,333.06	2	18	"	27,346.14	27,346.14		16	5,334.39	6,332.46	2
	열대동물사	18-1	"	(1,007.00)	(1,007.00)	R.C	(1)	(565.15)	(998.15)		18-1	"	(1,007.00)	(1,007.00)	R.C	(1)	(565.15)	(998.15)	
	물 세 장	18-2	"	(1,229.00)	(1,229.00)	조적	(1)	(468.67)	(468.67)		18-2	"	(1,229.00)	(1,229.00)	조적	(1)	(468.67)	(468.67)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ㄱ)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ㄱ)
교 양 시 설	어린이동물원	18-3	"	(2,373.67)	(2,373.67)	(3)	(226.20)	(226.20)		18-3	"	(2,373.67)	(2,373.67)		(3)	(226.20)	(226.20)	
	대동물관	18-4	"	(4,247.35)	(4,247.35)	R.C	(1)	(1,082.14)	(1,162.26)	18-4	"	(4,247.35)	(4,247.35)	R.C	(1)	(1,082.14)	(1,162.26)	
	원숭이동산	18-5	"	(1,552.02)	(1,552.02)	"	(1)	(507.79)	(507.79)	18-5	"	(1,552.02)	(1,552.02)	"	(1)	(507.79)	(507.79)	
	소맹수사	18-6	"	(357.13)	(357.13)	"	(1)	(126.79)	(126.79)	18-6	"	(357.13)	(357.13)	"	(1)	(126.79)	(126.79)	
	맹 금 사	18-7	"	(184.75)	(184.75)	"		-	(1)	18-7	"	(184.75)	(184.75)	"		-	(1)	
	초식수 시파리	18-8	"	(60.00)	(60.00)	조적	(1)	(60.00)	(60.00)	18-8	"	(60.00)	(60.00)	조적	(1)	(60.00)	(60.00)	
	사슴전시장	18-9	"	(375.72)	(375.72)	"	(3)	(81.00)	(81.00)	18-9	"	(375.72)	(375.72)	"	(3)	(81.00)	(81.00)	
	수서동물사	18-10	"	(1,129.31)	(1,129.31)	R.C	(1)	(355.89)	(483.19)	18-10	"	(1,129.31)	(1,129.31)	R.C	(1)	(355.89)	(483.19)	
	초식전시장	18-11	"	(1,500.00)	(1,500.00)					18-11	"	(1,500.00)	(1,500.00)					
	공연장	18-12	"	(3,170.10)	(3,170.10)	SRC	(1)	(1,501.36)	(2,123.01)	18-12	"	(3,170.10)	(3,170.10)	SRC	(1)	(1,501.36)	(2,122.41)	연면적 0.6㎡
	동물병원	18-13	"	(656.50)	(656.50)	조적	(1)	(263.40)	(263.40)	18-13	"	(656.50)	(656.50)	조적	(1)	(263.40)	(263.40)	
	앵무마을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구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㉔)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구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㉔)
	기타(관리통로)	18 - 14	"	(9,407.59)	(9,407.59)				(1)	18 - 14	"	(9,407.59)	(9,407.59)				(1)	
	낙타사육장	18 - 15	"	(96.00)	(96.00)	조적	(1)	(96.00)		18 - 15	"	(96.00)	(96.00)	조적	(1)	(96.00)	(96.00)	
	시민안전체험관	19	"	1,795.20	1,795.20	R.C	1	1,795.20 5,441.00	1	19	"	1,795.20	1,795.20	R.C	1	1,795.20 5,441.00	1	
	인형전시장	20	능동 18	365.00	365.00	R.C	1	365.00		20	능동 18	365.00	365.00	R.C	1	365.00	365.00	
	숲속체험장	21	"	707.08	707.08					21	"	707.08	707.08					
	숲속체험시설	22	"	1,063.69	1,063.69					22	"	1,063.69	1,063.69					
	전시장	23	"	4,320.00	4,320.00	R.C	1	1,461.93 3,346.79		23	"	4,320.00	4,320.00	R.C	1	1,461.93 3,346.79		
	전시벽	㉔	"	6.00	6.00					㉔	"	6.00	6.00					
	유강원	24	"	424.56	424.56					24	"	424.56	424.56					
	어린이교통체험관	35	"	3,000.00	3,000.00	R.C	1	450.00	1	35	"	3,000.00	3,000.00	R.C	1	450.00	450.00	1
	서울키즈센터	36	"	6,600.00	6,600.00	RC+철골	1	3,367.18 19,543.44		36	"	6,600.00	6,600.00	RC+철골	1	3,367.18 19,543.44		
	아리수홍보관	37	"	3,350.77	3,350.77	RC+철골	1	679.10 887.50		37	"	3,350.77	3,350.77	RC+철골	1	679.10 887.5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㉔)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㉔)	
관 리 시 설	계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계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1,704.60		8	1,488.60	1,704.60		소계		1,704.60	1,704.60	8	1,488.60	1,704.60		
	정 문	30	능동18	432.00	432.00	R.C	1	216.00	432.00	30	능동18	432.00	432.00	R.C	1	216.00	432.00		
	후 문	31	"	31.92	31.92	R.C	1	31.92	31.92	31	"	31.92	31.92	R.C	1	31.92	31.92		
	구의문	32	"	31.92	31.92		1	31.92	31.92	32	"	31.92	31.92		1	31.92	31.92		
관 리 시 설	특고압 변전실	33	"	396.00	396.00	R.C	1	396.00	396.00		"	396.00	396.00	R.C	1	396.00	396.00		
	영선반창고	34	"	420.00	420.00	경량 철골	1	420.00	420.00		"	420.00	420.00	경량 철골	1	420.00	420.00		
	수목관리실	36	"	320.67	320.67	조적	1	320.67	320.67		"	320.67	320.67	조적	1	320.67	320.67		
	수처리시설	37	"	59.13	59.13	조적	1	59.13	59.13		"	59.13	59.13	조적	1	59.13	59.13		
	공원초소(능동문)	49	"	12.96	12.96	R.C	1	12.96	12.96		"	12.96	12.96	R.C	1	12.96	12.96		
관 리 시 설	공 작 물	소계		174.60	174.60			80.00	80.00	606	소계		174.60	174.60		80.00	80.00	606	
	올타리 담장		능동 18							1	능동 18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안 내 판		"							"					140	
	가 로 등		"							"					460	
	고압변전실	㉔	"	94.60	94.60			4	㉔	"	94.60	94.60			4	
	음악분수제어실	38	"	80.00	80.00		80.00	1	38	"	80.00	80.00		80.00	1	
	기차동산															
북지맞기타	계			324,482.61							324,184.68					감297.93㎡
	잔디밭	마	능동18	50,836.45					마	능동18	50,836.45					
	녹지대	바	"	81,342.53					바	"	81,044.60					감297.93㎡
	수림대	사	"	192,303.63					사	"	192,303.63					
그밖의시설	동물놀이터		능동18	747.00	747.00					능동18	747.00	747.00				

4. 도로조서(어린이대공원지구)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 급	류 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8,775.83	49,862.86				증297.93㎡
변경					8,820.93	50,160.79				
당초	대로	소 계			684.00	14,889.38				
변경					684.00	14,889.38				
당초		3	1	25~61	562.00	10,746.79	후문진입로	판타지 플라자	후문지구계	
당초		3	2	24~50	122.00	4,142.59	정문진입로	정 문	빛의광장	
당초		소 계			4,803.69	27,455.21				증297.93㎡
변경					4,848.79	27,753.14				
당초	소로	2	1	8	443.20	3,545.60	중앙로	빛의광장	팔각당	
당초		3	1	6	684.80	4,458.00	놀이마당, 외곽순환	빛의광장	판타지플라자	
당초		3	2	6	871.00	5,226.00	생태연못, 순환	정문진입로	판타지플라자	
변경		3	2	6	916.10	5,523.93	생태연못, 순환	정문진입로	판타지플라자	증297.93㎡
당초		3	3	4	633.00	2,532.00	숲속체험장 순환	축구장	동물원	
당초		3	4	6	74.00	444.00	대동물관	팔각당	대동물관 동쪽	
당초		3	5	5	138.02	690.10	동물원, 카페테리아	어린이 동물원	공연장	
당초		3	6	6	474.00	2,844.00	식물원, 동물원	전시장	팔각당	
당초		3	7	6	75.00	450.00	농동문 진입로	주차장	놀이마당	
당초		3	8	5	240.00	1,200.00	구의문 진입로	구의문	사슴전시장	
당초		3	9	5	232.00	1,160.00	공연장	광나루길	공연장	
당초		2	3	10	125.00	1,250.00	전시장	전시장	전시장	
당초		3	10	5	93.00	465.00	수목관리실	구의문	수목관리실	
당초		3	11	5	232.00	1,160.00	관리동선	후문주차장	후문진입로	
당초		3	12	4	123.02	453.41	육각정	식물원	낙타사육장	
당초		3	13	4	57.00	228.00	카페테리아	식물원	카페테리아	
당초		3	14	4	143.00	572.00	놀이마당	중앙로	생태숲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	15	4	45.00	180.00	영선반창고	중앙로	영선반창고	
당초		3	16	6	57.25	343.50	야외음악당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당초		4	17	4	26.60	106.40	야외음악당	김동인동상	김동인동상	
당초		4	18	4	36.80	147.20	야외음악당	분수놀이마당	김동인동상	
당초		소 계			3095.14	7,518.27				
변경					3095.14	7,518.27				
당초	산책로	4	1	3	150.00	450.00	산책로	중앙로	숫대원	
당초		4	2	2.3	140.70	323.61	산책로	후문진입로	숲속체험장 순환로	
당초		4	3	1.5~3	305.01	983.53	산책로	전시장	팔각당	
당초		4	4	3	214.00	642.00	산책로	숫대원	어린이동물원	
당초		4	5	3	150.00	450.00	산책로	화장실	조만식동상	
당초		4	6	3	120.00	360.00	산책로	흙내음 카페테리아	조만식동상	
당초		4	7	3	124.02	372.06	산책로	놀이마당	놀이마당	
당초		4	8	3	75.03	225.09	산책로	놀이마당	중앙로	
당초		4	9	3	87.00	261.00	산책로	놀이마당	놀이마당	
당초		4	10	3	54.00	162.00	산책로	분수놀이 마당	생태계류	
당초		4	11	2.3	68.20	156.86	산책로	후문진입로	숲속체험장 순환로	
당초		4	12	2	70.91	141.82	산책로	전시장	야외공연장	
당초		4	13	2	65.69	96.08	산책로	육각정	녹지	
당초		4	14	2	42.00	84.00	산책로	야외공연장	생태연못	
당초		4	15	2	28.20	56.40	산책로	부지외곽	외곽순환로	
당초		4	16	2	22.30	44.60	산책로	부지외곽	숲속체험장 순환로	
당초		4	17	1.8	168.07	302.53	산책로		외곽순환로	
당초		4	18	1.8	44.99	80.98	산책로	생태숲산책로	생태숲산책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4	19	1.8	24.24	43.63	산책로	부지외곽	생태숲산책로	
당초		4	20	1.5	95.30	142.95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당초		4	20	1.5	28.83	43.25	산책로	산책로	아리수홍보관	
당초		4	21	1~2	392	427.48	산책로	구의문	동물병원	
당초		4	22	1	50.80	50.80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당초		4	23	4	96.40	385.60	산책로	김동인동상	야외공연장	
당초		4	24	4	71.30	285.20	산책로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당초		4	25	2	49.15	98.30	산책로	환경연못	육각정	
당초		4	26	1.5~3	357	848.5	산책로	조만식동상	수목관리실	

5. 조성계획 총괄표 (어린이회관지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계	24,463.5	9,593.64	12	1,599.67	3,023.63	4	24,463.5	9,593.64	12	1,599.67	3,023.63	4
기반시설	1,596.53	1,596.53					1,596.53	1,596.53				
조경시설	63.90	63.90					63.90	63.90				
휴양시설	14.20	14.20					14.20	14.20				
운동시설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교양시설	504.62	504.62	4	504.62	504.62	1	504.62	504.62	4	504.62	504.62	1
녹지,기타	14,869.86						14,869.86					

6. 시설조서 (어린이회관지구)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계			1,596.53	1,596.53								1,596.53	1,596.53						
	도 로	가	능동18	1,450.74	1,450.74					가	능동18	1,450.74	1,450.74							
	산책로	나	"	145.79	145.79					나	"	145.79	145.79							
조 경 시 설	계	계		63.90	63.90					계		63.90	63.90							
	벽 천	소계	능동18	63.90	63.90					소계	능동18	63.90	63.90							
휴 양 시 설	계	계		14.20	14.20					계		14.20	14.20							
	기르휴게공간	소계	능동18	14.20	14.20					소계	능동18	14.20	14.20							
안 동 운 시 설	계	계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계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건 축 물)	소계	능동18	1,095.05	1,095.05		8	1,095.05	2,519.01		소계	능동18	1,095.05	1,095.05		8	1,095.05	2,519.01		
	탈 의 실	1	"	705.96	705.96	RC	1	705.96	1,330.09		1	"	705.96	705.96	RC	1	705.96	1,330.09		
안 동 운 시 설	관 리 실	2	"	73.06	73.06	조적	1	73.06	872.89		2	"	73.06	73.06	조적	1	73.06	872.89		
	매 점 1	3	"	82.31	82.31	목조	1	82.31	82.31		3	"	82.31	82.31	목조	1	82.31	82.31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본 별	매 점 2	4	"	26.78	26.78	목조	1	26.78	26.78		4	"	26.78	26.78	목조	1	26.78	26.78		
	매 점 3	5	"	42.64	42.64	파이프 조	1	42.64	42.64		5	"	42.64	42.64	파이프 조	1	42.64	42.64		
	식 당	6	"	132.89	132.89	파이프 조	1	132.89	132.89		6	"	132.89	132.89	파이프 조	1	132.89	132.89		
	화 장 실	7	"	21.49	21.49	목조	1	21.49	21.49		7	"	21.49	21.49	목조	1	21.49	21.49		
	창 고	8	"	9.92	9.92	목조	1	9.92	9.92		8	"	9.92	9.92	목조	1	9.92	9.92		
	(공 작 물)	소계		6,319.34	6,319.34					3	소계		6,319.34	6,319.34					3	
	수 영 장 1	①	"	3,421.04	3,421.04	-	-	-	-		①	"	3,421.04	3,421.04	-	-	-	-		
	수 영 장 2	②	"	798.3	798.3	-	-	-	-		②	"	798.3	798.3	-	-	-	-		
	슬라이딩	③	"	-	-	FRP	-	-	-	1	③	"	-	-	FRP	-	-	-	1	
	휴 게 소	④	"	100.0	100.0	조립	-	-	-	1	④	"	100.0	100.0	조립	-	-	-	1	
별	후 문	⑤	"	-	-	철제	-	-	-	1	⑤	"	-	-	철제	-	-	-	1	
	셀매보드장	⑦	"	2,000.0	2,000.0	-	-	-	-		⑦	"	2,000.0	2,000.0	-	-	-	-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 양 시 설	계	계		504.62	504.62		4	504.62	504.62	1	계		504.62	504.62		4	504.62	504.62	1	
	(건 축 물)	소계	능동18	504.62	504.62		4	504.62	504.62		소계	능동18	504.62	504.62		4	504.62	504.62		
	근화원본채	9	"	247.21	247.21	RC	1	247.21	247.21		9	"	247.21	247.21	RC	1	247.21	247.21		
	행랑 채	10	"	169.95	169.95	RC	1	169.95	169.95		10	"	169.95	169.95	RC	1	169.95	169.95		
	별 당	11	"	71.46	71.46	목조	1	71.46	71.46		11	"	71.46	71.46	목조	1	71.46	71.46		
	정 자	12	"	16.0	16.0	목조	1	16.0	16.0		12	"	16.0	16.0	목조	1	16.0	16.0		
	(공 작 물)	소계								1	소계								1	
	근화교	⑥	"	-	-	R.C	-	-	-	1	⑥	"	-	-	R.C	-	-	-	1	
	누지 및 기타		능동18	14,869.86								능동18	14,869.86							

7. 도로조서(어린이회관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279.41	1,596.53				
변경					279.41	1,596.53				
당초	소로	소 계			242.96	1,450.74				
변경					242.96	1,450.74				
당초		3	가	6	242.96	1,450.74	어린이회관, 수영장,내부도로	어린이회관	수영장 후문	
당초	산책로	소 계			36.45	145.79				
변경					36.45	145.79				
당초		3	나	4	36.45	145.79	수영장 내부 도로	수영장 1	수영장 2	

노동환경개선위원회 조성계획도(전후)

조성계획도

능동근린공원

단편



동문 표면장

4차원 정보

구분	지명	면적	비율	비고
■ 미분리대용부지	1. 1	1,100	100%	미분리대용부지
	2. 2	2,200	200%	미분리대용부지
	3. 3	3,300	300%	미분리대용부지
	4. 4	4,400	400%	미분리대용부지
	5. 5	5,500	500%	미분리대용부지
	6. 6	6,600	600%	미분리대용부지
	7. 7	7,700	700%	미분리대용부지
	8. 8	8,800	800%	미분리대용부지
	9. 9	9,900	900%	미분리대용부지
	10. 10	10,000	1000%	미분리대용부지
■ 미분리대용부지	1. 1	1,100	100%	미분리대용부지
	2. 2	2,200	200%	미분리대용부지
	3. 3	3,300	300%	미분리대용부지
	4. 4	4,400	400%	미분리대용부지
	5. 5	5,500	500%	미분리대용부지
	6. 6	6,600	600%	미분리대용부지
	7. 7	7,700	700%	미분리대용부지
	8. 8	8,800	800%	미분리대용부지
	9. 9	9,900	900%	미분리대용부지
	10. 10	10,000	1000%	미분리대용부지

부분 조성계획도

아
다
리
나
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66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 - 168호(2010.5.6.)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 - 246호(2010.7.1)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2133 - 4465)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시설운영팀(☎3435 - 064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나. 사업의 명칭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가락물 청과직판 물류작업장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의 면적 : 531,830㎡

나. 금회 사업 : 기정 29,204.60㎡ → (변경) 29,435.12㎡, (증) 230.52㎡

사업단계		1단계 (금회)	2 - 1단계 (완료)	3 - 1단계 (완료)	2 - 2단계 (완료)	2 - 4단계 (완료)	2 - 5단계 (진행중)	2 - 3단계 (예정)	3 - 2단계 (예정)
대지면적		531,830.00 m ²							
건축 면적	기정	29,204.60m ²	33,853.75m ² (4,418.63m ²)	35,694.75m ² (1,841m ²)	78,508.07m ² (42,813.32m ²)	79,228.01m ² (719.94m ²)	80,338.48m ² (1,110.47m ²)	113,241.65m ² (34,013.64m ²)	266,711.19m ² (153,469.54m ²)
	변경	29,435.12m ²	33,853.75m ² (4,418.63m ²)	35,694.75m ² (1,841m ²)	78,508.07m ² (42,813.32m ²)	79,228.01m ² (719.94m ²)	80,338.48m ² (1,110.47m ²)	114,352.12m ² (34,013.64m ²)	267,821.66m ² (153,469.54m ²)
	증감	230.52m ² (증)	-	-	-	-	-	-	-
연면적	기정	211,576.05m ²	217,472.70m ² (5,666.13m ²)	226,679.70m ² (9,207m ²)	283,746.70m ² (57,067.00m ²)	286,696.26m ² (2,949.56m ²)	289,029.54m ² (2,333.28m ²)	338,600.50m ² (51,904.24m ²)	547,465.06m ² (208,864.56m ²)
	변경	211,806.57m ²	217,472.70m ² (5,666.13m ²)	226,679.70m ² (9,207m ²)	283,746.70m ² (57,067.00m ²)	286,696.26m ² (2,949.56m ²)	289,029.54m ² (2,333.28m ²)	340,933.78m ² (51,904.24m ²)	549,798.34m ² (208,864.56m ²)
	증감	230.52m ² (증)	-	-	-	-	-	-	-
층 수	지상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4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4층

사업단계		1단계 (금회)	2-1단계 (완료)	3-1단계 (완료)	2-2단계 (완료)	2-4단계 (완료)	2-5단계 (진행중)	2-3단계 (예정)	3-2단계 (예정)
공사 기간	기정	-	2013년~ 2014년 완료	2016년~ 2016년 완료	2020년~ 2023년	2021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9년	2026년~ 2031년
	변경	2023년~ 2024년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대표 문영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31. 12. 31

가. 1단계(업무동,판매동) : 2011년 ~ 2016년(완료)

- 물류작업장 : 2023년~ 2024년(금회)

나. 2-1단계(친환경센터) : 2013년 ~ 2014년(완료)

다. 2-2단계(채소2동) : 2020년 ~ 2023년(완료)

라. 2-3단계(수산물동) : 2023년 ~ 2029년(예정)

마. 2-4단계(합동청사) : 2021년 ~ 2024년(완료)

바. 2-5단계(냉동창고) : 2023년 ~ 2024년(예정)

사. 3-1단계(금융관리동) : 2016년 ~ 2016년(완료)

아. 3-2단계(채소1동) : 2026년 ~ 2031년(예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관계인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	대	542,860	530,621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2	대	60	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60	전	20	2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61	전	136	136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62	전	73	73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38	도	40	4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39	도	248	248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관계인	
									주소	성명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341-35	구	14	14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814-1	도	618	618	-	서울특별시			
합 계				544,069	531,830					

7. 인가에 따른 조건이행 사항

-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인허가 관련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 나.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이행하고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67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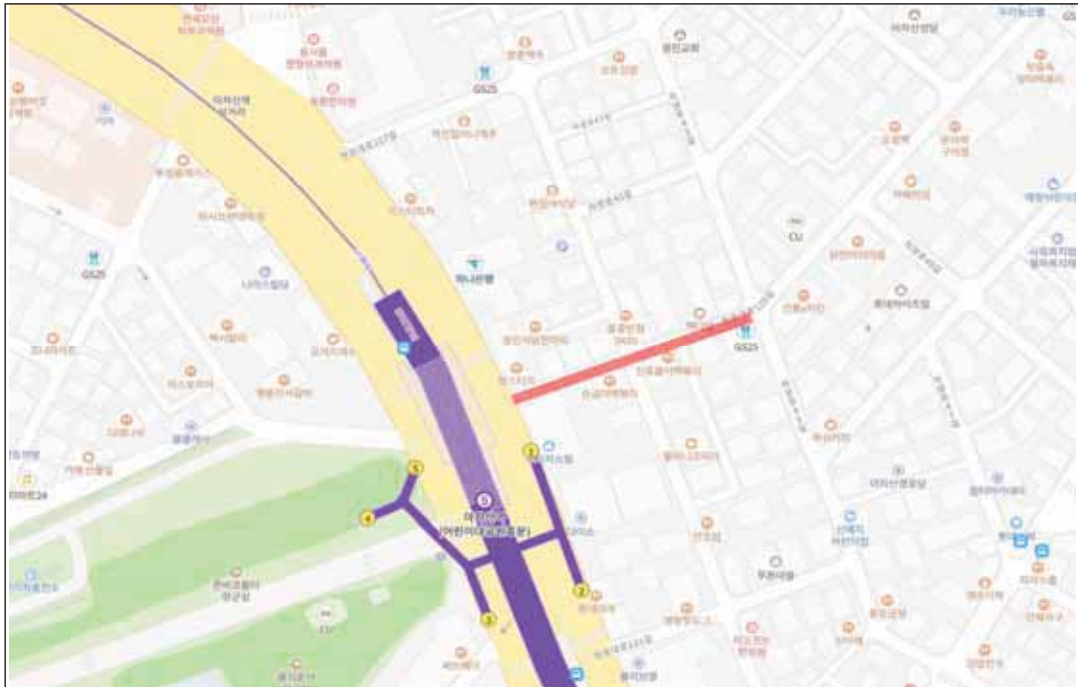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광진구	천호대로129길	5~6	110
2	광진구	광나루로50길	5.5	130

2. 위치도(축척 없음) : 따로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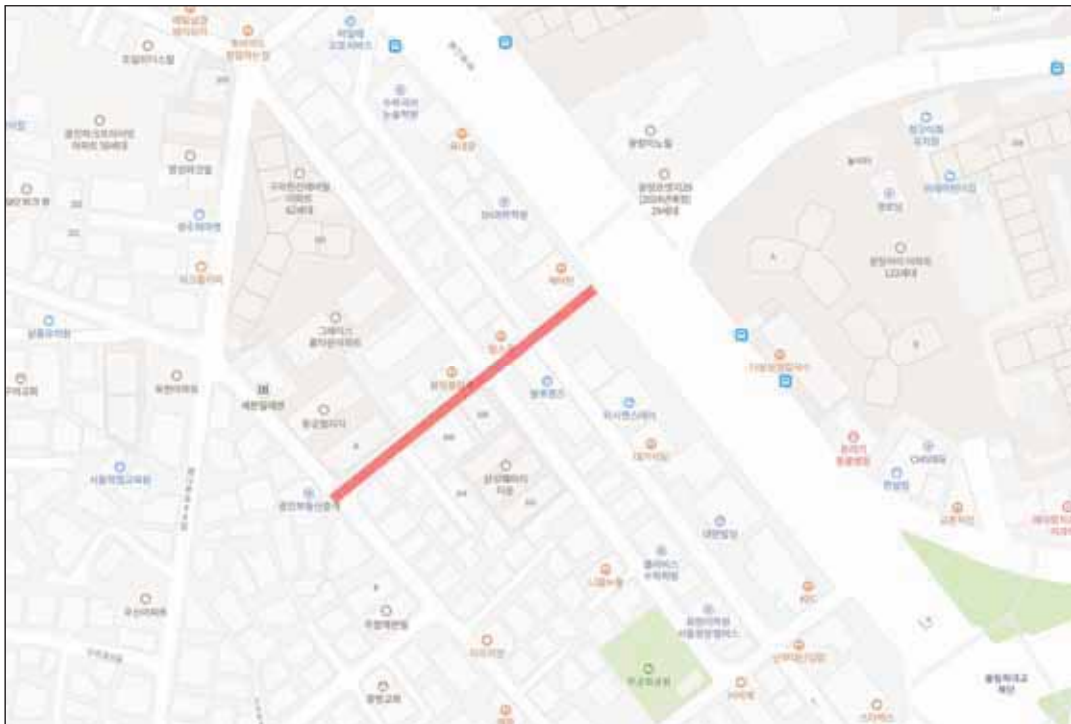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 - 2133 - 2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1) 광진구 천호대로129길



- 2) 광진구 광나루로50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68호
도시관리계획(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 - 79호(1998.03.13.), 제2008 - 182호(2008.05.29.) 및 제2015 - 173호(2015.06.18.) 로 결정 고시된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2.11.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I. 결정(변경) 취지

G밸리 배후지역으로서 기능강화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 및 준공업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일대	74,678.2	증) 48,008.6	122,686.8	서고 제1998-79호 (98.3.1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일대	• 면적증가 - 74,678.2㎡ → 122,686.8㎡ (증 48,008.6㎡)	• G밸리 배후지역으로서 기능강화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 및 준공업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구역 확장

②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74,678.2	증) 48,008.6	122,686.8	100.0	
주거 지역	소계	30,643.1	증) 39,441.7	70,048.8	57.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01.1	증) 15,888.0	17,189.1	14.0	
	제2종일반주거지역	613.0	증) 23,553.7	24,166.7	19.7	
	준주거지역	28,729.0	-	28,729.0	23.4	
일반상업지역		21,809.0	-	21,809.0	17.8	
준공업지역		22,226.1	증) 8,566.9	30,793.0	25.1	

■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변경 용도지역	변경내용	결정사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면적증가 - 1,301.1㎡ → 17,189.1㎡ (증 15,888.0㎡)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면적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 면적증가 - 613.0㎡ → 24,166.7㎡ (증 23,553.7㎡)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면적 변경
준공업지역	• 면적증가 - 22,226.1㎡ → 30,793.0㎡ (증 8,566.9㎡)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면적 변경

※ 구역편입에 따른 면적증가로 용도지역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미관지구

■ 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오류동 ~ 시흥광장 (가산동139-1~142-1)	161,200 (9,400)	6,300 (490)	양측12~20 (20)	건고109 (76.7.19)	-
변경	-	-	-	-	-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미관지구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 미관지구 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18.4.18.)에 따라 기정 미관지구 일괄 폐지 결정된 사항 반영 - 서울시 고시 제2019-129호(19.4.18)

※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는 사항

2) 고도지구

■ 고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김포국제공항 주변지구	진입표면 해발12.50~372.86m미만 (247.56~272.86m)	33,204,000 (74,678.2)	서고138호 (94.5.3)	구역 전체
변경	-	-	-	-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고도지구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 고도지구 폐지	「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 고도제한과의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김포국제공항주변지구 최고고도지구 폐지 반영 - 서울시 고시 2019-133호(19.4.25)

※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는 사항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9	1,751	35,750	4	703	9,487	3	438	3,663	2	610	22,600
	광로	1	490	19,600	-	-	-	-	-	-	1	490	19,600
	대로	1	120	3,000	-	-	-	-	-	-	1	120	3,000
	중로	1	230	4,600	1	230	4,600	-	-	-	-	-	-
	소로	6	911	8,550	3	473	4,887	3	438	3,663	-	-	-
변경	합계	13	2,675	47,208	4	791	11,207	6	1,011	8,352	3	873	27,649
	광로	1	720	24,441	-	-	-	-	-	-	1	720	24,441
	대로	1	120	3,000	-	-	-	-	-	-	1	120	3,000
	중로	1	318	6,320	1	318	6,320	-	-	-	-	-	-
	소로	10	1,517	13,447	3	473	4,887	6	1,011	8,352	1	33	208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9	40	주간선	35,306 (490)	삼전동 (가산동 142-1)	방화동 (가산동 139-1)	일반도 로	건고 제503호 (1969.8.27)	남부순환로
변경	광로	3	19	40	주간선	35,306 (720)	삼전동 (가산동 146-1)	방화동 (가산동 139-1)	일반도 로	건고 제503호 (1969.8.27)	남부순환로
기정	대로	3	118	25	집산	2,250 (120)	구로동 3공단 (가산동 140-1)	광명APT (가산동 139-31)	일반도 로	서고 제378호 (1978.7.31)	디지털로
기정	중로	1	108	20	집산	1,250 (230)	가리봉동 (광2-19)	독산동(중1-107) (가산동 143-7)	일반도 로	건고 제198호 (1971.4.7)	가산로
변경	중로	1	108	20	집산	1,250 (318)	가리봉동 (광3-19)	독산동(중1-107) (가산동 144-3)	일반도 로	건고 제198호 (1971.4.7)	가산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	124	가산동 143-18	가산동 144-1	일반도 로	-	
기정	소로	1	2	10	국지	171	가산동 142-52	가산동 146-85	일반도 로	-	
기정	소로	1	3	10-11	국지	178	가산동 139-17	가산동 60-5	일반도 로	-	
기정	소로	2	1	9-10	국지	247	가산동 143-18	가산동 60-51	일반도 로	-	
기정	소로	2	2	8	국지	106	가산동 140-38	가산동 143-1	일반도 로	-	
기정	소로	2	3	8	국지	85	가산동 141-8	가산동 142-19	일반도 로	-	
신설	소로	2	-	8	국지	123	가산동 145-1	가산동 145-7	일반도 로	-	
신설	소로	2	-	8	국지	330	가산동 145-20	가산동 146-1	일반도 로	-	
신설	소로	2	-	8	국지	120	가산동 143-18	가산동 143-7	일반도 로	-	
신설	소로	3	-	6	국지	33	가산동 144-5 (소1-1)	가산동 144-5 (소2-6)	일반도 로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3-19	광로 3-19	• 연장 변경(490m→720m)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연장 변경
중로 1-108	중로 1-108	• 연장 변경(230m→318m)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연장 변경
-	소로 2-	• 도로신설 • 폭원 : 8m, 연장 : 123m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	- 도로신설 - 폭원 : 8m, 연장 : 330m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존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소로 2-	- 도로신설 - 폭원 : 8m, 연장 : 120m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존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	소로 3-	- 도로신설 - 폭원 : 6m, 연장 : 33m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존성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나. 공간시설 : 변경

1)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	-	-	-	-	-	-
변경	①	공공공지	금천구 가산동 144-2번지	746.8	-	746.8	금고 제135호 (21.10.7)	-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편입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에 따라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반영 - 금천구 고시 제2021-135호(21.10.7)

※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는 사항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가. 친환경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제어기준	
자연지반 보존	전구역	- 지층부의 바닥이나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투수콘, 아스콘 등의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조성하도록 권장 - 투수성포장은 「서울특별시 투수 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시행 및 '각종 포장공사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시행 통보(2012)」에 따른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옥상녹화	전구역	- 옥상녹화 조성시 계단탑 및 설비 면적을 제외한 옥상(2층이상의 옥외부 포함) 면적의 50%이상 조성을 권장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지침」 내용 준수	
벽면녹화	전구역	- 건축물의 수직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면에 대해 벽면녹화를 권장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녹색 주차장	전구역	-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를 권장 - 조성시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중수도 시스템	전구역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스템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권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등의 완화에서 제외	
빗물 관리시설	전구역	- 빗물관리시설,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 - 설치 및 관리기준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등 관련규정을 준수	
에너지 절약	전구역	- 주상복합 건축물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반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권장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세부 이행기준 및 점수산정 기준 등은 관련규정을 준수	
신재생 에너지	전구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 권장	
생태 면적률	전구역	건축물의 신축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등 관련 규정 준수	

나. 방재안전 계획

- 좁은 도로로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화재시 연소 확대가 용이하여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비상 소화장치 확충
-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소방통로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위험물, 특수가연물질의 노상 및 옥외방치 등을 단속하는 등의 예방활동 검토
- 또한, 화재의 초기진압이 중요한 만큼 관련법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민들의 소화기 비치 및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캠페인 등으로 주민 생활을 독려하여 화재예방 강화
- 그 밖의 풍수해, 지진 등의 예방을 위한 사항은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

4. 공공기여계획 결정조서

가. 공공기여계획

- 대상지는 가산지역생활권에 해당하며, 가산지역생활권의 생활서비스시설 결핍시설 분석 시 공원, 공공체육시설이 우선적 시설공급 고려 대상으로 분석됨
- 공원의 경우 대상지 내 공원시설은 전무하나, 가산동 144 - 2번지 일원으로 G밸리 종사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생활권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이 추진되었음 (21.10.7.)

나.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적용

구 분	원화조건	세부계획기준
상한 용적률	공공시설 제공시	• 허용기준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0.7 \times \alpha \text{현금} \cdot \text{건축물})$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 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 현금 · 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부지 (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면적(기존 건축 기부채납시) $= \text{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 \times \frac{\text{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text{용적률을 완화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cdot \text{환산 부지면적(m}^2\text{)} = \frac{\text{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m}^2\text{)}}$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번호		비 고
	기정	변경	
가 구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 I, J, K, L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가구 증가

■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 고
가 구	A	금천구 가산동 139-1번지 일대	6,746.9	
	B	금천구 가산동 140-28번지 일대	5,400.8	
	C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일대	5,574.9	
	D	금천구 가산동 141-5번지 일대	3,722.8	
	E	금천구 가산동 143-15번지 일대	6,884.0	
	F	금천구 가산동 143-1번지 일대	6,377.5	
	G	금천구 가산동 142-22번지 일대	5,522.2	
	H	금천구 가산동 142-1번지 일대	6,716.3	
	I	금천구 가산동 144-1번지 일대	6,176.9	
	J	금천구 가산동 145-15번지 일대	4,826.6	
	K	금천구 가산동 145-1번지 일대	6,133.1	
	L	금천구 가산동 146-1번지 일대	18,740.2	

※ 가구 면적은 캐드 구적면적으로 산정

나. 획지 결정(변경) 조서

1)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 최대개발규모(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최대개발규모 (기정)	3,000㎡ 이하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기존필지 및 기개발지 제외

※ 최대개발규모가 계획된 대지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다만, 공동개발을 통해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범위가 30%이하인 경우로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과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개발규모 이상으로 계획한(획지,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 권장) 대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최대개발규모(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최대개발규모 (변경)	일반 상업지역	3,000㎡ 이하
	준주거	3,000㎡ 이하
	준공업	3,000㎡ 이하
	일반주거	1,500㎡ 이하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기 공동개발 된 일단의 대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공동개발(권장, 지정)에 의하여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A,B,E 가구는 4,500㎡ 이하(가구 규모의 2/3이하) 범위 내에서 4m이하 도로(디지털로, 가산로9길)에 접한 이면부 필지를 포함하여 공동개발 하는 경우 (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다. 공동개발

■ 공동개발 계획기준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공동개발(지정)	• 기 공동개발 완료(공사중 포함) 필지 • 동일 소유 필지	-
공동개발(권장)	• 맹지 및 세장형필지	-
자율적 공동개발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대지와 연접한 대지의 토지 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은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되도록 계획하며, 아래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이 불가하나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 공동개발되는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이거나, 단변과 장변의 세장비율이 3.0이상이 되는 경우 불허	-

■ 공동개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A	643.6	139 - 10대	322.0	공동개발권장	좌동	• 세장형 필지
		139 - 11대	321.6			
	482.4	139 - 12대	294.2	①139 - 12, - 13 공동개발 지정 ①,139 - 14 공동개발권장	① : 139 - 12, - 13 공동개발 지정	• 지정 - ① : 공동개발 완료
		139 - 13대	188.2			
	-	139 - 14대	376.8		-	• 139 - 14 단독개발 완료로 공동개발 해제
	675.1	139 - 15대	534.2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 지정	• 공동개발 완료 및 동일소유
		139 - 16대	140.9			
	729.7	139 - 17대	352.2	공동개발권장	좌동	• 적정대지규모 권장
		139 - 18대	377.5			
B	1,240.7	140 - 28대	285.5	140 - 28, 140 - 29, 140 - 30 공동개발권장	140 - 28, 140 - 29, 140 - 30, 140 - 33 공동개발권장	• 적정대지규모 권장
		140 - 29대	280.0			
		140 - 30대	270.6			
		140 - 33대	404.6			
	446.8	140 - 31대	209.9	공동개발지정	좌동	• 공동개발 완료 및 동일소유
		140 - 32대	236.9			
	568.7	140 - 34대	200.9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 지정	• 지정 - 동일소유 - 140 - 34, - 77 : 공동개발 완료
		140 - 77대	200.8			
		140 - 35대	167.0	공동개발권장		
	-	140 - 81대	166.9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	140 - 40대	169.6	공동개발권장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	140 - 78대	169.6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C	572.0	140 - 1대	192.5	①140 - 2, 3 공동개발지정 ② ①, 140 - 1 공동개발권장	① : 140 - 2, 3 공동개발지정 ② : ①, 140 - 1 공동개발권장	• 지정 - ① : 동일소유 • 권장 - ② : 세장형 필지 • ②, ③ 권장해제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140 - 2대	346.4			
		140 - 3대	33.1			
	588.4	140 - 24대	164.6	③140 - 24, - 25, - 26 공동개발권장 ②, ③공동개발권장	③ : 140 - 24, 140 - 25, 140 - 26 공동개발권장	• 적정대지규모 권장
		140 - 25대	255.4			
		140 - 26대	168.4			
	-	140 - 7대	332.6	공동개발권장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140 - 8대	353.5			
	663.5	140 - 9대	440.0	공동개발지정	좌동	• 공동개발 완료
		140 - 10대	124.3			
		140 - 11대	99.2			
	373.5	140 - 13대	138.2	140 - 13, 140 - 14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권장	• 적정대지규모 권장
		140 - 14대	132.2			
		140 - 16대	103.1			
	281.3	140 - 15대	124.3	140 - 15, 140 - 16, 140 - 17, 140 - 18 공동개발권장	140 - 15, 140 - 18 공동개발지정	• 공동개발 완료
		140 - 18대	157.0			
	-	140 - 16대	103.1		-	• 권장해제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140 - 17대	122.0			· 자율적 공동개발완료 (140 - 15, - 18/140 - 17, - 21)
	250.3	140 - 17대	122.0	-	공동개발 지정	· 공동개발 완료 및 동일소유
		140 - 21대	128.3			
	393.4	140 - 20대	163.0	공동개발권장	① : 140 - 20, - 22 공동개발 지정	· 지정 - ① : 공동개발 완료
		140 - 22대	230.4			
	-	140 - 21대	128.3		-	· 자율적 공동개발완료로 공동개발 해제
D	1,157.0	141 - 13대	176.2	공동개발권장	① : 141 - 13, - 14 공동개발 지정 ② : 141 - 10, - 18 공동개발 권장 ③ : ①, ② 공동개발권장	· 동일소유
		141 - 14대	313.7			
		141 - 10대	333.2			· 적정대지규모 권장
		141 - 18대	333.9			
	703.5	141 - 1대	371.8	공동개발지정	좌동	· 공동개발 완료
		141 - 19대	331.7			
	1,113.5	141 - 2대	123.6	공동개발지정	좌동	· 공동개발 완료
		141 - 3대	120.3			
		141 - 4대	80.3			
		141 - 5대	109.9			
		141 - 6대	273.4			
		141 - 7대	203.0			
		141 - 20대	203.0			
E	-	143 - 15대	162.8	공동개발권장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143 - 57대	167.1			
	693.9	143 - 17대	357.4	공동개발권장	좌동	· 세장형 필지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143 - 18대	336.5			
	-	143 - 24대	350.1	공동개발권장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143 - 28대	528.0			
	-	143 - 30대	98.5	공동개발권장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143 - 31대	98.8			
		143 - 32대	98.5			
	162.3	143 - 33대	108.4	공동개발지정	좌동	• 공동개발 완료 및 동일소유
		143 - 34대	53.9			
	376.6	143 - 37대	128.3	①143 - 38, - 39 공동개발지정 ①, 143 - 37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143 - 38대	160.0			
		143 - 39대	88.3			
	174.2	143 - 40대	83.3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해소 - 143 - 40(과소필지)
		143 - 41대	90.9			
F	-	143 - 1대	184.0	①143 - 2, 10 공동개발지정 ①, 143 - 1 공동개발권장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143 - 2대	108.1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143 - 2로 합필)
		143 - 10대	107.4			
	826.8	143 - 3대	428.1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 공동개발 완료 및 동일소유
		143 - 5대	398.7			
	-	143 - 49대	1,015.9		-	• 143 - 49 단독개발 완료로 공동개발 해제
G	-	142 - 22대	234.4	공동개발권장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142 - 23대	93.6			
		142 - 25대	134.3			
	-	142 - 30대	175.0	공동개발권장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479.4	142 - 53대	224.5	①142 - 36,37 공동개발지정 ②142 - 34,35,52 공동개발권장 ①,②공동개발권장	142 - 34, - 36 공동개발권장	• 동일소유(소유권변동)
		142 - 34대	453.9			
		142 - 36대	25.5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	142 - 35대	170.1			
		142 - 37대	429.1			
		142 - 52대	170.1			
	723.8	142 - 39대	361.4	공동개발지정	좌동	• 공동개발 완료 및 동일소유
		142 - 40대	362.4			
	-	142 - 41대	266.5	공동개발지정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 소유권 변동
		142 - 44대	250.5			
	-	142 - 49대	129.4	공동개발권장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142 - 50대	156.1			
		142 - 51도	40.0			
H	-	142 - 1대	382.8	①142 - 2,59,60 공동개발지정 ②142 - 1,3 공동개발권장 ①,②공동개발권장	-	• 지정 해제 - ① : 자율적 공동개발 완료(142 - 59, 142 - 60) • 권장 해제 - ①, ②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142 - 2대	172.9			
		142 - 3대	198.1			
	365.1	142 - 59대	172.8		공동개발지정	• 공동개발 완료
		142 - 60대	192.3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	142 - 11대	167.0	공동개발권장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142 - 57대	166.9			
	-	142 - 16대	169.7	공동개발권장	-	• 과도한 공동개발 최소화
		142 - 48대	169.8			
	406.3	142 - 20대	206.4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 공동개발 완료 및 동일소유
		142 - 56대	199.9			
J	771.2	145 - 20대	450.2	-	공동개발권장	• 세장형 필지
		145 - 21대	321.0			
K	644.5	145 - 1대	258.5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자
		145 - 13대	386.0			
	556.0	145 - 12대	409.6	-	공동개발권장	• 동일소유자
		145 - 36대	146.4			
L	255.8	146 - 6	139.1	-	공동개발권장	• 세장형 필지
		146 - 7	116.7			
	227.5	146 - 8대	82.6	-	공동개발지정	• 공동개발 완료 및 동일소유
		146 - 96대	144.9			
L	208.6	146 - 29대	87.6	-	공동개발지정	• 공동개발 완료 및 동일소유
		146 - 30대	121.0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322.3		146 - 34대	5.3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자
		146 - 36대	317.0			
249.3		146 - 48대	116.7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자
		146 - 51대	132.6			
409.9		146 - 80대	187.6	-	공동개발지정	• 공동개발 완료
		146 - 90대	222.3			
1,333.2		146 - 84대	410.2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자
		146 - 85대	923.0			
358.1		146 - 92대	225.5	-	공동개발지정	• 공동개발 완료
		146 - 93대	132.6			
287.4		146 - 94대	159.5	-	공동개발지정	• 공동개발 완료 및 동일소유
		146 - 95대	127.9			

※ 공동개발(권장, 지정) 완료 필지 합필시 공동개발 해제

2.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 불허용도(기정)

구 분	전층 불허용도	저층부 불허용도	비 고
공통적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의류관련제조업소 제외),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장의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유사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A 일반상업지역 간선변 (남부순환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B 일반상업지역 디지털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구 분	전층 불허용도	저층부 불허용도	비 고
C 일반상업지역 내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D 일반상업지역 가산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E 준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게임제공업소, 안마시설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 관련법령(용도지역, 미관지구,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인 경우에도 불허용도는 건축 할 수 없음

※ 저층부 : 지상 1~2층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행성게임물(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을 모두 포함하며, 바닥면적 1,000㎡미만의 시설도 불허함

※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 준주거지역(E)에서 전면도로가 6m 이하인 이면부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불허 제외

■ 불허용도(변경)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불허 A (일반상업지역)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유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료류 판매소 제외) - 단, 주유소에 한하여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또는 권장용도 복합시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저층부(1~2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일반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불허 B (준주거지역)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1. 권장용도가 용적률의 10%이상인 주거복합건물 2.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사회주택 및 서울형 공동체 인증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일반게임제공업소,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료류 판매소 제외) - 단, 주유소에 한하여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또는 권장용도 복합시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저층부(1~2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불허 C (준공업지역)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 권장용도가 용적률의 10%이상인 주거복합건물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사회주택 및 서울형 공동체 인증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일반게임제공업소,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로류 판매소 제외) - 단, 주유소에 한하여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또는 권장용도 복합시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저층부(1~2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신규 편입 지역
불허 D (2종일반주거 지역)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로류 판매소 제외) - 단, 주유소에 한하여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또는 권장용도 복합시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저층부(1~2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신규 편입 지역

※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인 경우에도 불허용도는 건축 할수 없음

※ 준공업지 내 공동주택 건축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따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형성게임물(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을 모두 포함하며, 바닥면적 1,000㎡미만의 시설도 불허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소와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91249)성인오락실, (91221)성인용 게임장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47859)중 성인용품 소매' 에 해당하는 업종을 모두 포함

※ 구역 내 신축/용도변경 등 허가·신고 발생 시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50조(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을 따름

■ 불허용도(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불허용도	• 용도지역별 통합 불허용도 계획 수립 • 생활패턴 변화 및 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유연한 계획 수립 • 기존 불허용도(주유소, 단독주택 등)는 권장용도와 복합개발시 조건부 완화 계획 •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위락업종 신규 지정	-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 권장용도(기정)

구 분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 권장용도	비고
공통적용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점	-
1 일반상업지역 간선변 (남부순환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2 일반상업지역 디지털로변 (패션로대오거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상기 패션관련용도라 함은 의류 및 패션잡화(구두, 악세서리 등)의 대어 또는 판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패션 가로
3 일반상업지역 내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4 일반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구 분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 권장용도	비고
가산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5 준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 및 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에 한함),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함)	-

※ 전층권장용도 : 저층부(1~2층)를 제외한 구간에 한해 적용,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2층 구간

※ 관광숙박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시설을 말하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한용적을 적용시 권장용도 도입을 통한 허용용적을 인센티브 미적용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른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을 완화 중복적용 불가

■ 권장용도(변경)

구 분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1~2층) 권장용도	비고
1 일반 상업 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요양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공공주택특별법」의 공공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중 소매점, 전기충전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서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게임제공업소 제외)	-
2 준 주거 / 준 공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요양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타 골프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공공주택특별법」의 공공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공연장, 주민체육활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중 소매점, 전기충전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서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게임제공업소 제외)	-

구 분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1층) 권장용도	비고
3 일반 주거 지역	일반	-	[남부순환로, 가산로, 남부순환로 108길 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중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서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게임제공업소 제외)	1층 권장

※ 전층권장용도 : 저층부(1~2층)를 제외한 구간에 한해 적용

※ 저층부권장용도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2층 구간에 한해 적용. 단, 일반주거지역은 1층 구간에 한해 적용함

■ 권장용도(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권장용도	- 공간유형별 계획방향에 따라 권장용도 재정비 - 계획목적 달성을 위한 권장용도를 전락용도와 일반용도로 세분화하여 전락유치시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차등화 - 생활가로변 활성화를 위한 신규 편입구역의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계획	-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이하	60%이하	-
준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신규편입지역
준공업지역	-	60%이하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나.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1) 용적률 결정조서(변경)

구분	종전	변경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준공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400%이하	660%이하	800%이하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250%이하	40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허용용적률 $X(1+1.3X\text{가중치}X\alpha)$ 이내
 * 가중치 =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4.03.14.) 적용

※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도입시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적용

※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에 따른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7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도시 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2014.02.03」을 준용한다.

구분	종전	변경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 고
변경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00%이하	66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준공업→일반상업 (' 98.03.20. 변경)
		준주거지역	250%이하	40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준공업→준주거 (' 98.03.20. 변경)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일반주거→준주거 (' 98.03.20.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신규편입지역
	준공업지역		400%이하	40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도입시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적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는 사항 (서울시 고시 제2019-312호(19.9.19)))

· 일반상업지역(준공업→일반상업) :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함 ([별표3]의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함)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

※ 단,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 포함)의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4항 적용

2) 용적률 적용기준

①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

■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기준

구 분	적용기준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을 용적률의 10%이상으로 하고 지상층에 설치토록 계획함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 단,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를 감안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 가능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구 분	적용기준
준주거지역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 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종전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 (단, 비주거용도 비율에 대해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내용을 준수한다.)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을 적용하되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의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서울시 고시 제2019-313호(19.9.19))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름

②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

■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

구 분	적용기준
상업지역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을 용적률의 20%이상으로 하고 10%이상 지상층에 설치토록 계획함

※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적용

※ 단,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를 감안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주거 용도를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으로 적용 가능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용적률계획(변경)

①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용적률계획(기정)

구 분	적용기준
상업지역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준공업→일반상업) :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함 ([별표3]의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함)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름

②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용적률계획(변경)

구 분	적용기준
상업지역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준공업→일반상업) :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0%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함 ([별표3]의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9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함) -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시 상한용적률 중 주거용 용적은 다음의 산식 이하로 적용함 *상한용적률 증가량 X (**주거용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용적률 증가량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주거용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구 분	적용기준
상업지역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600%이하로 함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주거부문 용적률 (일반상업 600% 이하) / 상업지역 용적률) X 허용용적률 -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라 증가되는 면적 중 임대주택 확보 면적' 을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서울시 고시 제2019-312호(19.9.19))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상한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상한 용적률	공공시설 제공시	- 허용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건축물)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부지 (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면적(기존 건축 기부채납시) $= \text{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 \times \frac{\text{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text{용적률을 완화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cdot \text{환산 부지면적(㎡)} = \frac{\text{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구 분	완화 조건	세부계획기준
상한 용적률	공개공지 설치시 (준공업 지역)	• 법정 공개공지 조성면적 이상 설치 시 계획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조건 충족' 시 (보행환경개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가능 ※ 공개공지를 통한 상한용적률은 높이완화와 중복 적용 불가 • 허용용적률 $\times [1 + \{(공개공지 설치면적 - 의무 설치면적) / 대지면적\}]$ 이내 (허용용적률의 1.2배 이내로 함) ■ 이행조건 (위치 : 가산동 144-4) 1. 공개공지 설치(법적 공개공지 조성면적 이상) 시 가산동 144-2번지 내 조성예정인 공원과 연계되는 썸지형 공지로 조성 2.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 의무사항) 전면공지를 보도확장형 전면공지(보도포장과 동일한 패턴으로 단차없이 조성하는 것에 한함)로 설치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 준공업지역 가산동 144-4번지 내 공개공지 설치 시 144-2번지 내 조성 예정인 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144-4번지 개발 시 가산생활문화 센터(144-1)를 건축물 기부채납(이전 복합 개발)할 것을 권장함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기준

①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기정)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계획유도 인센티브와 친환경 인센티브로 구성함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체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친환경 계획 준수시 (30% 이상)	유도 및 규제항목 준수시 (70% 이내)	공공시설등 제공 시 등

2. 친환경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며,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 불가함

3.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음

- 획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공동개발 지정, 최고높이계획,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 10%/70%/150%의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구 분		내용	비 고
혼합형		·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변경된 지역으로서 허용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차이가 200% 이상인 경우에 적용 · 획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 (공동개발 지정, 최고높이계획,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 150%의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조례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인센티브 부여 · 적용기준 : 기준용적률+기본용적률 인센티브+$\sum$(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제외) $\leq$ 허용용적률	-
기본형	공통 사항	· 허용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차이가 200% 미만인 경우에 적용 · 기본형 a, 기본형 b로 구분 적용 · 적용기준 : 기준용적률+기본용적률 인센티브+$\sum$(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제외) $\leq$ 허용용적률	-
	a	· 획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 (공동개발 지정, 최고높이계획,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 10%의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
	b	· 획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 (공동개발 지정, 최고높이계획,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 70%의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

구 분		용적률(%)		인센티브량(%)			유형
종전	변경	기준	허용	소계	계획유도 (70%)	친환경 (30%)	
준공업 지역	일반 상업지역	400%	660%	260%	182% (기본150%)	78%	혼합형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360%	60%	42% (기본10%)	18%	기본형a
준공업 지역	준주거지역	250%	400%	150%	105% (기본70%)	45%	기본형b

■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변경)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계획유도 인센티브와 중점 인센티브로 구성함

- 1) 중점 인센티브 :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계획항목으로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의 100분의 30이상으로 계획
- 2) 계획유도 인센티브 :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 유도가 필요한 항목으로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 이내로 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체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중점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계획유도 항목 이행 시 (70% 이내)	중점 계획항목 이행 시 (30% 이상)	공공시설등 제공 시 등

2. 중점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며,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 불가함
3.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용적률(%)		인센티브량(%)			유형	계획목표
종전	변경	기준	허용	소계	계획유도 (70%)	중점 (30%)		
준공업 지역	일반 상업지역	400%	660%	260%	182%	78%	유형A	G밸리 산업지원기능 강화 및 적정개발 유도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360%	60%	42%	18%	유형B	주변 배후지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
준공업 지역	준주거지역	250%	400%	150%	105%	45%	유형C	
준공업지역		400%	4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00%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②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용적률 인센티브(기정) - 혼합형 (가구번호 : A, B, C, D)

항목			내용	완화기준	비 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공동개발(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a	• n=2 → a=0.1, n=3 → a=0.15, n=4이상 → a=0.2 (n=확지내 필지수)
		자율적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 0.3a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1	• 공개공지 : 최소면적 45㎡ • 쌈지형 공지 : 최소면적 25㎡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연면적) × 0.2	• 20% 이상 설치시 (관광숙박시설, 주차장 제외)
			저층부권장	기준용적률 × (저층부권장용도면적 / 저층부연면적) × 0.2	• 저층부(1~2층)의 각 층별 5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관광숙박 시설	허용용적률 × (관광숙박시설연면적 / 전체연면적) × 0.2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적용시 제외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연면적) × 1	• 공원장, 도서관, 보육시설 등 도시계획 위원회(자치구포함)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친환경 (30% 이상)	환경 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 x 0.12	
			2등급	기준용적률 x 0.08	
			3등급	기준용적률 x 0.04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 x 0.08	
			2등급	기준용적률 x 0.06	
			3등급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1등급	기준용적률 x 0.12	
			2등급	기준용적률 x 0.10	
			3등급	기준용적률 x 0.08	
	중수도 시설 설치	중수도 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7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 설치
	옥상녹화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5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자연지반 보존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3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항목			내용	완화기준	비 고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5	• 지하구조물 미 설치시
			최고높이계획	기준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주) 1. 용적률 산출: 기준용적률+기본용적률 인센티브+ $\sum$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허용용적률
 - 단,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을 따름
 2.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란, 대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공동개발 지정, 최고높이계획,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150%를 말함. 계획된 기본항목이 3가지 이하일 경우에도 당해 대지에 계획된 기본항목을 모두 준수할 경우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조례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단, 당초 계획된 공동개발 지정이 권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2)를 준수하며,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인센티브 부여함
 4. 권장용도중 전층권장은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 합의 20%이상인 경우(관광숙박시설 및 주차장 제외), 저층부권장은 1-2층 바닥면적 합의 50%이상시에만 인정(면적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
 5.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에 적용될 경우 중복하여 인센티브를 적용치 않음
 6.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 시 제외함
 7.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30%는 친환경인센티브의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불가함
 - 단, 소규모 건축물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최소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가능 (소규모 건축물 : 대지면적 500㎡이하)
 8.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르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대상을 준수하여야 함
 9.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 용적률 인센티브(변경) - 유형A(일반상업지역) (가구번호 : A, B, C, D)

항목			내용	완화기준	비 고
중점 계획 항목 (78%이 상)	공동 개발	지정, 권장, 자율적 (단일필지라도 적정규모 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	준수시	기준용적률 x α	• α : 면적 가중치 적용 - 150~300㎡ 미만 : $\alpha = 0.05$ - 300~500㎡ 미만 : $\alpha = 0.08$ - 500~1,000㎡ 미만 : $\alpha = 0.1$ - 1,000㎡ 이상 : $\alpha = 0.12$ [A, B가구 내 1,000㎡ 이상 개발 시] - 1,000~2,000㎡ 미만 : $\alpha = 0.12$ - 2,000~3,000㎡ 미만 : $\alpha = 0.5$ - 3,000㎡ 이상 : $\alpha = 0.55$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면적 / 연면적) x α	• α : 권장용도 특성별 가중치 - 전략용도 : $\alpha = 0.8$ - 기타용도 : $\alpha = 0.6$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저층부권장	기준용적률 x (저층부권장용도면적 / 저층부연면적) x 0.15	• 저층부의 각 층별 50% 이상 설치시
계획 유도 항목 (182%이 내)	대지내공 지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4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조성시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 / 대지면적) x 1.2	
	친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1	• 전체 주차면수의 5%이상 충전시설 설치 시 (의무 설치기준 초과 설치 시)

내 용				완화기준	비 고
항목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09	• 법정 조정 산업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 까지만 허용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3	• 공연장, 도서관, 보육시설 등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용적률 인센티브(기정) - 기본형a (가구번호 : G, H)

- 허용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의 차이가 200%미만인 경우에 적용
- 필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공동개발(지정), 최고높이계획, 건축·벽면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 기본형a는 10%의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적용 (300% / 360%)

내 용				완화기준	비 고
항목					
계획유도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공동개발(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a	• n=2 → a=0.2, n=3 → a=0.25, n=4이상 → a=0.3 (n=획지내 필지수)
		자율적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 0.3a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대지면적} × 1	• 공개공지 : 최소면적 45㎡ • 쌈지형 공지 : 최소면적 25㎡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계획유도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연면적) × 0.3	• 20% 이상 설치시 (관광숙박시설, 주차장 제외)
			저층부권장	기준용적률 × (저층부권장용도면적 / 저층부연면적) × 0.3	• 저층부(1~2층)의 각 층별 50%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관광숙박 시설	허용용적률 × (관광숙박시설연면적 / 전체연면적) × 0.2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적용시 제외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연면적) × 1	• 공연장, 도서관, 보육시설 등 도시계획위원회 (자치구포함)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친환경 (30% 이상)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 × 0.12	
			2등급	기준용적률 × 0.08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2등급	기준용적률 × 0.06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1등급	기준용적률 × 0.12	
			2등급	기준용적률 × 0.10	
			3등급	기준용적률 × 0.08	
			4등급	기준용적률 × 0.06	
			5등급	기준용적률 × 0.04	

항목		내용	완화기준	비고
	중수도 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5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 설치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5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5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 설치시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6	
최고높이계획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주) 1. 용적률 산출: $\text{기준용적률} + \text{기본용적률 인센티브} + \sum(\text{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text{허용용적률}$
 - 단,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을 따름
2.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란, 대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공동개발 지정, 최고높이계획,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70%를 말함. 계획된 기본항목이 3가지 이하일 경우에도 당해 대지에 계획된 기본항목을 모두 준수할 경우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조례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단, 당초 계획된 공동개발 지정이 권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2)를 준수하며,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인센티브 부여함
4. 권장용도 중 전층권장은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축전체 바닥면적 합의 20%이상인 경우(관광숙박시설 및 주차장 제외), 저층부권장은 1~2층 바닥면적 합의 50%이상시에만 인정(면적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5.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에 적용될 경우 중복하여 인센티브를 적용치 않음
6.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 시 제외함
7.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30%는 친환경인센티브의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불가함
 - 단, 소규모 건축물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최소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가능 (소규모 건축물 : 대지면적 500㎡이하)
8.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르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대상을 준수하여야 함
9.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 용적률 인센티브(변경) - 유형B(일반주거→준주거) (가구번호 : G, H)

항목		내용	완화기준	비고
중점 계획 항목 (18%이 상)	공동 개발	지정, 권장, 자율적 (단일필지라도 적정규모 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	준수시	$\text{기준용적률} \times \alpha$ α : 면적 가중치 적용 150~300㎡ 미만 : $\alpha = 0.01$ 300~500㎡ 미만 : $\alpha = 0.02$ 500~1,000㎡ 미만 : $\alpha = 0.03$ 1,000㎡ 이상 : $\alpha = 0.04$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alpha$ α : 권장용도 특성별 가중치 - 전략용도 : $\alpha = 0.3$ - 기타용도 : $\alpha = 0.2$
			저층부권장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저층부권장용도면적} / \text{저층부연면적}) \times 0.04$ 저층부의 각 층별 50% 이상 설치시
계획 유도 항목	대지내공 지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1.6$

항목		내용		완화기준	비 고
(42%이 내)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조성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친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3	전체 주차면수의 5%이상 충전시설 설치 시 (의무 설치기준 초과 설치 시)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03	- 법정 조경 산입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 까지만 허용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준수시	기준용적률×0.03	필로티구간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의 40% 이상인 형태

■ 용적률 인센티브(기정) - 기본형b (가구번호 : E, F)

- 허용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의 차이가 200%미만인 경우에 적용
- 필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공동개발(지정), 최고높이계획, 건축·벽면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
기본형b는 70%의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적용 (250% / 400%)

항목			내용	완화기준	비 고
계획유도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공동개발(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a	• $n=2 \rightarrow a=0.2$, $n=3 \rightarrow a=0.25$, $n=4$이상 $\rightarrow a=0.3$ (n=획지내 필지수)
		자율적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 0.3a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1	• 공개공지 : 최소면적 45㎡ • 쌈지형 공지 : 최소면적 25㎡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연면적) × 0.3	• 20% 이상 설치시 (관광숙박시설, 주차장 제외)
			저층부권장	기준용적률 × (저층부권장용도면적 / 저층부연면적) × 0.3	• 저층부(1~2층)의 각 층별 5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관광숙박 시설	허용용적률 × (관광숙박시설연면적 / 전체연면적) × 0.2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적용시 제외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연면적) × 1	• 공원장, 도서관, 보육시설 등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포함)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친환경 (30% 이상)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 × 0.12	
			2등급	기준용적률 × 0.08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2등급	기준용적률 × 0.06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1등급	기준용적률 × 0.12	
			2등급	기준용적률 × 0.10	
			3등급	기준용적률 × 0.08	
			4등급	기준용적률 × 0.06	
			5등급	기준용적률 × 0.04	
		중수도 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 설치

항목			내용	완화기준	비 고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5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5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 설치시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6	
	최고높이계획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주) 1. 용적률 산출: 기준용적률+기본용적률 인센티브+Σ(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단, 관광숙박시설 도입시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을 따름
2.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란 대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공동개발 지정, 최고높이계획,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70%를 말함. 계획된 기본항목이 3가지 이하일 경우에도 당해 대지에 계획된 기본항목을 모두 준수할 경우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조례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단, 당초 계획된 공동개발 지정이 권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2)를 준수하며,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인센티브 부여함
4. 권장용도 중 전층권장은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 합의 20%이상인 경우(관광숙박시설 및 주차장 제외), 저층부권장은 1-2층 바닥면적 합의 50%이상시에만 인정(면적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5.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에 적용될 경우 중복하여 인센티브를 적용치 않음
6.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 시 제외함
7.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30%는 친환경인센티브의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불가함
 - 단, 소규모 건축물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최소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가능 (소규모 건축물 : 대지면적 500㎡이하)
8.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르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대상을 준수하여야 함
9.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 용적률 인센티브(변경) - 유형C(준공업→준주거) (가구번호 : E, F)

항목			내용	완화기준	비 고
중점 계획 항목 (54%이 상)	공동 개발	지정, 권장, 자율적 (단일필지라도 적정규모 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	준수시	기준용적률 x α	• α : 면적 가중치 적용 - 150~300㎡ 미만 : α = 0.02 - 300~500㎡ 미만 : α = 0.05 - 500~1,000㎡ 미만 : α = 0.08 - 1,000㎡ 이상 : α = 0.1 [E가구 내 1,000㎡ 이상 개발 시] - 1,000~2,000㎡ 미만 : α = 0.1 - 2,000~3,000㎡ 미만 : α = 0.3 - 3,000㎡ 이상 : α = 0.5
					• α : 권장용도 특성별 가중치 - 전락용도 : α = 1 - 기타용도 : α = 0.75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면적 / 연면적) x α	
			저층부권장	기준용적률 x (저층부권장용도면적 / 저층부연면적) x 0.1	• 저층부의 각 층별 50% 이상 설치시
계획 유도 항목 (126%이 상)	대지내공 지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4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조성시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 / 대지면적) x 1.8	

항목		내용		완화기준	비 고
내)	친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7$	전체 주차면수의 5%이상 충전시설 설치 시 (의무 설치기준 초과 설치 시)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대지면적) $\times 0.06$	- 법정 조경 산입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 까지만 허용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	필로티공간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의 40% 이상인 형태

다.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높이(기정)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기준높이	공동개발시		
일반상업지역	A	남부순환로변	80m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H\leq 1.5D$)을 적용하지 않음	
	B	디지털로변	50m	60m		
		10m, 8m 도로변	40m			
		4m 도로변	30m			
		C	디지털로변	50m		60m
	가산로변		50m			
	8m, 4m 도로변		30m			
	D	남부순환로변	70m			
	준주거지역	E	10m 도로변	30m		40m
			8m, 4m 도로변	20m		30m
F		가산로변	50m			
		10m 도로변	30m	40m		
		8m, 4m 도로변	20m	30m		
G		가산로변	50m			
		10m 도로변	30m	40m		
		8m, 4m 도로변	20m	30m		
H		남부순환로변	60m			
		10m 도로변	30m	40m		
		8m, 4m 도로변	20m	30m		

- ※ 건축물의 최고높이한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높이를 따르며,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함
 ※ 일반상업지역의 디지털로변은 공동개발(지정·권장)을 모두 이행시 높이완화(자율적공동개발 제외)
 ※ 준주거지역내 폭 10m 이하의 전면도로변은 공동개발시 최고높이 별도 적용(블록별 평균높이 고려)
 ※ 준주거지역내 공동개발시 최고높이 적용은(공동개발지정, 권장, 자율적공동개발) 모두 적용함

■ 높이(변경)

구분			변경		비고	완화항목
			최고높이	완화높이		
남부 순환로변	일반 상업	디지털로 인접가구	80	90	-	기부채납 등
		가산로 인접가구	70	80	-	
	준주거		60	70	-	-
	2종일반주거		40	-	신규편입	
디지털로변	일반상업		60	70	-	기부채납 등에 따른 완화높이 적용
가산로변	일반 상업	가산로 남측	50	60	-	
		가산로 북측	50	60	공동개발 여건반영	
	준주거		50	60	-	
	준공업		50	60	신규편입	공개공지 설치 등
	2종일반주거		20	30	신규편입	권장용도 조성 등
생활서비스 특화가로 (남부순환로108길, 가산로9길변)	준주거		401)(50)	501)(60)	G밸리연계가로 기능 강화	전면공지 조성 등
	준공업		50	60	신규편입	공개공지 설치 등
	2종일반주거		20	30	신규편입	전면공지 조성 등
이면부	일반 상업	디지털로12길변	402)(50)	502)(60)	고밀개발유도	기부채납 등에 따른 완화높이 적용
		이면부	40	50	-	
	준주거	디지털로12길변	302)(40)	402)(50)	고밀개발유도	
		이면부	30	40	-	
	2종일반주거		20	-	신규편입	-

※ 건축물의 최고높이한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높이를 따르며,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함

※ 1) 준주거지역(G, H 가구) 내 생활서비스특화가로(남부순환로108길)에 접하는 필지는 이면부 필지와 650㎡ 이상 공동개발시 최고(완화)높이 각 10m 완화

※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와 연결한 B, E가구 내 디지털로12길에 면하는 필지는 4m 이하 도로(디지털로, 가산로9길)에 접한 이면부 필지를 포함하여 1,000㎡ 이상 공동개발 시 최고(완화)높이 10m 완화

※ 2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입 시 별도기준 적용

■ 높이(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사유	비고
높이	- 최고높이/완화높이 체계로 높이체계 재정비 - 기부채납 및 계획적 개발 시 최고높이 10m 완화 적용 - 이면부 불합리한 높이계획 조정 - 생활서비스특화가로 육성과 G밸리 연접부 규모있는 개발 유도를 위한 높이 완화계획 수립	-

■ 높이 완화(기정)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기준높이	공동개발시		
일반상업지역	B	공동개발권장	140 - 28대	50m	60m	• 가산지구의 관문지역으로 지역이미지 및 보행환경 개선 • 해당 공동개발(지정· 권장)을 모두 이행시 최고높이 완화	
			140 - 29대	50m			
			140 - 30대	50m			
	C	공동개발권장	140 - 1대	50m	60m		
			140 - 2대, 140 - 3대	50m			
			140 - 24대	50m			
			140 - 25대	50m			
			140 - 26대	50m			
준주거지역	E	공동개발권장	143 - 15대	30m	40m	• 공동개발권장 목적 -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및 적정개발규모 유도 • 공동개발 미준수시 점도조건에 따른 높이처등 적용	
			143 - 57대	20m			
	F	공동개발지정	143 - 2대, 143 - 10대	30m	50m		
		공동개발권장	143 - 1대	50m			
	H	공동개발권장	142 - 1대	60m	60m		• 공동개발권장 목적 - 맹지형 토지를 해소하고 필지의 형태를 고려한 정형화 유도 - 공개공지 개설 유도 • 공동개발 미준수시 점도조건에 따른 높이처등 적용
			142 - 2대, 142 - 59대, 142 - 60대	40m			
142 - 3대			30m				
공동개발권장		142 - 1대	60m	60m			
		142 - 3대	30m				

※ 공동개발 전체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하는 대지에 계획된 최고높이 규정을 적용

■ 높이 완화(변경)

구 분	항목	산정식	비 고
일반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최고높이 x (제공면적/대지면적)	• 최고 10m 완화
	권장(전략)용도	전략용도 20% 이상 설치시	• 최고 5m 완화
	적정개발	대지면적 500㎡ 이상 개발시	• 최고 5m 완화
		대지면적 1,000㎡ 이상 개발시	• 최고 10m 완화
		이면부 필지와 650㎡ 이상 개발시	• 최고 10m 완화 - 준주거지역(G,H가구) 내 생활서비스 특화가로(남부순환로108길)에 접하는 필지에 한함
		4m이하 도로(디지털로, 가산로9길)에 접한 이면부 필지를 포함하여 1,000㎡ 이상 개발시	• 최고 10m 완화 - 준주거지역(B,E가구)에 한함
	전면공지	기준높이 x (설치면적/대지면적)	• 일반상업, 준주거 이면부 4m 미만 도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1.5m 이상 확보시
	공개공지	최고높이 x [(설치면적 - 의무면적)/대지면적]	• 준공업지역만 해당
일반주거지역 (가로변)	권장용도	최고높이 x (권장용도면적/전용면적) x α	• 최고 10m 완화 • 저층부 연면적의 50%이상 권장용도 개발 • α = 0.85
	전면공지	기준높이 x (설치면적/대지면적)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가산로, 남부순환로108길 2m)
	섬지형공지	최고높이 x (설치면적/대지면적) x α	• 최고 10m 완화 • 최소 25㎡ 이상 개발 • α = 5

※ 공동개발 전체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하는 대지에 계획된 최고높이 규정을 적용

■ 높이 완화(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높이완화	- 일반상업 및 준주거, 준공업지역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권장용도, 공동개발 준수 시 최고 10m 높이 완화 - 단,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법정 면적 이상 조성 시 높이 완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적용 불가) - 일반주거지역(생활가로변)은 가로활성화 관련 계획(권장용도·섬지형 공지) 준수 시 최고 10m 높이 완화	-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의 배치(기정)

구 분	적용목표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협소도로(4m이하) 폭의 확보(이면블록 주변)	이면블록 내 4m이하 도로	1m	-
	도로에서 개방감 및 보행공간 확보	8m~10m 도로변	1m	-
	보행동선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	가산로변	2m	-
		디지털로변	1m	-
	남부순환로 가로위계 및 협소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확보	남부순환로변	3m	-
벽면한계선	블록내 동선체계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한 보차혼용도로변의 조성	보차혼용도로 변	2m	-
벽면한계선 (고층부)	블록내 동선체계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한 보차혼용도로변의 조성	보차혼용도로 변	2m	-
벽면한계선 (저층부)	블록내 동선체계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차혼용도로변의 조성	보차혼용도로 변	4m	-
	필지규모를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최소화 및 부족한 보행공간 확보	디지털로변	3m	-

■ 건축물의 배치(변경)

구 분	적용목표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협소도로(4m이하) 폭의 확보(이면블록 주변)	이면블록 내 4m이하 도로	상업 및 준주거	1.5m 건축한계선 추가 확보시 높이 완화 적용
			2종일반주거	1m -
	도로에서 개방감 및 보행공간 확보	8m~10m 도로변	1m	-
	보행동선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	가산로, 디지털로 11·12길 변	2m	-
		특화가로변 (가산로9길~남부순환로108길)	2m	-
		디지털로변	3m	-
	남부순환로 가로위계 및 협소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확보	남부순환로변	3m	-
벽면한계선	블록내 동선체계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한 보차혼용도로변의 조성	보차혼용도로 변	2m	-
벽면한계선 (고층부)	블록내 동선체계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한 보차혼용도로변의 조성	보차혼용도로 변	2m	-
벽면한계선 (저층부)	블록내 동선체계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차혼용도로변의 조성	보차혼용도로 변	4m	-

■ 건축물의 배치(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건축물 배치	- 경관 등 지역 이미지를 고려한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조성 - 남부순환로108길, 가산로9길 보행연속성 확보와 특화가로 조성을 위하여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을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 상업·준주거지역 이면부 4m미만 도로 내 실효성 있는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1m→1.5m 추가 확보	-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 형태 및 외관	1층 형태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 1층 개구부 높이는 인접건축과 조화유도 • 미관지구 및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금지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셔터의 경우 투시형 셔터 사용	
	설치시설 관련	• 폭 20m이상 도로인접 건축물 건축설비 도로변 노출 금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용	
	측벽 이격공지 차폐	• 폭 20m이상 도로에 인접하는 건축물의 측면공지의 경우 조경으로 차폐할 것을 권장하며, 이격거리 3m이상은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간으로 조성을 권장	
	야간조명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에 10층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물에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건축물의 외장		•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는 주변건축물과 조화 • 색채는 인접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 유도 • 일부 벽면에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블록을 페인트 마감노출 금지	
기타 사항	담장 및 옹벽의 처리	• 담장설치는 원칙적 지양, 부득이한 경우 1.2m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 허용 •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개방성 확보 유도 - 도로변 설치시 : 전면부 벽면녹화 권장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공통사항(전 구역)

구 분		계획내용	규제	권장	비 고
형태	일반사항	• 한옥 형태를 모사하거나 지나치게 토속적 디자인(통나무, 황토벽 등), 이국적인 디자인의 건축형태 금지	○		
	지붕층 및 옥상부	• 단순 박스형 슬라브 지붕 지양 • 옥상 및 지붕 상부에 급수시설(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설치 권장		○	
	개구부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		
		• 1층 개구부 높이는 인접건축과 조화유도 •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가로변에 접한 부분에 대해 차량주차를 위한 피로티 구조 설치 지양		○	
	저층부 개방형 입면조성	•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셔터 설치 시 50% 이상 개방된 투시형 셔터로 설치. 다만,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입면분할	• 수평분할 요소(사인존/차양존/원도우존)별 높이는 인접건축물과 유사하게 설치 권장		○	
	설치시설 관련	• 폭 20m이상 도로인접 건축물 건축설비 도로변 노출 금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용		○	
외관	측벽 이격 공지 차폐	• 폭 20m이상 도로에 인접하는 건축물의 측면공지의 경우 조경으로 차폐할 것을 권장하며, 이격거리 3m이상은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간으로 조성을 권장		○	
	건축물의 외장	•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는 주변건축물과 조화 • 색채는 인접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 유도 • 일부 벽면에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블록을 페인트 마감노출 금지	○		
	색채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계열 사용을 금지	○		
		• 재료의 고유 특성이 살아있는 자연색 또는 지역색 사용 권장 • 외벽면의 색채는 「서울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채도, 저명도 사용 권장		○	
	부착 시설물	• 문패, 주소판, 우편함 등 정면에 노출되는 부착 시설의 경우 주변과 어울리는 재료와 색채 사용을 권장 • 건축물 전면부 건축설비를 도로변에 노출 지양, (노출이 불가피 할 시 가림막 설치)옥상부에 설비설치 가능공간 확보 권장		○	

구 분		계획내용	규제	권장	비 고
	야간조명	•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 • 투시형 벽면설치시 가로변 분위기를 고려하여 내·외부조명 설치를 권장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리는 부드러운 빛 연출 권장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준수 권장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서울좋은간판」 준수 권장 • 자연소재 중심의 재료와 재활용을 염두에 둔 재료 사용을 권장 • 입체형 간판 설치 권장 • 주변과 조화로운 재료 및 색채로 설치 권장 • 통합간판 설치 권장		○	
기타 사항	담장 및 옹벽의 처리	• 담장설치는 원칙적 지양(설치시 녹화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 옹벽 및 석축 등 조성 지양(설치시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개방성 확보 유도) - 도로변 설치시 : 전면부 벽면녹화 권장		○	
	자연지반 보존	•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 투수성재료 등으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	
	벽면녹화	• 건축물의 벽면, 담장,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면에 대해 덩굴성 식물(지피식물, 초화류)위주의 벽면녹화 권장 • 벽면녹화 조성은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기법」에 따라 조성 권장		○	
	녹색 주차장	• 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라,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 주차장 설치 권장		○	
	중수도 시스템	•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	
	빗물관리시 설	• 관련 법률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의한 설치 권장		○	
	신재생 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 권장		○	

■ 주요 가로변(남부순환로, 디지털로, 가산로, 남부순환로108길 변)

구 분		계획내용	규제	권장	비 고
형태	일반사항	• 건축물 형태 및 입면을 분절하는 디자인 권장 • 승강기탑 및 계단탑 등은 전면도로에서 이격하여 배치 권장		○	
	저층부 개방형 입면조성	• 상업 및 업무용도의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개구부 없는 벽면의 가로변 노출 금지 • 외벽면 투시형 셔터 설치 시 1/2 이상 개방된 투시형 셔터 사용	○		
	1층부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적 형태의 연도형건축물 및 미관시설(캐노피, 차양막 등) 사용 권장 • 개별점포의 폭원을 20.0m 이내로 할 것 권장 • 수직분절요소를 5.0~10.0m 간격으로 설치할 것 권장 • 건축물의 1층 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남부순환로108길 변에 면한 건축물은 필로티구간을 제외한 1층 바닥 면적이 건축면적의 40% 이상인 형태 권장. 다만, 전면부 필로티 노출을 지양하기 위해 1층부 시설을 전면부에 배치 권장		○	
외관	재료 및 색채	• 건축물의 외벽 골조(조립식, 무피복 골조, 컨테이너 등) 노출 금지 • 남부순환로108길변에 면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저층부 및 전면부에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반사, 발광소재 사용 금지	○		
		• 재료 및 색채 외벽3면 이상 통일성 유지 권장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대형광고물(옥외전광판, 옥상간판) 설치금지		○	
기타 사항	담장 및 옹벽	• 담장 및 축대, 옹벽의 설치 금지	○		
	야간 경관조명	• 남부순환로, 디지털로, 가산로변에 면한 10층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증·개축 시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남부순환로108길변에 면한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		○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전면 공지	보도형 전면공지	•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 • 보도기능을 담당하도록 조성	-
	차도형 전면공지	•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는 전면공지 • 차도 및 보도기능을 담당하도록 조성	
	조성지침	• 인접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 • 인접필지와 연계하여 연속적으로 배치 및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개발주체가 조성 및 유지관리	
공개공지		•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썸지공원 형태로 조성 •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보도형 공개공지 설치 가능 • 바닥포장 재료와 패턴은 주변과 연속성을 가지도록 계획 • 공개공지의 설치 및 관리※는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서울시 건축 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준수하여 계획	9개소, 위치권장※
썸지형공지		•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에 확보 • 최소폭 4m이상, 최소면적 25㎡이상 • 인접대지의 썸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 보행공간은 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	권장

※ 공개공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관계법령 및 조례(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될 경우 변경된 사항에 따름

※ 공개공지의 위치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전면 공지	보도형 전면공지	•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 • 보도기능을 담당하도록 조성	-
	차도형 전면공지	•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는 전면공지 • 차도 및 보도기능을 담당하도록 조성	-
	조성지침	• 인접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 • 인접필지와 연계하여 연속적으로 배치 및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개발주체가 조성 및 유지관리	-
공개공지		•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썸지공원 형태로 조성 •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보도형 공개공지 설치 가능 • 바닥포장 재료와 패턴은 주변과 연속성을 가지도록 계획 • 공개공지의 설치 및 관리※는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서울시 건축 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준수하여 계획	4개소, 위치권장※
썸지형공지		•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에 확보 • 최소폭 4m이상, 최소면적 25㎡이상 • 인접대지의 썸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 보행공간은 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	8개소, 위치권장※

※ 건축관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모든 공지는 전면공지로 지정

- 연결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차도부속형 또는 보도부속형으로 분리하여 조성지침을 적용하되, 남부순환로, 디지털로, 가산로, 남부순환로108길~가산로9길, 디지털로11길~디지털로12길의 전면공지는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하여야 함

※ 공개공지 : 도로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 설치(위치권장)

※ 썸지형 공지 :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자발적 썸지형 공지 조성 권장

■ 대지내 공지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대지내 공지	• 기존 지구단위계획 내용 최대한 유지 • 토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개공지 권장계획 최소화	-

2. 교통처리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교통처리 등에 관한 결정조서(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활한 차량소통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보행연속성 확보 • 20m 이상 간선변 각각부에 지정 •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단독공동개발을 고려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폐지 • 이면부로의 차량출입 유도	• 남부순환로변 • 디지털로변 • 가산로변
제한적 차량출입 허용구간	• 당해 대지 건축시점에서 건축물 건립시기 차이 등으로 인해 보차혼용도로로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일부구간 설정 • 개별필지 개발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차량출입이 필요한 일부구간에 한하여 설정	• 디지털로변 • 2개소
주차 출입구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대체	• 전구역
보차혼용도로	• 보행, 차량의 원활한 흐름 유도 및 필지 기능상 차량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설정	• 폭 6m 이상 도로 • 1개소

※ 제한적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구간을 따름

- 139-15, 139-14는 보차혼용도로가 조성되어 진입이 가능한 경우 차량출입 불허
- 140-1, 140-25는 연접필지와 공동개발로 이면부, 남부순환로로 차량출입이 가능한 경우 디지털로변에서 차량출입 불허

■ 교통처리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활한 차량소통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보행연속성 확보 • 20m 이상 간선변 내 지정하여 이면부로의 차량출입 유도	• 남부순환로변 • 디지털로변 • 가산로변
제한적 차량출입 허용구간	• 개별필지 개발 등의 사유로 차량출입이 필요한 일부 구간에 한하여 한시적 설정	• 디지털로변(2개소) • 남부순환로(1개소)
주차 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대체	• 전구역
보차혼용도로	• 보행, 차량의 원활한 흐름 유도 및 필지 기능상 차량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설정	• 폭 6m 이상 도로 • 1개소

■ 교통처리 등에 관한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교통처리	• 간선변 및 직접 차량출입을 지양하되 이면부로의 차량출입이 불가한 필지에 한해 차량진출입 허용 체계로 재정비	-

3.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을 따름
- 향후 관련 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준용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 씬지형공지, 전면공지 등)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신설·폐지 포함)의 변경 3. 지정된 차량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4.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 공개공지, 씬지형공지, 보차운용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포함)		
•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 수중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4.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에 대한 사항

- 기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으로 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을 따름
-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내 표기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름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5) 및 금천구 도시계획과 (☎02-2627-2063)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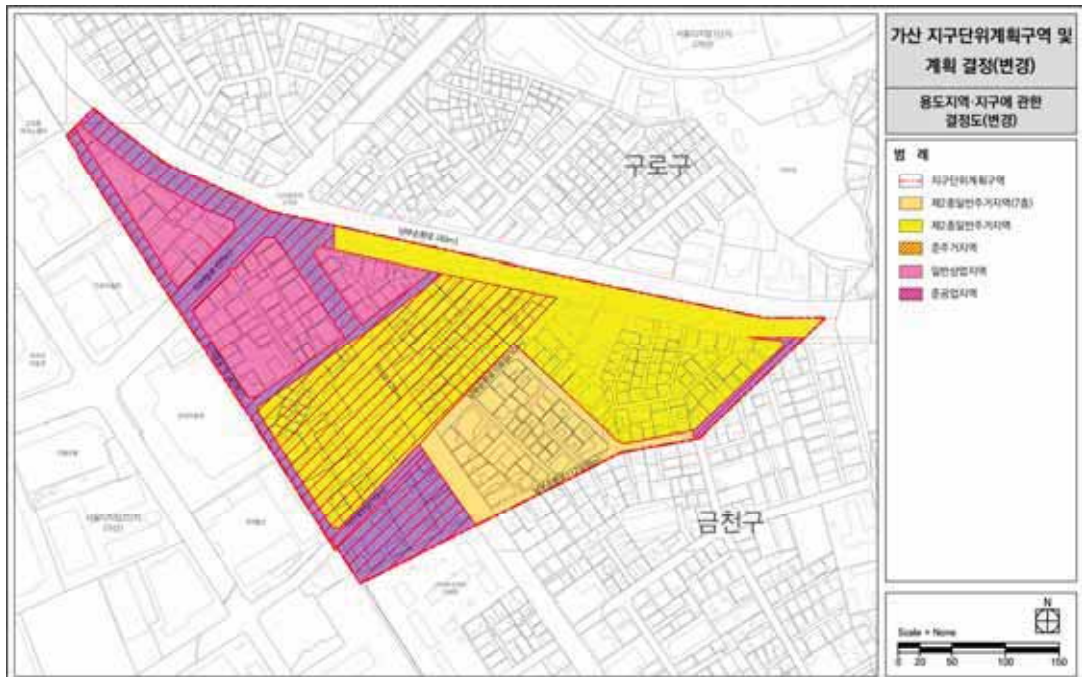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69호

성동구 용답동 230-4 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01호(2021. 12. 23.)로 결정된 성동구 용답동 230-4 청년안심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성동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I.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01호(2021.12.23.)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내용 중 각종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용적률 적용기준 및 계획내용 변경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답십리동 일대 (성동구 용답동 230-4)	523,805 (925.4)	-	523,805 (925.4)	

※ () 내 면적은 사업대상지에 해당하는 면적임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가.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1) 지정용도(변경없음)
 - 2) 불허용도(변경없음)

3) 권장용도(변경없음)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변경)

- 지정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0%이상 (대지면적:1,000㎡기준으로 산정)	① 기본공공기여율 : 202.18㎡ (20.218%) = 41세대	③ 총172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59세대 공공기여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추가공공기여율 : 완화용적률(140.05%)의 50%에 해당 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② 추가공공기여율 : 72.00%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666.35㎡ (72.00%) [완화용적률140.05%의 50% 70.025%] = 18세대			
비주거 비율	• 10%이상20%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비율 : 10.96%(831.40㎡)- 용적률기준			
주택규모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18type(47세대), 36type(12세대) • 민간임대주택 : 18type(93세대), 36type(20세대)			
건축물 형태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이용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5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지상 3~4층에 243.16㎡ 계획 - 용도 : 코인세탁실, 북카페, 피트니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 변경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0%이상 (대지면적:1,000㎡기준으로 산정)	① 기본공공기여율 : 202.59㎡ (20.259%) = 40세대	③ 총169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51세대 공공기여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추가공공기여율 : 완화용적률(134.11%)의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② 추가공공기여율 : 67.06%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638.35㎡ (68.03%) [완화용적률134.11%의 50% 67.06%] = 11세대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비주거 비율	• 10%이상20%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비율 : 10.88%(819.60㎡)-용적률 기준		
주택규모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18type(35세대), 39type(13세대), 55type(3세대) • 민간임대주택 : 18type(104세대), 39type(12세대), 55type(2세대)		
건축물 형태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 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 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이용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50㎡ 이상 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지상 3~4층에 311.21㎡ 계획 - 용도 : 공동세탁실, 북카페, 피트니스		

※ 「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지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변경	• 심의사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반영한 용적률 적용기준 및 계획내용 변경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70호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 - 432호(' 08.12.04.)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 - 14호(' 10.01.21.)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 - 381호(' 11.12.15.), 제2012 - 145호(' 12.06.07.), 제2012 - 269호(' 12.10.11.), 제2013 - 196호(' 13.06.27.), 제2014 - 65호(' 14.02.27.), 제2015 - 89호(' 15.04.02.), 제2015 - 225호(' 15.07.30.), 제2015 - 232호(' 15.08.06.), 제2018 - 253호(' 18.08.09.), 제2019 - 236호(' 19.07.18.), 제2019 - 418호(' 19.12.19.), 제2021 - 716호(2021.12.23.), 제2022 - 444호(2022.11.17.), 제2023 - 161호(' 2023.05.04.)로 변경 결정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 변경없음
-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변경없음
- 3)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62,671.0	-	162,671.0	
촉진 구역	소 계			71,996.4	-	71,996.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합정1구역	합정동 419 - 1 일대	37,309.4	-	37,309.4	사업완료
		합정2구역	합정동 385 - 1 일대	16,297.3	-	16,297.3	사업완료
		합정3구역	합정동 384 - 1 일대	10,544.9	-	10,544.9	사업완료
		합정4구역	합정동 382 - 44 일대	4,957.2	-	4,957.2	사업완료
		합정7구역	합정동 381 - 49 일대	2,887.6	-	2,887.6	
존치 정비	합정5구역		합정동 383 - 14 일대	4,079.8	-	4,079.8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정6구역	합정동 380-23 일대	4,851.1	감) 757.9	4,093.2	
존치 관리	-	-	-	81,743.7	증) 757.9	82,501.6	

주) 상기 면적은 CAD 상 구역면적이며, 측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합정6존치정비구역 일부 해제 (존치관리구역 전환)	합정6존치정비구역 내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른 합정동380-1번지 필지의 단독개발을 위하여 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4)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2,671.0	-	162,671.0	100.0
일반 시설 용지	소계	85,899.7	감) 178.5	85,721.2	52.7
	판매·업무·주거복합	78,615.6	-	78,615.6	48.3
	숙박·문화·주거복합	7,284.1	감) 178.5	7,105.6	4.4
기반 시설 용지	소계	76,771.3	증) 178.5	76,949.8	47.3
	도로	67,509.6	증) 178.5	67,688.1	41.6
	공공청사	979.4	-	979.4	0.6
	공원·녹지	8,282.3	-	8,282.3	5.1

주) 상기 면적은 CAD 상 구역면적이며, 측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토지이용계획 조정	일반시설용지 내 도로 확폭에 따라 일반시설용지 중 숙박·문화·주거복합 용지 면적 감소 및 기반시설용지 중 도로 면적 증가

5)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6)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58	40~50	주간선	6,800 (460)	북아현동 (서교동427)	합정동 (합정동402)	일반 도로	'78.8.2	양화로
기정	대로	2	95	33~39	보조 간선	1,915 (267)	합정동416 - 33	성산동278 - 1 (합정동421)	일반 도로	'66.6.21	월드컵로
기정	대로	3	126	28	보조 간선	2,420 (112)	대흥동 (합정동373 - 32)	합정동373 (합정동373)	일반 도로	'78.3.23	독막로
기정	중로	1	200	20~25	집산 도로	430 (118)	합정동381 - 1 (합정동381 - 1)	합정동378 - 21 (합정동405)	일반 도로	'79.6.30	양화진길
기정	중로	2	8	18	집산 도로	142	합정동419 - 1 (합정동419 - 1)	서교동419 (서교동387 - 1)	일반 도로	'67.4.7	합정 1구역
기정	중로	2	9	18	집산 도로	130	서교동419 (서교동390 - 20)	서교동419 (서교동387 - 1)	일반 도로	'67.4.7	합정 1구역
기정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114	합정동385 - 1	합정동385 - 50	일반 도로	'08.7.24	합정 2구역
기정	중로	2	11	15	집산 도로	114	합정동385 - 20	합정동385 - 104	일반 도로	'08.7.24	합정 2,3구역
기정	중로	2	12	15	집산 도로	232	합정동384 - 78	합정동384 - 50	일반 도로	'08.7.24	합정 2,3구역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65	합정동382 - 14	합정동382 - 1	일반 도로	'08.7.10	합정 4구역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84	합정동382 - 1	합정동382 - 39	일반 도로	'08.7.10	합정 4구역
기정	소로	1	10	10	집산 도로	135	합정동418 - 30	서교동390 - 20	일반 도로	'67.4.7	합정 1구역
기정	소로	1	15	10	국지 도로	106	합정동383 - 1	합정동383 - 24	일반 도로	'08.7.24	합정 3구역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60	합정동382 - 31	합정동382 - 39	일반 도로	'08.7.10	합정 4구역
기정	소로	2	(1)	8 (5)	국지 도로	100	합정동373 - 3	합정동373 - 17	일반 도로	'67.4.7	
기정	-	-	-	(6)	국지 도로	(44)	합정동406 - 4 (합정동380 - 1)	합정동406 - 4 (합정동380 - 20)	-	'67.4.7	
변경	중로	3	(1)	(6~12)	국지 도로	(44)	합정동406 - 4 (합정동380 - 1)	합정동406 - 4 (합정동380 - 20)	일반 도로	'67.4.7	합정동 380 - 1 내 도로확폭 구간

주1) ()는 임시번호 및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사항임

주2) 변경된 중로 3 - (1)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기 조성된 도로의 일부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확폭하는 사항으로 합정동 380 - 1번지 내 확폭되는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1)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6m→6m~12m(증 6m)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 6구역 지침 상 확폭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확폭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사항임

※ 변경전 도로는 서교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 사업완료 신고일(1967.4.7.) 기준으로 일괄 결정되었던 도로로서 도시계획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임

(2) 철도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라)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나.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58	40~50	주간선	6,800 (460)	북아현동 (서교동427)	합정동 (합정동402)	일반 도로	'78.8.2	양화로
기정	대로	2	95	33~39	보조 간선	1,915 (267)	합정동416-33	성산동278-1 (합정동421)	일반 도로	'66.6.21	월드컵로
기정	대로	3	126	28	보조 간선	2,420 (112)	대흥동 (합정동373-32)	합정동373 (합정동373)	일반 도로	'78.3.23	독막로
기정	중로	1	200	20~25	집산 도로	430 (118)	합정동381-1 (합정동381-1)	합정동378-21 (합정동405)	일반 도로	'79.6.30	양화진길
기정	중로	2	8	18	집산 도로	142	합정동419-1 (합정동419-1)	서교동419 (서교동387-1)	일반 도로	'67.4.7	합정 1구역
기정	중로	2	9	18	집산 도로	130	서교동419 (서교동390-20)	서교동419 (서교동387-1)	일반 도로	'67.4.7	합정 1구역
기정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114	합정동385-1	합정동385-50	일반 도로	'08.7.24	합정 2구역
기정	중로	2	11	15	집산 도로	114	합정동385-20	합정동385-104	일반 도로	'08.7.24	합정 2,3구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2	15	집산 도로	232	합정동384-78	합정동384-50	일반 도로	'08.7.24	합정 2,3구역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65	합정동382-14	합정동382-1	일반 도로	'08.7.10	합정 4구역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84	합정동382-1	합정동382-39	일반 도로	'08.7.10	합정 4구역
기정	소로	1	10	10	집산 도로	135	합정동418-30	서교동390-20	일반 도로	'67.4.7	합정 1구역
기정	소로	1	15	10	국지 도로	106	합정동383-1	합정동383-24	일반 도로	'08.7.24	합정 3구역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60	합정동382-31	합정동382-39	일반 도로	'08.7.10	합정 4구역
기정	소로	2	(1)	8 (5)	국지 도로	100	합정동373-3	합정동373-17	일반 도로	'67.4.7	
기정	-	-	-	(6)	국지 도로	(44)	합정동406-4 (합정동380-1)	합정동406-4 (합정동380-20)	-	'67.4.7	
변경	중로	3	(1)	(6~12)	국지 도로	(44)	합정동406-4 (합정동380-1)	합정동406-4 (합정동380-20)	일반 도로	'67.4.7	합정동 380-1 내 도로확폭 구간

주1) ()는 임시번호 및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사항임

주2) 변경된 중로 3-(1)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기 조성된 도로의 일부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확폭하는 사항으로 합정동 380-1번지 내 확폭되는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1)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6m→6m~12m(증 6m)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 6구역 지침 상 확폭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확폭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사항임

※ 변경전 도로는 서교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 사업완료 신고일(1967.4.7.) 기준으로 일괄 결정되었던 도로로서 도시계획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임

② 철도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4)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1) 가구

☐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고
	기정	변경	
일반상업지역	GC-1, GC-2, GC-3, GC-4, GC-5, GC-6, GC-7, GC-8	GC-1, GC-2, GC-3, GC-4, GC-5, GC-6, GC-7, GC-8, GC-9	-

☐ 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일반상업지역 가구번호 부여 (GC-9)	- 특별계획6구역에서 제척된 합정동 380-1번지에 가구번호 부여 - 가구번호를 새로 부여하는 사항으로 가구계획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서 결정되어 있음

(2) 공동개발 : 변경없음

(3)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 용도계획

① 건축물 불허용도 계획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불허용도	
			전층	1층
기정	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 제외)	a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위락시설 중 카지노업소 - 공장 - 창고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 양화로변, 독막로변 연접필지 및 특별계획구역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단, 현금지급기 설치를 위한 공간 제외), 제조업소, 수리점, 신문사
	특별계획구역 5~7구역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

주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축시 관련규정 준수

주3) 특별계획구역 1~4구역은 기 결정된 정비계획 내용을 따름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불허용도 조서 변경 없이 도면 변경	• 특별계획 6구역 분할에 따른 불허용도 적용지역 변경

② 건축물 권장용도 계획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일반상업지역	A	-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의 금융업소, 사무소(2층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한방병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발진흥지구 구역내		• 특정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시설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

주2) 전층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당해용도가 연면적이 20% 이상인 경우에 한함(면적 중 주차장 면적 제외)

주3) 특정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010-21호)에 따라 고시된 권장업종시설(디자인, 출판업종)로서 진흥계획의 변경시 변경된 내용에 따름

주4) 개발진흥지구 구역 내 권장용도와 관련하여 마포디자인, 출판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홍대앞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본 구역에서도 해당 변경이 변경된 것으로 봄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권장용도 조서 변경 없이 도면 변경	• 특별계획 6구역 분할에 따른 권장용도 적용지역 변경

③ 건축물 지정용도 계획

☐ 건축물 지정용도 및 특화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A	5구역	-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1가지 이상 선택 도입
		B	6구역	-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 - 숙박시설(관광진흥법상 3등급 이상 호텔) - 문화 및 집회시설	
		C	7구역	-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 - 판매시설 - 업무시설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

주2)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지정용도로 계획하였고, 상위계획 변경시에는 변경된 건축물 용도를 지정용도로 봄

주3) 특별계획구역 1~4구역은 기 결정된 정비계획 내용에 따름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지정용도 및 특화용도 조서 변경 없이 도면 변경	특별계획 6구역 분할에 따른 지정용도 및 특화용도 적용지역 변경

☐ ④ 가로활성화 용도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 밀도계획

☐ ① 건축물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 ② 건축물 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 ③ 건축물 높이 계획

☐ 건축물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최고높이	비고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변	80m 이하	최고높이 완화는 최고높이의 1.2배 이내 범위에서 완화 가능
	이면부	60m 이하	
특별계획5~7구역	간선도로변	120m 이하	

☐ 최고높이 완화계획

구분	산식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시	$\text{높이} = \text{최고높이} \times [1 + (\text{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text{당초 대지면적})]$ 이내

☐ 건축물 높이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높이계획 조서 변경 없이 도면 변경	특별계획 6구역 분할에 따른 높이 계획 적용지역 변경

☐ ④ 건축물 배치계획

☐ 건축물 배치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건축한계선 계획 결정 조서

☐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GC-1	- 건축한계선 5m(양화로변) - 건축한계선 1m(10m 도로변), 2m(8m 도로변)	- 양화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GC-2	- 건축한계선 5m(양화로변) - 건축한계선 1m(이면도로변)	- 양화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GC-3	- 건축한계선 3m(독막로변) - 건축한계선 1m(이면도로변)	- 독막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구분	계획내용	비고
GC - 4	• 건축한계선 1m(이면도로변)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GC - 5	• 건축한계선 5m(양화로변) • 건축한계선 1m(이면도로변)	• 양화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GC - 6	• 건축한계선 5m(양화로변) • 건축한계선 1m(이면도로변)	• 양화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GC - 7	• 건축한계선 3m(독막로변) • 건축한계선 1m(이면도로변)	• 독막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GC - 8	• 건축한계선 5m(양화로변) • 건축한계선 3m(독막로변) • 건축한계선 1m~2m(이면도로변)	• 양화로변 및 독막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특별계획 5~7구역	• 건축한계선 5m(양화로변) • 건축한계선 2~3m(이면도로변)	• 양화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GC - 1	• 건축한계선 5m(양화로변) • 건축한계선 1m(10m 도로변), 2m(8m 도로변)	• 양화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GC - 2	• 건축한계선 5m(양화로변) • 건축한계선 1m(이면도로변)	• 양화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GC - 3	• 건축한계선 3m(독막로변) • 건축한계선 1m(이면도로변)	• 독막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GC - 4	• 건축한계선 1m(이면도로변)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GC - 5	• 건축한계선 5m(양화로변) • 건축한계선 1m(이면도로변)	• 양화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GC - 6	• 건축한계선 5m(양화로변) • 건축한계선 1m(이면도로변)	• 양화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GC - 7	• 건축한계선 3m(독막로변) • 건축한계선 1m(이면도로변)	• 독막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GC - 8	• 건축한계선 5m(양화로변) • 건축한계선 3m(독막로변) • 건축한계선 1m~2m(이면도로변)	• 양화로변 및 독막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GC - 9	• 건축한계선 5m(양화로변) • 건축한계선 2m(이면도로변)	• 양화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특별계획 5~7구역	• 건축한계선 5m(양화로변) • 건축한계선 2~3m(이면도로변)	• 양화로변 보행환경 개선 • 이면도로변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가구번호 부여 (GC - 9)에 따른 건축한계선 변경	특별계획6구역에서 제척된 합정동 380 - 1번지에 가구번호 부여 및 건축한계선 적용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① 교통처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②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변경) 조서

- 지정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일반 상업 지역	GC - 1	차량출입불허구간
	GC - 2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구간 허용)
	GC - 3	차량출입불허구간
	GC - 4	차량출입불허구간
	GC - 5	차량출입불허구간
	GC - 6	차량출입불허구간
	GC - 7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GC - 8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획지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 서교119안전센터, 우체국의 공공건물부지 일부 허용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합정동 373-15)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합정동 414-3)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특별 계획 구역	특별계획 5~7구역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변 전구간 불허)
	특별계획 6구역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 이면도로변으로 차량 진출입
		•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합정동 380-1) - 합정동 380-1번지가 단독필지로 획지분할 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차량출입 허용

- 변경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일반 상업 지역	GC - 1	차량출입불허구간
	GC - 2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구간 허용)
	GC - 3	차량출입불허구간
	GC - 4	차량출입불허구간
	GC - 5	차량출입불허구간
	GC - 6	차량출입불허구간
	GC - 7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GC - 8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GC - 9	차량출입불허구간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특별 계획 구역	특별계획 5~7구역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변 전구간 불허)
		• 이면도로변으로 차량 진출입
		일부 획지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 서교119안전센터, 우체국의 공공건물부지 일부 허용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합정동 373-15)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합정동 414-3)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합정동 380-1)

③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1구역	합정동 418-1 일대	37,309.4	-	37,309.4	서고432호 08.12.4	사업 완료
기정	특별계획2구역	합정동 385-1 일대	16,297.3	-	16,297.3	서고432호 08.12.4	사업 완료
기정	특별계획3구역	합정동 384-1 일대	10,544.9	-	10,544.9	서고432호 08.12.4	사업 완료
기정	특별계획4구역	합정동 382-44 일대	4,957.2	-	4,957.2	서고432호 08.12.4	사업 완료
기정	특별계획5구역	합정동 383-14 일대	4,079.8	-	4,079.8	서고432호 08.12.4	
변경	특별계획6구역	합정동 380-23 일대	4,851.1	감) 757.9	4,093.2	서고432호 08.12.4	합정동 380-1 제척
기정	특별계획7구역	합정동 381-49 일대	2,887.6	-	2,887.6	서고432호 08.12.4	

주) 상기 면적은 CAD 상 구적면적이며, 측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특별계획6구역	면적 감소(제척) - 감) 757.9㎡	특별계획구역에 결정된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합정동 380-1번지 필지를 분할하여 제척

(2) 특별계획구역별 계획지침 : 변경없음

마)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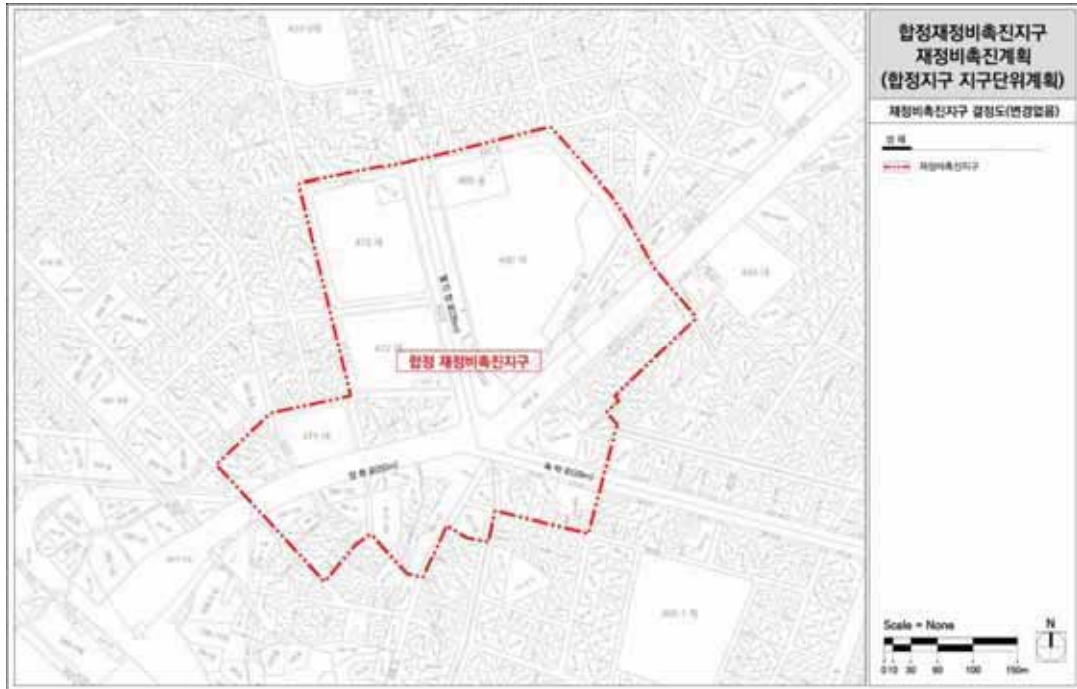
3. 관련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및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특별계획6구역 내 380-1번지 획지분할-」 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9)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구역별 결정도(기정)



■ 구역별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지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시설 결정(변경)도

연 계

- 지구단위계획결정구역
- 도시계획도로
- 공역
- 공공공지
- 공공청사
- 행정
- 학교
- 입체적도시계획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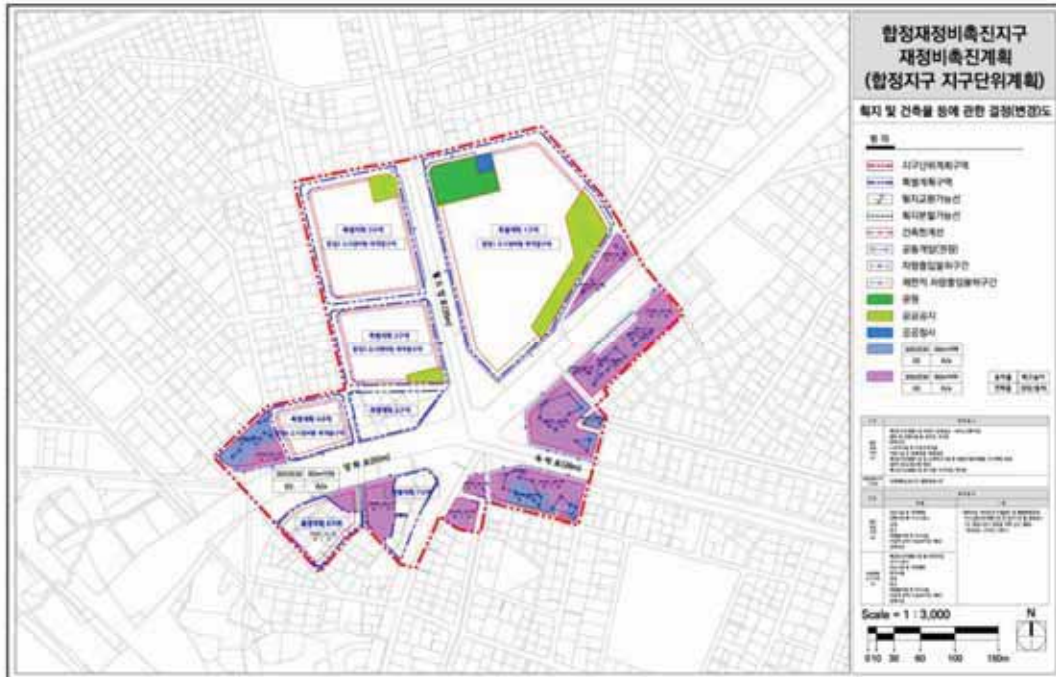
Scale = None

0 100 200 300 400 500m

N

[illegibl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71호
**도시관리계획(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606호(2021.10.21.)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대하여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060호(2023.4.13.)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국회대로의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에 따른 공간적·기능적 변화에 대응한 주변 지역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화곡동 일대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일대	-	증) 642,145	642,14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화곡동일대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일대	642,145	●국회대로의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에 따른 공간적·기능적 변화에 대응하여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

■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42,145.0	-	642,145.0	100.0	
주거 지역	소 계	642,145.0	-	642,145.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889.3	-	4,889.3	0.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36,155.4	-	236,155.4	36.7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430.2	-	106,430.2	16.6	
	제3종일반주거지역	294,670.1	-	294,670.1	45.9	

나. 용도지구 결정

■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김포공항 주변일대	57,931,000 (287,795)	-	57,931,000 (287,795)	서울시고시 제120호 (77. 4. 22)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5	13,555	282,590	9	6,544	226,783	14	1,573	20,448	52	5,438	35,359
광로	1	2,090	104,500	1	2,090	104,500	-	-	-	-	-	-
대로	2	2,279	75,957	1	1,944	65,863	1	335	10,094	-	-	-
중로	7	2,733	60,272	5	2,374	54,787	1	50	850	1	309	4,635
소로	65	6,453	41,861	2	136	1,633	12	1,188	9,504	51	5,129	30,724

※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완료지역 등 노선번호가 미부여된 도로에 대해 노선번호 부여

■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결정)	광로	2	12	50	주간선 도로	5,600 (2,090)	양평동4가 (신정동 1060)	서울시계 (신월동 835)	자동차 전용 도로	건고 제310호 (1987.7.8.)	
기정 (결정)	대로	1	78	10.8 ~ 147.5 (14~48)	주간선 도로	7,530 (1,944)	신월동 835 (신월동 835)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화곡동 951-2)	자동차 전용 도로	서울시고시 제2013-318호 (2013.10.4)	입체적 결정 (도로, 교통광장, 공원 일부 중복)
기정 (결정)	대로	2	38	30	보조간선 도로	7,250 (335)	내발산동 644-2 (신월동 888)	고척동 76-148 (화곡동 949-1)	일반 도로	건고 제198호 (1971.4.7)	강서로
기정 (결정)	중로	1	117	20	보조간선 도로	1,100 (128)	신월동 (신정동 872-20)	광2-12 (광2-12)	일반 도로	건고 제198호 (1971.4.7)	신정중앙로
기정 (결정)	중로	3	70	12~18	집산도로	2,750 (309)	양천구 신월동 (신월동 448-5)	강서구 내발산동 (화곡동 934-23)	일반 도로	건고 제198호 (1971.4.7)	월정로
기정	중로	1	1	24	집산도로	1,098	화곡동 949-1	화곡동 949-6	일반 도로	-	경인구획 사업지구로 도로결정조서 일괄 정리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215	신월동 244-6	신월동 243-4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3	20	집산도로	155	신월동 1027	신월동 411-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4	24	집산도로	778	화곡동 949-6	화곡동 949-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1	17	집산도로	50	화곡동 843-7	화곡동 843-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45	화곡동 842-11	화곡동 842-1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2	10~15	국지도로	91	신정동 881-19	신정동 881-1	일반 도로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50	화곡동 907-4	화곡동 907-1	일반 도로	-	경인구획 사업지구로 도로결정조서 일괄 정리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46	화곡동 891-18	화곡동 891-2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46	화곡동 881-14	화곡동 881-16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50	화곡동 886-8	화곡동 114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45	화곡동 852-17	화곡동 852-20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61	화곡동 789-22	화곡동 789-30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259	신월동 218-49	신월동 103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99	신월동 242-23	신월동 243-1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68	신월동 237-11	신월동 240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98	신월동 410-4	신월동 106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07	신월동 456-27	신월동 455-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59	신정동 936-32	신정동 130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52	화곡동 934-5	화곡동 934-2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24	화곡동 933-8	화곡동 933-40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39	화곡동 931-6	화곡동 929-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19	화곡동 929-1	화곡동 929-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125	화곡동 930-8	화곡동 115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20	화곡동 911-24	화곡동 912-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30	화곡동 912-1	화곡동 912-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02	화곡동 909-32	화곡동 910-2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125	화곡동 910-4	화곡동 910-2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82	화곡동 908-8	화곡동 906-26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161	화곡동 906-1	화곡동 906-26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80	화곡동 941-21	화곡동 893-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46	화곡동 880-14	화곡동 880-17	일반 도로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50	화곡동 887-6	화곡동 887-1	일반 도로	-	경인구획 사업지구로 도로결정조서 일괄 정리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45	화곡동 884-11	화곡동 884-1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50	화곡동 946-11	화곡동 885-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45	화곡동 855-15	화곡동 855-1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50	화곡동 854-4	화곡동 854-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9	5	국지도로	50	화곡동 853-4	화곡동 113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45	화곡동 845-17	화곡동 845-1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50	화곡동 844-5	화곡동 844-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45	화곡동 790-6	화곡동 790-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131	신월동 218-12	신월동 218-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149	신월동 240-20	신월동 242-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197	신월동 238-3	신월동 241-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166	신월동 236-13	신월동 236-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7	6	국지도로	114	신월동 241-16	신월동 241-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76	신월동 237-7	신월동 237-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9	6	국지도로	120	신월동 416-1	신월동 416-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0	6	국지도로	130	신월동 411-7	신월동 411-1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1	6	국지도로	120	신월동 413-13	신월동 412-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2	6	국지도로	133	신월동 412-26	신월동 412-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3	6	국지도로	23	신월동 449-1	신월동 450-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4	6	국지도로	22	신월동 451-10	신월동 451-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5	6	국지도로	81	신월동 451-7	신월동 451-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6	6	국지도로	93	신월동 460-32	신월동 452-1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7	6	국지도로	129	신월동 452-7	신월동 452-2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8	6	국지도로	91	신월동 459	신월동 453-1	일반 도로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9	6	국지도로	119	신월동 453-5	신월동 453-10	일반 도로	-	경인구획 사업지구로 도로결정조서 일괄 정리
기정	소로	3	40	6	국지도로	92	신월동 457-13	신월동 454-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1	6	국지도로	160	신월동 454-7	신월동 454-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2	6	국지도로	82	신월동 455-4	신월동 455-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3	6	국지도로	138	신정동 935-5	신정동 130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4	6	국지도로	38	신정동 934-16	신정동 934-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5	6	국지도로	165	신정동 873-16	신정동 873-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6	6	국지도로	37	신정동 874-6	신정동 874-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7	6	국지도로	91	신정동 875-13	신정동 875-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8	6	국지도로	40	신정동 880-1	신정동 880-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9	6	국지도로	247	신정동 880-11	신정동 875-16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50	6	국지도로	119	신정동 881-6	신정동 881-1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51	6	국지도로	91	신정동 882-11	신정동 881-6	일반 도로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입체적결정 범위					비 고
		연장(m)	폭원(m)	기점	종점	높이(지하)1)	
기정	지하도로	· 서울제물포터널 - 여의도방향 : L=7,285 - 인천방향 : L=7,315 - Ram - C : L=695 - Ram - D : L=674	10.8 ~ 147.5	양천구 신월동 835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평균해수면 기준 이하 최심도 -73.76m부터 평균해수면 기준 이상 최고점 +17.70m 사이	환기소 2개소 포함2)

※ 1) 입체적결정 높이(평균해수면 기준)는 구조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6m)을 포함한 값임

※ 2) 지상 환기구는 입체적 결정 제외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주차장	노외 주차장	양천구 신월동 411-1	1,044.9	-	1,044.9	양천구고시 제1997-1호 (1997.1.15.)	

3)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연결선)	구로구 신도림동 349 ~강서구 화곡동 348	6,150	-	건교부고시 제695호 (1990.10.19)	도시철도 2호선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5호선 본선)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일대	47,400	-	건교부고시 제695호 (1990.10.19)	도시철도 5호선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연결통로)	강서구 화곡동 348-9앞	115	805	서울시고시 제1993-77호 (1993.3.24.)	2호선, 5호선 연결통로

나.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39	화곡제2광장	교통광장	강서구 화곡동 591일대	21,000	-	21,000	건교부고시 제695호 (1990.10.19)	

2)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호돌이 공원	어린이 공원	강서구 화곡동 906-26	811.6	-	811.6	건교부고시 제1475호 (1982.12.29)	
기정	2	뜸부기 공원	어린이 공원	강서구 화곡동 845-19	998.4	-	998.4	건교부고시 제1475호 (1982.12.29)	
기정	3	신월 공원	어린이 공원	양천구 신월동 240	1,148.2	-	1,148.2	건교부고시 제1475호 (1982.12.29)	
기정	4	신곡 공원	어린이 공원	양천구 신월동 459	990.4	-	990.4	건교부고시 제1475호 (1982.12.29)	
기정	5	읍골 공원	어린이 공원	양천구 신정동 936-13	995.4	-	995.4	건교부고시 제1475호 (1982.12.29)	
기정	6	동개울 공원	어린이 공원	양천구 신정동 876-1	991.2	-	991.2	건교부고시 제1475호 (1982.12.29)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시장

■ 시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신월 중앙시장	-	화곡동 929-1	3,140.5	-	3,140.5	서울시공고 제504호 (1982.12.15)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양천구 신월동 448-5일대	8,023.4	-	8,023.4	서울시고시 제196호 (1982.5.14)	

■ 건축범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신강초교,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 도서관

■ 도서관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도서관	강서구 화곡동 890번지	3,209.8	-	3,209.8	서울시고시 제2009-150호 (2009.4.9)	주차장, 사회복지시설과 중복결정

■ 건축범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50% 이하	250% 이하	11층 이하	중복결정

3)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사회복지 시설	강서구 화곡동 890번지	3,209.8	-	3,209.8	서울시고시 제2009-150호 (2009.4.9)	주차장,도서관과 중복결정

■ 건축범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50% 이하	250% 이하	11층 이하	중복결정

마.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하수도	양천구 신월동 263 (화곡동 949-9구)	양천구 목동 916-1 (유수지)	곰달래사거리 - 화곡고가교 - 을청아파트-목동로 - 코끼리맨션	4,616 (1,833)	51,777 (21,75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41호 (2013.12.9)	하수저류시설 (도로, 공원 중복)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③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공동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가. 최대개발규모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원 연접부	유통상가	1,200㎡이하	
	유통상가 외	1,000㎡이하	
이면부		800㎡이하	
신월 IC 주변부		1,000㎡이하	

■ 결정 사유

- 적정개발유도 위해 최대개발규모 설정
 - 공원연접부, 신월IC주변부 : 평균 필지규모(약 500㎡)의 2배
 - 유통상가 : 평균 필지규모(약 600㎡)의 2배
 - 이 면 부 : 평균 필지규모(약 200㎡)의 4배

■ 적용의 예외

- 기 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공동개발(지정, 권장)계획이 수립된 경우
- 건축물 대장상 명칭, 용도, 개발시기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는 대지를 공동개발하는 경우

나. 공동개발 계획

1) 공동개발 계획 사유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94개소
공동개발(권장)	부정형 필지, 과소필지	8개소

2) 자율적 공동개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자율적 (선택적) 공동개발	• 공동개발(지정) 외 필지는 단독개발이 가능하며,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접한 필지간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가능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대상에서 제외함 1. 특정대지의 돌출 등 대지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인 경우 2.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길이)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3. 공동개발로 소규모 잔여필지를 고립시킨 경우	-

3) 공동개발 결정 조서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공원연접부 (유통상가)	A1	화곡동 843-1	605.0		
		화곡동 843-2	383.0		
		화곡동 843-3	376.9		
		화곡동 843-4	1037.6		
		화곡동 843-5	664.5		
		화곡동 843-6	1015.6		
		화곡동 843-7	619.6		
		화곡동 843-8	1035.7		
		화곡동 843-9	1406.0		
		화곡동 1147	968.0		
	A2	화곡동 844-2	431.0		
		화곡동 844-3	166.5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44-13	158.9		
		화곡동 844-15	554.1		
		화곡동 844-16	64.6		
		화곡동 844-4	266.3		
		화곡동 844-5	1002.8		
		화곡동 844-6	243.6		
		화곡동 844-7	123.5		
		화곡동 844-8	272.1		
		화곡동 844-9	113.8		
		화곡동 844-10	117.5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844-11	156.9		
		화곡동 844-12	787.2		
		화곡동 844-17	692.4		
		화곡동 1137	1339.8		
	A3	화곡동 853-1	207.6		
		화곡동 853-2	202.6		
		화곡동 853-3	1067.8		
		화곡동 853-4	1495.5		
		화곡동 853-6	220.8		
		화곡동 853-7	177.9		
		화곡동 853-8	175.5		
	A3	화곡동 853-9	160.0		
		화곡동 853-10	157.0		
		화곡동 853-11	173.6		
		화곡동 1138	1164.6		
	A4	화곡동 854-1	1202.0		
		화곡동 854-2	773.6		
		화곡동 854-3	813.4		
		화곡동 854-4	504.1		
		화곡동 854-5	1569.9		
		화곡동 854-6	410.9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공원연접부 (유통상가)	A5	화곡동 885-1	860.9		
		화곡동 885-2	1135.8		
		화곡동 885-3	851.3		
		화곡동 885-4	110.4		
		화곡동 885-5	109.4		
		화곡동 885-6	117.4		
		화곡동 885-7	112.4		
		화곡동 885-8	111.1		
		화곡동 885-9	116.0		
		화곡동 885-10	114.7		
		화곡동 885-11	112.4		
		화곡동 885-12	110.4		
		화곡동 885-13	111.1		
		화곡동 885-19	786.6		
	A6	화곡동 886-1	386.1		
		화곡동 886-2	141.2		
		화곡동 886-3	138.8		
		화곡동 886-4	122.6		
		화곡동 886-5	346.0		
		화곡동 886-6	333.2		
		화곡동 886-7	590.9		
		화곡동 886-8	1594.3		
		화곡동 886-20	590.9		
		화곡동 1143	1012.3		
	A7	화곡동 887-1	864.0		
		화곡동 887-2	534.3		
		화곡동 887-4	312.7		
		화곡동 887-6	892.8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887-11	863.9		
		화곡동 887-16	661.2		
	A8	화곡동 888-1	759.3		
		화곡동 888-2	285.6		
		화곡동 888-3	333.2		
		화곡동 888-4	689.6		
		화곡동 888-5	448.0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88-15	297.5		
		화곡동 888-6	617.9		
		화곡동 888-9	672.5		
		화곡동 888-14	529.0		
		화곡동 888-16	529.0		
		화곡동 888-17	529.0		
		화곡동 888-18	662.0		
공원연접부 (유통상가 외)	B1	화곡동 907-1	91.6		
		화곡동 907-2	223.3		
		화곡동 907-3	801.3		
		화곡동 907-4	217.0		
	B2	화곡동 908-2	744.9		
		화곡동 908-3	851.5		
		화곡동 908-4	248.7		
		화곡동 908-5	435.7		
		화곡동 908-6	1003.7		
		화곡동 908-8	262.7		
		화곡동 908-9	143.8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08-34	55.2		
		화곡동 908-10	184.5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공원연접부 (유통상가 외)	B2	화곡동 908-11	167.3		
		화곡동 908-12	152.9		
		화곡동 908-13	162.6		
		화곡동 908-22	58.8		
	B3	화곡동 909-1	288.3		
		화곡동 909-2	341.2		
		화곡동 909-3	175.5		
		화곡동 909-4	135.9		
		화곡동 909-5	337.7		
		화곡동 909-7	117.4		
		화곡동 909-8	141.5		
		화곡동 909-11	371.9		
		화곡동 909-12	175.4		
		화곡동 909-13	331.6		
		화곡동 909-14	111.7		
		화곡동 909-15	117.1		
		화곡동 909-16	109.1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09-17	130.9		
		화곡동 909-20	117.3		
		화곡동 909-22	169.4		
		화곡동 909-23	171.4		
		화곡동 909-24	169.3		
		화곡동 909-25	557.7		
		화곡동 909-26	65.8		
		화곡동 909-28	360.4		
		화곡동 909-30	267.1		
		화곡동 909-31	246.3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909-32	533.8		
		화곡동 909-34	56.6		
	B4	화곡동 911-7	460.5		
		화곡동 911-8	730.7		
		화곡동 911-9	266.4		
		화곡동 911-10	696.6		
		화곡동 911-12	659.4		
		화곡동 911-21	565.9		
		화곡동 911-22	206.1		
		화곡동 911-24	679.2		
		화곡동 911-25	1012.9		
	B5	화곡동 931-1	229.2		
		화곡동 931-2	417.7		
		화곡동 931-4	280.4		
		화곡동 931-5	629.5		
		화곡동 931-6	722.4		
		화곡동 931-7	520.7		
		화곡동 931-8	233.7		
		화곡동 931-9	487.9		
		화곡동 931-11	913.8		
		화곡동 931-12	229.1		
		화곡동 931-13	214.1		
		화곡동 931-14	834.7		
	B6	화곡동 932-1	157.7		
		화곡동 932-2	145.8		
		화곡동 932-3	344.2		
		화곡동 932-4	494.3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공원연접부 (유통상가 외)		화곡동 932-11	142.1		
		화곡동 932-12	143.1		
	B6	화곡동 932-5	716.2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32-6	658.4		
		화곡동 932-7	485.2		
		화곡동 932-15	274.0		
		화곡동 932-8	596.7		
		화곡동 932-9	755.0		
		화곡동 932-10	143.1		
		화곡동 932-13	142.1		
	C1	신월동 448-1	420.7		
		신월동 448-2	411.3		
	C2	신월동 450-1	509.4		
		신월동 450-2	352.6		
	C3	신월동 451-1	562.6		
		신월동 451-2	531.4		
		신월동 451-3	474.8		
		신월동 451-4	478.7		
		신월동 451-5	213.0		
		신월동 451-6	216.7		
		신월동 451-7	606.3		
		신월동 451-8	967.1		
		신월동 451-11	253.7		
	C4	신월동 452-1	112.1		
		신월동 452-2	1456.8		
		신월동 452-3	423.9		
		신월동 452-4	684.7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월동 452-5	355.7		
		신월동 452-6	150.2		
		신월동 452-7	105.5		
		신월동 452-8	201.5		
		신월동 452-9	212.3		
		신월동 452-10	201.4		
		신월동 452-11	220.0		
		신월동 452-12	219.8		
		신월동 452-13	219.8		
		신월동 452-14	219.8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452-15	219.7		
		신월동 452-16	219.6		
		신월동 452-17	289.3		
		신월동 452-24	139.8		
	C5	신월동 453-1	788.5		
		신월동 453-2	539.9		
		신월동 453-3	370.4		
		신월동 453-4	537.4		
		신월동 453-5	215.5		
		신월동 453-6	507.6		
		신월동 453-7	229.1		
		신월동 453-8	229.1		
		신월동 453-9	229.2		
		신월동 453-10	212.7		
		신월동 453-11	287.3		
		신월동 453-12	287.4		
		신월동 453-13	262.4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C6	신월동 453-19	370.5		
		신월동 454-1	625.0		
		신월동 454-2	953.1		
		신월동 454-3	783.5		
공원연접부 (유통상가 외)	C6	신월동 454-4	415.7		
		신월동 454-5	441.0		
		신월동 454-6	910.2		
		신월동 454-7	360.5		
		신월동 454-9	180.2		
		신월동 454-10	170.9		
		신월동 454-11	170.7		
		신월동 454-12	386.5		
		신월동 454-13	171.6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454-14	171.8		
		신월동 454-15	767.0		
		신월동 454-16	180.0		
		신월동 454-18	440.6		
	C7	신월동 455-1	878.2		
		신월동 455-2	171.9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455-8	170.9		
		신월동 455-3	222.4		
		신월동 455-4	290.6		
		신월동 455-7	148.1		
		신월동 455-10	310.5		
		신월동 455-11	310.2		
	D1	신정동 938-1	437.2		
		신정동 938-2	219.8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정동 938-17	110.6		
		신정동 938-3	145.1		
		신정동 938-4	139.2		
		신정동 938-5	136.4		
		신정동 938-6	138.4		
		신정동 938-9	191.4		
		신정동 938-10	309.9		
	D2	신정동 935-2	172.5		
		신정동 935-3	237.9		
		신정동 935-4	1308.7		
		신정동 935-5	1392.3		
		신정동 935-17	37.2		
		신정동 935-18	354.7		
		신정동 1305	2499.1		
	D3	신정동 872-1	316.3		
		신정동 872-2	715.2		
		신정동 872-3	144.2		
		신정동 872-4	290.6		
		신정동 872-5	873.4		
		신정동 872-8	208.5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신정동 872-9	196.1		
		신정동 872-19	331.0		
		신정동 872-20	331.0		
	D4	신정동 873-1	1214.6		
		신정동 873-2	693.9		
		신정동 873-3	216.9		
		신정동 873-4	517.3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정동 873-5	211.2	공동개발(권장)	· 부정형 필지
		신정동 873-6	149.6		
		신정동 873-17	337.3		
		신정동 873-7	167.5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정동 873-8	289.9		
		신정동 873-11	178.5		
공원연접부 (유통상가 외)	D4	신정동 873-9	286.7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정동 873-14	50.2		
		신정동 873-10	296.2		
		신정동 873-15	165.3		
		신정동 873-16	165.3		
		신정동 873-18	390.6		
	D5	신정동 875-1	943.7		
		신정동 875-2	603.7		
		신정동 875-3	813.6		
		신정동 875-4	431.9		
		신정동 875-5	190.0		
		신정동 875-6	853.4		
		신정동 875-7	173.0		
		신정동 875-8	178.5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정동 875-9	186.8		
		신정동 875-18	189.9		
		신정동 875-19	183.3		
		신정동 875-20	177.0		
		신정동 875-21	233.0		
		신정동 875-22	232.2		
		신정동 875-23	230.3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D6	신정동 880-1	2129.6		
		신정동 880-2	383.1		
		신정동 880-3	537.4		
		신정동 880-4	709.6		
		신정동 880-24	259.0		
		신정동 880-25	324.1		
		신정동 880-30	301.5		
	D7	신정동 881-1	723.6		
		신정동 881-2	455.2		
		신정동 881-3	694.6		
		신정동 881-4	323.4		
		신정동 881-6	811.1		
		신정동 881-8	672.1		
		신정동 881-18	201.6		
이면부	A9	화곡동 789-1	149.8		
		화곡동 789-2	138.1		
		화곡동 789-3	134.5		
		화곡동 789-4	158.7		
		화곡동 789-5	127.2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789-6	122.7		
		화곡동 789-7	118.7		
		화곡동 789-8	118.7		
		화곡동 789-9	122.0		
		화곡동 789-11	247.3		
		화곡동 789-12	244.4		
		화곡동 789-14	122.6		
		화곡동 789-15	142.8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이면부		화곡동 789-16	127.9		
		화곡동 789-17	124.3		
		화곡동 789-18	123.0		
		화곡동 789-19	120.0		
		화곡동 789-20	123.6		
		화곡동 789-21	147.8		
		화곡동 789-22	127.6		
	A9	화곡동 789-23	138.2		
		화곡동 789-24	146.8		
		화곡동 789-25	128.6		
		화곡동 789-26	139.2		
		화곡동 789-27	144.8		
		화곡동 789-28	148.1		
		화곡동 789-29	123.6		
		화곡동 789-30	123.6		
		화곡동 789-31	162.0		
		화곡동 789-32	150.7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789-33	150.1		
		화곡동 789-34	162.3		
		화곡동 789-35	140.8		
		화곡동 789-36	412.9		
	A10	화곡동 790-1	170.2		
		화곡동 790-2	162.0		
		화곡동 790-3	518.0		
		화곡동 790-4	224.8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790-5	177.2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790-6	197.9		
		화곡동 790-8	166.3		
		화곡동 790-7	317.2		
		화곡동 790-9	199.3		
		화곡동 790-11	416.8		
		화곡동 790-12	133.2		
		화곡동 790-13	148.4		
		화곡동 790-14	145.8		
		화곡동 790-15	128.6		
		화곡동 790-16	126.3		
		화곡동 790-17	147.8		
		화곡동 790-23	353.1		
		화곡동 790-24	224.8		
	A11	화곡동 842-1	180.2		
		화곡동 842-2	189.4		
		화곡동 842-3	185.5		
		화곡동 842-4	170.9		
		화곡동 842-5	122.8		
		화곡동 842-6	126.0		
		화곡동 842-7	396.3		
		화곡동 842-9	165.3		
		화곡동 842-10	177.9		
		화곡동 842-11	559.0		
		화곡동 842-14	135.9		
		화곡동 842-15	145.5		
		화곡동 842-16	127.6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842-17	134.2		
		화곡동 842-27	14.2		
		화곡동 842-30	6.3		
		화곡동 842-29	1.3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화곡동 842-18	157.7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42-19	117.4		
		화곡동 842-20	162.6		
		화곡동 842-21	167.6		
		화곡동 842-22	150.7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42-23	168.9		
		화곡동 842-26	8.3		
이면부	A11	화곡동 842-33	122.7		
	A12	화곡동 845-1	127.0		
		화곡동 845-2	203.3		
		화곡동 845-3	181.2		
		화곡동 845-5	282.0		
		화곡동 845-6	158.0		
		화곡동 845-7	171.6		
		화곡동 845-8	158.0		
		화곡동 845-9	189.7		
		화곡동 845-10	150.4		
		화곡동 845-11	156.5		
		화곡동 845-12	246.7		
		화곡동 845-13	126.6		
		화곡동 845-14	118.3		
		화곡동 845-15	243.4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845-17	139.5		
		화곡동 845-18	120.0		
		화곡동 845-20	166.3		
		화곡동 845-21	168.3		
		화곡동 845-22	164.3		
		화곡동 845-23	165.9		
		화곡동 845-32	128.0		
		화곡동 845-33	119.0		
		화곡동 845-34	159.4		
		화곡동 845-36	126.6		
		화곡동 845-37	129.6		
		화곡동 845-38	139.5		
		화곡동 845-39	126.6		
		화곡동 845-40	139.5		
		화곡동 845-41	139.5		
		화곡동 845-42	177.8		
	A13	화곡동 852-1	137.9		
		화곡동 852-2	266.4		
		화곡동 852-4	150.7		
		화곡동 852-5	165.3		
		화곡동 852-6	115.4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52-7	138.2		
		화곡동 852-8	267.1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52-9	204.3		
		화곡동 852-11	180.5		
		화곡동 852-12	358.3		
		화곡동 852-13	357.0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852-14	117.0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52-15	113.7		
		화곡동 852-16	99.2		
		화곡동 852-17	93.6		
		화곡동 852-18	180.5		
		화곡동 852-19	134.5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52-22	130.7		
		화곡동 852-20	128.6		
		화곡동 852-21	131.3		
		화곡동 852-23	128.3		
		화곡동 852-24	131.6		
		화곡동 852-25	181.5		
		화곡동 852-26	191.4		
		화곡동 852-27	191.4		
이면부	A13	화곡동 852-28	180.7		
		화곡동 852-29	126.6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52-30	156.3		
		화곡동 852-31	153.4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52-32	134.5		
		화곡동 852-43	180.2		
		화곡동 852-45	243.8		
		화곡동 852-46	221.2		
	A14	화곡동 855-3	141.5		
		화곡동 855-4	138.2		
		화곡동 855-7	139.2		
		화곡동 855-8	139.8		
		화곡동 855-11	141.5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A15	화곡동 855-1	160.3		
		화곡동 855-2	147.8		
		화곡동 855-5	145.1		
		화곡동 855-6	143.8		
		화곡동 855-9	142.1		
		화곡동 855-10	143.1		
		화곡동 855-12	158.0		
		화곡동 855-13	241.0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55-20	133.9		
		화곡동 855-21	156.7		
		화곡동 855-14	117.7		
		화곡동 855-15	114.1		
		화곡동 855-16	160.7		
		화곡동 855-17	144.1		
		화곡동 855-18	143.1		
		화곡동 855-19	141.5		
		화곡동 855-22	168.6		
		화곡동 855-23	158.0		
		화곡동 855-24	157.0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55-25	146.4		
		화곡동 855-33	13.9		
		화곡동 855-26	158.1		
		화곡동 855-27	160.3		
	A16	화곡동 884-1	145.5		
		화곡동 884-2	168.2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84-3	166.3		
		화곡동 884-4	164.6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884-5	164.6		
		화곡동 884-6	179.5		
		화곡동 884-7	166.6		
		화곡동 884-8	187.8		
		화곡동 884-9	185.5		
		화곡동 884-10	182.8		
		화곡동 884-11	187.8		
		화곡동 884-12	163.0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84-13	174.9		
		화곡동 884-21	11.9		
		화곡동 884-14	159.4		
		화곡동 884-15	162.0		
		화곡동 884-16	166.3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84-17	169.6		
		화곡동 884-18	159.3		
이면부	A17	화곡동 881-1	154.4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81-2	172.6		
		화곡동 881-3	169.2		
		화곡동 881-4	167.2		
		화곡동 881-5	157.0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81-41	9.9		
		화곡동 881-6	172.9		
		화곡동 881-7	121.0		
		화곡동 881-8	127.9		
		화곡동 881-9	119.3		
		화곡동 881-10	127.9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881-11	126.0		
		화곡동 881-12	238.4		
		화곡동 881-13	157.0		
		화곡동 881-14	157.7		
		화곡동 881-15	209.6		
		화곡동 881-16	398.3		
		화곡동 881-18	128.6		
		화곡동 881-19	113.1		
		화곡동 881-21	111.7		
		화곡동 881-22	111.1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81-23	126.6		
		화곡동 881-24	126.0		
		화곡동 881-25	111.7		
		화곡동 881-26	111.1		
		화곡동 881-27	108.4		
		화곡동 881-28	231.5		
		화곡동 881-30	122.3		
		화곡동 881-31	111.7		
		화곡동 881-32	107.1		
		화곡동 881-33	105.8		
		화곡동 881-34	115.4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81-35	126.6		
		화곡동 881-36	167.9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81-37	170.6		
	A18	화곡동 880-2	150.1		
		화곡동 880-3	416.9		
		화곡동 880-6	146.8		
		화곡동 880-7	129.6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880-8	260.5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80-10	138.5		
		화곡동 880-11	125.3		
		화곡동 880-12	127.3		
		화곡동 880-13	188.4		
		화곡동 880-14	128.9		
		화곡동 880-15	129.6		
		화곡동 880-16	122.3		
		화곡동 880-17	129.6		
		화곡동 880-18	104.1		
		화곡동 880-19	127.6		
		화곡동 1141	1302.1		
	A19	화곡동 891-1	139.5		
		화곡동 891-2	141.5		
		화곡동 891-3	113.4		
		화곡동 891-4	133.2		
이면부	A19	화곡동 891-5	136.2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91-6	139.8		
		화곡동 891-7	199.0		
		화곡동 891-8	126.9		
		화곡동 891-47	2.0		
		화곡동 891-48	3.3		
		화곡동 891-9	134.5		
		화곡동 891-10	208.9		
		화곡동 891-11	149.8		
		화곡동 891-12	142.5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891-13	313.0		
		화곡동 891-15	169.9		
		화곡동 891-16	174.5		
		화곡동 891-17	169.9		
		화곡동 891-18	162.3		
		화곡동 891-19	187.4		
		화곡동 891-20	141.2		
		화곡동 891-21	109.8		
		화곡동 891-22	116.7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91-23	142.8		
		화곡동 891-24	163.3		
		화곡동 891-25	308.8		
		화곡동 891-28	327.3		
		화곡동 891-30	180.5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화곡동 891-53	5.6		
		화곡동 891-31	150.4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891-32	158.3		
		화곡동 891-52	4.0		
		화곡동 891-55	180.0		
	A20	화곡동 893-1	4,868.4		
	B2	화곡동 908-1	174.6		
		화곡동 908-16	183.5		
		화곡동 908-17	178.2		
		화곡동 908-18	168.3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화곡동 908-27	6.6		
		화곡동 908-19	178.8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908-20	205.3		
		화곡동 908-30	166.6		
		화곡동 908-31	209.8		
		화곡동 908-32	174.6		
	B4	화곡동 911-1	133.9		
		화곡동 911-2	130.9		
		화곡동 911-3	138.5		
		화곡동 911-4	150.4		
		화곡동 911-5	150.1		
		화곡동 911-6	125.3		
		화곡동 911-13	313.5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11-30	272.9		
		화곡동 911-14	837.0		
		화곡동 911-15	134.5		
		화곡동 911-17	137.2		
		화곡동 911-19	140.2		
		화곡동 911-20	143.1		
	B7	화곡동 906-1	238.3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06-2	167.9		
		화곡동 906-32	6.6		
		화곡동 906-3	166.3		
이면부	B7	화곡동 906-4	172.9		
		화곡동 906-5	181.8		
		화곡동 906-6	133.9		
		화곡동 906-7	132.1		
		화곡동 906-8	163.0		
		화곡동 906-9	138.5		
		화곡동 906-10	357.6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B8	화곡동 906-13	115.4		
		화곡동 906-14	239.0		
		화곡동 906-16	122.3		
		화곡동 906-17	127.9		
		화곡동 906-18	126.6		
		화곡동 906-19	126.9		
		화곡동 906-20	121.0		
		화곡동 906-21	120.7		
	B9	화곡동 906-22	120.0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06-23	120.0		
		화곡동 906-24	124.3		
		화곡동 906-25	129.6		
	B10	화곡동 910-1	215.2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10-2	165.3		
		화곡동 910-3	131.6		
		화곡동 910-4	132.2		
		화곡동 910-5	144.5		
		화곡동 910-6	139.2		
		화곡동 910-7	135.2		
		화곡동 910-8	133.9		
	B11	화곡동 910-9	126.0		
		화곡동 910-10	127.3		
		화곡동 910-11	132.6		
		화곡동 910-12	127.9		
		화곡동 910-13	132.9		
		화곡동 910-14	118.7		
		화곡동 910-15	111.7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910-16	121.4		
		화곡동 910-17	121.7		
		화곡동 910-18	125.3		
		화곡동 910-19	126.9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10-20	121.7		
		화곡동 910-23	708.8		
		화곡동 910-27	120.6		
		화곡동 910-28	92.2		
		화곡동 910-29	121.3		
		화곡동 910-30	103.1		
		화곡동 910-31	100.5		
		화곡동 910-32	113.7		
		화곡동 910-33	222.1		
		화곡동 910-35	49.6		
		화곡동 910-36	51.2		
		화곡동 910-37	1.3		
		화곡동 910-51	132.9		
		화곡동 910-52	132.9		
		화곡동 910-53	135.9		
이면부	B12	화곡동 912-1	992.7		
		화곡동 912-12	148.7		
		화곡동 912-13	150.7		
		화곡동 912-14	150.7		
		화곡동 912-15	150.7		
		화곡동 912-16	148.7		
		화곡동 912-17	447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B13	화곡동 912-2	150.7		
		화곡동 912-3	580.8		
		화곡동 912-4	151.7		
		화곡동 912-5	151.7		
		화곡동 912-6	187.6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12-7	154.7		
		화곡동 912-8	174.6		
		화곡동 912-9	172.7		
		화곡동 912-10	157.7		
	B14	화곡동 930-1	597.1		
		화곡동 930-7	149.5		
		화곡동 930-8	157.5		
		화곡동 1152	3875.1		
	B15	화곡동 929-2	218.6		
		화곡동 929-3	211.2		
		화곡동 929-4	113.1		
		화곡동 929-6	218.8		
	B16	화곡동 933-1	481.3		
		화곡동 933-2	233.1		
		화곡동 933-3	177.2		
		화곡동 933-4	144.5		
		화곡동 933-5	156.4		
		화곡동 933-6	346.8		
		화곡동 933-8	317.6		
		화곡동 933-10	179.1		
		화곡동 933-11	481.0		
		화곡동 933-13	259.6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933 - 50	249.5		
		화곡동 933 - 14	129.6		
		화곡동 933 - 15	128.6		
		화곡동 933 - 16	178.1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33 - 17	226.9		
		화곡동 933 - 48	251.2		
	B17	화곡동 933 - 19	137.2		
		화곡동 933 - 20	136.9		
		화곡동 933 - 21	136.9		
		화곡동 933 - 22	136.9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33 - 23	136.2		
		화곡동 933 - 24	125.6		
		화곡동 933 - 25	122.3		
		화곡동 933 - 26	123.6		
		화곡동 933 - 27	123.6		
		화곡동 933 - 28	143.5		
		화곡동 933 - 29	119.3		
		화곡동 933 - 30	118.7		
		화곡동 933 - 31	121.0		
		화곡동 933 - 32	117.0		
	B18	화곡동 933 - 33	131.9		
		화곡동 933 - 34	122.3		
		화곡동 933 - 35	123.0		
		화곡동 933 - 36	119.3		
		화곡동 933 - 37	126.9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33 - 38	130.2		
		화곡동 933 - 47	10.9		
이면부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933-40	338.5		
		화곡동 933-42	251.6		
	B19	화곡동 934-1	297.5		
		화곡동 934-3	181.1		
		화곡동 934-4	148.4		
		화곡동 934-5	218.2		
		화곡동 934-6	142.0		
		화곡동 934-7	145.5		
		화곡동 934-8	158.7		
		화곡동 934-9	138.5		
	B20	화곡동 934-10	146.2		
		화곡동 934-11	135.9		
		화곡동 934-12	146.8		
		화곡동 934-13	140.8		
		화곡동 934-14	158.7		
		화곡동 934-15	148.4		
	B21	화곡동 934-35	6.0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34-16	139.2		
		화곡동 934-17	176.2		
		화곡동 934-18	150.7		
		화곡동 934-19	155.4		
		화곡동 934-20	150.7		
		화곡동 934-21	89.3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34-22	146.8		
		화곡동 934-41	9.3		
		화곡동 934-23	482.3		
		화곡동 934-24	186.5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화곡동 934 - 25	210.2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화곡동 934 - 26	156.0		
		화곡동 934 - 27	300.8		
		화곡동 934 - 29	171.9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화곡동 934 - 30	140.2		
		화곡동 934 - 36	1.0		
		화곡동 934 - 46	150.7		
		화곡동 934 - 47	141.5		
		화곡동 934 - 49	147.4		
	C8	신월동 456 - 1	167.4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456 - 26	342.7		
		신월동 456 - 2	380.3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456 - 3	160.2		
		신월동 456 - 25	208.9		
		신월동 456 - 4	188.5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456 - 28	188.6		
		신월동 456 - 5	368.0		
		신월동 456 - 8	482.3		
		신월동 456 - 9	92.5		
		신월동 456 - 10	304.4		
		신월동 456 - 11	379.4		
		신월동 456 - 13	228.9		
		신월동 456 - 14	179.2		
이면부	C8	신월동 456 - 15	198.9		
		신월동 456 - 17	7.9		
		신월동 456 - 18	1.0		
		신월동 456 - 19	25.8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월동 456-22	178.7		
		신월동 456-24	171.9		
		신월동 456-27	342.3		
	C9	신월동 457-1	287.0		
		신월동 457-2	605.0		
		신월동 457-4	1767.3		
		신월동 457-5	427.0		
		신월동 457-6	556.9		
		신월동 457-7	208.8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457-8	225.2		
		신월동 457-9	433.6		
		신월동 457-11	227.4		
		신월동 457-12	217.8		
		신월동 457-13	173.6		
		신월동 457-14	182.3		
		신월동 457-15	663.1		
	C10	신월동 458-1	1037.3		
		신월동 458-2	174.9		
		신월동 458-3	844.4		
		신월동 458-7	189.3		
		신월동 458-8	1668.0		
		신월동 458-9	187.8		
	C11	신월동 460-1	213.7		
		신월동 460-2	191.3		
		신월동 460-3	194.7		
		신월동 460-4	195.3		
		신월동 460-5	1265.0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월동 460-11	165.2		
		신월동 460-12	166.7		
		신월동 460-13	160.5		
		신월동 460-14	166.3		
		신월동 460-15	162.5		
		신월동 460-16	165.6		
		신월동 460-17	183.7		
		신월동 460-21	183.6		
		신월동 460-22	183.6		
		신월동 460-23	183.7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460-24	175.5		
		신월동 460-26	175.3		
		신월동 460-27	175.3		
		신월동 460-29	175.2		
		신월동 460-30	220.4		
		신월동 460-31	231.2		
		신월동 460-32	148.7		
		신월동 460-33	147.0		
	C12	신월동 461-3	199.1		
		신월동 461-4	402.6		
		신월동 461-5	533.5		
		신월동 461-6	212.0		
		신월동 461-7	223.8		
		신월동 461-8	214.0		
이면부	C12	신월동 461-13	166.2		
		신월동 461-14	164.3		
		신월동 461-16	154.2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월동 461 - 17	199.1		
		신월동 461 - 18	199.2		
		신월동 461 - 19	199.3		
		신월동 461 - 20	199.3		
		신월동 461 - 21	199.0		
	D3	신정동 872 - 6	872.8		
		신정동 872 - 10	1044.7		
		신정동 872 - 11	922.4		
	D6	신정동 880 - 6	202.9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정동 880 - 7	209.2		
		신정동 880 - 8	439.5		
		신정동 880 - 9	184.5		
		신정동 880 - 10	131.1		
		신정동 880 - 11	144.4		
		신정동 880 - 12	141.8		
		신정동 880 - 13	598.0		
	D7	신정동 881 - 11	222.6		
		신정동 881 - 12	182.2		
		신정동 881 - 13	182.7		
		신정동 881 - 14	752.1		
		신정동 881 - 15	195.0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정동 881 - 19	264.4		
		신정동 881 - 16	1034.5		
	D8	신정동 936 - 1	134.5		
		신정동 936 - 2	113.0		
		신정동 936 - 3	121.2		
		신정동 936 - 4	124.4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정동 936-5	121.0		
		신정동 936-6	124.5		
		신정동 936-7	138.1		
		신정동 936-8	136.2		
		신정동 936-9	134.2		
		신정동 936-10	228.1		
		신정동 936-11	367.5		
		신정동 936-12	97.1		
		신정동 936-14	97.7		
		신정동 936-15	147.8		
		신정동 936-16	115.2		
		신정동 936-17	119.0		
		신정동 936-18	166.1		
		신정동 936-19	186.5		
		신정동 936-20	174.0		
		신정동 936-21	155.1		
		신정동 936-22	126.9		
		신정동 936-23	156.8		
		신정동 936-24	158.6		
		신정동 936-25	131.9		
		신정동 936-26	166.1		
		신정동 936-27	161.0		
		신정동 936-28	116.7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정동 936-29	103.7		
		신정동 936-30	148.0		
이면부	D8	신정동 936-31	116.0		
		신정동 936-32	119.9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D9	신정동 934 - 1	648.5		
		신정동 934 - 2	315.3		
		신정동 934 - 3	200.2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정동 934 - 22	208.9		
		신정동 934 - 23	17.8		
		신정동 934 - 4	583.3		
		신정동 934 - 5	272.7		
		신정동 934 - 6	97.4		
		신정동 934 - 7	152.1		
		신정동 934 - 8	199.0		
		신정동 934 - 9	1081.5		
		신정동 934 - 11	173.4		
		신정동 934 - 12	169.8		
		신정동 934 - 13	170.7		
		신정동 934 - 14	174.7		
		신정동 934 - 15	165.5		
		신정동 934 - 16	288.5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신정동 934 - 17	5.7		
		신정동 934 - 20	562.2		
		신정동 934 - 25	317.0		
	D10	신정동 874 - 1	313.1		
		신정동 874 - 2	244.5		
		신정동 874 - 3	255.1		
		신정동 874 - 4	1892.8		
		신정동 874 - 5	326.1		
		신정동 874 - 6	874.3		
	D11	신정동 875 - 10	184.0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정동 875-11	184.8		
		신정동 875-12	174.6		
		신정동 875-13	149.7		
		신정동 875-14	190.4		
		신정동 875-15	172.4		
		신정동 875-16	210.6		
	D12	신정동 876-2	1713.9		
		신정동 876-3	176.6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정동 876-20	176.6		
		신정동 876-4	175.8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정동 876-22	176.0		
		신정동 876-5	155.2		
		신정동 876-6	158.2		
		신정동 876-7	157.4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정동 876-8	154.7		
		신정동 876-9	202.2		
		신정동 876-10	201.9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정동 876-11	158.2		
		신정동 876-12	162.4		
		신정동 876-13	148.2		
		신정동 876-14	164.4		
		신정동 876-15	156.4		
		신정동 876-16	141.4		
		신정동 876-17	262.8		
		신정동 876-24	324.0		
		신정동 876-25	275.6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이면부	D13	신정동 882 - 1	139.4		
		신정동 882 - 2	145.1		
		신정동 882 - 3	120.5		
		신정동 882 - 4	119.2		
		신정동 882 - 5	138.6		
		신정동 882 - 6	140.2		
		신정동 882 - 7	291.0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신정동 882 - 28	3.9		
		신정동 882 - 9	170.4		
		신정동 882 - 10	176.7		
		신정동 882 - 11	184.8		
		신정동 882 - 12	157.3		
		신정동 882 - 13	165.7		
		신정동 882 - 14	158.0		
		신정동 882 - 15	141.4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정동 882 - 16	144.3		
		신정동 882 - 17	158.2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정동 882 - 22	4.5		
		신정동 882 - 18	159.8		
		신정동 882 - 19	126.1		
	E4	신월동 237 - 19	155.0		
		신월동 237 - 20	157.2		
		신월동 237 - 21	142.2		
	E5	신월동 237 - 1	153.5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
		신월동 237 - 24	7.9		
		신월동 237 - 2	198.7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월동 237-3	295.7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37-5	144.6		
		신월동 237-6	136.8		
		신월동 237-7	138.5		
		신월동 237-8	145.9		
		신월동 237-9	129.3		
		신월동 237-10	173.5		
		신월동 237-11	134.5		
		신월동 237-12	124.5		
		신월동 237-13	133.4		
		신월동 237-14	127.0		
		신월동 237-15	141.1		
		신월동 237-16	140.0		
		신월동 237-17	144.4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37-18	145.9		
	E6	신월동 236-11	122.2		
		신월동 236-12	370.5		
		신월동 236-13	156.3		
		신월동 236-14	133.6		
		신월동 236-15	131.6		
		신월동 236-16	114.0		
		신월동 236-17	110.8		
	E7	신월동 239-1	170.3		
		신월동 239-2	209.9		
		신월동 239-3	192.4		
		신월동 239-4	205.4		
		신월동 239-5	375.0		
		신월동 239-6	208.2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이면부	E7	신월동 239-7	154.6		
		신월동 239-8	233.9		
		신월동 239-11	180.6		
		신월동 239-12	215.4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39-13	124.0		
		신월동 239-14	333.4		
		신월동 239-15	212.9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39-16	180.2		
	E8	신월동 241-1	150.6		
		신월동 241-2	159.9		
		신월동 241-3	160.9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41-4	161.0		
		신월동 241-5	162.2		
		신월동 241-6	196.5		
		신월동 241-7	184.4		
		신월동 241-8	211.0		
		신월동 241-9	516.8		
		신월동 241-11	199.0		
		신월동 241-12	208.6		
		신월동 241-13	217.1		
		신월동 241-14	293.1		
		신월동 241-15	195.1		
		신월동 241-16	136.8		
		신월동 241-17	110.2		
		신월동 241-18	218.1		
		신월동 241-20	131.1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41-21	146.3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월동 241-22	168.6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41-23	150.4		
		신월동 241-39	11.7		
		신월동 241-24	347.5		
		신월동 241-25	169.9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41-37	180.0		
		신월동 241-26	176.5		
		신월동 241-27	165.4		
		신월동 241-28	168.2		
		신월동 241-29	166.8		
		신월동 241-30	163.6		
		신월동 241-31	170.2		
		신월동 241-32	171.3		
		신월동 241-33	149.0		
		신월동 241-34	160.3		
		신월동 241-35	179.8		
	E9	신월동 236-1	166.7		
		신월동 236-2	175.0	공동개발(지정)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36-24	173.3		
		신월동 236-3	164.5		
		신월동 236-4	170.0		
		신월동 236-5	170.7		
		신월동 236-6	164.9		
		신월동 236-7	158.3		
		신월동 236-8	207.3		
		신월동 236-9	105.7		
		신월동 236-10	111.0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이면부	E9	신월동 236-18	110.0		
		신월동 236-19	110.0		
		신월동 236-20	192.1		
		신월동 236-21	154.7		
		신월동 236-22	188.9		
		신월동 236-23	188.4		
		신월동 236-25	173.6		
		신월동 236-26	161.3		
	E10	신월동 242-12	126.2		
		신월동 242-13	142.9		
		신월동 242-14	130.0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42-15	118.9		
		신월동 242-16	158.0		
		신월동 242-17	201.2		
		신월동 242-18	156.9		
		신월동 242-19	205.5		
		신월동 242-20	174.3		
		신월동 242-21	193.0		
		신월동 242-22	148.7		
		신월동 242-23	171.2		
		신월동 242-24	152.2		
		신월동 242-25	150.6		
		신월동 242-26	154.3		
		신월동 242-27	122.7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42-49	23.0		
		신월동 242-28	170.8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42-29	121.7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월동 242 - 30	112.2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42 - 31	130.8		
		신월동 242 - 32	139.0		
		신월동 242 - 33	125.5		
	E11	신월동 242 - 1	154.5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42 - 3	149.1		
		신월동 242 - 2	140.8		
		신월동 242 - 4	148.8		
		신월동 242 - 5	185.3		
		신월동 242 - 6	176.8		
		신월동 242 - 7	170.8		
		신월동 242 - 8	285.9		
		신월동 242 - 9	304.0		
		신월동 242 - 34	120.0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42 - 37	168.0		
		신월동 242 - 35	116.2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42 - 36	166.0		
		신월동 242 - 38	161.8		
		신월동 242 - 39	170.4		
		신월동 242 - 40	173.2		
		신월동 242 - 41	134.7		
		신월동 242 - 42	195.0		
	E12	신월동 243 - 1	159.0		
		신월동 243 - 2	171.8		
		신월동 243 - 3	165.0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43 - 27	174.8		
		신월동 243 - 4	158.7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이면부	E12	신월동 243-5	309.7		
		신월동 243-7	153.6		
		신월동 243-8	151.5		
		신월동 243-9	275.0		
		신월동 243-11	144.3		
		신월동 243-12	120.6		
		신월동 243-13	127.4		
		신월동 243-14	148.4		
		신월동 243-15	162.4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43-16	116.3		
		신월동 243-17	113.7		
		신월동 243-18	150.9		
		신월동 243-19	144.8		
		신월동 243-20	168.0		
		신월동 243-21	176.3		
		신월동 243-22	170.5		
		신월동 243-23	144.3		
		신월동 243-24	144.6		
		신월동 243-25	144.8		
		신월동 243-26	144.0		
		신월동 243-32	176.3		
		신월동 243-33	181.0		
		신월동 243-34	207.0		
		신월동 243-35	187.8		
		신월동 243-36	203.6		
		신월동 243-43	580.1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E13	신월동 243-45	159.0		
		신월동 243-28	135.8		
		신월동 243-29	134.0		
		신월동 243-30	139.1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43-31	125.1		
	E14	신월동 218-8	196.9		
		신월동 218-9	179.1		
		신월동 218-10	92.7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18-11	74.2		
		신월동 218-12	712.0		
		신월동 218-15	195.3		
		신월동 218-17	827.1		
		신월동 218-21	190.2		
		신월동 218-22	192.1		
		신월동 218-40	255.3		
		신월동 218-41	270.7		
		신월동 218-45	106.6		
		신월동 218-46	218.9		
		신월동 218-49	162.6		
	E15	신월동 218-1	177.1		
		신월동 218-2	177.7		
		신월동 218-3	179.1		
		신월동 218-4	178.0		
		신월동 218-5	278.2		
		신월동 218-6	179.9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18-7	205.2		
		신월동 218-23	176.6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월동 218-26	174.8		
이면부	E15	신월동 218-24	163.8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18-25	144.1		
		신월동 218-27	275.2		
		신월동 218-28	176.2		
		신월동 218-29	176.3		
		신월동 218-30	208.7		
		신월동 218-31	173.7		
		신월동 218-32	169.2		
	E16	신월동 1032	5691.0		
	F4	신월동 413-1	412.8		
		신월동 413-2	113.3		
		신월동 413-3	595.2		
		신월동 413-4	299.0		
		신월동 413-5	677.0		
		신월동 413-6	303.1		
		신월동 413-7	208.8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413-12	193.1		
		신월동 413-8	181.8		
		신월동 413-9	9.6		
		신월동 413-10	637.6		
		신월동 413-11	626.5		
		신월동 413-13	231.8		
		신월동 413-14	297.1		
		신월동 413-15	311.3		
		신월동 413-16	294.9		
		신월동 413-19	637.6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F5	신월동 414 - 1	297.2		
		신월동 414 - 10	297.1		
		신월동 1027	9111.4		
	F6	신월동 416 - 1	455.2		
		신월동 416 - 2	141.8		
		신월동 416 - 3	908.2		
		신월동 416 - 4	1037.9		
		신월동 416 - 5	989.2		
		신월동 416 - 6	141.8		
	F7	신월동 1039	6143.1		
신월IC 주변부	E1	신월동 217 - 1	324.5		
		신월동 217 - 2	2454.0		
		신월동 217 - 5	409.9		
		신월동 217 - 8	2259.3		
		신월동 217 - 13	620.6		
		신월동 217 - 14	274.1		
		신월동 217 - 16	607.8		
		신월동 217 - 17	483.3		
		신월동 217 - 19	200.8		
		신월동 217 - 20	264.3		
		신월동 217 - 21	2301.4		
		신월동 217 - 23	78.5		
		신월동 217 - 24	242.5		
		신월동 217 - 25	795.1		
		신월동 217 - 27	591.3		
		신월동 217 - 43	271.4		
		신월동 217 - 44	271.4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월IC 주변부		신월동 217-45	12.5		
		신월동 217-46	200.8		
	E2	신월동 244-1	634.2		
		신월동 244-2	640.3		
		신월동 244-3	432.3		
		신월동 244-4	226.9		
		신월동 244-5	442.3		
		신월동 244-6	566.5		
		신월동 244-7	208.2		
		신월동 244-8	649.7		
		신월동 244-12	649.6		
	E3	신월동 238-1	222.2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개발 필지
		신월동 238-21	165.4		
		신월동 238-2	171.8		
		신월동 238-3	681.2		
		신월동 238-4	719.5		
		신월동 238-5	310.2		
		신월동 238-6	959.9		
		신월동 238-7	694.5		
		신월동 238-8	165.3		
		신월동 238-9	412.8		
		신월동 238-11	195.7		
		신월동 238-12	425.3		
		신월동 238-13	213.7		
		신월동 238-14	493.2		
		신월동 238-15	165.3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월동 238-17	165.3		
		신월동 238-18	165.3		
		신월동 238-20	216.4		
		신월동 238-22	194.3		
		신월동 238-23	194.1		
		신월동 238-24	177.6		
		신월동 238-25	176.9		
		신월동 238-38	310.3		
	F1	신월동 410-1	527.6		
		신월동 410-2	92.7		
		신월동 410-3	177.5		
		신월동 410-4	111.5		
		신월동 410-5	1205.1		
		신월동 410-7	388.3		
		신월동 410-8	352.4		
		신월동 410-9	548.7		
		신월동 410-10	616.1		
		신월동 410-11	711.8		
		신월동 410-15	564.9		
		신월동 410-16	181.6		
		신월동 410-26	617.4		
		신월동 1068	1990.3		
	F2	신월동 411-2	333.0		
		신월동 411-3	521.5		
		신월동 411-5	440.8		
		신월동 411-6	891.3		
		신월동 411-7	434.1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신월동 411-8	673.8		
		신월동 411-10	885.5		
		신월동 411-11	251.4		
		신월동 411-12	251.2		
		신월동 411-18	332.9		
신월IC 주변부	F3	신월동 412-1	839.3		
		신월동 412-2	625.2		
		신월동 412-3	393.6		
		신월동 412-4	304.4		
		신월동 412-24	304.4		
		신월동 412-5	537.4		
		신월동 412-6	261.5		
		신월동 412-7	416.0		
		신월동 412-8	598.8		
		신월동 412-10	723.9		
		신월동 412-11	261.4		
		신월동 412-12	261.4		
		신월동 412-13	289.0		
		신월동 412-14	289.0		
		신월동 412-18	123.9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용도계획

1) 불허용도

구 분		불 허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전 층	1 층	
공원연접부, 유통상가	A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17호 공장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제25호 발전시설 ●제28호 장례시설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자목 중 금융업소(ATM 제외)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 중 금융업소(ATM 제외) ●제6호 종교시설 ●제14호 업무시설 나목1) 중 금융업소(ATM 제외)	
신월 IC 주변부	B		-	
이면부	C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17호 공장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제25호 발전시설 ●제28호 장례시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지구에서 제한되는 건축물 및 시설 등은 입지가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인 경우에도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불허용도는 입지할 수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금지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음

※ 상이한 용도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공동개발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용도제한규정 적용

2) 권장용도

구 분		권 장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전 층	1 층	
공원연접부	A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서점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게임제공업 제외)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건축자재 제외)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구 분		권 장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전 층	1 층	
신원IC 주변부	B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서점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게임제공업 제외)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유통상가	C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잡화, 의류, 완구, 의료기기)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서점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게임제공업 제외)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예시용도 민간부문시행지침 참조

※ 전층 권장용도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20%이상(주차장 제외) 설치 시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봄

※ 1층 권장용도는 1층 벽면길이 및 1층 바닥면적(주차장제외)의 1/2이상 설치 시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봄

나.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계획

1) 건폐율 계획

구 분		건 폐 율	비 고
구역전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2)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 준	허 용	상 한	
구역전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이하	250%이하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계획 실현 시 (제2종(7층이하), 제2종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230%/250%이하

■ 상한용적률 산정식

완화조건	산식	비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시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1.0 \times \alpha \text{건축물})$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α 토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α 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면적 X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 / 용적률을 완화 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 환산 부지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친환경 건축물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0.7 \times (\sum \text{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beta)))$ ※ 서울시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table><tr><th colspan="6">① ZEB 인증</th><th colspan="3">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th></tr><tr><td>ZEB등급</td><td>ZEB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d rowspan="2">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인증 </td><td rowspan="2">최우수 (그린1등급)</td><td rowspan="2">우수 (그린2등급)</td></tr><tr><td>완화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tr><td colspan="6">※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td><td>1+등급</td><td>9%</td><td>6%</td></tr><tr><td colspan="6"></td><td>1 등급</td><td>6%</td><td>3%</td></tr><tr><th colspan="6">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th><th colspan="3">④ 장수명주택인증</th></tr><tr><td colspan="2">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 이상</td><td>20% 이상</td><td>25% 이상</td><td></td><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tr><td colspan="2">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d></td><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table> ※ ① 및 ②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①~③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0.7 \times (\sum ① \sim ③) \geq 15\% \Rightarrow 15\%$ 적용)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후 시행 ※ 적용대상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임	① ZEB 인증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완화비율	15%	14%	13%	12%	11%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1+등급	9%	6%							1 등급	6%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④ 장수명주택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5%	10%	15%		완화비율	15%	10%
① ZEB 인증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완화비율	15%	14%	13%	12%	11%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1+등급	9%	6%																																																															
						1 등급	6%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④ 장수명주택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5%	10%	15%		완화비율	15%	10%																																																															

다. 건축물 높이계획

1) 높이계획

구분		기준높이	최고높이	비고
간선변 (공원연접부, 신월IC 주변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30m이하	40m이하	· 기준높이 · 최고높이의 약 0.8배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	35m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25m이하	
기존건축물 (아파트)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m이하	· 기존건축물 특례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내 특별계획구역 계획수립 시 해당구간의 높이계획 적용

■ 완화항목

구분	공원연접부 완화높이	비고
건축지정선	2m	-
공공보행통로	2m	위치지정
공개공지	2m	위치지정
건축물분동	3m	-
수평분할, 입면분절	3m	-
권장용도	2m	-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내 특별계획구역 계획수립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완화 중복 적용 불가

※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 설치시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위치지정 되지 않더라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높이완화 가능

라. 건축물 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형태·외관 등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1층 벽면(규제)	● 1층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 설치 및 셔터 설치 시 투시형 셔터 설치	공원연접부
	개구부(권장)	● 개구부는 공원에 접한 가로에 면하여 배치 권장	공원연접부
	1층 바닥높이(규제)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구역 전체
	1층 수평분할요소(권장)	● 공원변 1층부는 원도우존, 차양존(차양시설), 사인존(옥외광고물)을 적용토록 계획 ● 사인존(옥외광고물)은 바닥에서부터 높이 3~4m사이, 차양존(차양시설)은 높이 2.4~3m 사이 조성 권장	공원연접부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필로티 설치(권장)	●공원연접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설치 지양, 부득이한 경우 공원에서 보이지 않게 후면부에 설치 권장 (건축물 수평 투영면적의 50% 미만으로 제한)	공원연접부
	개별 점포 복원(권장)	●공원변 점포당 전면복원은 가급적 10m미만으로 권장하되 입면분절 요소 운영	공원연접부
	건축물 분동(권장)	●공원변 신축건축물은 가로변 접하는 부분의 폭원이 30m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 ●다만 30m를 초과할 경우 3층이상의 상층부는 30m 이내 분동, 두동 간 거리는 3m이상 이격 배치 권장	공원연접부
건축물 외관	재료(권장)	●외벽은 원재료의 질감을 살릴 수 있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 사용	구역 전체
		●공원변 건축물은 목재, 콘크리트, 유리 등 물성이 드러나는 소재를 주외장재료로 사용을 권장한다.	공원연접부
	색채(권장)	●외벽면의 색채는 서울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채도, 저명도 사용을 권장	구역 전체
		●유리를 제외한 모든 외장재료는 무채색계열 우선 사용을 권장 한다. ●다만, 소재색(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가지는 색채/물성 자체의 색), 재료의 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재료 사용시에는 무채색계열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사용을 권장한다.	공원연접부
	지붕(권장)	●옥상 및 지붕 상부에 급수시설(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 통신설비 등 유사 구조물 설치 지양하되, 설치 시 건축물과 조화로운 디자인의 차폐시설 설치	구역 전체
	야간조명(권장)	●공원변은 투시형 벽면설치시 내·외부조명 설치 권장	공원연접부
기타 사항	담장(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 담장 또는 녹화 권장	구역 전체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규제)	●건축물과의 이질감 심한 옥외 광고물 규제 및 통합간판 설치 유도 권장	구역 전체
	옥상녹화, 자연지반 보존 등(권장)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구역 전체

※ “공원연접부” 라 함은 국회대로 지상부 공원화구간과 연접한 대지를 의미함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구 분	적 용 지 역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국회대로변, 강서로변 (공원연접부 제외)	●건축선 후퇴 부분	●보도형
	공원연접부	●건축선 후퇴 부분	●보도형
	중로변	●건축선 후퇴 부분	●보도형
	이면도로변	●건축선 후퇴 부분	●차도형
공개공지	공원연접부	●서울시 건축조례 상 공개공지 설치 대상은 공개공지 설치 ●위치지정 5개소	●주요결절부 휴게공간 확보
공공보행통로	공원연접부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위치지정 7개소 (공공보행통로 3m)	●공원 접근성 확보

나. 기타사항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지정선	공원연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여 지정	●1,2층 외벽면의 50%이상 접해야 함
건축한계선	국회대로변, 강서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여 지정	●공원연접부 제외
	중로변 (12m이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후퇴하여 지정	-
	이면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하여 지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	전구간	●85개소	●공원변에서의 차량출입 최소화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동주차 출입구	국회대로변	●31개소	-

4.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계획기준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명 칭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위 치		●양천구 신월2동, 신정4동 일대	결정도 참조
지정기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주민제안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 최소개발규모 1,000㎡이상 할 것 (단, 개발규모 10% 범위 내 심의를 통해 조정가능) - 공원변 차량출입 및 공원변 필로티주차장 설치 지양 (부득이한 경우, 공원변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설치) - 부정형·돌출형 개발 지양 -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1,000㎡ 이상으로, 개발 후 가로구역의 잔여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함 (단, 1,000㎡의 10%이내 미달 시,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	●부정형 필지 지양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공원연접부 : 건축지정선 3m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1.5m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전면공지	●도로의 보도구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으로 조성	●보도형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조성 ●위치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행결절점 및 전면도로 각각부, 전면도로변에 조성	●위치지정 : 2개소
	공공보행통로	●위치지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조성 ●위치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대로 공원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주요 보행동선에 조성	●위치지정 : 3개소
공공시설계획		●지역 필요시설 우선 도입 검토(공공시설 확보비율 이상 설치) : 공영주차장, 문화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 건축물 내 공공시설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구 관련 부서 및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구체적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제2종(7층)→제3종 : 15%이상 ●제2종→제3종 : 10%이상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용도	●건축물 용도계획과 동일			-				
		권장 용도	<table><tr><th>구 분</th><th>전 층</th><th>1 층</th></tr><tr><td>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전구역</td><td>●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서점 ●판매시설 중 상점(개입제공업 제외)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td><td>●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 (건축자재 제외) ●제1·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제과점</td></tr></table>	구 분	전 층	1 층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전구역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서점 ●판매시설 중 상점(개입제공업 제외)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 (건축자재 제외) ●제1·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구 분	전 층	1 층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전구역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서점 ●판매시설 중 상점(개입제공업 제외)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 (건축자재 제외) ●제1·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폐율		●50%이하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200%/230%/250%이하			-				
	최고높이		●공원연접부 : (기준) 30m 이하 / (최고) 40m 이하 ●이면부 : 35m 이하			-				
교통처리계획		●공원 전면부에서의 차량출입 불허			-					

※ 개발규모가 1,000㎡ 이상 개발되는 대지에 한하여, 향후 주민제안을 통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가능

※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체계 등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수립기준을 따름

※ 공공시설계획의 공공시설 확보 비율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르며, 관련 기준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름

※ 높이완화 항목은 건축물 높이계획에 따름

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1)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대지면적} × 0.2	• 1,2층 외벽면이 50% 이상 접한 경우
	건축지정선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대지면적} × 0.5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전체면적) × 0.2	•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권장용도(1층)	• 기준용적률 × 0.04	•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시
건축물 형태	1층 수평분할, 투시형 벽면설치	• 기준용적률 × 0.02	• 1층 전면부 수평분할 • 1층 전면부 벽면적 합계의 50% 이상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1.0	· 공익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 장애인·노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및 공공청사, 기타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에서 인정하는 시설

2) 친환경 인센티브 (전체의 30%이상)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친환경	물환경	빗물 이용시설	· 기준용적률× 0.02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빗물침투량(ton/hr)의 합 ≥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 ×0.02이상인 되도록 설치
		중수도	· 기준용적률× 0.02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자연지반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 × 0.1	· 자연토양 및 투수성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 × 0.05	· 법정 조정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0.05	· 기준용적률×0.05 이내
	대기 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	· 기준용적률× 0.02	[주거 : 300세대 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시 [비주거: 연면적 1만㎡ 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시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 외
		재활용 보관시설	· 기준용적률× 0.02	· 일정지역 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활용5종 분리수거함 · 의무기준의 120% 이상 설치(의무기준이 없는 경우 최소 보관시설을 대지 내 확보하는 경우 9.9㎡이상 설치)
	자원 순환	녹색 건축자재	· 기준용적률× 0.02	· 주요 건축부재 6개 중 2개 이상에 녹색건축자재 제품을 해당부재 총사용량의 50% 이상 사용한 경우 - 콘크리트, 골재, 철근, 형강, 단열재, 창호 등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 사용승인시 자재 사용승인서 제출 • 녹색건축자재란,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제품을 의미 ① 환경성선언제품(EPD), ② 저탄소자재, ③ 자원순환자재, ④ 유해물질저감자재 등 • 재활용건축자재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 불가
	열환경	생태면적률	• 기준용적률× (생태면적률인정면적/대지면적)× 0.2	•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은 미적용 • 자연지반, 옥상녹화, 녹색주차장과 중복 적용 불가
	생활 환경	유니버설 디자인 (BF인증)	• 기준용적률× 0.02	• 의무사항 : 일반등급 초과시 • 비의무사항 : 일반등급 취득시

※ 친환경부문의 주거, 비주거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름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씬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III.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 - 2133 - 8386), 강서구 도시계획과(☎ 02 - 2600 - 6846) / 양천구 도시계획과(☎ 02 - 2620 - 3509)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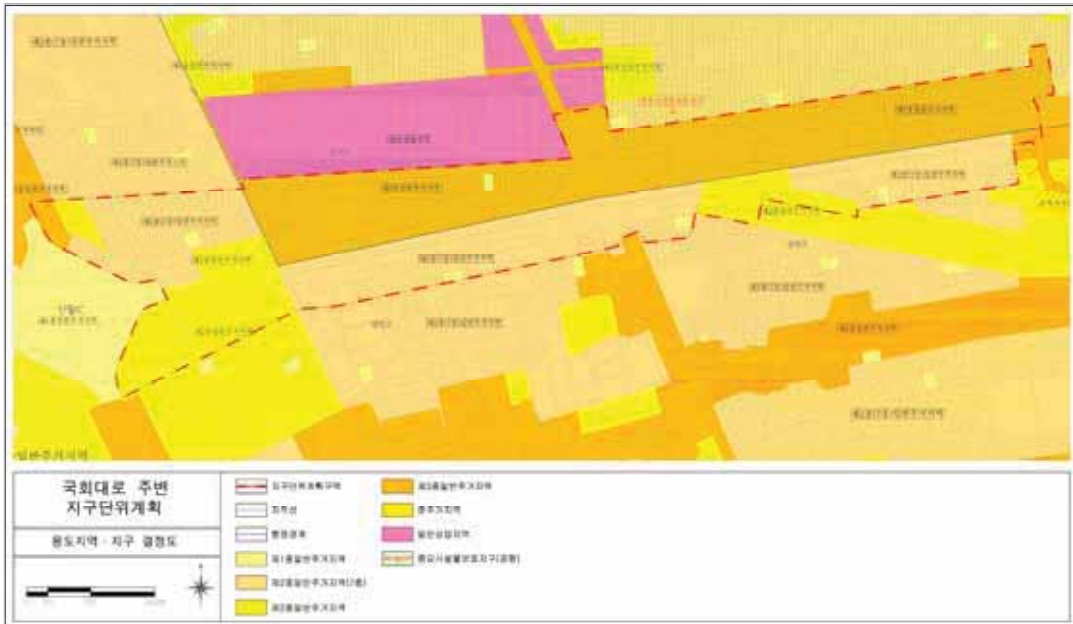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및 서울 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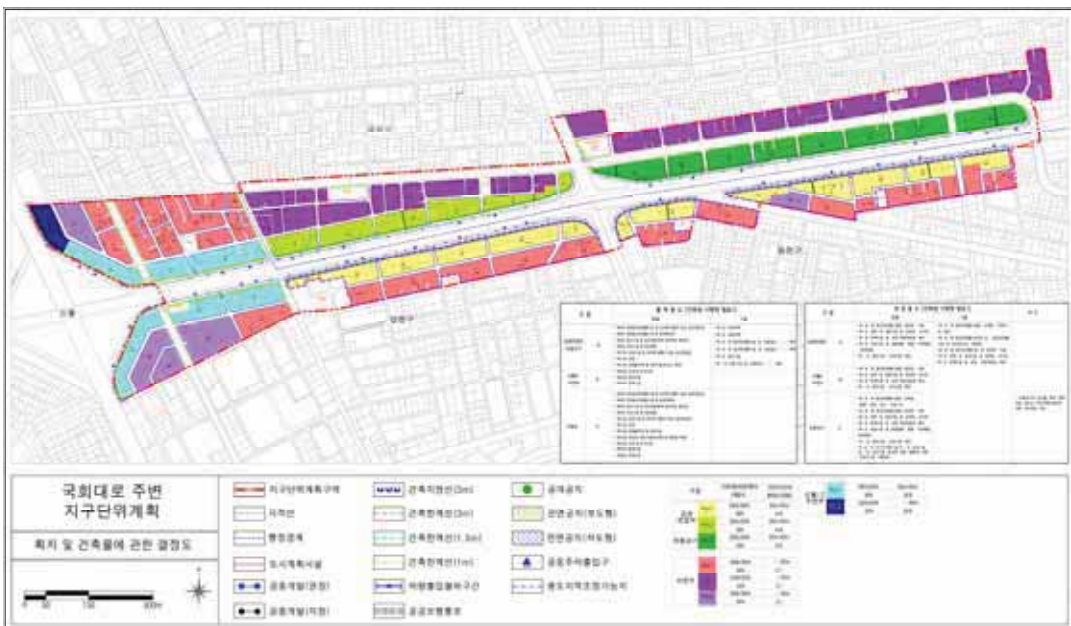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72호

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2 - 414호로 열람공고 한 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3.29.)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3 - 685호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청량리 광역중심기능을 강화하고, GTX-B,C 노선 및 광역환승센터 조성 등 주변 지역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II.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①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370,774.3	감) 12,450	358,324.3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준지관리구역 제척

I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	-	증) 331,246	331,246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 사유
신설	동대문구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	331,246	- 청량리역 GTX-B,C노선 신설 및 광역환승센터 조성 등 광역교통중심지 위상 제고에 대해 대응하고, 청량리역 ~ 홍릉 바이오연구단지를 연결하는 광역중심 기능 확보 - 저이용 유휴부지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개발방안 수립 - 공동주택 ·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III.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①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31,246	-	331,246	100.0	
소 계		288,830	-	288,830	87.2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4,848	-	54,848	16.6	
	제2종일반주거지역	14,238	-	14,238	4.3	
	제3종일반주거지역	219,744	-	219,744	66.3	
일반상업지역		42,416	-	42,416	12.8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방화지구	청량리동 176일대	26,995	건고시 783호 (64.02.12.)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29~35 (30)	보조 간선	1,400 (629)	신설동 제1호광장	제기동	일반 도로	총고시722 (36.12.26)	왕산로
기정	대로	3	9	25~30 (25)	보조간선	1,600 (757)	제기동	청량리동	일반 도로	건고시177 (62.12.8)	제기로
기정	대로	3	11	26~35 (-)	보조간선	1,900 (14)	답십리동 493 - 14	전농동	일반 도로	총고시772 (36.12.26)	전농로
기정	중로	1	145	20	국지 도로	1,120 (362)	중로2 - 53 제기동 857	청량리 대2 - 2	일반 도로	건고시436 (72.10.12.)	
기정	중로	1	223	20~28 (25)	집산도로	1,200 (672)	청량리동 272	청량리동 205 - 719	일반 도로	-	흥릉로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56	청량리동 447 - 20	청량리동 442 - 17	일반 도로	서고시95 - 98 (10.11.25)	
변경	중로	3	1	12	국지 도로	56	청량리동 447 - 20	청량리동 442 - 17	일반 도로	서고시95 - 98 (10.11.25)	도로선형 정정
기정	소로	1	-	10~12	국지 도로	400	청량리동 341	청량리동 214	일반 도로	서고시78 - 235 (78.05.25)	
변경	소로	1	-	10~12	국지 도로	400	청량리동 341	청량리동 214	일반 도로	서고시78 - 235 (78.05.25)	도로선형 정정
기정	소로	1	1	8~10 (10)	국지 도로	235 (36)	청량리동 57 - 2	청량리동 836	일반 도로	서고시504 (89.11.24)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8	청량리동 215 - 33	청량리동 213	일반 도로	서고시95 - 98 (95.04.11)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18	청량리동 215 - 33	청량리동 213	일반 도로	서고시95 - 98 (95.04.11)	도로선형 정정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52	청량리동 442 - 4	청량리동 442 - 17	일반 도로	서고시3012 (10.11.25)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39	주차장	청량리동 51-4,5	688.5	-	688.5	동대문구고시 1998-65호 (1998.08.20.)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원	소공원	청량리동 445-35번지 일대	2,099.92	-	2,099.92	서고시 2010-420호 (2010.11.25)	청량리 8구역

(2) 공공공지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공지		청량리동 57-19번지	396.4	-	396.4	구고시 1999-10호 (1999.04.10.)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청사	청량리동 57-6일대	791.0	-	791.0	동대문구 고시 2007-87호 (2007.09.13.)	청량리1동 주민센터
기정	-	공공청사	청량리동 235-5	2,982.2	-	2,982.2	서고시 1979-35호 (1979.01.29.)	동대문 세무서

라.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하수도	전농동 597-70,69	B=4m, L=25m	서고시 1988-1003호	

4.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가. 친환경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 내용	비고
물환경	중수도 시스템	전구역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주차장 설치 권장	
	빗물관리시설		- 물의 순환적인 이용 측면에서 우수를 처리하여 재사용할 것을 권장 「서울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적합하게 설치	
기후 대기 환경	열환경	전구역	- 폭염과 한파에 대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쿨존' 설치 검토 - 투수블록, 차열투수블록, 쿨루프, 옥상녹화, 기후대응형 정거장 등	
	대기질		- 건물 난방시설은 친환경 기종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기종으로 유도 - 대규모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미세먼지 저감시설(미스트분사장치 등) 설치 검토	
	온실가스 저감		- 저공해 자동차 주차공간 및 전기차 충전기 설치 권장 - 에너지비용 절감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설계 검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반영 권장 -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인증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득할 것	

나. 방재안전계획

구분		계획 내용	비고
방화지구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

②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에 관한 계획

■ 가구 결정조서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1	3,492.6	7	2,195.6	13	7,525.7
2	11,044.7	8	5,433.6	14	7,063.3
3	7,176.0	9	56,785.0	15	12,524.1
4	4,317.7	10	53,264.2	16	33,083.0
5	3,605.1	11	8,787.3	17	16,071.4
6	2,800.2	12	1,346.0	18	11,472.97
19	489.9				

나. 획지에 관한 계획

(1) 최대개발규모

■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주거지역	1,000㎡ 미만	평균 필지규모(약 350㎡)의 약 3배이하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① 기존 대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② 기개발된 일단의 대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③ 공동개발(권장·지정)에 의해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2) 획지 결정조서

■ 공동개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지정)	도면 표기	• 열람공고일 당시 동일 소유자 및 기 공동개발 된 필지인 경우(건축물 대장 기준)	
공동개발(권장)		• 적정개발규모 유도 및 대지형태 정형화	
자율적 공동개발	도면 표기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대지와 연결한 대지의 토지 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되도록 계획하며, 아래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이 불가하나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 공동개발되는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이거나,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 불허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정비구역 등에 의해 부분편입된 필지는 구적면적을 기준으로 함

※ 소재지 : 청량리동(가구번호 1~17,19), 전농동(가구번호 18)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1	249대	165.6	3,492.6	왕산로 전면부 특별계획구역 (3,492.6㎡)	
	250대	311.7			
	251대	28.4			
	252대	109.1			
	255 - 1대	136.5			
	255 - 2대	206.6			
	256대	249.6			
	258대	78.3			
	259도	24.5			
	260대	222.8			
	262대	57.2			
	263대	121.0			
	264대	59.5			
	265대	1.3			
	266대	74.7			
	268대	184.8			
	269대	9.6			
	271대	162.3			
	272대	82.0			
	273대	223.5			
	275대	1.0			
	276대	1.7			
	277대	117.4			
	278대	35.7			
	279대	99.5			
	280대	49.6			
	281대	115.1			
	282대	5.6			
	283대	89.3			
	284 - 1대	135.2			
	284 - 2대	106.1			
	284 - 3대	13.2			
	284 - 4대	42.3			
	284 - 6대	9.3			
	284 - 8대	162.6			
2	235 - 2대	4,501.8	11,044.7	미주상가 특별계획구역 (11,044.7㎡)	
	235 - 4대	6,542.9			
3	235 - 5대	2,982.0	7,176.0	-	동대문세무서
	235 - 6대	4,194.0		-	청량리역 힐스테이트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4	50대	217.8	4,317.7	왕산로 특별계획가능구역 (4,317.7㎡)		
	50 - 1대	151.6				
	50 - 2대	351.2				
	50 - 3대	172.3				
	50 - 4대	49.8				
	50 - 5대	13.1				
	50 - 6대	167.5				
	50 - 7대	208.6				
	50 - 9대	258.4				
	50 - 11대	177.8				
	50 - 12대	188.3				
	50 - 13대	110.3				
	50 - 14대	309.8				
	50 - 17대	142.8				
	50 - 18대	184.6				
	50 - 19대	153.6				
	50 - 20대	135.6				
	50 - 33대	14.5				
	50 - 21대	91.9				
	50 - 22대	168.5				
	50 - 23대	125.0				
	50 - 24대	148.5				
	50 - 25대	76.3				
	50 - 28대	138.8				
	50 - 27대	262.0				
	50 - 30도	170.6				
	50 - 31도	98.7				
	50 - 32도	29.8				
5	40 - 9대	144.6	3,605.1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40 - 10대	64.2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40 - 11대	23.2		공동개발 지정		
	40 - 12대	226.8				
	40 - 13대	182.2				
	40 - 14대	115.1				
	40 - 17대	596.1				
	40 - 25대	14.9				
	40 - 26대	205.5				
	40 - 15대	145.2				
	40 - 30대	70.0				
	40 - 16대	419.8				
	40 - 31대	19.2				
	40 - 8대	192.0		-		
	40대	349.9		-		
	40 - 2대	160.9		-		
	40 - 3대	79.5		공동개발 권장		
	40 - 4대	118.6				
	40 - 5대	50.8				
5	40 - 6대	9.8	3,605.1	공동개발 권장		
	40 - 7대	87.2				
	40 - 20대	126.2		-		
	40 - 21대	183.5		-		
	40 - 24대	19.9		-		
6	30대	408.6	2,800.2	공동개발 지정		
	30 - 18대	98.2				
	30 - 3대	54.3		공동개발 지정		
	30 - 4대	60.2				
	30 - 6대	852.3		공동개발 권장		
	30 - 25대	16.7				
	30 - 8대	70.3		공동개발 권장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30 - 9대	116.3				
	30 - 24대	5.9				
	30 - 10대	120.0				
	30 - 11대	98.3		공동개발 권장		
	30 - 12대	220.4		공동개발 권장		
	30 - 13대	118.0				
	30 - 1대	325.6		-		
	30 - 2대	134.8		-		
	30 - 17대	100.3		-		
7	31대	2,151.6	2,195.6	공동개발 권장		청량리 순복음교회
	31 - 1대	44.0				
8	285대	20.5	5,433.6	공동개발 권장		
	285 - 1대	14.2				
	285 - 2대	13.6				
	285 - 3대	5.6				
	285 - 4대	3.3				
	286 - 1대	610.6				
	288대	50.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289대	74.0				
	287대	22.2		-		
	293대	128.6		공동개발 권장		
	298대	48.6				
	296대	140.5		공동개발 지정		
	299대	47.3				
	291대	63.1		공동개발 지정		
	292 - 1대	127.6				
	292 - 2대	17.2				
	295대	80.7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300대	88.3		공동개발 지정		
	301대	236.7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302대	48.6				
	304대	128.9				
	305대	163.3				
	303대	86.9		-		
8	308대	51.6	5,433.6	공동개발 지정		
	309대	48.3				
	310대	202.6				
	311대	384.8				
	313대	104.1				
	314대	99.2				
	315대	168.3		공동개발 권장		
	316대	171.2		-		
	317대	1,982.3				
9	235 - 1대	24,086.8	56,785.0	미주아파트 특별계획구역 (56,785.0㎡)		
	235 - 11대	32,139.2				
	341	559.0				
10	41종	1,530.7	53,264.2	-		교회
	32대	88.0		공동개발 권장		
	32 - 1대	85.6		-		
	32 - 2대	94.0		-		
	32 - 3대	95.7		-		
	32 - 4대	92.6		-		
	32 - 5대	71.1		공동개발 지정		
	32 - 6대	133.1				
	32 - 7대	99.6				
	32 - 9대	156.2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32 - 8대	99.6		-	
	32 - 10대	61.6		-	
	32 - 11대	125.1		-	
	32 - 12대	152.0		-	
	32 - 13도	19.8		-	
	32 - 14대	85.2		-	
	33 - 3대	281.0		공동개발 권장	
	33 - 21대	76.9			
	33 - 4대	227.3		-	
	33 - 5대	156.2		-	
	33 - 6대	106.8		-	
	33 - 7대	115.2		-	
	33 - 8대	198.6		-	
	33 - 9대	55.9		공동개발 권장	
	33 - 10대	116.6			
	33 - 12대	179.1		-	
	33 - 14대	122.3		-	
	33 - 15대	116.3		-	
	33 - 16대	100.8		-	
	33 - 17대	200.2		-	
	33 - 18대	141.2		-	
	33 - 22대	211.2		-	
10	33 - 23대	157.0	53,264.2	-	
	33 - 24도	261.6		-	
	36대	87.6		공동개발 권장	
	36 - 1대	79.6			
	36 - 2대	83.1		공동개발 지정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36 - 3대	86.5			
	36 - 5대	171.0		-	
	36 - 6대	90.7		공동개발 권장	
	36 - 7대	84.2			
	36 - 8대	84.9		공동개발 권장	
	36 - 9대	83.0			
	36 - 10대	124.8		-	
	36 - 11대	130.1		-	
	36 - 12대	107.1		-	
	36 - 13대	134.1		-	
	36 - 15대	100.6		공동개발 권장	
	36 - 16대	87.8			
	36 - 17대	124.3		-	
	36 - 18대	120.4		-	
	36 - 19대	144.9		-	
	36 - 20대	138.9		-	
	36 - 21대	142.1		-	
	36 - 22도	351.8		-	
	36 - 23도	30.1		-	
	36 - 14대	142.4		공동개발 지정	
	36 - 26대	118.6			
	37대	119.7		-	
	37 - 1대	645.3		-	
	37 - 4대	142.4		-	
	37 - 5대	113.6		-	
	37 - 6대	55.8		공동개발 권장	
	37 - 7대	100.5			
	37 - 9대	206.2		-	
	37 - 10대	69.5		공동개발 권장	
	37 - 11대	79.4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37 - 12대	93.6		-	
	37 - 17도	54.0		-	
	39도	1,239.1		-	
	39 - 1도	1,166.2		-	
	39 - 2도	1,597.7		-	
	41 - 5대	257.4		-	
	41 - 6대	183.4		-	
	41 - 7대	767.1		-	
	41 - 11대	75.3		공동개발 권장	
	41 - 13대	128.9			
	41 - 14대	139.7		-	
	41 - 18도	48.8		-	
10	42대	74.7	53,264.2	공동개발 권장	
	42 - 2대	82.3			
	42 - 1대	101.6		-	
	42 - 3대	96.1		-	
	42 - 4대	127.2		-	
	42 - 5대	110.5		-	
	42 - 6대	107.7		-	
	42 - 7대	186.2		-	
	42 - 8대	76.9		공동개발 권장	
	42 - 9대	77.4			
	42 - 10대	258.0		-	
	42 - 11대	209.0		-	
	42 - 12대	99.0		-	
	42 - 13대	124.7		-	
	42 - 14대	189.0		-	
	42 - 15대	115.4		공동개발 권장	
	42 - 16대	78.2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42 - 18대	248.5		-	
	42 - 19대	116.4		-	
	42 - 20대	134.4		-	
	42 - 21도	63.5		-	
	42 - 22도	131.6		-	
	42 - 23대	122.3		-	
	43대	120.7		-	
	43 - 1도	93.5		-	
	43 - 2대	146.2		-	
	43 - 3대	142.9		-	
	44대	124.0		-	
	44 - 1대	81.8		공동개발 권장	
	44 - 8대	90.1			
	44 - 2대	169.0		-	
	44 - 3대	209.9		-	
	44 - 4대	114.2		-	
	44 - 6대	283.1		-	
	44 - 9도	12.2		-	
	44 - 10도	97.3		-	
	44 - 11대	117.6		-	
	44 - 12대	129.1		-	
	44 - 13대	114.0		-	
	44 - 14대	137.7		-	
	45대	158.5		-	
	45 - 2대	153.8		-	
	45 - 3대	249.6		-	
	45 - 4대	132.2		-	
	45 - 5대	100.2		-	
	45 - 6대	61.6		-	
	45 - 7대	148.1		-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10	45-8대	169.1	53,264.2	-	
	45-9대	150.7		-	
	45-10대	147.7		-	
	45-11대	93.5		-	
	45-13대	90.5		-	
	45-14대	173.1		-	
	45-16대	103.7		-	
	45-17대	119.1		-	
	45-18대	168.4		-	
	45-19도	29.7		-	
	45-20도	79.4		-	
	47도	1,198.0		-	
	49도	1,406.0		-	
	49-1도	538.3		-	
	49-2도	834.7		-	
	51대	176.2		-	
	51-2대	576.5		-	
	51-4대	80.3		-	
	51-5대	608.2		-	
	51-6대	170.1		-	
	51-7대	195.6		-	
	51-8대	78.5		-	
	51-9대	160.3		-	
	51-12대	149.4		-	
	51-10대	611.1		공동개발 지정	
	51-11대	107.0			
	51-13대	51.9		-	
	51-14대	301.5		-	
	51-15대	182.2		-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51-16대	168.4		-	
	51-17대	153.9		-	
	51-18도	110.3		-	
	51-19대	33.6		공동개발 권장	
	51-22대	82.9			
	51-20대	168.6		-	
	51-21대	164.4		-	
	52대	306.4		-	
	52-1대	30.7		공동개발 지정	
	52-5대	151.0			
	52-2대	296.7		-	
	52-7대	76.8		공동개발 권장	
	52-8대	66.8			
	52-6대	122.7		공동개발 권장	
	52-9대	68.7			
	52-10대	165.9		-	
	52-11대	118.4		-	
	52-12대	152.7		공동개발 권장	
	52-13대	102.7			
	52-14대	326.3		-	
10	52-15대	210.5	53,264.2	-	
	52-16대	117.9		-	
	52-17대	147.2		공동개발 지정	
	52-18대	140.2			
	52-19대	163.8		공동개발 권장	
	52-20대	69.7			
	52-23대	356.7		-	
	52-24대	138.5		-	
	52-25대	166.3		-	
	52-26대	86.6		-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52-27도	197.6		-	
	52-28도	37.1		-	
	52-30대	180.9		-	
	53대	158.9		-	
	53-1대	199.2		-	
	53-2대	246.8		-	
	53-4대	303.6		-	
	53-5대	72.6		-	
	53-6대	66.7		공동개발 지정	
	53-7대	58.1			
	53-8대	125.7		-	
	53-10대	109.5		-	
	53-11대	150.3		-	
	53-13대	300.5		-	
	53-15대	198.2		-	
	53-16대	135.7		-	
	53-17대	106.1		공동개발 지정	
	53-18대	127.4			
	53-19대	202.1		-	
	53-20대	113.8		-	
	53-21대	222.9		-	
	53-22대	87.5		-	
	53-23대	97.4		-	
	53-24대	94.5		-	
	53-25도	12.4		-	
	53-26도	112.3		-	
	53-29대	135.6		-	
	53-32대	8.4		-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54대	88.1		-	
	54 - 1대	143.7		-	
	54 - 2대	240.0		-	
	54 - 4대	67.6		공동개발 권장	
	54 - 16대	80.7			
	54 - 5대	58.6		공동개발 권장	
	54 - 15대	87.6			
	54 - 6대	248.9		-	
	54 - 7대	108.8		-	
	54 - 8대	161.2		-	
	54 - 9대	193.0		-	
	54 - 10대	79.2		-	
	54 - 11대	80.5		-	
10	54 - 12대	93.4	53,264.2	-	
	54 - 13대	87.2		-	
	54 - 14대	94.8		-	
	54 - 17대	98.3		-	
	54 - 18도	51.2		-	
	54 - 19도	50.9		-	
	55 - 1대	49.7		-	
	55 - 2대	303.3		-	
	55 - 6대	178.7		-	
	55 - 9대	105.4		-	
	55 - 10대	107.5		-	
	55 - 11대	120.0		-	
	55 - 17대	85.3		-	
	55 - 18대	206.0		-	
	55 - 20대	601.6		-	
	55 - 21대	161.2		-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55-23대	155.7		-	
	55-24대	249.2		-	
	55-25대	126.0		-	
	55-26대	100.4		-	
	55-27대	114.9		공동개발 권장	
	55-28대	82.4			
	55-29대	47.5		공동개발 지정	
	55-30대	92.7			
	55-31대	179.7		공동개발 지정	
	55-48대	147.9			
	55-49대	8.2			
	55-32대	88.9		-	
	55-33대	165.3		-	
	55-34대	95.3		-	
	55-35대	122.6		-	
	55-36대	100.1		-	
	55-41도	22.1		-	
	55-42도	19.4		-	
	55-43도	138.9		-	
	55-44도	41.3		-	
	55-45대	8.0		-	
	55-46대	75.8		-	
	55-47도	45.5		-	
	55-51대	400.9		-	
	56대	79.1		-	
	56-1도	45.3		-	
	56-3대	326.4		-	
	56-4대	168.7		-	
	56-6대	82.0		-	
	56-7대	66.5		공동개발 지정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56-8대	95.0			
	56-34대	28.3			
	56-9대	116.1		-	
	56-10대	119.2		-	
10	56-11대	74.6	53,264.2	공동개발 권장	
	56-12대	69.9			
	56-13대	84.9			
	56-14대	129.2		공동개발 지정	
	56-15대	188.8			
	56-16대	171.1		공동개발 권장	
	56-18대	71.0			
	56-19대	173.0		공동개발 권장	
	56-20대	68.7			
	56-21대	313.6		-	
	56-22대	228.2		-	
	56-24대	38.6		공동개발 지정	
	56-25대	96.4			
	56-26대	67.8			
	56-27대	24.8			
	56-28대	38.2		-	
	56-29도	45.4		-	
	56-30도	36.1		-	
	56-31도	128.8		-	
	56-32도	30.1		-	
	56-33도	7.7		-	
	57대	112.2		-	
	57-1대	117.0		-	
	57-2대	243.9		-	
	57-3대	118.6		공동개발 지정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57-4대	74.1			
	57-5대	209.5		-	
	57-6대	586.2		-	
	57-7대	518.3		-	
	57-8도	107.7		-	
	57-9대	248.9		-	
	57-12대	218.8		-	
	57-13대	85.4		공동개발 권장	
	57-14대	103.4			
	57-15대	93.6		-	
	57-16대	290.6		공동개발 권장	
	57-37대	21.1			
	57-18대	118.8		-	
	57-19대	153.6		-	
	57-21대	38.2		-	
	57-22대	28.3		-	
	57-25대	185.3		-	
	57-26대	147.5		-	
	57-27도	152.5		-	
	57-28도	25.3		-	
	57-29도	32.2		-	
	57-30대	204.8		-	
	57-31도	11.3		-	
	57-32도	0.5		-	
11	46대	2,751.2	8,787.3	병원이적지 특별계획구역 (6,766.7㎡)	
	46-15대	240.9			
	46-16대	227.0			
	46-22대	209.4			
	46-35대	658.5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46-37대	2,679.7				
	46-1대	143.6		공동개발 지정		
	46-2대	20.4				
	46-7대	45.7		공동개발 권장		
	46-9대	78.1				
	46-10대	120.7				
	46-11대	39.7		공동개발 권장		
	46-12대	74.8				
	46-13대	53.6				
	46-3대	121.9		-		
	46-4대	143.1		-		
	46-6대	220.9		-		
	46-18대	387.7		-		
	46-19대	74.1		-		
	46-20대	368.0		-		
	46-21대	128.3		-		
12	318-1대	20.8	1,346.0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319대	52.5				
	318-3대	15.5		-		
	318-5대	79.7		공동개발 권장		
	320대	4.3				
	318-6대	98.2		공동개발 지정		
	321대	6.6				
	318-7대	43.5		공동개발 지정		
	318-12대	14.2				
	324대	90.2		공동개발 권장		
	325대	17.8				
	333대	85.6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335대	0.3				
	336대	64.1				
	332대	20.8				
12	328대	58.4	1,346.0	공동개발 권장		
	337대	119.0				
	338대	49.9		공동개발 권장		
	339대	51.1				
	340대	0.7				
	318 - 4대	76.0		-		
	322대	165.3		-		
	323대	86.9		-		
	330대	124.6		-		
13	216대	193.0	7,525.7	공동개발 권장		
	217 - 2대	122.8				
	217 - 3대	255.9				
	220종	1,950.0		공동개발 지정		
	222 - 4대	7.8				
	222 - 7대	94.1				
	222 - 9대	44.3				
	222 - 11대	69.1				
	222 - 12대	9.7		공동개발 지정		
	222 - 13대	33.1				
	222 - 14대	33.1		공동개발 지정		
	222 - 15대	39.5				
	222 - 16대	52.6		공동개발 권장		
	222 - 17대	35.7				
	222 - 63대	6.9				
	222 - 64대	3.2		공동개발 지정		
	222 - 18대	100.1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222 - 19대	42.7		공동개발 권장	
	222 - 20대	63.6			
	223 - 4대	285.2			
	223 - 1대	143.3		공동개발 권장	
	223 - 2대	146.0			
	223 - 3대	227.0		공동개발 권장	
	223 - 6대	141.8			
	225 - 3대	43.7		공동개발 권장	
	225 - 4대	425.4			
	225 - 12대	32.8		공동개발 권장	
	225 - 14대	49.0			
	225 - 15대	88.4			
	225 - 17대	104.7			
	219대	1,398.7		-	
	222 - 62대	18.6		-	
	224대	325.1		-	
	224 - 2대	477.7		-	
	224 - 3대	261.7		-	
	224 - 4대	199.4		-	
14	229대	4,829.3	7,063.3	-	경찰서
	232 - 1층	1,191.1		-	청량리교회
	232 - 2대	1,042.9		-	파출소
15	234 - 2대	12,524.1	12,524.1	-	현대아파트
16	359대	317.7	33,083.0	-	동물병원
	215 - 1도	367.4		청량리 8구역 특별계획구역 (28,996.59㎡)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 역
	215 - 107도	37.3			
	215 - 2대	2.3			
	215 - 3대	37.4			
	215 - 32대	3.0			
	215 - 33대	126.3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215 - 4대	7.6			
	215 - 51대	152.4			
	215 - 52대	56.5			
	215 - 53대	59.8			
	215 - 54대	218.0			
	215 - 55대	158.0			
	215 - 56대	58.9			
	215 - 57대	50.0			
	215 - 58대	63.2			
	215 - 59대	32.1			
	215 - 60대	55.3			
	215 - 62대	45.4			
	215 - 63대	33.1			
	215 - 64대	39.7			
	215 - 65대	1.0			
	215 - 66대	42.0			
	215 - 67대	56.6			
	215 - 68대	40.7			
	215 - 69대	98.6			
	215 - 70대	131.7			
	215 - 71대	120.5			
	215 - 72대	79.7			
	215 - 73대	126.1			
	215 - 74대	75.5			
	215 - 75대	41.9			
	215 - 76대	73.5			
	215 - 77대	56.6			
	215 - 78대	6.6			
	215 - 79대	68.9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215-80대	26.5			
	215-81대	56.3			
	215-83대	51.0			
	215-84대	37.4			
	215-85대	44.0			
	215-86대	59.9			
	215-87대	84.1			
	215-88대	68.9			
	215-89대	8.6			
	215-90대	107.2			
16	215-91대	48.7	33,083.0	청량리 8구역 특별계획구역 (28,996.59㎡)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215-92대	51.0			
	222-22대	17.5			
	222-23대	24.9			
	222-24대	52.6			
	222-25대	27.5			
	222-26대	69.2			
	222-28대	2.3			
	222-29대	13.2			
	222-30대	47.0			
	222-31대	65.9			
	222-32대	43.0			
	222-33대	102.3			
	222-34대	37.5			
	222-35대	75.7			
	222-36대	59.1			
	222-37대	52.6			
	222-38대	46.0			
	222-39대	75.5			
	222-40대	22.5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222 - 56대	3.4			
	222 - 57대	10.1			
	222 - 58대	13.5			
	222 - 59대	10.6			
	222 - 60대	12.8			
	222 - 61대	30.9			
	341도	4,141.4			
	343대	236.4			
	344대	7.9			
	346대	83.0			
	346 - 1대	153.5			
	346 - 2대	75.6			
	346 - 3대	3.0			
	348대	175.9			
	349대	232.1			
	350대	94.9			
	352대	129.6			
	353대	241.0			
	355대	29.1			
	356대	4.6			
	358대	146.1			
	360대	93.9			
	362도	190.4			
	364대	57.5			
	366대	273.1			
	367 - 1대	378.2			
	367 - 10대	11.2			
16	367 - 11도	11.2	33,083.0	청량리 8구역 특별계획구역 (28,996.59㎡)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 역
	367 - 3도	130.2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367 - 4대	21.2			
	367 - 5대	120.3			
	367 - 9대	164.6			
	375대	58.5			
	376대	72.1			
	377대	156.7			
	380대	64.1			
	381대	98.2			
	384대	103.8			
	385대	42.3			
	388대	64.5			
	389대	88.6			
	392 - 1도	179.5			
	393대	130.2			
	394대	105.8			
	395대	95.9			
	396대	75.7			
	397대	80.3			
	398대	111.1			
	399대	143.5			
	400대	53.4			
	401대	53.4			
	402대	51.5			
	403대	57.8			
	404대	43.0			
	405대	82.0			
	406대	92.2			
	407대	61.5			
	408도	88.3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409대	65.4			
	410대	67.1			
	411대	21.2			
	412대	169.9			
	415 - 1대	94.9			
	415 - 2대	18.2			
	416대	74.4			
	417도	37.7			
	418대	94.6			
	419대	63.1			
	420대	55.9			
	425대	876.7			
	426대	90.4			
	426 - 1대	109.6			
	426 - 2대	99.7			
	426 - 3대	32.2			
16	426 - 4대	81.6	33,083.0	청량리 8구역 특별계획구역 (28,996.59㎡)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 역
	426 - 5도	18.6			
	427대	92.1			
	427 - 1대	81.5			
	427 - 2대	88.9			
	427 - 3대	82.2			
	427 - 5도	15.8			
	427 - 6대	4.9			
	427 - 7도	32.7			
	428대	113.8			
	428 - 1대	74.2			
	428 - 3대	77.7			
	428 - 4대	183.4			
	428 - 5도	32.1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430대	3.6			
	431대	149.1			
	432대	5.0			
	433대	4.0			
	434대	96.2			
	435대	1,011.6			
	437대	65.8			
	437 - 1대	65.8			
	438대	106.4			
	439대	44.3			
	440 - 1도	198.0			
	440 - 12대	107.1			
	440 - 13대	101.8			
	440 - 17대	125.3			
	440 - 18대	66.4			
	440 - 2대	16.5			
	440 - 20대	84.7			
	440 - 22대	146.8			
	440 - 23대	61.8			
	440 - 24대	17.8			
	440 - 3대	64.1			
	440 - 6대	118.7			
	442 - 1대	287.2			
	442 - 10대	83.3			
	442 - 11대	19.8			
	442 - 12대	125.6			
	442 - 14대	121.0			
	442 - 16대	75.7			
	442 - 17대	15.5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442 - 32대	101.6			
	442 - 35대	1.2			
	442 - 4대	146.4			
	442 - 5대	67.4			
16	442 - 6대	59.8	33,083.0	청량리 8구역 특별계획구역 (28,996.59㎡)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 역
	442 - 7대	76.4			
	442 - 8대	62.3			
	442 - 9대	86.5			
	443대	209.4			
	445대	337.3			
	445 - 10대	106.9			
	445 - 11대	102.9			
	445 - 12대	111.1			
	445 - 13대	83.9			
	445 - 14대	83.7			
	445 - 15대	64.9			
	445 - 16대	49.4			
	445 - 17대	43.6			
	445 - 18대	78.4			
	445 - 19대	135.0			
	445 - 2대	59.3			
	445 - 20대	92.8			
	445 - 21대	91.8			
	445 - 22대	40.1			
	445 - 23대	68.6			
	445 - 24대	81.8			
	445 - 25대	96.4			
	445 - 26대	119.0			
	445 - 27대	123.3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445 - 28대	86.7			
	445 - 29대	99.0			
	445 - 3대	123.2			
	445 - 30대	72.4			
	445 - 31대	143.3			
	445 - 32대	196.3			
	445 - 33대	378.6			
	445 - 34대	163.2			
	445 - 35대	212.8			
	445 - 36대	87.5			
	445 - 37대	16.1			
	445 - 38대	39.0			
	445 - 39대	49.1			
	445 - 4대	73.0			
	445 - 40대	108.1			
	445 - 41대	127.1			
	445 - 42대	118.7			
	445 - 43대	146.7			
	445 - 44대	160.1			
	445 - 45대	38.8			
	445 - 46대	37.8			
	445 - 47대	41.4			
16	445 - 48도	477.0	33,083.00	청량리 8구역 특별계획구역 (28,996.59㎡)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445 - 49도	21.1			
	445 - 5대	77.7			
	445 - 6대	86.3			
	445 - 7대	80.6			
	445 - 8대	96.2			
	445 - 9대	134.8			
	446대	263.4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446 - 6도	27.2			
	447 - 20대	170.0			
	447 - 22대	115.5			
	447 - 23대	95.6			
	447 - 24대	84.6			
	447 - 25대	74.2			
	447 - 26대	90.1			
	447 - 27대	110.5			
	447 - 28대	148.6			
	447 - 29대	31.5			
	447 - 31대	47.2			
	447 - 32대	164.9			
	447 - 33대	104.8			
	447 - 34대	101.1			
	447 - 35대	82.4			
	447 - 39도	48.5			
	447 - 40도	10.5			
	447 - 41대	105.9			
	368대	884.3			
		3,748.7		KT부지 특별계획구역 (3,748.7㎡)	
17	209 - 2대	436.4	16,071.4	공동개발 지정	
	209 - 25대	293.1			
	212대	12,789.0		-	홍릉동농부 센터레빌
	213대	2,552.9			

가구	지번 (전농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18	591 - 2대	398.0	11,472.97	왕산로 남측 특별계획구역 (836.57㎡)	
	591 - 3도	9.6			
	591 - 4도	16.5			
	591 - 6대	238.4			
	591 - 74대	31.1			
	591 - 8대	61.5			
	591 - 51도	81.47			
	591 - 1대	250.9		-	
	597 - 17대	490.9		공동개발 권장	
	597 - 23대	417.4			
	597 - 66대	1.4			
	597 - 67대	10.3			
	597 - 71대	35.9			
	597 - 31대	332.6		공동개발 권장	
	597 - 32대	208.3		공동개발 권장	
	597 - 25대	221.6			
	597 - 26대	531.0			
	597 - 58대	5.5		공동개발 권장	
	597 - 27대	582.2			
	597 - 28대	172.2			
	597 - 73대	75.4		공동개발 권장	
	597 - 34대	340.7			
	597 - 38대	422.4			
	597 - 41대	455.6		-	
	597 - 6대	286.6		공동개발 권장	
	597 - 7대	121.0			
	597 - 49대	172.2			
597 - 8대	54.0	공동개발 권장			
597 - 9대	53.9				
597 - 10대	196.7				

가구	지번 (전농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597 - 5대	447.0		-		
	597 - 3대	216.5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597 - 4대	231.1				
	597 - 2대	224.8		-		
	597 - 11대	735.8		공동개발 권장		
	597 - 74대	91.0				
	597 - 75대	21.4				
	597 - 76대	31.6				
	602 - 4대	126.3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602 - 5대	139.5				
	602 - 3대	40.0		-		
	602 - 6대	80.7		공동개발 권장		
	602 - 7대	79.7				
	602 - 9대	268.4				
	602 - 10대	122.3		공동개발 권장		
	602 - 11대	109.4				
	602 - 12대	116.7		공동개발 권장		
	602 - 13대	96.2				
	602 - 14대	138.2		공동개발 권장		
	602 - 15대	120.7				
	602 - 16대	40.0		공동개발 권장		
	602 - 17대	100.5				
	602 - 18대	142.2		공동개발 권장		
	602 - 34대	38.0				
	602 - 19대	139.2		공동개발 권장		
	602 - 21대	165.6				
	602 - 22대	190.1		공동개발 권장		

가구	지번 (전농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602 - 35대	4.0				
	602 - 23대	227.1				
	602 - 24대	137.5		공동개발 지정		
	602 - 25대	180.8				
	602 - 29대	224.1		공동개발 지정		
	602 - 30대	171.3				
19	444 - 2대	29.4	489.9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 권장	
	444 - 3대	65.8				
	444 - 4대	100.5		-		
	444 - 7대	82.6		-		
	248대	211.6		-		

< 이 하 여 백 >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가.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1) 불허용도

■ 불허용도 결정조서

도면 표시	불허용도	비고
공통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불허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불허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2) 권장용도

■ 권장용도 결정조서

도면 표시	내 용	비 고
권장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단, 「벤처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료, 바이오 관련 업종 권장)에 한함)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 건폐율계획 결정조서

구 분	건폐율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둘 이상의 용도지역 · 지구에 걸치는 대지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을 따름

※ 특별계획(기능)구역은 특별계획(기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건폐율 완화 결정조서

구 분	완화 내용	비 고
왕산로 남측 (정비필요지역)	10% 완화 (60% 이하 → 70% 이하)	

(2) 용적률

■ 용적률계획 결정조서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0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5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80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둘 이상의 용도지역 · 지구에 걸치는 대지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을 따름

※ 특별계획(기능)구역은 특별계획(기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나.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높이

■ 높이계획 결정조서

적용대상		최고높이	비 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50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70m 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0m 이하	
왕산로 남측	정비필요지역	40m 이하	
	일반관리지역	70m 이하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쳐는 대지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을 따름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선

■ 건축선계획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왕산로, 홍릉로, 제기로	• 3m 이상	
	홍릉로(청량리동 359번지)	• 4m 이상	
	이면도로	• 1~5m 이상	
벽면한계선	약령시로(이면부)	• 2m 이상 (최소 높이 10m 이상)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2) 대지 내 공지

■ 대지 내 공지계획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전면공지	간선부 (왕산로, 홍릉로, 제기로)	-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보도확장형 전면공지(3~4m) 조성	
	이면부	-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보도확장형 전면공지(1~5m) 조성	
	이면부(약령사로)	- 벽면한계선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보도확장형 전면공지(2m) 조성	
공공보행통로	전농동 597·70번지 일대	최소 폭원 4m 이상으로 포장패턴 등을 차별화하여 보행공간으로서의 인식성을 높이고, 24시간 공공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영	
	청량리동 308번지, 청량리동 317번지 일대	최소 폭원 4m 이상으로 포장패턴 등을 차별화하여 보행공간으로서의 인식성을 높이고, 24시간 공공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필로티구조 포함)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형태 및 색채 등

■ 건축물 형태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전체	분절 및 분할	건축물의 파사드가 단조롭고 폐쇄적인 벽면이 되지 않도록 재료구분, 창호디자인, 상하부 구분 등의 입면의 분절요소를 활용하여 풍부한 입면 디자인 권장	
1층부	1층 바닥 높이	-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 이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 - 가로에 접하는 건물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 및 공지로부터 15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으나, 당해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 예외 인정	
	투시형 벽면/셔터	1층 벽면적의 50% 이상을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내부가 안 보이는 컬러유리·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으로 설치 - 셔터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셔터 설치 시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셔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개구부 높이	- 연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과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롭게 조성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금지	

■ 건축물 재료 및 색채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재료	통일성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반사성 재료 금지	금속, 반짝이는 타일,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	
	조화로운 재료	- 건물 저층부의 경우 보행자의 시선을 배려하여 시각적인 깊이와 입체감이 있는 소재(벽돌, 루버, 송 판, 노출콘크리트, 스테코 등 질감 및 패턴이 있는 소재)사용 권장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 권장	
색채	조화로운 색채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계열 사용을 지양 - 재료의 고유 특성이 살아있는 자연색 또는 지역색 적용	

■ 가로경관계획

구 분		계획 내용	비 고
차양 설치	수평분할요소 적용시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사인존(Sign Zone), 출입문 및 디스플레이 윈도우를 설치하는 윈도우존(Window Zone), 어닝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차양존(Awning Zone)으로 1층부 수평분할요소를 적용 • 보행자의 이동 및 이용편의를 위한 가변형 공간 및 캐노피(어닝 포함)등의 설치를 권장	
담장 및 응벽	식재형/투시형 담장	• 담장을 설치 할 경우 식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물 디자인	• 건축물과 조화로운 색상 및 재료를 사용하여 입면과 일체감을 주도록 계획 • 단일 건물에 여러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표기방식, 크기, 위치 등을 통일감 있게 설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기준을 준수	

다.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차량출입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 (왕산로, 홍릉로, 제기로)	• 간선도로에서 대지안으로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단, 이면도로로의 진출입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간선도로에서 차량의 출입을 허용)	
	왕산로 남측 (정비필요지역)	• 간선도로에서 대지안으로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왕산로 남측 (일반관리지역)	• (공동)주차출입구 지정을 위한 차량출입구간으로 변경 가능(경미한 변경사항)	
(공동) 주차출입구	간선도로 (왕산로, 홍릉로, 제기로)	• 이면도로에서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필지에 지정	
	왕산로 남측 (일반관리지역)	• 이면도로로의 진출입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진·출입을 위해 (공동)주차출입구 설치	

※ 특별계획(기능)구역은 특별계획(기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왕산로 남측 (일반관리지역 및 정비필요지역)	- 차량출입불허 준수 1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연면적 50%이상) ※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소매점(식품·잡화·의류·원구·서적·의약품에 한함)	100% 완화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5. 인센티브 운용 계획

가. 공통사항

-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Σ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계획유도 인센티브와 중점 인센티브로 구성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계획유도	중점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계획유도 항목 이행시 (70% 이내)	중점 계획항목 이행 시 (30% 이상)	공공시설등 제공시 등

-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대지 내 공지 등을 확보한 경우 또는 이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 다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음
- 전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은 별도의 계획지침 내용에 따름

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인센티브 A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중점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면적 및 필지수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alpha = 0.1 \sim 0.3$ (2필지 : $\alpha = 0.1$, 3필지 : $\alpha = 0.2$ 4필지이상 : $\alpha = 0.3$)
계획 유도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 면적 $\div$ 연면적) $\times 0.5$	연면적 20%이상 확보시 적용(주차장 제외)

■ 인센티브 B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 ÷ 연면적) × 0.7	연면적 20%이상 확보시 적용(주차장 제외)
계획 유도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보도확장형 전면공지 설치 (간선도로 의무사항 인센티브 제외) 건축한계선 α=0.1 벽면한계선 α=0.4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기준용적률 × 0.02	1층 전면부 투시형처리 70%이상 계획 및 수평 분절시
	친환경	물환경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 (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04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30%까지 허용 (법적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대기 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준용적률 × 0.05	[주거:300세대 이상]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시 [비주거:연면적 1만㎡ 이상]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시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미세먼지 저감장치 기준용적률 × 0.05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지역기여시설로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 미세먼지 저감장치 예시 : 그린룸, 기후적응형 벤치, 기후텐트, 공기정화장치 등
	생활 환경	유니버설 디자인(BF인증)	기준용적률 × 0.1	의무대상 : 일반등급 초과시 비의무대상 : 일반등급 취득시

※ 친환경 부문의 '주거', '비주거' 범위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름

■ 인센티브 C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중점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 기준용적률 × 0.35	2필지 이상 공동개발시
계획 유도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보도확장형 전면공지 설치 (간선도로 의무사항 인센티브 제외) 건축한계선 α=0.1 벽면한계선 α=0.4

③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①	왕산로 전면부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	3,492.6	
신설	②	미주상가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235-4번지 일대	11,044.7	
신설	③	병원이적지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46번지 일대	6,766.7	
신설	④	KT부지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368번지	3,748.7	
신설	⑤	청량리8구역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28,996.59	
신설	⑥	왕산로 남측 특별계획구역	전농동 591-2번지 일대	836.57	
신설	⑦	미주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235-1번지 일대	56,785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왕산로 전면부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	3,492.6	• 청량리역 연계 문화·상업 복합개발 거점 조성
미주상가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235-4번지 일대	11,044.7	• 광역환승센터 연계 판매·숙박 등 인구유입시설 도입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병원이적지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46번지 일대	6,766.7	•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급 및 정주여건 개선
KT부지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368번지	3,748.7	• 홍릉 연계 바이오·의료 등 R&D 관련시설 도입
청량리8구역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28,996.59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적 관리
왕산로 남측 특별계획구역	전농동 591·2번지 일대	836.57	• 역세권 상업·문화·창업 지원 거점 조성
미주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청량리동 235·1번지 일대	56,785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적 관리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가. 특별계획구역① (왕산로 전면부) 계획지침

구 분		계획지침	비고
면 적		• 3,492.6㎡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 600% 이하 • 허용 : 8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높이		• 최고높이 : 160m 이하	
건축선	건축 한계선	• 왕산로, 홍릉로 : 5m 이상 • 왕산로41길 : 3m 이상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왕산로, 홍릉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청량리역 광장과 연계한 개방형 공개공지 위치 권장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공공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최소 폭원 4m 이상 조성 (버스환승센터 및 청량리역 광장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	
건축물 용도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따돌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저공해 자동차연료공급시설 제외)	

구 분		계획지침	비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건축물 기부채납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체험문화시설, 다목적 공연장 등), 창업지원시설 등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여 시설 : 시설의 세부용도, 위치, 규모 등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통합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기타사항		- 버스환승센터와연계한 선로 광장 및 입체연결수단(옥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을 설치하도록 권장 -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도록 권장 - 지하철역과 건축물 지하공간의 통합적 연결체계 구축	

나. 특별계획구역② (미주상가) 계획지침

구 분		계획지침	비고						
면 적		11,044.7㎡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획지 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 가능 <table><tr><td>A</td><td>B</td></tr><tr><td>4,501.8㎡</td><td>6,542.9㎡</td></tr></table>	A	B	4,501.8㎡	6,542.9㎡			
	A	B							
4,501.8㎡	6,542.9㎡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 기준 : 600% 이하 - 허용 : 80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높이		<table><tr><td>구분</td><td>분할시</td><td>통합시</td></tr><tr><td>최고높이</td><td>120m</td><td>160m</td></tr></table>	구분	분할시	통합시	최고높이	120m	160m	
구분	분할시	통합시							
최고높이	120m	160m							
건축선	건축 한계선	- 왕산로, 약령시로 각각부 : 5m 이상 - 약령시로, 인접대지 : 3m 이상							
	벽면 한계선	고층부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변(폭 10m, 지상 5층 이상)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왕산로 - 분할개발시 공동진출입구 설치 권장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버스환승센터와 연계한 침상형 공개공지 위치 권장							

구 분		계획지침	비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공공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최소 폭원 6m 이상 조성 - 지상 : 왕산로~미주아파트 공공보행통로 연계 보행통로 조성 - 지하 : 버스환승센터 연계 지하보행통로 조성	
건축물 용도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달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저공해 자동차연료공급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정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건축물 기부채납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체험문화시설, 다목적 공연장 등)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여 시설 : 시설의 세부용도, 위치, 규모 등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통합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기타사항		• 버스환승센터와 연계한 선 큰 광장 및 입체연결수단(옥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을 설치하도록 권장 •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도록 권장	

다. 특별계획구역③ (병원이적지) 계획지침

구 분	계획지침	비고
면 적	• 6,766.7㎡	
용도지역	• 현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 제2종일반주거(7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향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수립) • ※ 구역계 정형화 및 진입도로 확폭을 위하여 주변 필지를 포함하여 계획시 추가적인 용도지역 조정 가능	
기반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결정 - 도로 신설 2개소	
건폐율	• 50% 이하	

구 분		계획지침				비고
용적률		구분	기준	허용	상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0%	20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230%	250%	
		※ 단, 상한용적률은 심의를 통해 추가완화 가능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름				
높이		• 최고높이 : 90m 이하				
건축선	건축 한계선	• 제기로 및 이면도로(왕산로45길, 왕산로43나길, 왕산로47길) : 3m 이상 • 대상지 동측 및 북서측 도로 : 4m 이상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제기로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건축물 용도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해당용도 연면적 5,200㎡ 확보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순부담율 : 6.4% 이상(이면부 : 제2종일반주거(7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물 기부채납 : 노유자시설(지상층 연면적 약 5,200㎡ 확보) (단, 지상층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시설 접근성 및 이용성 확보를 위해 도로면에서 직접 출입가능한 전용출입구 등을 설치하도록 함)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여 시설 : 시설의 세부용도, 위치, 규모 등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통합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라. 특별계획구역④ (KT부지) 계획지침

구 분		계획지침	비고
면 적		• 3,748.7㎡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250% 이하 • 상한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90m 이하	
건축선	건축 한계선	• 홍릉로 : 4m 이상 • 인접대지(청량리8구역) : 3m 이상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홍릉로 (주차출입구 지정)	
건축물 용도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완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바닥면적 제한 없음)	바닥면적 제한완화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토지 기부채납 : 청량리동 368번지(884.3㎡) ※ 청량리제8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기반시설과 통합하여 계획 공공기여 도입시설 : 홍릉연구단지와 연계한 바이오·의료 등 R&D 관련시설 설치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여 시설 : 시설의 세부용도, 위치, 규모 등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통합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마. 특별계획구역⑤ (청량리8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획지침	비고						
면 적		28,996.59㎡ (택지1 : 23,199.63㎡/ 택지2 : 263.4㎡/ 택지3 : 806.68㎡/ 택지4 : 258.67㎡)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 기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0호(2010.11.25.)							
건폐율		- 택지 1 : 17.50% 이하 - 택지 2,3,4 : 50% 이하							
용적률		<table><tr><th>구분</th><th>기준</th><th>상한</th></tr><tr><td>청량리8구역</td><td>230%</td><td>247%</td></tr></table>	구분	기준	상한	청량리8구역	230%	247%	
구분	기준	상한							
청량리8구역	230%	247%							
높이		- 최고높이 - 택지 1 : 72m 이하 - 택지 2, 3, 4 : 관계법규에 따름							
건축선	건축 한계선	홍릉로, 제기로 : 4m 이상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홍릉로 및 제기로							
건축물 용도	허용	- 택지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택지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도로 확폭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여 시설 : 홍릉연구단지와 연계한 바이오·의료 등 R&D 관련시설 설치 - 시설의 세부용도, 위치, 규모 등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 정비계획 결정(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 내용을 따름

바. 특별계획구역⑥ (왕산로 남측) 계획지침

구 분		계획지침	비고												
면 적		• 836.57㎡													
용도지역		- 현황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지역 상황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수립)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 </thead> <tbody> <tr> <td>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td><td>250%</td><td>610%</td><td>800%</td></tr> <tr> <td>일반상업지역</td><td>600%</td><td>800%</td><td>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 </tbody> </table>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름	구분	기준	허용	상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250%	610%	800%	일반상업지역	600%	80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구분	기준	허용	상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250%	610%	800%												
일반상업지역	600%	80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90m 이하													
건축선	건축 한계선	- 왕산로 : 3m 이상 - 동측도로 : 2m 이상 - 인접대지 : 1m 이상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왕산로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건축물 용도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저공해 자동차연료공급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순부담율 : 19.1% 이상(이면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축물 기부채납 : 캠퍼스타운 허브* 등(연면적 약 1,000㎡ 이상) * 캠퍼스타운 허브 : 청년창업 연계 거점(창업지원시설, 청년일자리센터 등)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여 시설 : 시설의 세부용도, 위치, 규모 등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통합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기타사항		- 버스환승센터와 연계한 선크 광장 및 입체연결수단(옥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을 설치하도록 권장 -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도록 권장													

사. 특별계획구역⑦ (미주아파트) 계획지침

구 분		계획지침	비고										
면 적		• 56,785.0㎡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결정 - 공원 2개소(획지별 공원 1개소) - 도로 확폭(B=2~4m) 3개소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table><tr><th>구분</th><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h>예정법적상한</th></tr><tr><td>미주아파트</td><td>227%</td><td>227%</td><td>250%</td><td>299.81%</td></tr></table>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체계를 적용	구분	기준	허용	상한	예정법적상한	미주아파트	227%	227%	250%	299.81%	
구분	기준	허용	상한	예정법적상한									
미주아파트	227%	227%	250%	299.81%									
높이		• 최고높이 : 105m 이하											
건축선	건축 한계선	• 대상지 북측(현대아파트변) : 4m 이상 • 도로 및 인접대지 : 3m 이상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현대아파트변에 한하여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가능)											
	공개공지	• 동대문세무서(청량리동 235-5) 북측 및 왕산로변 위치 권장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최소 폭원 8~10m 이상 조성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왕산로											
건축물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설치(위치 권장)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여 시설 : 시설의 세부용도, 위치, 규모 등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통합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 정비계획 결정(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 내용을 따름

3.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①	왕산로 특별계획가능구역	청량리동 50-14번지 일대	4,317.7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왕산로 특별계획가능구역	청량리동 50-14번지 일대	4,317.7	• 왕산로변 상업·문화기능 강화를 위한 복합개발 유도

■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에 대한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는 가능
- 단, 주민요청(대상토지 면적의 1/2이상 동의) 및 입안권자(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자문(자치구 포함)을 거쳐 2년 이내(총 5년 범위이내)에서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가. 왕산로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획지침	비고												
면 적		• 4,317.7㎡													
용도지역		- 현황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상향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수립)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 </thead> <tbody> <tr> <td>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td><td>250%</td><td>350%</td><td>400%</td></tr> <tr> <td>일반상업지역</td><td>600%</td><td>800%</td><td>법적용적률의 2배이하</td></tr> </tbody> </table>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는 경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름 ※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용적률 기준 적용	구분	기준	허용	상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50%	350%	400%	일반상업지역	600%	80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구분	기준	허용	상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50%	350%	400%												
일반상업지역	600%	80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높이		• 최고높이 : 120m 이하													
건축선	건축 한계선	- 왕산로 : 3m 이상 - 이면도로 : 1~2m 이상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왕산로, 이면도로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건축물 용도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저공해 자동차연료공급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저층부 이면가로 설치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순부담율 : 10.8% 이상 - 건축물 기부채납 :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임대상가 등 도입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여 시설 : 시설의 세부용도, 위치, 규모 등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통합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계획지침

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지번 (청량리동)	필지면적(㎡)	가구면적(㎡)	계획내용	비고
5	50대	217.8	4,317.7	-	
	50 - 1대	151.6		공동개발 지정	
	50 - 2대	351.2			
	50 - 3대	172.3		공동개발 권장	
	50 - 4대	49.8			
	50 - 5대	13.1		공동개발 지정	
	50 - 6대	167.5			
	50 - 7대	208.6		-	
	50 - 9대	258.4		-	
	50 - 11대	177.8		-	
	50 - 12대	188.3		-	
	50 - 13대	110.3		-	
	50 - 14대	309.8		-	
	50 - 17대	142.8		-	
	50 - 18대	184.6		-	
	50 - 19대	153.6		-	
	50 - 20대	135.6		공동개발 권장	
	50 - 33대	14.5			
	50 - 21대	91.9		-	
	50 - 22대	168.5		-	
	50 - 23대	125.0		-	
	50 - 24대	148.5		-	
	50 - 25대	76.3		공동개발 권장	
	50 - 28대	138.8			
	50 - 27대	262.0		-	
	50 - 30도	170.6		-	
	50 - 31도	98.7		-	
	50 - 32도	29.8		-	

②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 용도	불허	• 건축물 불허1 용도	상업 지역
		• 건축물 불허2 용도	주거 지역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저층부 이면가로 설치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③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60% 이하													
용적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 </thead> <tbody> <tr> <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50%</td><td>250%</td><td>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td></tr> <tr> <td>일반상업지역</td><td>600%</td><td>800%</td><td>법적용적률의 2배이하</td></tr> </tbody> </table>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인센티브 A	구분	기준	허용	상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5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80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구분	기준	허용	상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5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일반상업지역	600%	80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높이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0m 이하 - 일반상업지역 : 90m 이하													

④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건축 한계선	- 왕산로 : 3m 이상 - 이면도로 : 2m 이상	

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왕산로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④.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조서

가. 유형1. 병원이적지 특별계획구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조서

구분	계획 내용		
우수디자인	15%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구 분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녹색건축 인증최우수등급	12%	8%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8%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20%초과	20% 이하 15%초과	15% 이하 10%초과
	3%	2%	1%
지능형 건축물	1등급	2등급	3등급
	15%	12%	9%
	4등급		
	6%		
역사문화보전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합 계	최대 20%이내		

나. 유형2. 미주상가 특별계획구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연면적) × 0.5	연면적 20%이상 확보시 적용(주차장 제외)
계획 유도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0.5	보도확장형 전면공지 설치 (간선도로 의무사항 인센티브 제외)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피로티구조 α = 0.1 침상형구조 α = 0.2 개방형구조 α = 0.4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α	침상형구조 α = 0.7 개방형구조 α = 1.5
	보행 환경	지하철 출입구 이전, 지하 연결통로 설치 등	• 기준용적률 × 0.04	건축물 내부 또는 대지 내 설치시
	친환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다. 유형3. 왕산로 전면부 특별계획구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 ÷ 연면적) × 0.5	연면적 20%이상 확보시 적용(주차장 제외)
계획 유도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0.3	보도확장형 전면공지 설치 (간선도로 의무사항 인센티브 제외)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피로티구조 α = 0.1 침상형구조 α = 0.25 개방형구조 α = 0.5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α	침상형구조 α = 0.5 개방형구조 α = 1.0
	보행 환경	지하철 출입구 이전, 지하 연결통로 설치 등	• 기준용적률 × 0.05	건축물 내부 또는 대지 내 설치시
	친환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라. 유형4. 왕산로 남측 특별계획구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 ÷ 연면적) × 2.0	연면적 20%이상 (최대 30%)확보시 적용 (주차장 제외)
계획 유도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0.5	보도확장형 전면공지 설치 (간선도로 의무사항 인센티브 제외)
	보행 환경	지하철 출입구 이전, 지하 연결통로 설치 등	•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 내부 또는 대지 내 설치시

마. 유형5. 왕산로 특별계획가능구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 ÷ 연면적) × 0.6	연면적 20%이상 확보시 적용(주차장 제외)
계획 유도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1.0	보도확장형 전면공지 설치 (간선도로 의무사항 인센티브 제외)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피로티구조 α = 0.1 침상형구조 α = 0.3 개방형구조 α = 0.6
	친환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바. 환경친화 인센티브(공통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계 획 유 도	천 환경	물 환경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 0.04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 (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04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30%까지 허용 (법적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04	기준용적률 × 0.05이내
		대 기 환 경	환경친화적 자동차	• 기준용적률 X 0.05	[주거:300세대 이상]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시 [비주거:연면적 1만㎡ 이상]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시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미세먼지 저감장치	• 기준용적률 X 0.05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지역기여시설로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 미세먼지 저감장치 예시 : 그린룸, 기후적응형 벤치, 기후텐트, 공기정화장치 등
		생 활 환 경	유니버설 디자인(BF인증)	• 기준용적률 X 0.1	의무대상 : 일반등급 초과시 비의무대상 : 일반등급 취득시

※ 친환경 분야의 '주거', '비주거' 범위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름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조서

가. 공공시설 등 제공 시

■ 상한용적률 적용기준

상한용적률

$$\text{상한용적률} =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alpha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1.0 \times \alpha \text{건축물} + 1.0 \times \alpha \text{현금})$$

-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과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로 적용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허용용적률로 봄)
 - 사업부지 및 공공시설 제공부지에 각각의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는 평균용적률 (용적률 적용이 다른 부지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산정하여 적용함
 - 공공시설 제공부지는 용도지역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 변경 전 허용용적률을 적용함
- ※ α 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 포함
- ※ α 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 α 현금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인센티브 산정기준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따름

나. 친환경 항목 적용 시

■ 상한용적률 적용기준

상한용적률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0.7 \times (\sum \text{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beta)))$$

-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① 및 ②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① ~ 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0.7 \times (\Sigma ① \sim ③) \geq 15\% \rightarrow 15\%$ 적용)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후 시행

① ZEB 인증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완화비율	15%	14%	13%	12%	11%	1+등급	9%	6%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 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1등급	6%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④ 장수명주택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5%		10%		15%	완화비율	15%	10%

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

■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 안의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위치 및 조성방법(신설·폐지 포함)의 변경
3. 공동주차출입구 설치를 위한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4.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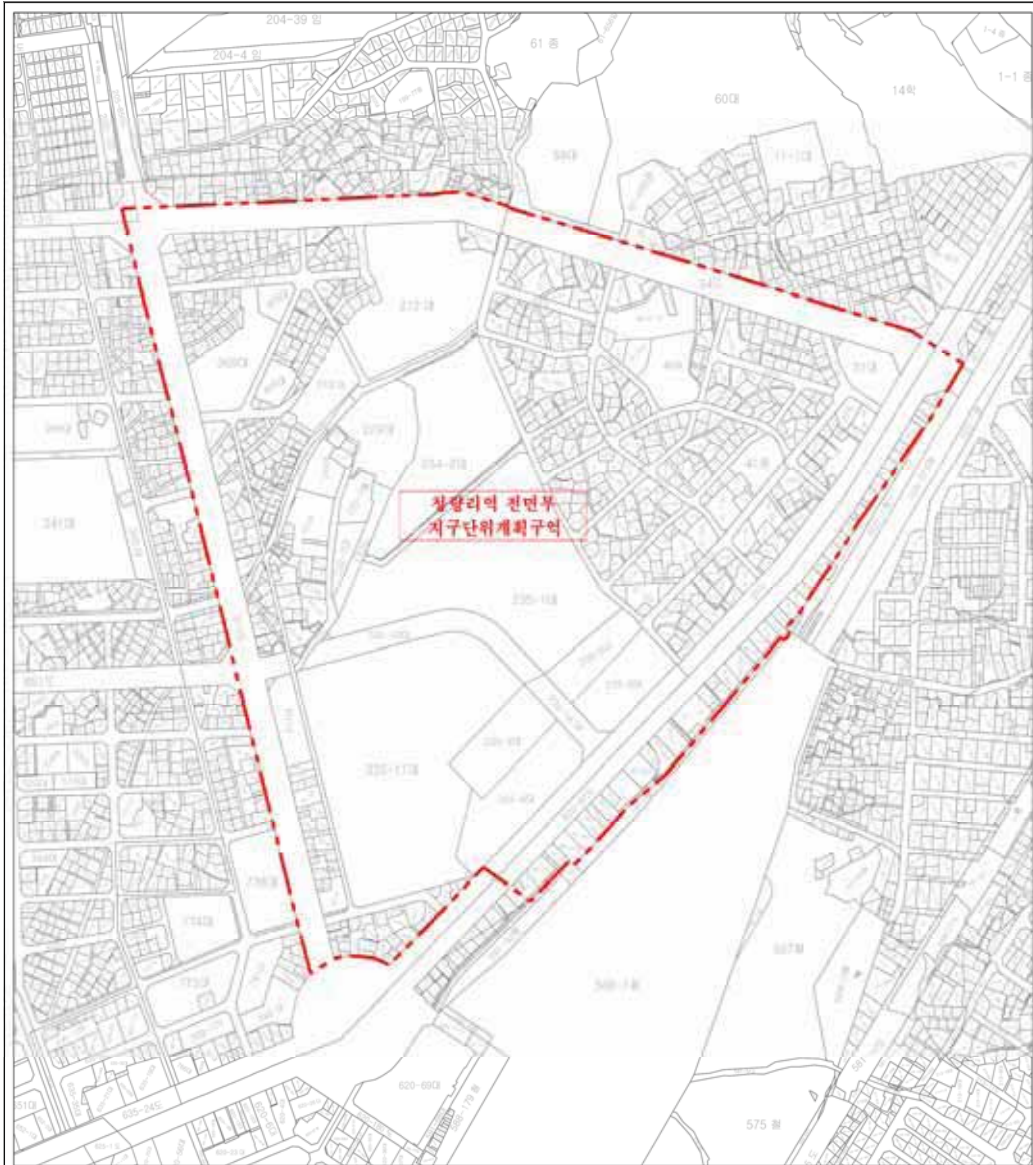
IV. 관계도면 :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VI.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6)와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2127-494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 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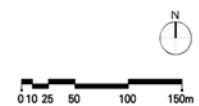


- 범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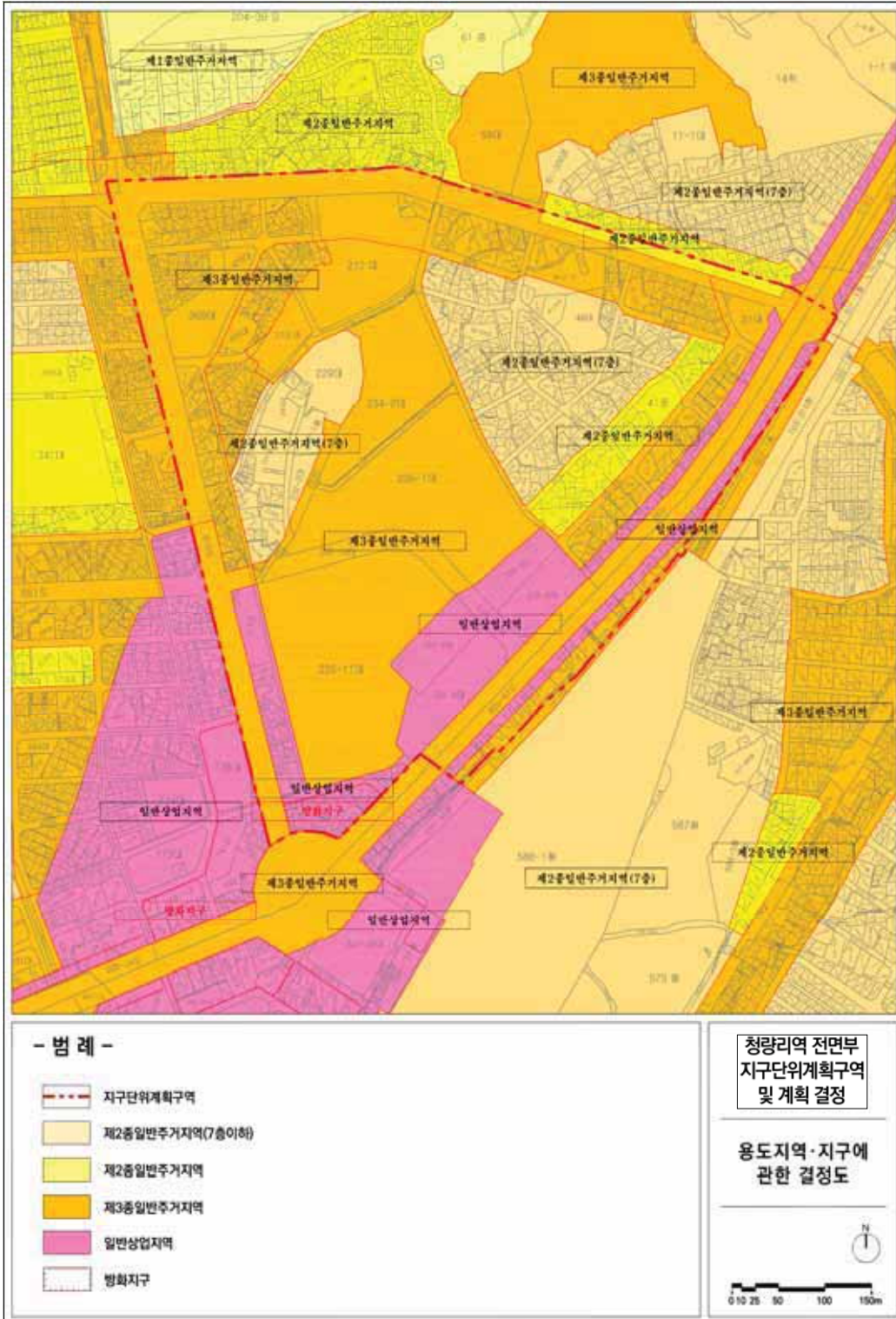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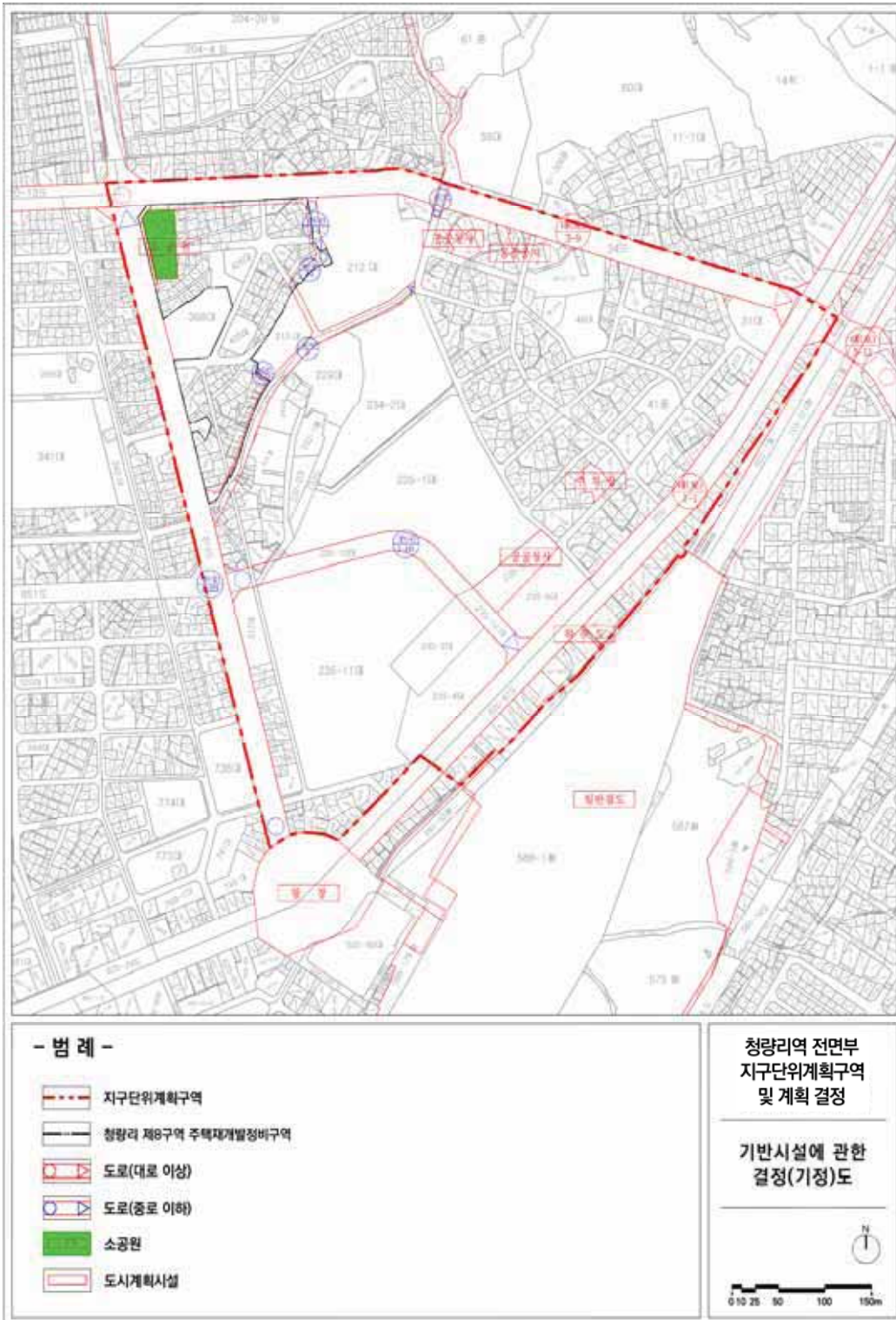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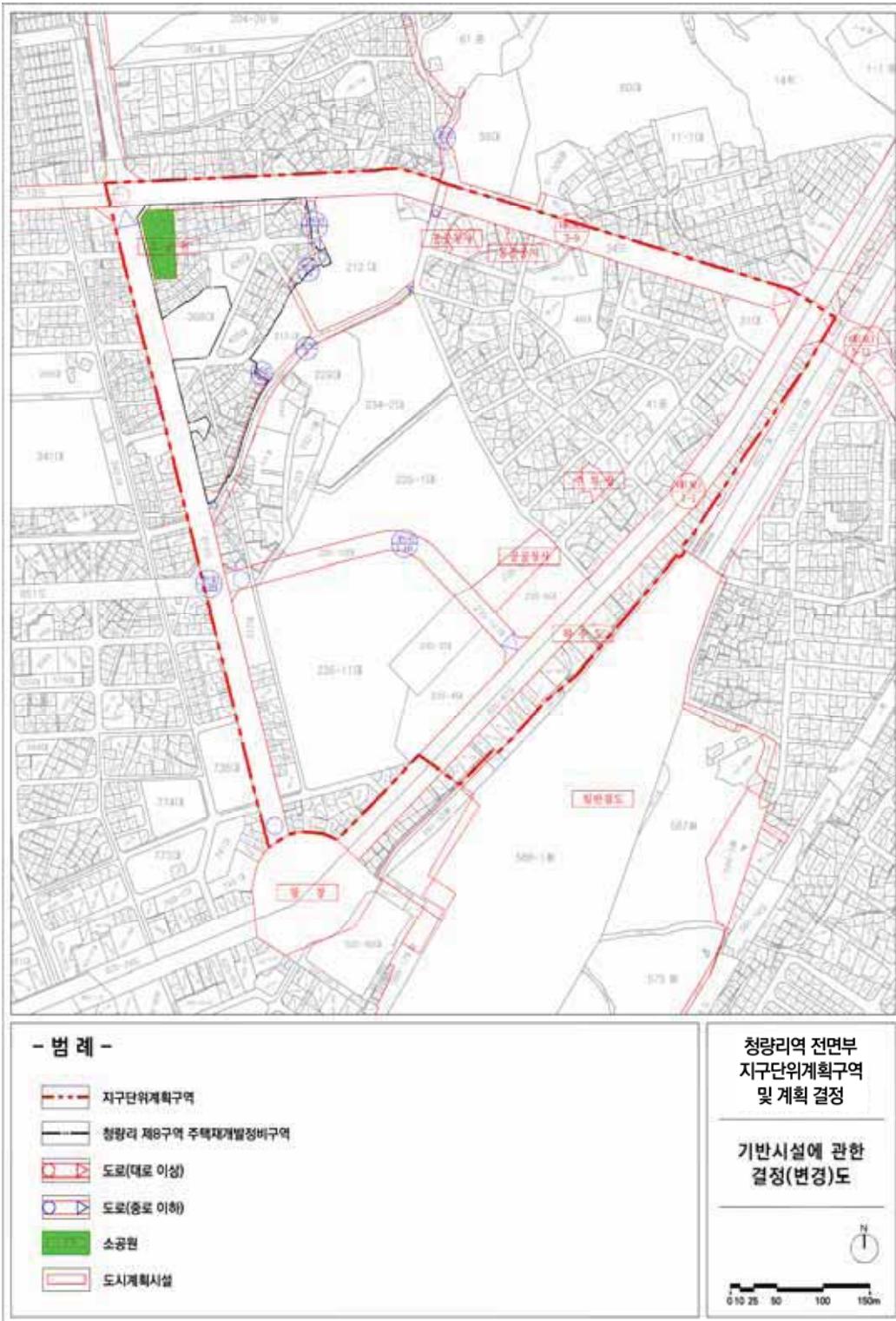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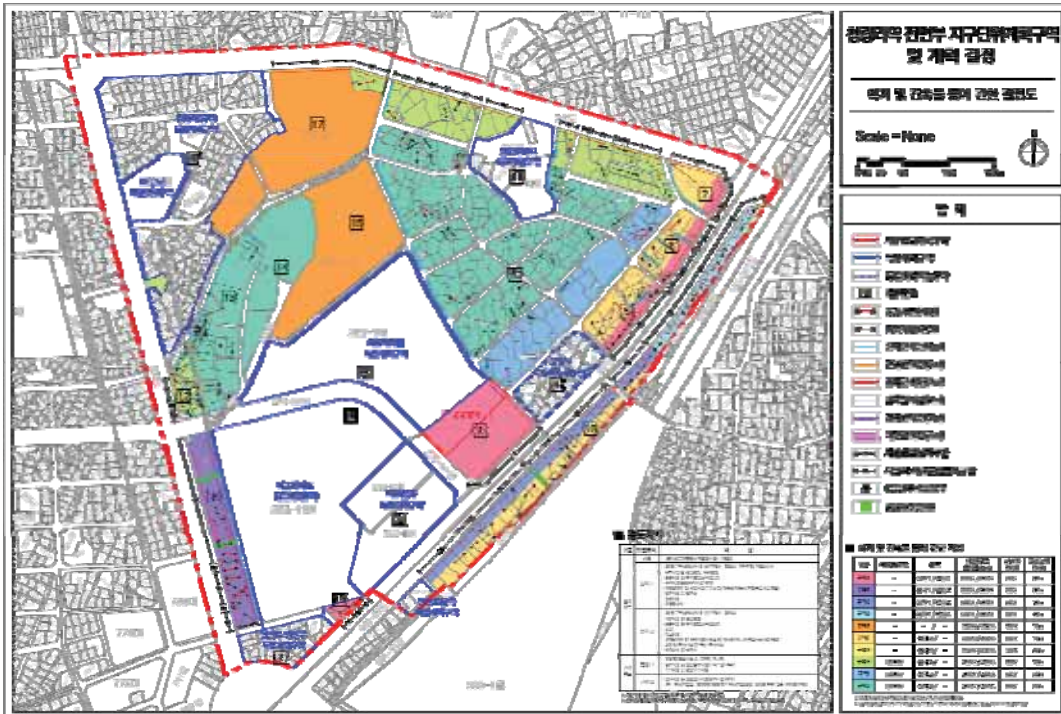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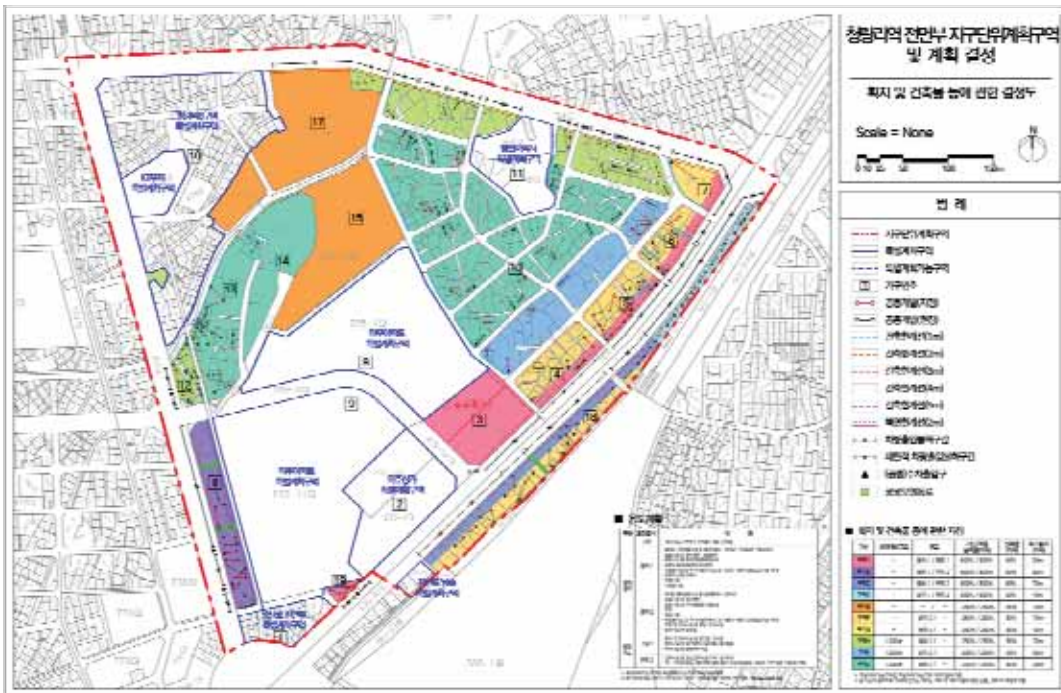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73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 61호(2023.02.23.)로 승인 고시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우선시공분)'에 대하여 변경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사업의 명칭(변경)

가. 기 정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우선시공분)

나. 변 경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 명칭 : 서울특별시

나. 대표자 성명 : 오 세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조성되는 다양한 시설들 간의 효율적 공간배치와 통합,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된 공간조성,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건설

나. 사업의 개요

1) 사업규모(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시설	지하연속벽(D/W) 892m, 시컨트파일 125m(160본), 시트파일 123m, 중앙파일 235본 등	지하연속벽(D/W) 1,060m, 시컨트파일 542m (694본), 시트파일 344m, 측벽파일 890본, 중앙파일 856본, 복공설치 1식 등	
지장물	하수도, 송전관로, 통신분기구 이설 1식	하수도, 송전관로, 통신분기구, 전력구 이설 등 1식	
가설공	현장사무실, 가설올타리 1식	현장사무실, 가설올타리, 공사중 교통처리안전시설, 공사중 환경관리 등 1식	
구조물공	-	구체 콘크리트타설, 방수 및 배수공 등 1식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도로공	-	도로포장, 도로배수 등 1식	
터널공	-	터널굴착 및 라이닝타설, 방수 및 배수공 등 1식	

2) 사 업 비(변경)

○ 기 정 : 70,119백만원

○ 변 경 : 1,992,902백만원

※ 위 금액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총 사업비 기준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시설별(철도/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비 구분 예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

나. 면 적(변경)

1) 기 정 : 55,521m²2) 변 경 : 52,974m²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기 정 : 실시계획승인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변 경 : 실시계획승인일 ~ 2028년 10월 31일까지

6.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91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시 사항)

가. 결정취지(변경없음)

○ 교통수단간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구축, 교통 결절점으로서 지역성장과 발전의 거점 조성,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 복합개발로 교통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 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복합환승센터)을 결정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교통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사항		
변경	②	자동차 정류장	복합환승 센터	강남구 삼성동 111-8 일대	55,521.0	52,974.0	감)2,547.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1 (2021.06.24.)	도로와 중복결정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20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복합환승센터) 사업

○ 명 칭

- 기 정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우선시공분)

- 변 경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 적(변경)

- 기 정 : 55,521㎡

- 변 경 : 52,974㎡

○ 사업규모(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시설	지하연속벽(D/W) 892m, 시컨트파일 125m(160본), 시트파일 123m, 중앙파일 235본 등	지하연속벽(D/W) 1,060m, 시컨트파일 542m (694본), 시트파일 344m, 측벽파일 890본, 중앙파일 856본, 복공설치 1식 등	
지장물	하수도, 송전관로, 통신분기구 이설 1식	하수도, 송전관로, 통신분기구, 전력구 이설 등 1식	
가설공	현장사무실, 가설울타리 1식	현장사무실, 가설울타리, 공사중 교통처리안전시설, 공사중 환경관리 등 1식	
구조물공	-	구체 콘크리트타설, 방수 및 배수공 등 1식	
도로공	-	도로포장, 도로배수 등 1식	
터널공	-	터널굴착 및 라이닝타설, 방수 및 배수공 등 1식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 정 : 실시계획승인일 ~ 2023년 6월 30일

○ 변 경 : 실시계획승인일 ~ 2028년 10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구 분			면 적 (㎡)				소유자	비고 (임시사용)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원면적		수용/사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강남구 삼성동	111 - 8	도	94,806	94,806	43,261	43,617	서울특별시	1,188
	159	대	-	87,534	0	354	사단법인한국무역협회	110
	159 - 1	대	-	7,614	0	291	사단법인한국무역협회	211
	159 - 9	대	-	53,636	0	559	사단법인한국무역협회	352
	160	대	-	2,649	0	205	에이치디씨주식회사	205
	167	대	-	79,342	0	1,71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외2인	928
	168	대	-	703	0	40	재령강씨종친회	40
	168 - 1	대	-	690	0	46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4호 전문	46
	168 - 2	대	-	621	0	41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4호 전문	41
	168 - 3	대	-	666	0	44	주식회사 하나은행	44
	168 - 4	대	-	462	0	13	주식회사 하나은행	13
	172	도	-	16,596	0	109	서울특별시	109
	172 - 7	도		2,869	0	3	강남구	3
	172 - 21	도	-	754	0	621	강남구	15
	172 - 22	도	-	395	0	202	강남구	34
	172 - 40	도	-	1,213	0	236	강남구	116
	172 - 61	도	-	699	0	311	강남구	152
	172 - 66	도		43,712	43,712	5,126	4,912	서울특별시

구 분			면 적 (㎡)				소유자	비고 (임시사용)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원면적		수용/사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강남구 대치동	995	도	97,930	97,930	3,183	1,242	서울특별시	32
	1011	도	43,853	43,853	3,951	2,078	서울특별시	0
합 계	당초 : 4필지 변경 : 20필지		280,301	536,744	55,521	56,634		3,660

* 임시사용(3,660㎡)는 가시설공사 등 공사중 임시 점용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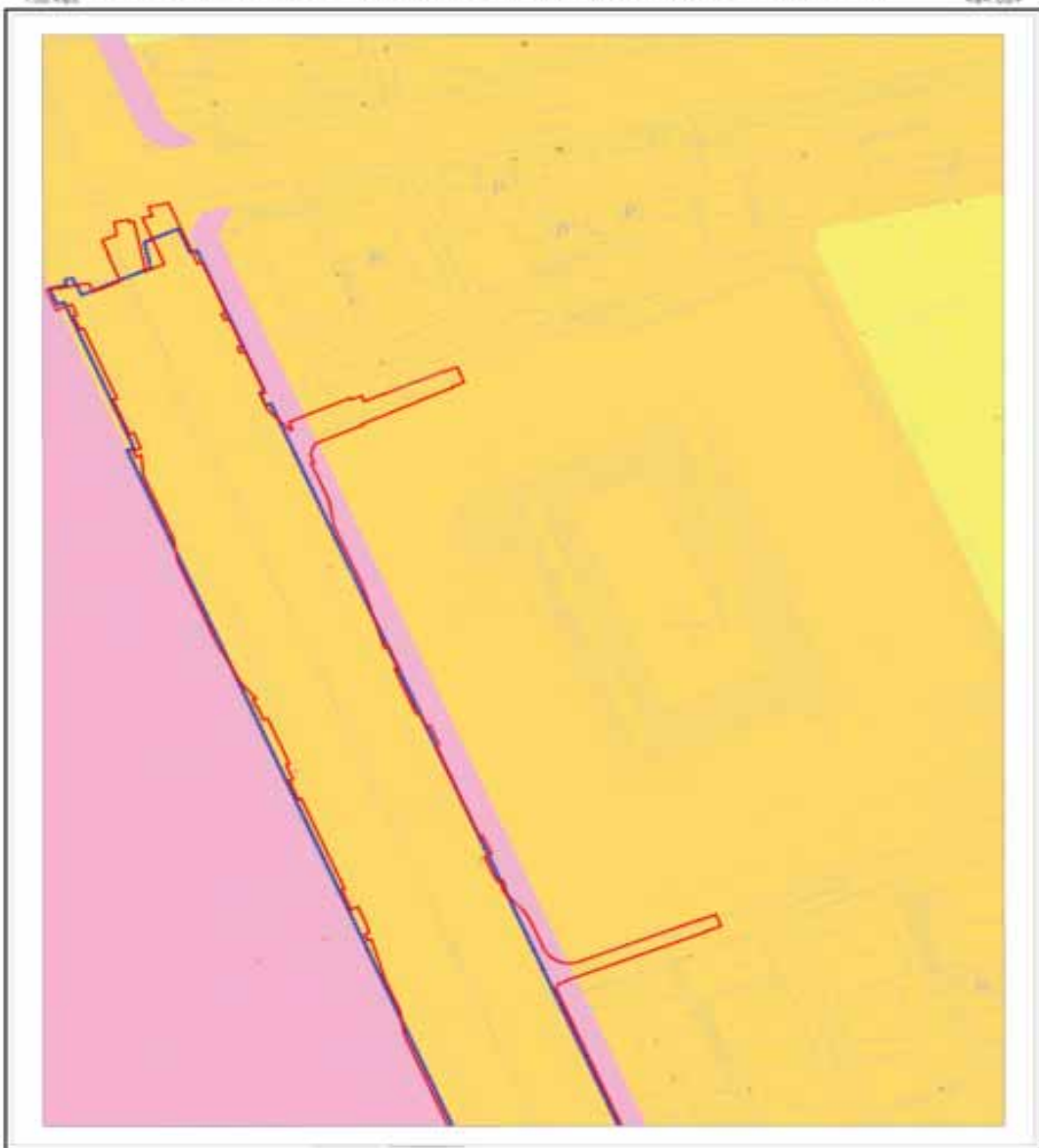
7. 지형도면 : 붙임

8. 기타 사항은 서울시 동남권추진단(☎ 2133 - 82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형도면고시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고시도(1)

[illegibl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이하 “서고시”) 제2018 - 127호(2018.4.26.)로 실시계획인가, 서고시 제 2018 - 376호(2018.11.22.), 서고시 제2021 - 215호(2021.05.06.), 서고시 제2021 - 690호 (2021.12.16.), 서고시 제2022 - 323호(2022.07.28.), 서고시 제2022 - 516호(2022.12.29) 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수색로(대로1 - 4호선) 확 · 포장 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 가(변경)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401 - 19~275 - 1 주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수색로(대로1 - 4호선) 확 · 포장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변경없음)

- 도로확장 연장 0.6km, 폭 40.5~47.0m(6~8차로→10차로 확장)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장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착수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 예정일 : (당초) 2023년 6월 30일 → (변경) 2023년 8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없음)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도면 및 서류 등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2133 - 8084)와 한 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 2부(☎ 031 - 901 - 453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75호

**전농 제9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 - 204호(2004.06.25.)로 고시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전농동 103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2023.2.20.)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시행방식	정비유형
기정	23	전농동	103	3.8	190	60	12층이하	3	주택재개발사업	수복 (전면)
변경	23	전농동	103	4.9	190	50	-	3	주택재개발사업	수복 (전면)

※ 예정구역 면적 28.9% 증가 (도정법 제101조의3 ①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없이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m ²)
신규	전농제9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03-236번지 일대	49,061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의 효력 등)제1항 및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는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구역지정 사유서

구분	위 치	지 정 내 용	지 정 사 유
신규	동대문구 전농동 103-236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 개선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고
합 계		49,061	100.0	
소 계		12,832	26.2	
정비기반시설	도 로	7,732	15.8	
	공 원	3,600	7.3	
기반시설	공공청사	1,500	3.1	◦연면적(지상 3,750㎡, 지하 3,250㎡)
핵 지		36,229	7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합 계	49,061	-	49,06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6,217	감) 36,21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2,844	증) 36,217	49,061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용 도 지 역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핵지	전농제9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36,217	전농9 정비사업에 따른 쾌적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5.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6. 토지등소유자 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정비구역 지정도서 참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 분	항 목			금 액(백만원)
수 입	합 계			775,737
	분양주택	조합원	704세대	508,841
		일 반	170세대	193,300
	임대주택	임대주택	303세대	54,349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1,900㎡	19,247
지 출	합 계			407,046
	공사비			284,643
	보상비			74,989
	설계·감리비			18,805
	부대경비			16,677
	예비비·관리비			11,932
종전자산 추정액			339,755백만원	
※ 추정비례율 108.52% {총 수입(7,757억원) - 총지출(4,070억원)} ÷ 종전자산(3,396억원)				

※ 수입항목은 추정분담금 산정 시의 주택계획이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				
			- 10%	- 5%	0%(기준)	5%	10%
변동률		평균단위단가 (만원/3.3㎡)	450	475	500	525	550
분양가 (일반분양기준)	10%	4,582	139.63%	135.49%	131.35%	127.21%	123.06%
	5%	4,374	128.22%	124.07%	119.93%	115.79%	111.65%
	0%(기준)	4,165	116.80%	112.66%	108.52%	104.37%	100.23%
	- 5%	3,957	105.38%	101.24%	97.10%	92.96%	88.82%
	- 10%	3,749	93.97%	89.83%	85.68%	81.54%	77.40%

7.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92	25~30	보조 간선도로	1,500 (73)	전농동	답십리동 광로1-5	일반 도로	-	건고시 제743호 ('63.12.30)
신설	중로	3	(1)	13	집산 도로	117	대로3-92	소로2-(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1	(1)	10	집산 도로	292	대로3-92	대로3-1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38	중로3-(1)	전농동 127-54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370	전농동 103-14	전농동 128-158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2)	3	국지 도로	30	소로2-(1)	전농동 127-167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	8	국지 도로	120	전농동 127-31	전농동 127-30	일반 도로	-	동대문구 고시 제2001-56호 ('01.08.18)

※ ()는 정비구역 내 연장 및 임시도로 번호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3-(1)	- 도시계획시설 신설 - B=13m, L=117m	간선도로에서의 단지진출입 및 구역 외 연접지역 출입 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1-(1)	- 도시계획시설 신설 - B=10m, L=292m	원활한 보행 및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 정비, 생활공유 가로 조성을 위하여 기존 미결정 도로 확폭, 구역 내 구간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2-(1)	- 도시계획시설 신설 - B=8m, L=38m	전농9 재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 (기존도로 정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3-(1)	도시계획시설 신설 - B=6m, L=370m	철도변 완충공간 확보, 철도시설 유지관리 차량 통행 및 장래 철도 지하화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3-(2)	도시계획시설 신설 - B=3m, L=30m	구역 경계부 구역 외 건축물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소로3	-	폐지	전농9 재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나.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일반철도 (철도역)	전농동 588-1 일대	152,856.9	서고시 제2002-386호 ('02.10.31)	경원선 청량리역
변경	철도	일반철도 (철도역)	전농동 588-1 일대	152,825.8 (감 31.1)	서고시 제2002-386호 ('02.10.31)	경원선 청량리역

※ 기정조서는 서고시 제2021-264호(2021.06.10.)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4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철도	철도면적 변경 감) 31.1㎡	전농9구역에 포함된 철도시설 일부 폐지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1)) 결정

다.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근린공원	전농동 127-102 일대	-	증) 3,600	3,600	-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규모기준(1만㎡) 이하로 근린공원 결정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공원 신설 -증)3,600㎡	전농9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원 신설, 지역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라.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신설	1	공공청사	전농동 127-134 일대	- 대지면적 : 1,500 - 연 면 적 : 7,000	-	별도부지 층수 : 지하3/지상6 (동대문구청)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증)1,500㎡	노후된 전농1동주민센터 이전 및 대학가와 연계한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패션봉제지원센터 등 복합청사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 세부 용도는 추후 정비사업 시행 시 변경될 수 있음.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법 정 기 준		계획면적(㎡)
			기 준	면적(㎡)	
주 민 공 동 시 설	합 계	-	1,000세대 이상 : $[500㎡ + (2㎡ \times \text{세대수})] \times 1.25$	3,522.5	4,750
	경로당	획지	1,000세대~1,500세대 미만	375	400
	어린이집	획지		580	600
	작은도서관	획지		203	300
	입주자집회소	획지	-	-	1,500
	다함께 돌봄센터	획지	500세대 이상	66	150
	주민운동시설	획지	500세대 이상	-	1,200
	어린이놀이터	획지	-	-	600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법 정 기 준		계획면적(㎡)
			기 준	면적(㎡)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획지		-	1,300
부대시설	경비실	획지	-	-	36
	관리사무소	획지	50세대 이상 : $10㎡ + [(세대수 - 50) \times 0.05㎡]$	65.45	1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및 별표1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8.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신설	전농제9	49,061	-	-	전농동 103-236번지 일대	312	-	-	312	-

9.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이하)	용적률 (% 이하)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법적 상한																																																																																											
신설	전농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9,061	획지	36,229	전농동 103-236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250	300	175m이하 (35층)																																																																																										
			공공청사	1,500	전농동 127-134 일대	공공청사	50	250	-	-																																																																																										
• 총세대수 : 1,159세대 (분양 920세대, 의무공공임대 140세대, 국민주택규모임대 99세대)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전용면적 (㎡)</th><th colspan="3">세대수(세대)</th><th colspan="2" rowspan="2">비율(%)</th><th rowspan="2">기 준</th></tr><tr><th>의무임대</th><th>국민주택</th><th>분양</th></tr><tr><td rowspan="5">60㎡이하</td><td>15</td><td>-</td><td>-</td><td>1</td><td>0.1</td><td rowspan="5">56.2</td><td rowspan="7">총 건립세대수의 80%이상</td></tr><tr><td>29</td><td>19</td><td>-</td><td>10</td><td>2.5</td></tr><tr><td>39</td><td>77</td><td>-</td><td>13</td><td>7.8</td></tr><tr><td>49</td><td>29</td><td>-</td><td>77</td><td>9.1</td></tr><tr><td>59</td><td>15</td><td>8</td><td>402</td><td>36.7</td></tr><tr><td rowspan="2">60㎡초과~85㎡ 이하</td><td>74</td><td>-</td><td>-</td><td>62</td><td>5.4</td><td rowspan="2">38.5</td></tr><tr><td>84</td><td>-</td><td>91</td><td>293</td><td>33.1</td></tr><tr><td>85㎡ 초과</td><td>106</td><td>-</td><td>-</td><td>62</td><td>5.3</td><td>5.3</td><td>-</td></tr><tr><td colspan="2" rowspan="2">합 계</td><td>140</td><td>99</td><td>920</td><td colspan="2" rowspan="2">100.0</td><td rowspan="2">-</td></tr><tr><td colspan="3">1,159</td></tr></table>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한 임대 규모별 건설 비율(국민주택규모주택 증가분은 제외)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세대수의 15.03%(기준 15%) <table><tr><th>건립규모</th><th>기 준</th><th>세대수</th><th>비율(%)</th></tr><tr><td>합 계</td><td>세대수의 15%</td><td>140세대</td><td>100</td></tr><tr><td>40㎡ 이하</td><td>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td><td>96세대</td><td>68.6</td></tr><tr><td>40㎡ 초과 ~ 50㎡ 이하</td><td>-</td><td>29세대</td><td>20.7</td></tr><tr><td>50㎡ 초과 ~ 60㎡ 이하</td><td>-</td><td>15세대</td><td>10.7</td></tr></table>											구분	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비율(%)		기 준	의무임대	국민주택	분양	60㎡이하	15	-	-	1	0.1	56.2	총 건립세대수의 80%이상	29	19	-	10	2.5	39	77	-	13	7.8	49	29	-	77	9.1	59	15	8	402	36.7	60㎡초과~85㎡ 이하	74	-	-	62	5.4	38.5	84	-	91	293	33.1	85㎡ 초과	106	-	-	62	5.3	5.3	-	합 계		140	99	920	100.0		-	1,159			건립규모	기 준	세대수	비율(%)	합 계	세대수의 15%	140세대	100	40㎡ 이하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96세대	68.6	40㎡ 초과 ~ 50㎡ 이하	-	29세대	20.7	50㎡ 초과 ~ 60㎡ 이하	-	15세대	10.7
구분	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비율(%)		기 준																																																																																													
		의무임대	국민주택	분양																																																																																																
60㎡이하	15	-	-	1	0.1	56.2	총 건립세대수의 80%이상																																																																																													
	29	19	-	10	2.5																																																																																															
	39	77	-	13	7.8																																																																																															
	49	29	-	77	9.1																																																																																															
	59	15	8	402	36.7																																																																																															
60㎡초과~85㎡ 이하	74	-	-	62	5.4	38.5																																																																																														
	84	-	91	293	33.1																																																																																															
85㎡ 초과	106	-	-	62	5.3	5.3	-																																																																																													
합 계		140	99	920	100.0		-																																																																																													
		1,159																																																																																																		
건립규모	기 준	세대수	비율(%)																																																																																																	
합 계	세대수의 15%	140세대	100																																																																																																	
40㎡ 이하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96세대	68.6																																																																																																	
40㎡ 초과 ~ 50㎡ 이하	-	29세대	20.7																																																																																																	
50㎡ 초과 ~ 60㎡ 이하	-	15세대	10.7																																																																																																	
심의완화 사항			• 기준용적률 20% 상향 (소형주택 추가 확보)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0.98% (지능형건축물 2등급)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초과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 도로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이하)	용적률 (% 이하)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법적 상한	
			- 철도인접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기타사항			•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 서울시립대로변 구간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정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토지 (도로,공원,공공 청사)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49,061㎡	36,229㎡	16,374㎡	12,832㎡	3,542㎡	5,476㎡	7,253.7㎡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정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6,374㎡ - 5,476㎡ - 7,253.7㎡ = 3,644.3㎡$						
건축물 환산 부지면적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표준건축비(천원/㎡) × 공공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천원/㎡) ◦ 공공청사 $= \text{공공청사 설치비용} \times \text{건물연면적} / \text{공시지가}_{\text{가중치}}$ $= 3,267,300 \times 7,000 / 6,455,400 = 3,542㎡$ ※ 부지가액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준 용적률	• 211.96% - 획지 내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가중평균 $= \{ (32,676㎡ \times 190\%) + (3,553㎡ \times 210\%) \} / 36,229㎡ = 191.96\%$ - 소형주택 추가확보 완화 적용 = 191.96% + 20% = 211.96%						
허용 용적률	• 222.94% -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가중평균 적용 $= \{ (32,676㎡ \times 10\%) + (3,553㎡ \times 20\%) \} / 36,229㎡ = 10.98\%$						

구 분	산 정 내 용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 211.96% + 10.98%(지능형건축물 2등급) = 222.94%	
정비계획 용적률	- 상한용적률: 239.01% = 허용용적률 × {1+1.3x가중치xα토지+0.7α건축물} = 222.94 × (1 + (1.3×0.0028×1) + (0.7×0.0978)) = 239.01%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12,832 - 12,729.7) / 36,229 = 0.0028 - α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3,542 / 36,229 = 0.0978
법적 상한 용적률	299.68%(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22.10.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

※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은 국·공유지 무상양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제5항에 따른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1) 임대주택 건설 계획

구 분	세대수 (세대)	비율(%)	계획기준
총 세대수	931	-	□전체 세대수(1,159세대)에서 도시정비법 제54조 제4항에 따른 세대수(228세대) 제외
의무 공공임대주택	140	100.0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 931 × 0.15 = 140 ≤ 140 - 84,676(연면적)×0.1=8,467.6 ≤ 8,555.2

구 분	세대수 (세대)	비율(%)	계획기준
40㎡이하	96	68.6	□전체 임대주택(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 $140 \times 0.3 = 42 \leq 96$ - $931 \times 0.05 = 46.65 \leq 96$
40㎡초과 ~ 50㎡이하	29	20.7	-
50㎡초과 ~ 60㎡이하	15	10.7	-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규모별 건설비용」 (서울시고시 제2022-493호(2022.12.12.))

※ 공공주택 및 소형·국민주택 규모·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소형주택 건설 계획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소형주택 추가확보 계획)

구 분	내 용	
20% 상향 전	◦ 기준용적률 : 191.96% ◦ 정비계획용적률 : 217.57%	
20% 상향 후	◦ 기준용적률 : 211.96% ◦ 정비계획용적률 : 239.01%	
20% 상향에 따른 증가분	늘어난 용적률	◦ 21.44% (239.01% - 217.57%)
	늘어난 연면적	◦ 7,767.5㎡ (획지면적 36,229㎡ × 21.44%)
60㎡ 이하 주택건설 규모	◦ 계획 101세대 (2,283.87㎡(69.21㎡(49형)×33세대) + 5,489.75㎡(80.73㎡(59형))×68세대) = 7,773.63㎡ (≥ 7,767.5㎡))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97호(2010.03.18)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의해 기준용적률 20% 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은 주택규모 60㎡ 이하로 건설

※ 공공주택 및 소형·국민주택 규모·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상한용적률		◦ 239.01%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 299.68%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국민주택규모 확보 의무면적	용적률 초과분	◦ 60.67% (299.68% - 239.01%)				
	초과 용적률의 50%	◦ 30.335% (60.67% × 50%)				
	의무 연면적	◦ 10,990.07㎡ 이상 (획지면적 36,229㎡ × 30.335%)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 계획 99세대, 연면적 11,034.96㎡ (용적률 30.46%)				
		구분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 고

구 분	내 용				
	59형	80.73㎡	8	645.85㎡	
	84형	114.17㎡	91	10,389.11㎡	
	합 계		99	11,034.96㎡	≥ 10,990.07㎡

※ 도시정비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

※ 공공주택 및 소형·국민주택 규모·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환경 보전	●자연환경: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정면적 최대 반영 - 주변단지와 도로 Level에 맞게 계획 - 녹지면적증가, 지구내 녹지공간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생활환경: 스카이라인등을 고려한 계획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중 식재 - 시행후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포장면적의 축소 ●도시계획시행 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 - 정비 분산투입, 작업장내 차속제한, 저소음·저진동 공사장비 투입, 야간작업 지양
재난 방지	●지반붕괴를 유발하거나 유수기능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절성토의 규제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우·오수관로 개량 및 설치계획을 수립 ●공원의 녹음시설을 통한 수해예방효과를 기대(우수의 침투 및 보수효과) ●건축법 및 주택법의 방화, 소방, 피난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태 면적률	30%	○	• 생태면적률 30%이상으로 계획	•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녹지, 투수포장, 틈새포장 등 적용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 I	○	• 녹지면적Ⅲ, 녹지모양Ⅲ, 내부연결성 I, 외부연결성 I로 녹지평가지표 I 계획	• 법적기준 및 환경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계획 수립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 절성토를 최소화토록 할 것임	•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토량균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 지형변동율은 미미할 것임	• 단지내 지형단차를 최소화하며, 단차를 활용한 시설 계획으로 목표기준을 고려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 주차장 등 지하공간계획으로 인해 지하수 유출 예상	• 지형단차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 완벽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유지
	비오톱	5등급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	• 사업시행 시 녹지면적 최대 확보 및 비오톱 조성 계획 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 일조 영향 범위를 최소화할 것임	• 건축물내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건축물입지로 인한 바람길 및 미기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및 시스템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계획구역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도입여부를 검토	• 초기투자비용이 과하여 적용하지 않음
	경관	Skyline보전	○	• 시설물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예상	• 건물배치, 형태, 높이계획에 반영
		조망권 확보	○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확보 필요	•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구성
		녹지공간 확보	○	•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조경녹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경관연출을 도모
환경 영향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휴식 및 여가공간의 훼손은 없음 • 어린이 놀이터, 휴게공간 등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	•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휴식·여가공간으로 활용
	대기질		○	• 건설장비 가동시 배기가스 배출 • 장비 이동시 날림먼지 발생 • 토사의 상·하절시 먼지 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 차량 이동에 의한 대기오염 발생	• 공사차량 제한 및 속도 규제 • 세륜·세차시설 설치 • 방진망 설치 및 살수 실시 •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 사업지구 내 녹지 조성
	수 질		○	• 공사시 우수유출량 0.57m ³ /sec • 공사시 토사유출량 10.69톤/일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14.4m ³ /일 발생 • 운영시 계획인구에 의한 생활급수 및 오수발생	• 시면보호공법 조기시행, 침사지 설치 등 토사저감대책 시행 • 공사시 발생오수는 개별처리 또는 연계처리 검토 • 급수공급 및 오수처리는 관할 행정구역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폐기물		○	•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폐유, 건설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처리
	소음진동		○	• 공사시 장비 투입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발생 • 운영시 주변 도로 및 철도에 의한 교통소음 발생이 예상	• 가설방음벽 설치 • 가급적 주간에 공사 실시 • 장비 분산투입

1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기존	계획	증
신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한국토지주택공사	884	1,159	275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서울시립 대학교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에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겠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및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라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거리 200m이내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내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방범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장소에 방범 등 CCTV 등 설치 • CCTV 및 방범등의 설치위치는 주민요청 및 현장조사를 반영하여 선정

II.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 후	
주거 지역	합 계	49,061	-	49,06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6,217	감) 36,21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2,844	증) 36,217	49,061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용 도 지 역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획지	전농제9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36,217	전농9 정비사업에 따른 쾌적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I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전농제9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103-236번지 일대	-	증) 49,061	49,061	10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합 계	49,061	-	49,061	100.0	전농9 정비사업에 따른 쾌적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6,217	감) 36,21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2,844	증) 36,217	49,061	100.0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92	25~30	보조 간선도로	1,500 (73)	전농동	답십리동 광로1-5	일반 도로	-	건고시 제743호 ('63.12.30)	서울시립대로
신설	중로	3	(1)	13	집산 도로	117	대로3-92	소로2-(1)	일반 도로	-	-	남측 진입부
신설	소로	1	(1)	10	집산 도로	292	대로3-92	대로3-11	일반 도로	-	-	동측 경계부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38	중로3-(1)	전농동 127-54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370	전농동 103-14	전농동 128-158	일반 도로	-	-	철도시설 경계부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2)	3	국지 도로	30	소로2-(1)	전농동 127-167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	8	국지 도로	120	전농동 127-31	전농동 127-30	일반 도로	-	동대문구고시 제2001-56호 ('01.08.18)	-

※ ()는 정비구역 내 연장 및 임시도로 번호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3-(1)	- 도시계획시설 신설 - B=13m, L=117m	간선도로에서의 단지진출입 및 구역 외 연접지역 출입 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1-(1)	- 도시계획시설 신설 - B=10m, L=292m	원활한 보행 및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 정비, 생활공유 가로 조성을 위하여 기존 미결정 도로 확폭, 구역 내 구간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2-(1)	- 도시계획시설 신설 - B=8m, L=38m	전농9 재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기존도로 정비)
-	소로3-(1)	- 도시계획시설 신설 - B=6m, L=370m	철도변 완충공간 확보, 철도시설 유지관리 차량 통행 및 장래 철도 지하화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3-(2)	- 도시계획시설 신설 - B=3m, L=30m	구역 경계부 구역 외 건축물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소로3	-	폐지	전농9 재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나.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일반철도 (철도역)	전농동 588-1 일대	152,856.9	서고시 제2002-386호 ('02.10.31)	경원선 청량리역
변경	철도	일반철도 (철도역)	전농동 588-1 일대	152,825.8 (감 31.1)	서고시 제2002-386호 ('02.10.31)	경원선 청량리역

※ 기정조서는 서고시 제2021-264호(2021.06.10.)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4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철도	철도면적 변경 감) 31.1㎡	전농9구역에 포함된 철도시설 일부 폐지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1)) 결정

다.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근린공원	전농동 127-102 일대	-	증) 3,600	3,600	-

※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반영,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규모기준(1만㎡) 이하로 근린공원 결정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공원 신설 - 증) 3,600㎡	전농9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원 신설, 지역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라.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신설	1	공공청사	전농동 127-134 일대	- 대지면적 : 1,500 - 연면적 : 7,000	-	별도부지 층수 : 지하3/지상6 (동대문구청)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증) 1,500㎡	노후된 전농1동주민센터 이전 및 대학가와 연계한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패션봉제지원센터 등 복합청사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명칭	위 치	면적(㎡)	
신설	전농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9,061	1	전농동 103-236 일대	36,22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전농동 127-134 일대	1,500	공공청사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명 칭	용 도
신설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공공청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공공업무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일반 업무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 의한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명 칭	용도지역	건폐율
신설	획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공공청사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명 칭	용적률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법적상한	
신설	획지	211.96%	222.94%	239.01%	300% 이하	
	공공청사	250% 이하				관련법령에 따름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명 칭	인센티브
신설	획지(공동주택용지)	지능형건축물 2등급 12% (10.98% 적용)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명 칭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신설	획지	16.07%	60.99%

다) 높이 계획

구 분	명 칭	용도지역	높이기준
신설	획지(공동주택용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175m이하 (35층)
	공공청사	제3종일반주거지역	-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철도 인접부 6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라. 경관계획

1)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주동배치	공동주택 아파트	• 주동의 배치는 주요 도로변에서 조망을 고려하고 철도변 소음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배치가 되지 않도록 계획 • 시각적으로 개방된 통로 및 바람길 확보 권장 • 평면 및 건물 형태 등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혼합(Social Mix) 배치계획
입면계획		• 도시경관을 고려한 층수, 평면 및 단면 등을 다양화한 주동의 형태계획 • 주동의 형태에 따른 입면디자인 다양화 계획 • 건축물의 저층부 및 고층부는 주변과의 연계된 디자인으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 주민편의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단지 중앙부에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고 일조 및 주민활동을 고려하여 계획 - 단지 내 보행동선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시설, 휴게공간 등을 계획하여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형성되도록 계획
기 타	공동주택 아파트	- 세대별 주거안정을 위한 사생활 보호 및 통풍이 원활한 평면구성 - 일조가 확보되는 곳은 벽면일체형 태양광패널(BIPV) 설치

2) 경관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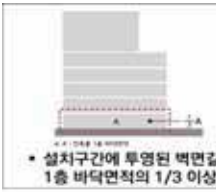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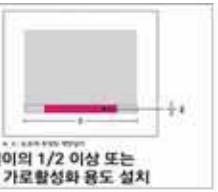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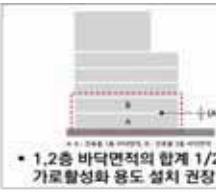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개방감	경계부	전농로, 왕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조망시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통경을 고려한 계획
외부공간 및 조경	단지 내부	- 단지내 · 외부공간은 개방성을 고려하고 보행자를 배려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 - 단지내 · 외 도로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 -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체계로 계획 - 주변 현황 등의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경사 및 단차를 최소화 - 가로변에 면한 외부공간은 개방성을 고려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무장애 환경으로 계획 - 외부공간의 바닥포장재료, 패턴 등은 주변과 조화롭게 계획 - 단지입구에서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차량동선을 짧게 계획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는 주변과 조화를 이룬 스카이라인(SkyLine)을 형성토록 계획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전면공지	동측 10m, 남측 8m, 13m 도로변	해당 도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철도 인접부 6m 도로변	해당 도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건축계획 및 장래 청량리역 철도 지하화 등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차도·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차도형 또는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2)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공공청사 용지 (서울시립대로변 구간)	- 시립대·청량리역으로 연결되는 시립대로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공공청사용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 지정, 시립대로변에 면한 공공청사 저층부는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가로활성화용도* 설치하여야 함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는 시립대로에 투영된 벽면길이 1/2 이상 또는 1층 바닥면적 1/3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1·2층 바닥면적 합계 1/2이상 설치를 권장 - 해당 시설은 시립대로변으로 전면성을 확보하고 시설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보행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함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상업시설, 교육·문화 관련시설 등) - 상업시설 : 소매점이나 카페,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 - 교육·문화 관련시설 : 전시장, 공연장, 서점, 도서관 등 - 기타 가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도면 참고

IV.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 - 2133 - 7189),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 - 2127 - 4295)에 정비구역 지정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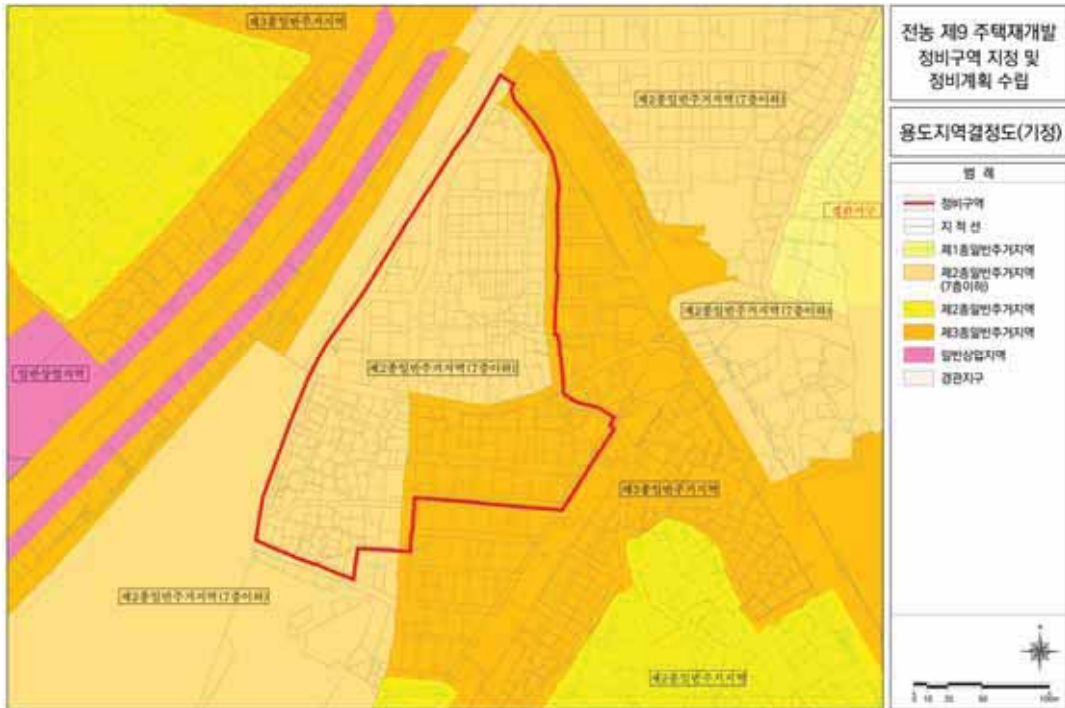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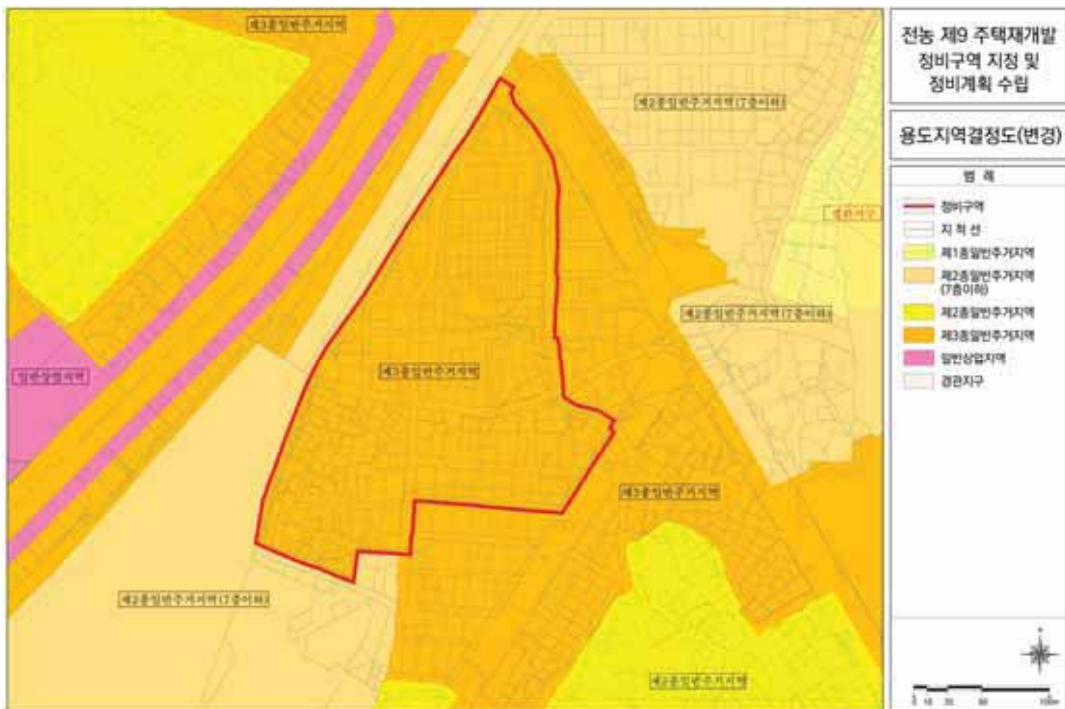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76호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89호(1994.6.13.) 도시설계지구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97호(2009.12.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81호(2013.6.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57호로(2021.8.26.)로 변경 결정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2023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5.10.) 및 재열람공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서울도심 내 주요 간선가로인 율곡로변에 위치한 수송동 30번지 일대 별도의 획지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한 계획적 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II - I.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①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	66,698 (3,028.23)	서고 제1994-189호 (1994.06.13.)	-

※ ()는 수송동 30번지 일대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면적임.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대지의 규모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공동개발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대지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동	지번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2	수송동	9-2대	308.1	-	-		-
			12대	196.7	-	-		
			13대	81.1	-	-		
			17대	119.0	-	-		
			19대	76.0	-	-		
			20-1대	6.0	115.1	공동개발지정 : 20		
			20대	109.1		공동개발지정 : 20-1		
			21-1대	36.4	172.4	공동개발지정 : 22-1, 22-2, 22, 23-1, 23-3, 40-2		
			22-1대	1.7		공동개발지정 : 21-1, 22-2, 22, 23-1, 23-3, 40-2		
			22-2대	16.5		공동개발지정 : 21-1, 22-1, 22, 23-1, 23-3, 40-2		
			22대	56.2		공동개발지정 : 21-1, 22-1, 22-2, 23-1, 23-3, 40-2		
			23-1대	46.0		공동개발지정 : 21-1, 22-1, 22-2, 22, 23-3, 40-2		
			23-3대	1.7		공동개발지정 : 21-1, 22-1, 22-2, 22, 23-1, 40-2		
			40-2대	13.9		공동개발지정 : 21-1, 22-1, 22-2, 22, 23-1, 23-3		
			24-2대	79.0	-	-		
			25-2대	82.6	-	-		
			30대	237.4	-	-		
			31-1대	193.7	-	-		
			31-3대	173.9	-	-		
			32-1대	7.3	172.5	공동개발지정 : 32, 32-2		
			32-2대	26.4		공동개발지정 : 32, 32-1		
			32대	138.8		공동개발지정 : 32-1, 32-2		
			33대	82.6	-	-		
			34대	89.3	-	-		
			35-1대	1.3	83.9	공동개발지정 : 35		
			35대	82.6		공동개발지정 : 35-1		
			36-1대	112.4	-	-		
			36-2대	82.6	-	-		
			85대	6,317.5	-	-		
변경	2	수송동	9-2대	308.1	2,767.1㎡	도화서길	획지분할가능선 지정	-

구분	가구번호	동	지번	필지면적(㎡)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12대	196.7		-	
			13대	81.1		획지분할가능선 지정	
			17대	235		*필지합병 : 17, 20, 20-1, 40-4	
			19대	76.0		-	
			21-1대	36.4		-	
			22-1대	1.7		-	
			22-2대	16.5		-	
			22대	56.2		-	
			23-1대	46.0		-	
			23-3대	1.7		-	
			40-2대	13.9		-	
			24-2대	79.0		-	
			25-2대	82.6		-	
			30대	777.5		*필지합병 : 30, 31-1, 31-3, 32, 32-1, 32-2	
			33대	171.9		*필지합병 : 33, 34 (20.6.25.)	
			33-1대	17.5		*필지추가 : 현황도로로 누락되었던 필지 추가	
			35-1대	1.3		-	
			35대	82.6		-	
			36-1대	112.4		-	
			36-2대	82.6		획지분할가능선 지정	
			40-7대	12.1		*필지추가 : 40-1도에서 분할 후 지목 변경	
			40-8대	38.3		*필지추가 : 40-1도에서 분할 후 지목 변경	
			21-2도	16.50		*필지추가 : 획지 내 종로구 소유 도로 (매입하여 대지로 지목 변경 예정)	
			27-7도	68.1		*필지추가 : 획지 내 개인 소유 도로 (매입하여 대지로 지목 변경 예정)	
			40-1도a	155.4		*필지추가 : 획지 내 종로구 소유 도로 ('40-1도' 일부) (매입하여 대지로 지목 변경 예정)	
			40-1도b	261.13	-	*필지추가 : 공공기여 대상, 도화서길 일부 도로부지	
			85대	6,317.5	-	-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 획지 변경	• 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획지 변경 -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2,767.1 m² ※ 수송동 40-1도b는 공공기여 대상(도화서길 조성)으로 특별계획구역에만 포함
	• 지적 변경 및 필지 추가	• 지적 변경 : 기 변경사항 반영 - 수송동 17, 20, 20-1, 40-4 필지 합병 → 17대 (2020-06-25) - 수송동 30, 31-1, 31-3, 32, 32-1, 32-2 필지 합병 → 30대 (2016-10-24) - 수송동 33, 34 필지 합병 → 33대 (2020-06-25) • 필지 추가 :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경계 설정 - 수송동 33-1대 : 획지 내 현황도로로 누락되었던 필지 - 수송동 40-7대, 40-8대 : 40-1도에서 분할 후 대지로 지목 변경된 필지 (2016.5.17.) - 수송동 40-1도a, 21-2도 : 획지 내 종로구소유 도로로 대지로 지목 변경 예정 필지 - 수송동 27-7도 : 획지 내 개인 소유 도로로 대지로 지목 변경 예정 필지 - 수송동 40-1도b : 공공기여 대상으로 도화서길 일부 도로부지 추가

4.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건축물 밀도 및 높이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도면 표기 변경

구분	적용 구간	계획 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율곡로, 우정국로, 율곡로4길(도화서길)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차량출입 불허	도면에 표기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변경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차량출입 불허	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고려하여 율곡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변경

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신설)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수송동 30번지 일대	-	증)3,028.23	3,028.23	-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신설 (면적 : 3,028.23 ㎡)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시 재창조 전략,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 계획 및 시책 변화, (가칭)송현문화공원 등 울곡로변 여건 변화를 고려 - 입지적 여건을 고려, 새로운 정책 목표와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통합마스터플랜에 따른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 개발부지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신설)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위치		• 수송동 30번지 일대		-
면적		• 3,028.23㎡		-
용도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획지 계획		• 특별계획구역 내 획지선 지정 : 2,767.1㎡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 도화서길을 고려하여 획지분할가능선 지정 ※ 획지별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단계적 개발 • 수송동 40-1도b 허용용적률 중점 인센티브 대상(도화서길 조성)으로 특별계획구역에 포함 - 261.13 ㎡		※ 획지분할 시 획지별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단계적 개발 가능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전층	• 제2종근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 불허용도(전층, 1층) 반영
			• 의료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실내다목적,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영업소)	
			• 교정 및 군사시설 (보호관찰소, 갯신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저장소)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1층	• 공동주택	출입을 위한 시설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 - 숙박시설 (관광숙박,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굿스테이 요건 충족 업소는 예외로 함)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경우 예외
	용도	권장	전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기정 지구단위계획 세부용도 적용 배제
	밀도	건폐율		60% - 획지분할 개발 시 도화서길 변 대지면적 100㎡이하 소규모 대지는 건폐율 완화 조건 준수 시 80%까지 완화 가능 (1층 바닥면적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450% 이하 - 허용용적률 : 6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 배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 적용 체계 반영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배제
		높이		- 기준높이 50m 이하 - 완화높이 70m 이하 - 개방형 녹지 조성 및 특정층 개방 등 공공공간 확보를 통한 최대 20m 범위 내 기준높이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 (추가 10m 범위 내) - 획지분할 개발 시 도화서길 변 대지면적 100㎡이하 소규모 대지는 20m(5층) 이하 적용	「서울도심 기본계획」(23.02.09.) 높이 기준 및 「특성관리구역 내 녹지생태도심 조성방안」에 따른 높이 완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배제
		배치 및 형태		- 울곡로변 : 건축한계선 3m (가칭) 송현문화공원 등 울곡로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계획 수립 - 도화서길변 기존 특성을 고려한 저층ZONE형성 20m(5층) 이하 또는 개방형 공공공간 확보 (대지경계선에서 8m 범위 내) - 획지분할 개발 시 도화서길 변 존치 대지에 대한 도화서길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가칭)송현문화공원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타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 지정 (울곡로변)	-
		전면공지		울곡로변 건축한계선 3m 후퇴부 전면공지 (보도형 공지) 조성	-
		공공 보행통로		울곡로와 도화서길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폭 3m 이상)	-
	교통처리 계획			- 울곡로변 차량진출입구 조성 - 울곡로변 인접 공지 및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차량진출입구 위치 결정 - 울곡로, 도화서길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획지분할 개발 시 소규모 필지(13, 36-2번지)는 기존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에 따름	-
	기타에 관한 사항			- 지역기여시설 도입 (도심 360도 파노라마뷰 전망시설 조성, 문화시설 도입 등) *별도 수직이동통신 확보 -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한 열린 저층부 조성	획지(단계별) 개발 시 공공성 확보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획지별로 구체화하여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 도화서길변 건축자산의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계획 수립 - 도화서길변 저층 ZONE 형성 - 공공보행통로에서 수송동 38-1주택으로의 조망 확보 - 도화서길 도로정비사업 (도로포장 개선, 전선 지중화)	결정.
	경관 및 환경친화계획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계획에 따름	-
	지역 자산 보전	- 획지에 면한 도화서길(옛길) 일부 구간 보전 방안 및 인근 소가로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형태 계획 등 관리 가이드라인 구성 -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도화서길(옛길) 도로 정비, 전선지중화 등 사업 시행을 통한 가로 보행환경의 종합적인 개선 도모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항목 (도시경관 개선, 지역자산 보전)과 연계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신설)

유형	항목	세분	완화내용	비고	
계획 유도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3	•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1층바닥면적) × 0.2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도입 시 인정	
계획 유도	대지 내 공지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필로티구조 : α=0.25 • 개방형구조 : α=0.5	
계획 유도	건축물 형태 및 색채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0.05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형태, 재료 및 색채 사 용 시	
		건축물 재료 및 색채	기준용적률×0.05		
중점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제외연면적)×2	•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 일출 및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개방, 유지관리방안 마련	
중점	지역(역사)자산 보전	역사적 도시조직 (옛길, 옛물길 등) 복원 및 재현	기준용적률×0.1	• 주변도로의 기존 지상 전주 및 전선(통신케이블 등 포 함) 지중화 및 도로 포장 개선 시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전 가치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계획 유도	환경 친화	물 환경	자연지반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	• 대지 안의 조정면적 포함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 로 산입된 면적 제외)
			중수도	기준용적률×0.02	•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 이용시설	기준용적률×0.02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 적×0.02 이상 설치 시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0.02	• 건축공사비의 1% 이상 시설비 투자 또는 총에너지 사 용량의 1%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용적률×0.04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상 의무사항을 초과하 여 인증된 경우	
		저공해자동차	기준용적률×0.05	• 비주거 : 연면적 1만㎡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 5%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공공시설 등 제공 시)
(신설)

적용구역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친환경 건축물 인증 : 허용용적률 $\times (1 + 0.7 \times (\sum \text{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beta)))$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2.11.)
	공공시설 등 제공 시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text{토지})) + ((1.0 \sim 1.2) \times \alpha(\text{건축물})) + (1.0 \times \alpha(\text{현금}))$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도시계획국 22.10.)

※ 향후 관련 지침 및 법령 개정 시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름

※ 건축물 계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종류, 위치, 층수, 규모, 용도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1.0 ~ 1.2 범위 내에서 적용

※ 환산 부지면적 (m^2) = 공공시설 설치비용 (원) + 현금 기부채납비용 (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 (원/ m^2)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β)

※ ① 및 ② 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0.7 \times (\sum ① \sim ③) \geq 15\% \rightarrow 15\%$ 적용)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후 시행

① ZEB 인증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완화비율	15%	14%	13%	12%	11%		1+등급	9%	6%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1 등급	6%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④ 장수명주택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이상	20%이상	25%이상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5%	10%	15%			완화비율	15%	10%	

□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높이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준높이	50m 이하	「서울도심 기본계획」(23.02.09.) 높이 기준 및 「특성관리구역 내 녹지생태도심 조성방안」에 따른 높이 완화
완화높이	70m 이하	

※ 「서울도심 기본계획」의 높이 기준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성관리지구) 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최대 20m 범위 내
높이 완화 가능

※ 세부조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공공성 확보계획과 연계) 및 「특성관리구역 내 녹지생태도심 조성방안」 기준 반영
- 높이완화 인센티브 제공 조건 : 공공공간 확보 (녹지 등), 역사 및 지역특성 강화,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관련법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함.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 등)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

□ 「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관계 법령의 특례 (* 「건축법」 제73조) 적용 (신설)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획지 1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 배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법정용적률 1.2배 범위 내 적용 배제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추가 10m 범위 내 적용 배제

*건축법 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2조, 제55조,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

**법정용적률 1.2배)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훈령 제1445호, 2021.11.03.제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항 및 같은조 4항에 근거하여 작성.

②특별건축구역에 따라 용적률 적용 배제 특례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다.

③이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III.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수송동 30번지 일대	3,028.23	-	3,028.23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28.23	-	3,028.23	100%	-
일반상업지역	3,028.23	-	3,028.23	100%	-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47.98 (3,028.23)	-	947.98 (3,028.23)	31.26% (100%)	-
방화지구	947.98	-	947.98	31.26%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획지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획지①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② 9-2번지	획지③ 13번지	획지④ 36-2번지	
획지	- 획지선 지정 : 2,767.1㎡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 도화서길을 고려하여 획지분할가능선 지정	획지선 지정 : 2,295.3㎡	획지선 지정 : 308.1㎡	획지선 지정 : 81.1㎡	획지선 지정 : 82.6㎡	획지분할 시 획지별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단계적 개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획지①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② 9-2번지	획지③ 13번지	획지④ 36-2번지	
	※ 획지별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단계적 개발 • 수송동 40-1도b는 공공기여 대상(도화서길 조성)으로 특별계획구역에 포함 - 261.13㎡					가능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 결정조서

도면 표시	위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①)		
불허	전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좌동		
		의료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운동시설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영업소			
		교정 및 군사시설	보호관찰소, 갱신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저장소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공장, 창고시설				
	1층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숙박시설 (관광숙박,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굿스테이 요건 충족 업소는 예외로 함)						
권장	전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 좌동	출입을 위한 시설(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경우 예외 기정 지구단위계획 세부용도 적용 배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2) 건축물의 개발밀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①)	
건폐율	• 60% 이하 • 획지분할 개발 시 도화서길 변 대지면적 100㎡이하 소규모 대지는 건폐율 완화조건 준수 시 80%까지 완화 가능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 60% 이하	-

□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①)	
용적률	기준	450% 이하	• 좌동	-
	허용	600% 이하	• 좌동	-
	상한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 좌동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2.11.) 상한 용적률 적용 체계 반영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 배제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유형	항목	세분	완화내용	비고	
계획 유도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3	•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1층바닥면적)×0.2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도입 시 인정	
계획 유도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필로티구조 : α=0.25 • 개방형구조 : α=0.5	
계획 유도	건축물 형태 및 색채	건축물 형태	기준용적률×0.05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형태, 재료 및 색 채 사용 시	
		건축물 재료 및 색채	기준용적률×0.05		
중점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제외연면적)×2	•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 일출 및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개방, 유지관리방안 마련	
중점	지역(역사)자산 보전	역사적 도시조직 (옛길, 옛물길 등) 복원 및 재현	기준용적률×0.1	• 주변도로의 기존 지상 전주 및 전선(통신케이블 등 포함) 지중화 및 도로 포장 개선 시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획 유도	환경 친화	물 환경	자연지반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	• 대지 안의 조경면적 포함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 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중수도	기준용적률×0.02	•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 이용시설	기준용적률×0.02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 지면적×0.02 이상 설치 시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0.02	• 건축공사비의 1% 이상 시설비 투자 또는 총에너 지 사용량의 1%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유형	항목	세분	완화내용	비고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용적률×0.04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상 의무사항을 초과하여 인증된 경우
		저공해자동차	기준용적률×0.05	• 비주거 : 연면적 1만㎡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 5%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공공시설 등 제공 시) (신설)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허용용적률 × (1 + 0.7 ×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공공시설 등 제공 시 : 허용용적률 × (1+1.3 × 가중치 × α(토지)) + ((1.0~1.2) × α(건축물)) + (1.0 × α(현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2.11.)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도시계획국 22.10.)

※ 향후 관련 지침 및 법령 개정시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름

※ 건축물 계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종류, 위치, 층수, 규모, 용도 및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 ~ 1.2 범위 내에서 적용

※ 환산 부지면적 (㎡) = 공공시설 설치비용 (원) + 현금 기부채납비용 (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 (원/㎡)

□ 높이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①)	
높이	- 기준높이 50m 이하 - 완화높이 70m 이하 - 개방형 녹지 조성 및 특정층 개방 등 공공공간 확보를 통한 최대 20m범위 내 기준높이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 (추가10m범위 내) - 획지분할 개발 시 도화서길 번 대지면적 100㎡이하 소규모 대지는 20m(5층) 이하 적용	- 기준높이 50m 이하 - 완화높이 70m 이하 - 개방형 녹지 조성 및 특정층 개방 등 공공공간 확보를 통한 20m 범위 내 기준높이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80m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 (추가 10m 범위 내)	「서울도심 기본계획」 (23.02.09.) 새로운 높이 기준 및 「특성관리구역 내 녹지생태도심 조성방안」에 따른 높이 완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연계

□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높이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준높이	50m 이하	「서울도심 기본계획」 (23.02.09.) 높이 기준 및 「특성관리구역 내 녹지생태도심 조성방안」에 따른 높이 완화
완화높이	70m 이하	

※ 「서울도심 기본계획」의 높이 기준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성관리지구) 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최대 20m 범위 내

높이 완화 가능

※ 세부조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공공성 확보계획과 연계) 및 「특성관리구역 내 녹지생태도심 조성방안」 기준 반영

※ - 높이완화 인센티브 제공 조건 : 공공공간 확보 (녹지 등), 역사 및 지역특성 강화,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관련법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함.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장의 고시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 등)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

□ 「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관계 법령의 특례 (* 「건축법」 제73조) 적용 (신설)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획지 1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 배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법정용적률 1.2배 범위 내 건축법 적용 배제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추가 10m 범위 내 건축법 적용 배제

***건축법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2조, 제55조,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

****법정용적률 1.2배)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훈령 제1445호, 2021.11.03.제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항 및 같은조 4항에 근거하여 작성.**

②특별건축구역에 따라 용적률 적용 배제 특례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다.

④이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배치 및 형태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①)	
배치 및 형태	• 율곡로변 : 건축한계선 3m • (가칭)송현문화공원 등 율곡로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계획 수립 • 도화서길변 기존 특성을 고려한 저층ZONE 형성 - 20m(5층) 이하 또는 개방형 녹지 조성 (대지경계선에서 8m 이상) • 획지분할 개발 시 도화서길 변 존치 대지에 대한 도화서길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 (가칭)송현문화공원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장	• 율곡로변 건축한계선 3m • (가칭)송현문화공원 등 율곡로변에 대한 다각도의 시점 및 전면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 수립 • 주변 경관을 고려한 투시성 있는 재료 사용 • 도화서길변 기존 특성을 고려하여 저층 건축물 형성 또는 공공 개방 공간 조성. • 건축물 형성 시 도화서길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 • 율곡로와 도화서길을 연결하는 저층부 공공개방 공간 조성 및 보행공간의 매력 향상을 위해 보행로 면하여 전면성을 갖는 점포 설치 권장.	-

☐ 도화서길 디자인가이드라인 (신설)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골목지정선	도화서길변	•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골목지정선 지정 (단, 전면도로 4m 미만 구간에 접한 대지의 경우 4m 전면도로를 확보하는 골목지정선 지정)	기존 지구단위계획
건물진출입구	도화서길변	• 도화서길변으로 건물 진출입구를 1개 이상 확보 • 도화서길변으로 전면성을 갖는 점포 설치 권장	기존 지구단위계획
개방형 입면 조성	도화서길변	• 도화서길변에 면한 1층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한옥 및 단독주택 제외)	기존 지구단위계획
1층부 층고	도화서길변	• 1층부 충분한 층고(4m) 확보 권장	신규
입면계획	도화서길변	• 도화서길에서 보이는 모든 입면(전면, 측면)의 연속성 및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입면 계획 수립	신규
전면공지	도화서길변	• 도화서길의 포장재와 일관된 재료가 내부로 연속되도록 조성	신규
설비 등의 처리	도화서길변	• 옥탑층 및 가로변에 설비시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하되,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가벽 등의 차폐요소를 사용함. (도화서길과 조화로운 재료 및 색채 사용)	기존 지구단위계획 (추가)
형태, 재료 및 색채 등	도화서길변	• 대지 내 '한옥건축양식' (외관은 한옥의 형태, 구조 유지, 현대식 재료 등을 사용하여 지은 건축물) 또는 '한옥디자인 건축물' (한옥의 일부를 차용하거나 재해석한 현대 건축물) 조성	신규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 연계)

※ 울곡로변에 대한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은 기존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에 따름.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 내 공지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확지①)	
대지 내 공지	공개 공지	• 공개공지 1개소 위치 지정 (울곡로변)	• 울곡로와 도화서길을 잇는 열린 저층부 조성을 위해 공개공지 1개소(울곡로변) 연계 조성	-
	전면 공지	• 울곡로 건축한계선 3m 후퇴부 전면공지 (보도형 공지) 조성	• 울곡로변 폭 3m 이상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하여 보행 쾌적성 및 가로 미관 증진	-
	공공 보행 통로	• 울곡로와 도화서길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폭 3m이상)	• 1층부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해 공공보행통로 확보	-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교통처리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①)	
교통 처리 계획	• 을곡로변 차량진출입구 조성 • 을곡로변 인접 공지 및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차량진출입구 위치 결정 • 을곡로, 도화서길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획지분할 개발 시 소규모 필지(13, 36-2번지)는 기존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에 따름	• 을곡로변 차량진출입구 조성 • 을곡로변 주차장 출입구에 형성된 개구부는 단차가 없도록 조성 • 부득이하게 형성된 경사면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한 재료로 포장 • 주차장 출입구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출차 경보 장치 등의 안전 시설물 설치	-

3)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

□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①)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 본 지구단위계획의 경관 및 환경 친화 요소 계획에 따름	• 좌동	-

4) 공공성 확보에 관한 결정

□ 공공성 확보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①)	
공공성 확보	• 지역기여시설 도입 (도심 360도 파노라믹뷰 전망시설 조성, 문화시설 도입 등) *별도 수직이동통선 확보 •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한 열린저층부 조성 • 도화서길변 건축자산의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계획 수립 - 도화서길변 저층 ZONE 형성 - 공공보행통로에서 수송동 38-1 주택으로의 조망 확보 • 도화서길 도로정비사업 (도로 포장 개선, 전선 지중화) ※ 획지분할 개발 시 공공성 확보 계	• 지역기여시설 도입 - 백악, 복촌 일대, (가정)송현문화공원, 도화서길로 열린 조망이 가능한 전망 공간 조성, 문화시설(미술관, 전시장) 도입 - 별도의 수직이동시설(E/V)로 연결되는 옥상(부속동 3F) 및 별도층(본건물 16F)에 녹화된 인체 개방형녹지 조성 - 16F 시민에 무료개방 (사전예약 및 정원제(현장 접수 방식) 동시 운영, 17F 연결부 제외) - 15F(문화시설), 16~17F 일출 및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개방 - 16F(무료개방) 시간당 사전예약 인원 최소 80명 이상 운영 - 지역기여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 - 지역기여시설 운영에 관한 이행확약서와 운영계획서 작성 - 건축 인허가 전 종로구와 대상, 기간, 주체 등 구체적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협약 체결(MOU)을 통해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사업 준공 직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고시문, 건축물대장상 해당시설 명기 의무화 (별도 부기) - 완공 후 해당 시설의 공적 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형식 모니터링 - 불이행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①)	
	획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획지 별로 구체화하여 결정.	- 지역기여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비용은 소유자가 부담 • 울곡로와 도화서길을 연결하는 열린저층부 조성(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해 거점 간 보행연계 활성화 도모 • 도화서길변 건축자산의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계획 수립 - 도화서길변 저층 ZONE 형성 : 개방형 녹지 조성 및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저층 건축물 조성 - 공공보행통로에서 수송동 38-1주택으로의 조망 확보 • 옛길의 특성을 살린 도로포장 개선 및 전선 지중화 사업 시행 등 도화서길 보행환경의 종합적인 개선	141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부과 조치함.

5) 지역자산 보전에 관한 결정

□ 지역자산 보전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①)	
지역 자산 보전	• 획지에 면한 도화서길(옛 길) 일부 구간 보전 방안 및 인근 소가로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형태계획 등 관리 가이드라인 구상 •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도화서길(옛길) 도로 정비, 전선지중화 등 사업 시행을 통한 가로 보행환경의 종합적인 개선 도모	• 「건축자산법」에 의한 건축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화서길'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 도화서길변의 기존 특성을 고려한 저층ZONE 형성 - 역사, 관련 계획, 주요 자산 등을 기록한 계획 내용의 아카이빙 • 도화서길 변 특성 관리를 위해 도화서길에 면한 소규모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 옛 길의 특성을 살린 도로 포장 개선 및 전선 지중화 사업 시행 등 도화서길 보행 환경의 종합적인 개선	-

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

□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지침

구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지침 (획지분할 및 단계별 개발)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①)	
용도지역/용도지구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획지 계획				- 획지선 지정 : 2,767.1㎡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 도화서길을 고려하여 획지분할가능선 지정 ※ 획지별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단계적 개발 ※ 수송동 40-1도b는 공공기여 대상(도화서길 조성)으로 특별 계획구역에만 포함 - 261.13㎡	획지선 지정 : 2,295.3㎡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 도	불 허	전 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욕외철담이 있는 골 프연습장)	좌동	
				의료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운동시설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영업소)		
				교정 및 군사시설 (보호관찰소, 갱신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 류 심사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저장소)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공장, 창고시설		
			1층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숙박시설 (관광숙박,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굿스 데이 요건 충족 업소는 예외로 함)				
		권 장	전 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좌동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밀 도	건폐율	60% 이하 - 획지분할 개발 시 도화서길 변 대지면적 100㎡이하 소규모 대 지는 건폐율 완화조건 준수 시 80%까지 완화 가능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60%이하	

구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지침 (획지분할 및 단계별 개발)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①)
	용적률		•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 450% / 6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 배제	• 기준/허용용적률 : 450% / 6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 배제
	높이		• 기준높이 50m 이하 • 완화높이 70m 이하 - 개방형 녹지 조성 및 특정층 개방 등 공공공간 확보를 통한 최대 20m 범위 내 기준높이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 (추가 10m범위 내) • 획지분할 개발 시 도화서길 변 대지면적 100㎡이하 소규모 대지는 20m(5층) 이하 적용	• 기준높이 50m 이하 • 완화높이 70m 이하 - 개방형 녹지 조성 및 특정층 개방 등 공공공간 확보를 통한 최대 20m 범위 내 기준높이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80m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 (추가 10m 범위 내)
건축물에 관한 계획	배치 및 형태		• 율곡로변 : 건축한계선 3m • (가칭)송현문화공원 등 율곡로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계획 수립 • 도화서길변 기존 특성을 고려한 저층ZONE형성 - 20m(5층) 이하 또는 개방공간 조성 (대지경계선에서 8m 이상) • 획지분할 개발 시 도화서길 변 존치 대지에 대한 도화서길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 (가칭)송현문화공원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장	• 율곡로변 건축한계선 3m • (가칭)송현문화공원 등 율곡로변에 대한 다각도의 시점 및 전면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 수립 • 주변 경관을 고려한 투시성 있는 재료 사용 • 도화서길 변 기존 특성을 고려하여 저층 건축물 형성 또는 공공개방 공간 조성 • 건축물 형성 시 도화서길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 • 율곡로와 도화서길을 연결하는 저층부 공공개방 공간 조성 및 보행공간의 매력 향상을 위해 보행로 면하여 전면성을 갖는 점포 설치 권장.
기타에 관한 계획	대지 내 공지	공개 공지	• 공개공지 1개소 위치 지정 (율곡로변)	• 율곡로와 도화서길을 잇는 열린저층부 조성을 위해 공개공지 1개소 (율곡로변) 연계 조성
		전면 공지	• 율곡로 건축한계선 3m 후퇴부 전면공지 (보도형 공지) 조성	• 율곡로변 폭 3m 이상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하여 보행 쾌적성 및 가로 미관 증진
		공공 보행 통로	• 율곡로와 도화서길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폭3m이상)	• 1층부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해 공공보행통로 확보
	교통처리계획		• 율곡로변 차량진출입구 조성 • 율곡로변 인접 공지 및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 율곡로변 차량진출입구 조성 • 율곡로변 주차장 출입구에 형성된 개구부는 단차가

구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지침 (획지분할 및 단계별 개발)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①)
공공성 확보	획 수립 시 차량진출입구 위치 결정 • 을곡로, 도화서길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획지분할 개발 시 차량출입 불가대지에 대해 주차장설치기준 100% 완화		없도록 조성 • 부득이하게 형성된 경사면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한 재료로 포장 • 주차장 출입구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출차 경보 장치 등의 안전 시설물 설치
	• 지역기여시설 도입 (도심 360도 파노라믹뷰 전망시설 조성, 문화시설 도입 등)*별도 수직이동등선 확보 •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한 열린 저층부 조성 • 도화서길변 건축자산의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계획 수립 - 도화서길변 저층 ZONE 형성 - 공공보행통로에서 수송동 38-1주택으로의 조망확보 • 도화서길 도로정비사업 (도로 포장 개선, 전선 지중화) ※ 획지분할 개발 시 공공성 확보 계획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획지별로 구체화하여 결정.		• 지역기여시설 도입 - 백악, 북촌 일대, (가칭)송현문화공원, 도화서길로 열린 조망이 가능한 전망 공간 조성, 문화시설(미술관, 전시장) 도입 - 별도의 수직이동시설(E/V)로 연결되는 옥상(부속 등 3F) 및 별도층(본건물 16F)에 녹화된 입체 개방형녹지 조성 - 16F 시민에 무료개방 (사전예약 및 정원제(현장 접수 방식) 동시 운영, 17F 연결부 제외) - 15F(문화시설), 16~17F 일출 및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개방 - 16F(무료개방) 시간당 사전예약 인원 최소 80명 이상 운영 • 지역기여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 • 지역기여시설 운영에 관한 이행확약서와 운영계획서 작성 • 건축 인허가 전 종로구와 대상, 기간, 주체 등 구체적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협약 체결(MOU)을 통해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사업 준공 직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지역기여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비용은 소유자가 부담 • 을곡로와 도화서길을 연결하는 열린저층부 조성(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해 거점 간 보행연계 활성화 도모 • 도화서길변 건축자산의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계획 수립 - 도화서길변 저층 ZONE 형성 : 개방형 녹지 조성 및 지하 문화시설로 연결되는 저층 건축물 조성 - 공공보행통로에서 수송동 38-1주택으로의 조망

구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지침 (획지분할 및 단계별 개발)
	수송동 30번지 외 25개 필지		수송동 30번지 외 22개 필지 (획지①)
			확보 • 옛 길의 특성을 살린 도로 포장 개선 및 전선 지중화 사업 시행 등 도화서길 보행 환경의 종합적인 개선
경관 및 환경친화계획		•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계획에 따름	• 작동
지역 자산 보전		• 획지에 면한 도화서길(옛 길) 일부 구간 보전 방안 및 인근 소가로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형태계획 등 관리 가이드라인 구상 •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도화서길(옛 길) 도로 정비, 전선지중화 등 사업 시행을 통한 가로 보행환경의 종합적인 개선 도모	• 「건축자산법」에 의한 건축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화서길'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 도화서길변의 기존 특성을 고려한 저층 ZONE 형성 - 지역의 역사, 관련 계획, 주요 자산 등의 내용을 기록한 계획 내용의 아카이빙 • 도화서길 변 특성 관리를 위해 도화서길에 면한 소규모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옛 길의 특성을 살린 도로 포장 개선 및 전선 지중화 사업 시행 등 도화서길 보행 환경의 종합적인 개선

IV. 관련도면 : 붙임참조 (세부 관리도면은 관계도서 참조)

V.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한옥정책과 (☎02 - 2133 - 5575) 및 종로구 건축과 (☎02 - 2148 - 2812)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관련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신설)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Scale 1 : 1,000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특별계획구역

- 도시계획시설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Scale 1 : 1,000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범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도로(중로이하)
지적선	도시계획도로(대로이상)
특별계획구역	철도
	교통광장
	미관광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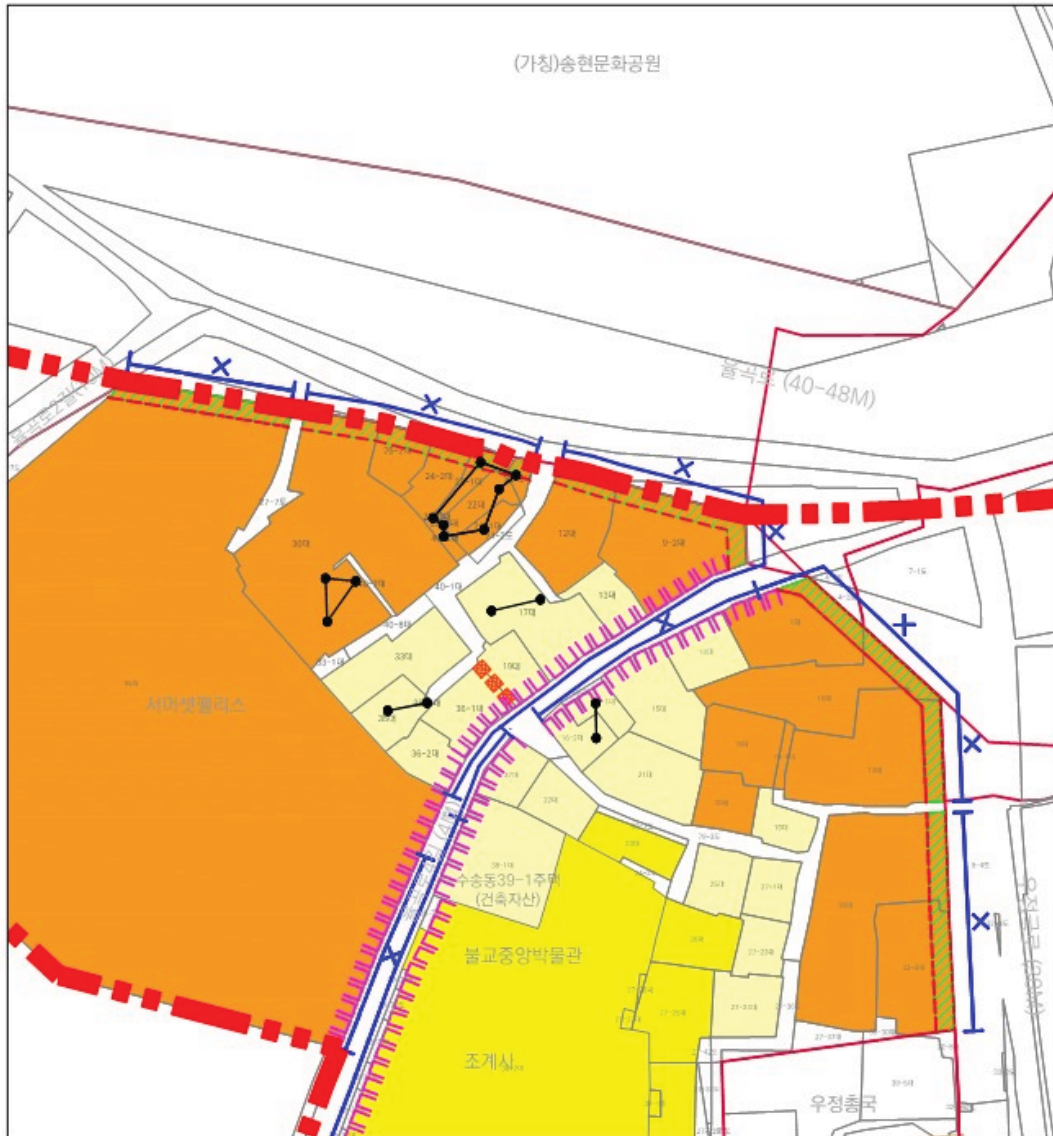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Scale 1 : 1,000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도시계획시설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 공동개발 지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공보행통로
- 골목자정선

- 간선거로구역
- 조계사구역
- 소거로구역

용역물	높이
건물물	용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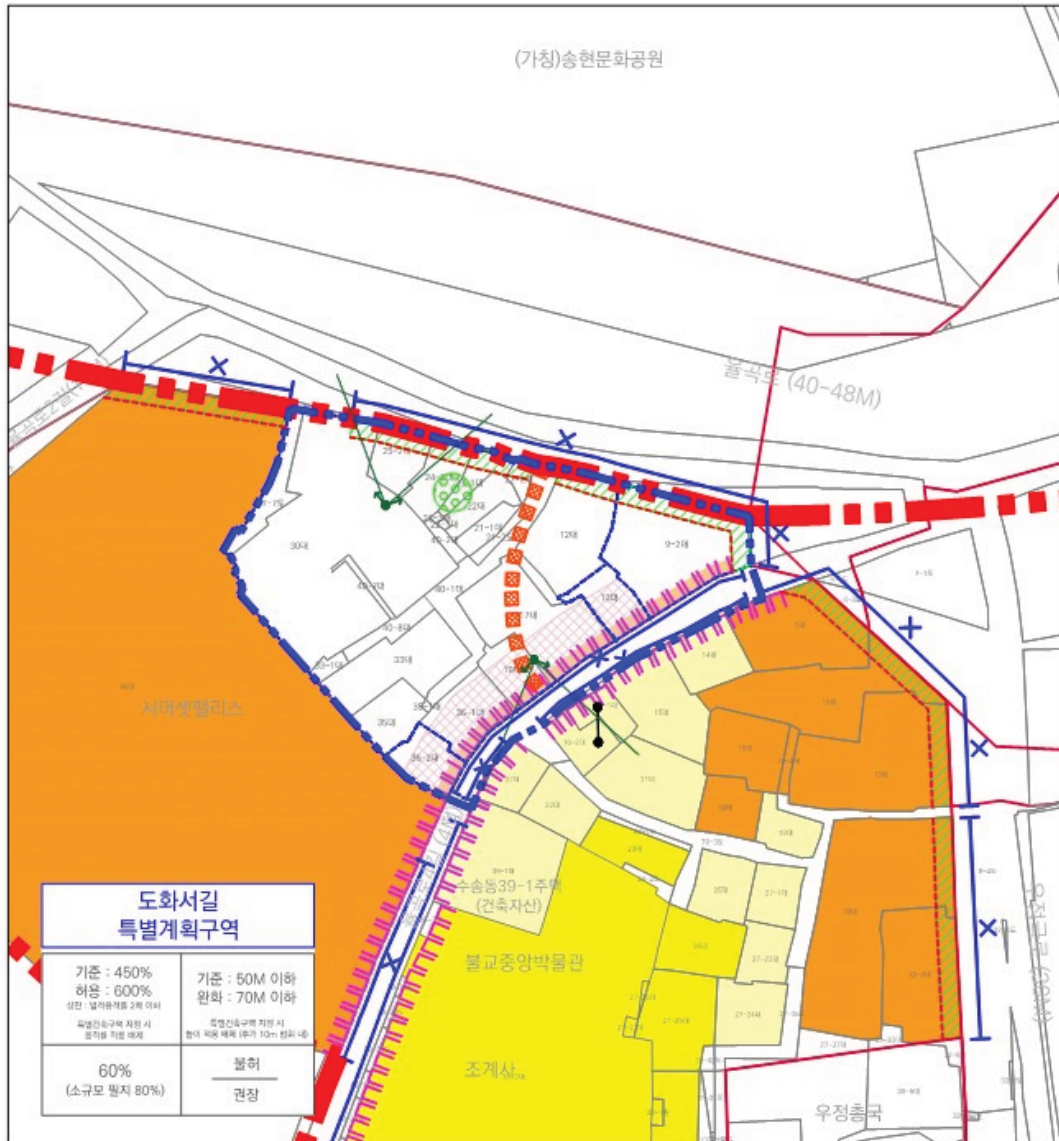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

Scale 1 : 1,000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범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개발 지정	도화서길 디자인가이드라인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가로구역
지적선	공개공지	조계사구역
도시계획시설	공공보행통로	소가로구역
획지분할가능선	골목지정선	
건축한계선	저층 ZONE	
전면공지	조망 공간	
용적률	높이
건폐율	용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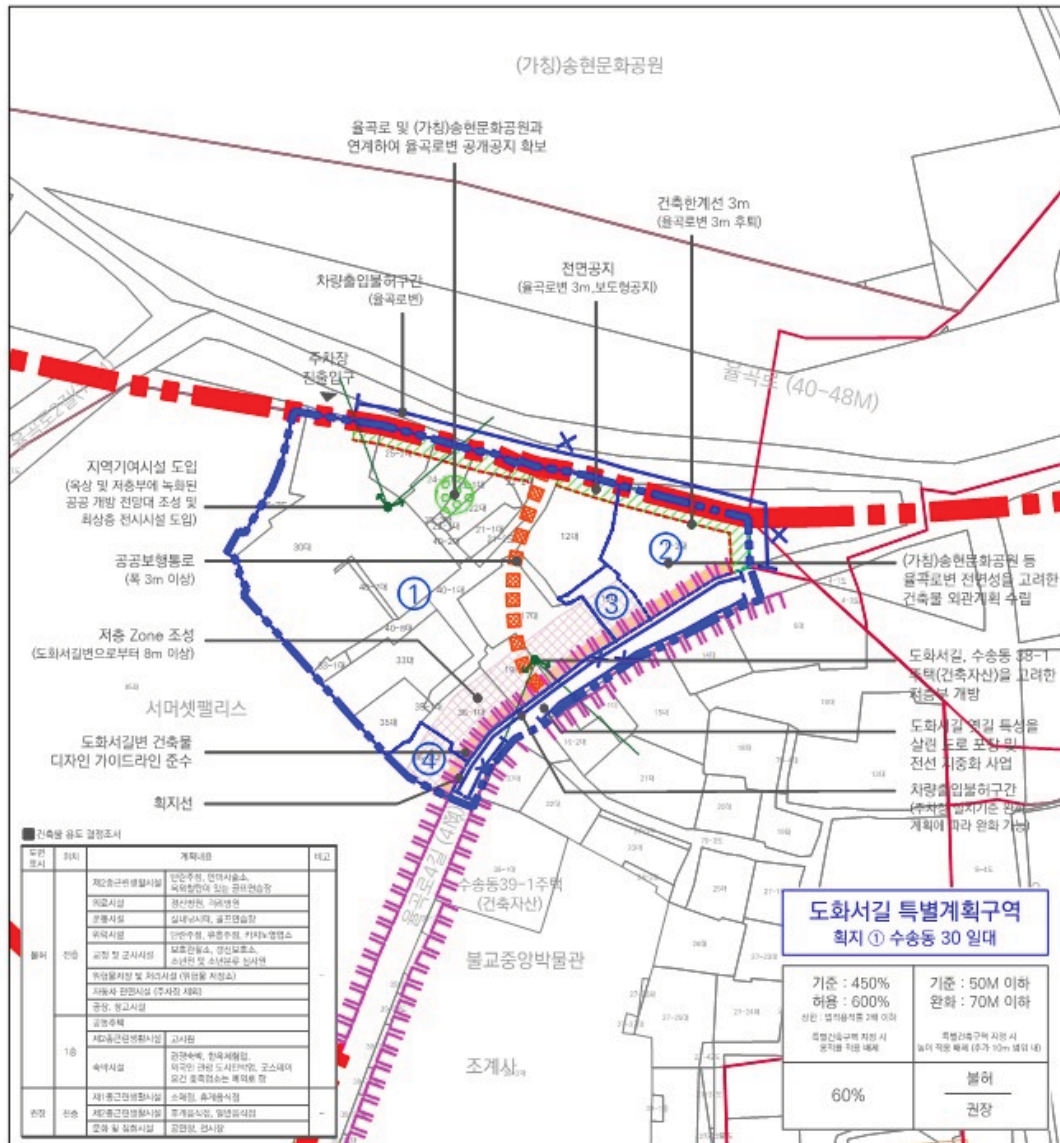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

Scale 1 : 1,000



□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답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차광충입물하구간	 도화시설 디자인가이드라인
 도화시설 특별계획구역	 건축한계선	 저층 ZONE
 지적선	 전면공지	 조망 공간
 도시계획시설	 공개공지	
 획지선	 공공보행통로	
 획자문합가선	 종국지상선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Scale 1 : 1,000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799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불능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문*식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1146번길	일시: 2023-01-11 20:56 위반장소: 강변북로(포천 ~ 익산) 내용: 전남88바5621(카고5축, 폭 초과(실측값:2.67m, 초과값:0.17m), 적재물:석재)	처분일: 2023. 02. 24. 과태료: 30만원 최초납기일: 2023.04.30. 독촉일: 2023. 05. 09.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3. 07. 31.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 - 2210 - 1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15호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사유 : 본부명칭변경[한강사업본부→미래한강본부](2023.07.01.字)

2.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재무관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3.07.01.	본 부 명칭변경(2023 .07.0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분임재무관 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3.07.0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3.07.0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지출원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3.07.01.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물품관리관 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3.07.0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물품출납원 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0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01.	

3.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재무관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3.07.01.	본 부 명칭변경(2023 .07.0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분임재무관 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3.07.0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정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3.07.01.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지출원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3.07.0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물품관리관 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3.07.0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물품출납원 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0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0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16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단체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 당사자: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우리농산물 사랑연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7길 21, 조양빌딩 4층 (서초동)	조병경	2007-03-05
2	농어촌 살리기 한마음 협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78, A동 1906호(공덕동, 신영지웰오피스텔)	서세훈	2007-02-14
3	금융소비자연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5, 502 호(논현동, 남중빌딩)	김홍수	2007-01-30
4	서울시품질개선연구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역삼동)	김익표	2006-03-31
5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10, 고운빌딩 5층 (효제동)	박찬성	2000-05-19
6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서울시 지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6길 4 (합정동)	박만인	2000-05-15

- 처분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말소사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 근거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 열람·확인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보행자전거과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3. 6. 29.(목) ~ 2023. 7. 13.(목)까지

4.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공정경제담당관(☎02-2133-5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1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후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2023년 6월 29일

□ 행정처분 대상 업체

연번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비고
1	주해성글로벌디앤씨 (舊 주미래파워) (2003-12)	성명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제1항제4호, 제9호, 제10호	등록취소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청(서울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2126호(1966.01.08.)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387호(2019.1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20 - 34호(2020.03.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20 - 33호(2020.03.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도봉구공고 제2020 - 626호(2020.05.07.)로 실시계획작성 열람 및 사업 인정에 관한 공고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258호(2020.06.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방학로(신동아아파트사거리~우이동광장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기간
방학로(신동아아파트사거리~우이동광장간) 도로확장공사	강북구 우이동 4-2~ 도봉구 방학동 453-3	B = 15~20m L = 1,663m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258호 (2020.06.25.)	2020.06.25. ~ 2023.05.09.

라. 준공 관련도서 : 게재 생략

마. 관계 서류는 도봉구청 도로과(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02 - 2091 - 405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2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내역
 -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
020722704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21□ (신정동 881-□)	상하수도 요금	' 23. 4월 외 7건	8회	4,204,790원

나. 압류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납부기한	압류예정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21□ (신정동 881-□)	세계□□예술문화아카데미재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51길 □ (화곡동 837-□)	4,204,790원	2023년 7월 27일	2023년 7월 28일

4. 공고기간 : 2023. 6. 29. ~ 2023. 7. 13. (14일간)

5.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02 - 3146 - 3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24호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역삼동 일대 청담·도곡아파트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06.07., 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145호로 주민 의견청취(2021.12.24.~ 2022.01.06.)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61,823.9	감) 61,823.9	-	-
신설	①	청담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청담동 일대	-	증) 104,200.8	104,200.8	-
신설	②	삼성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삼성동 일대	-	증) 290,643.3	290,643.3	-
신설	③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삼·도곡동 일대	-	증) 669,949.7	669,949.7	-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3.06.30. ~ 2023.07.13.)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 - 2133 - 7146)
 - 강남구 재건축사업과(☎02 - 3423 - 6076), 도시계획과(☎02 - 3423 - 6108)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 →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 - 2133 - 7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25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1회차 위반 경고안내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대기환경개선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서울특별시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등
3. 공시송달내용(총10건)
경고 대상차량 차주분께서는 본 고지일로부터 2023년 7월 31일(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23년 7월 31일(월)이후에는 위반시 월 1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여 차량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	53서1608	정*천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05-03 17:34	금천08_한내로(기아대교)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	35보5968	CHO*LOM BAATARKHUU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05-03 19:31	구로05_천왕역(오리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	54무5209	임*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3-05-04 04:09	서초01_올림픽대로(공항)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03소4897	전*옥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05-07 11:27	동작02_상도터널(양녕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5	04버9624	이*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05-10 09:15	동작02_상도터널(양녕로)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	66루8291	이*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05-10 15:47	서초03_사당IC주도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	31고7202	최*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05-13 14:16	강동01_강일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8	서울34고1995	조*창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3-05-21 16:31	은평06_덕은교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9	76더9127	서*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3-05-26 13:06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	70구2177	이*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05-29 14:24	강동05_상일IC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공 고 기 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3년 7월 31일(월)

나. 본 경고조치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김석근(Tel 02-2133-3659)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 (010 - 9615 - 3659)로 사진파일 문자접수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26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55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01로2682	보*나종합건설(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05-01 15:08	동작01_노량진역 (노량진로)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90우4766	우*케이엠지종합건설(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05-01 17:40	중랑03_망우리교개 2차로	"	"
3	04러3985	L*N YING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05-02 05:36	서초05_양재IC 1차로	"	"
4	10주5416	정*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05-03 11:12	양천01_화곡로입구 3차로	"	"
5	46러2003	정*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05-03 17:31	강동03_고덕역(고덕로) 2차로	"	"
6	86소7348	간*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3-05-03 14:57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4차로	"	"
7	03모9273	김*훈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05-05 11:50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 (남부순환로) 4차로	"	"
8	43라2283	유*석외1인(이*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3-05-06 18:27	은평04_구기터널(진흥로)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9	49부1279	신*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3 - 05 - 06 23:35	중랑04 사가정역(사가 정로) 3차로	"	"
10	04우8777	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 - 05 - 07 19:16	경기도 안산시 수암파출소(안산방향) 1차로	"	"
11	34부5674	노*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3 - 05 - 07 15:44	서초05_양재IC 2차로	"	"
12	02부8957	윤*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 - 05 - 08 17:07	노원02_덕릉로 (당고개) 1차로	"	"
13	05소6840	이*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 - 05 - 09 13:36	강서04 오석삼거리 1차로	"	"
14	53누7557	NGUY*N THI HUONG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 - 05 - 10 06:11	강동05_상일IC 3차로	"	"
15	89가1736	주식회사 예*전력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 - 05 - 10 15:46	금천02 서부간선도로(성산) 1차로	"	"
16	03보6592	주*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 - 05 - 13 13:15	용산03_강변북로(일산) 4차로	"	"
17	16다3569	김*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 - 05 - 13 18:41	용산01 서빙고로(한남 역) 2차로	"	"
18	14두6915	전*구	서울특별시 중구	2023 - 05 - 15 18:14	영등포01 여의2교(제 물포길) 2차로	"	"
19	02수4469	정*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3 - 05 - 16 20:39	노원01 동일로(동부간 선도로) 3차로	"	"
20	80마6832	박*주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3 - 05 - 17 16:20	강동06 천호역(천호대 로) 2차로	"	"
21	01러7107	음*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3 - 05 - 18 19:44	중랑01_북부간선도로 1차로	"	"
22	75모7234	쥬카*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3 - 05 - 19 15:12	경기도 수원시 지치대고개(수원방면) 4차선	"	"
23	04너7024	해*에이치아이에스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 - 05 - 20 20:45	서초05_양재IC 4차로	"	"
24	52보7211	강*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 - 05 - 20 18:20	마포02 월드컵경기장(월드컵로) 2차로	"	"
25	31라1727	(사)*국고령천화산 업진흥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 - 05 - 21 14:56	광진02 천호대로(군자 교) 3차로	"	"
26	08누4843	송*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 - 05 - 22 23:26	강서02_개화역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7	80로9656	RAH*MI MOGHADDAM DOURAKI SEYED ALI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 - 05 - 23 12:59	광진04_잠실대교북단(자양로) 2차로	"	"
28	23오9907	이*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 - 05 - 24 11:28	동대문01_회기역 1차로	"	"
29	43나9587	채*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 - 05 - 24 20:45	금천09_석수역 2차로	"	"
30	04두3765	지*튼 -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 - 05 - 25 18:25	마포02_월드컵경기장(월드컵로) 3차로	"	"
31	38다5060	박*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 - 05 - 25 19:00	은평03_서오릉로 2차로	"	"
32	70저3556	PARK*RNWIWAT PANJACHOK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3 - 05 - 25 01:23	금천02_서부간선도로(성산) 2차로	"	"
33	75더1281	남*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3 - 05 - 25 23:58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4차로	"	"
34	80다4264	김*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3 - 05 - 25 05:15	경기도 수원시 물이랑교사거리(수원 방면) 1차선	"	"
35	90루6225	박*덕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 - 05 - 25 10:58	강서05_화곡터널(강서 로) 2차로	"	"
36	01누7074	강*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 - 05 - 27 06:58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수원방면) 2차선	"	"
37	59소1292	윤*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3 - 05 - 27 11:19	용산01_서빙고로(한남 역) 4차로	"	"
38	80라4856	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 - 05 - 27 15:13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	"
39	04우682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 - 05 - 28 01:07	양천03_경인고속도로 2차로	"	"
40	21무2217	이*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 - 05 - 28 17:26	강서02_개화역 2차로	"	"
41	56거6755	중*멤버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 - 05 - 28 18:17	성동01_독섬로(옹비교) 1차로	"	"
42	73구6962	최*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 - 05 - 28 20:06	강동02_강일57단지(아 리수로) 1차로	"	"
43	03오4353	이*용, 서*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 - 05 - 29 01:28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178-8 화성방면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44	55어5879	고*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05-29 17:32	경기도 남양주시 도곡IC 양평방면 1차로	"	"
45	89로8402	정*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05-29 23:24	서초05_양재IC 4차로	"	"
46	서울32더51 47	김*혁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05-29 11:32	서초05_양재IC 2차로	"	"
47	06러4798	(주)*에스브이테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05-30 19:58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142-2 오산방면 2차로	"	"
48	09조5517	박*용	서울특별시 종랑구	2023-05-30 23:26	강남04_강남대로(신사 역) 2차로	"	"
49	86소2412	오*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05-30 13:18	노원01_동일로(동부간 선도로) 2차로	"	"
50	92나2379	(주)*추월하모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05-30 10:43	강서02_개화역 3차로	"	"
51	01조1175	(주)*송지테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05-31 22:38	용산03_강변북로(일산) 1차로	"	"
52	10두2144	문*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3-05-31 16:50	은평04_구기터널(진흥 로) 1차로	"	"
53	36다8811	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05-31 03:27	종랑04_사가정역(사가 정로) 2차로	"	"
54	43다5491	박*수	서울특별시 종랑구	2023-05-31 15:55	종랑04_사가정역(사가 정로) 2차로	"	"
55	43수6019	박*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3-05-31 22:48	서대문02_모래내로(연 희IC) 1차로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3년 7월 31일(월)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김석근(Tel 02 - 2133 - 3659)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010 - 9615 - 3659)로 사진파일을 문자 접수하셔도 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2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를 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 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4. 대상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2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부서
1	한국교원나라꽃 무궁화연구협의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7, 111동 1401호(서초동 롯데캐슬렉식A)	김교모	2001-03-08	조경과
2	한국무궁화 선양회	서울시 강서구 초록마을로 11길 16(화곡동)	박순옥	2000-05-03	조경과

5. 처분(말소) 일자 : 2023. 6. 29.
6. 공고 및 게시장소 : 서울시보 및 서울시청 누리집

7. 기타 사항

- 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조경과(담당 : 김남현, ☎ 02 - 2133 - 210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35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도시연구 (110111-7693602)	김운주	전문2종설계업 (서울E-3-515)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 38-6 3층 303-1	2023. 1.6
		전문감리업 (서울S-2-60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36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주)라인일렉 (110111-4236463)	김민경	전문2종설계업 (서울E-3-516)	서울시 중구 을지로 157, 3층 라355호 (신림동, 대림상가)	2023. 3. 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37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주)시드건축사사무소 (110111-2959140)	김운제	전문1종설계업 (서울E-2-598)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08길 20 (삼성동)	2023. 4.1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38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주에벤에셀기술단 (110111-8577508)	강은혜	전문감리업 (서울S-2-608)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908호 (문래동 3가, 트리플렉스)	2023. 5.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39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주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110111-1160102)	서진철	전문1종설계업 (서울E-2-599)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 7층	2023. 5.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40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자이씨앤에이(주) (110111-8041529)	안채종	전문1종설계업 (서울E-2-596)	서울시 강남구 마곡중앙로 150 (마곡동)	2023. 4.1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41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쥬큰빛기술단 (110111-8512687)	김현정 김광남	전문1종설계업 (서울E-2-592)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501, 나호 (신길동)	2023. 1.9
		전문감리업 (서울S-2-6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42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주)토펙건축사사무소 (110111-7037941)	김연수 소인철	종합감리업 (서울S-1-488)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0길 14 로또빌딩 3-4층	2023. 3.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43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주)한빛전기하이테크 (110111-5247518)	선우찬	전문1종설계업 (서울E-2-593)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13, 극동프라자 203호	2023. 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44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코텍(주) (110111-1049372)	홍종희	전문감리업 (서울S-2-60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7, 8층 (서초동, 애니타워)	2023. 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45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하경이앤씨(주) (110111-2988553)	문흥열	전문감리업 (서울S-2-607)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2길 52, 201호 (잠실동)	2023. 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46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이디씨이엔지 (110111-0592095)	김지영	전문1종설계업 (서울E-2-594)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5길 8, 상현빌딩 2층	2023. 1.10
		전문감리업 (서울S-2-60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 - 2133 - 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 - 2133 - 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47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주이엠이앤씨 (110111-8436522)	배경주	전문1종설계업 (서울E-2-594)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 88, SK V1 B동 419호	2023. 1.9
		전문감리업 (서울S-2-60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 - 2133 - 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 - 2133 - 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48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5380)	주국제이앤씨 (814-12-01788)	이종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41길 53 제지층 제비 06호	2023.6.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49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5303)	(주)나진토건 (110-81-29768)	김상진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1길 23 동광빌딩 402호	2023.3.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50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공공측량업 (03-001461)	(주)미래공간기술 (521-81-01956)	주복자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34, B01	2023.3.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51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5303)	(주)부린 (108-81-97749)	임성만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13길 12 (사당동, 자매빌딩)	2023.2.1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52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5359)	(주)위신 (287-88-02262)	김형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83 천석빌딩 804	2023.4.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53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공공측량업 (03-001471)	(주)진성측량설계 (204-81-41640)	김근용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0길 57 401호(예담빌딩)	2023.3.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54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공공측량업 (03-001465)	탐리지정보(주) (113-86-07282)	김기엽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7길 26, 101 (화양동)	2023.3.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55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5380)	(주)지에스지이엔지 (818-88-01261)	이성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58, 1601호	2023.5.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57호
도시관리계획(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3번지 일대에 ‘도시관리계획(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023. 6. 30. ~ 2023. 7. 13.)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99), 노원구 도시관리과 (☎02-2116-3866)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월계동 13번지 일원	-	증)256,434.6	256,434.6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생략 (열람장소 비치, 홈페이지 게재된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라.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도서

마. 기타사항

- 세부내용, 도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5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826	23. 6. 21.	주식회사 코너스 (CORNERS CO.,LTD) 김동오 110111-5583194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806호(성수동1가)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61호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동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사유 : 부서 명칭 변경(2023.7.1.字)
2.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023.07.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1.	

3.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등록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시설관리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시설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023.07.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시설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6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비영리민간단체 현행화 필요 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현행화가 필요한 6개 단체

※ 유산·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부서
1	산소마을	영등포구 대림동 688번지 송림빌딩 3층	박채영	'10.3.24.	아동담당관
2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종로구 이화동 91-6 한국빈민운동회관	변은희	'03.2.5.	아동담당관
3	한국아동청소년권리 안전협회	동작구 사당동 203-11 은진빌딩 3층	이재연	'02.3.30.	아동담당관
4	한국아동안전관리교육협회	마포구 도화동 36 고려아카데미텔 2-1104호	김일영	'01.3.21.	아동담당관
5	인터케어	종로구 창신3동 23-344 종로사회복지관 3층 진료실내	백종만	'00.8.16.	아동담당관
6	한백아카데미	은평구 대조동 187-46	박숙자	'00.5.17.	아동담당관

2. 문의처: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강현지 주무관(02 - 2133 - 5167)

3. 회신기간: 2023. 7. 13.(목)

4.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63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 6. 29. ~ 2023. 7. 13.(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기간 : 2023. 7. 14. ~ 2023. 7. 27.
 -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별첨 서식),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4, E-mail : kys82@seoul.go.kr)
 -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메일(kys82@seoul.go.kr)
6. 과태료 자진 납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 납부기한 : 2023. 7. 27.
 - 나. 납부방법
 - 고지서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 인터넷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유의사항

- 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 - 2133 - 8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	반 송 내 역		반송할 관 구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1	전*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70, 510호 (구의동, 썬더워빌딩)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3-06-15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5	김*덕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70길 16-4, 1층101호 (신월동)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3-06-15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64호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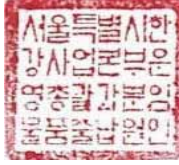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동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 사유 : 본부 명칭변경(2023.7.1.字)

2.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본부 명칭변경 (2023.7.1.)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3.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본부 명칭변경 (2023.7.1.)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시민활동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시민활동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미래건강본부 환경수질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66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황*호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 ***동 ***호 (병점동)	일시: 2023-04-07 11:37 장소: 마곡동 지역난방 공사 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관리 의무 소홀	처분일: 2023. 5. 30.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3. 7. 31.
김*래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 (상동)	일시: 2023-04-25 05:44 장소: 별말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9m 초과	처분일: 2023. 5. 30.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3. 7. 31.
김*근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39번길 **, ***호 (심곡동)	일시: 2023-05-01 13:41 장소: 목동 상수도 공사 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관리 의무 소홀	처분일: 2023. 5. 30.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3. 7.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문*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8길 **, ***호 (고척동)	일시: 2023-03-06 13:24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운행제한 높이 0.31m 초과	처분일: 2023. 3. 29.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3. 5. 31.

4. 공고기간: 2023. 6. 29.~2023. 7. 12.

5. 납부기한: 2023. 7.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 - 2657 - 7922, 팩스번호: 02 - 2657 - 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67호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31호(1976.0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6 - 2051호(2016.10.13.)로 열람공고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원	-	증)1,164,364.5	1,164,364.5	-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3.06.30. ~ 2023.07.13.)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 - 2133 - 7146)
- 강남구 재건축사업과(☎02 - 3423 - 6076), 도시계획과(☎02 - 3423 - 6108)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

울소식 →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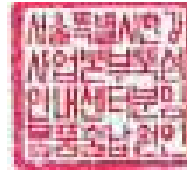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75호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법 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사유 : 본부명칭변경[한강사업본부→미래한강본부](2023.07.01.字)
2.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독점안내센터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독점안내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01.	본부 명칭변경 (2023.07.0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독점안내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01.	

3. 직인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독점안내센터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독점안내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01.	본부 명칭변경 (2023.07.0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독점안내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0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76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공인 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3년 7.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자 : 2023년 07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의인	2.4cm × 2.4cm		

□ 공인 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3년 7.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폐기 일자 : 2023년 07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장의인	2.4cm × 2.4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78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공인 등록 (직인 및 청인)

- 공인등록 사유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개설에 따른 자문위원회 직인 등록
- 최초 사용일자 : 2023년 06월 29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서울특별시 의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인	2.7cm×2.7cm	
서울특별시 의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인	3.6cm×3.6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79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용마터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도로의 종류 : 특별시도
2. 노 선 명 : 방화~사가정선(특별시도 42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용마터널(주) 대표이사
4. 통행료 (금회변경)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현 행				조 정			
	경차	소형	중형	대형	경차	소형	중형	중형
통행료	750	1,500	2,600	3,300	850	1,700	2,600	3,300

5. 차종구분

구 분	대 상 차 량 제 원	차 종
소 형	2축, 율폭 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	1종
중 형	2축, 율폭 279.4mm 초과, 율거 1,800mm 이하 (중형 승합차, 중형화물 2.5톤 이상~10톤 이하)	2종
	2축, 율폭 279.4mm 초과, 율거 1,800mm 초과 (대형 승합차, 2축 5.5톤~10톤 이하 화물차)	3종
대 형	3축, 대형 화물차(10톤 초과)	4종
	4축이상, 대형 화물차(10톤 초과)	5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6종

※ 해당차량은 편의상 분류한 것임 6. 시설물 명칭 : 용마터널

7.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3.566km)

요금소 : 용마터널

8.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 대상 (종전과 같음)

가.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나. 감면대상

1)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차량

2) 별도의 식별표를 부착한 특별시도 유지관리 차량 및 제설차량

※ 제설차량은 제설기간(11.15~익년 3.15)에 한해서 감면함

9. 통행료 수납방법 : 유인식(현금, 선·후불 교통카드), 무인식(하이패스)

10.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23.7.1.(토) 00:00부터 수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80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강남순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도로의 종류 : 특별시도
2. 노 선 명 : 강남순환로(특별시도 07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강남순환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 (금회변경)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현 행			조 정		
		경차	소형	중형	경차	소형	중형
통행료	금천TG	850	1,700	2,900	900	1,800	2,900
	선암TG	850	1,700	2,900	900	1,800	2,900

5. 차종구분

구 분	대 상 차 량 제 원	차 종
소 형	2축,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	1종
중 형	2축,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중형 승합차, 중형화물 2.5톤 이상~10톤 미만)	2종
	2축,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대형 승합차, 2축 5.5톤~10톤 미만 화물차)	3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6종

※ 해당차량은 편의상 분류한 것임

6. 시설물 명칭 : 강남순환로

7.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 서초구 우면동(12.4km)
요금소 : 금천, 선암
8.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 대상 (종전과 같음)
가.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나. 감면대상
 - 1)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차량
 - 2) 별도의 식별표를 부착한 특별시도 유지관리차량 및 제설차량
※ 제설차량은 제설기간(11.15~익년 3.15)에 한해서 감면함
9. 통행료 수납방법 : 유인식(현금, 선·후불 교통카드), 무인식(하이패스)
10.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23.7.1.(토) 00:00부터 수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8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신월여의지하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도로의 종류 : 특별시도
2. 노 선 명 : 신월여의지하도로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터널(주) 대표이사
4. 통행료 (금회변경)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현 행		조 정	
	경차	소형	경차	소형
통행료	1,200	2,400	1,300	2,600

5. 차종구분

구 분	대 상 차 량 제 원	차 종
소 형	2축, 율폭 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	1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6종

※ 해당차량은 편의상 분류한 것임

6. 시설물 명칭 : 신월여의지하도로
7.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 영등포구 여의도동(7.53km)

8.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 대상 (종전과 같음)

가.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나. 감면대상

- 1)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차량
- 2) 별도의 식별표를 부착한 특별시도 유지관리 차량 및 제설차량

9. 통행료 수납방법 : 무인식(하이패스) 및 영상 인식에 의한 후불 고지

10.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23.7.1.(토) 00:00부터 수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8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서부간선지하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도로의 종류 : 특별시도
2. 노 선 명 : 서부간선
3. 통행료 수납자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 (금회변경)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현 행		조 정	
	경차	소형	경차	소형
통행료	1,250	2,500	1,350	2,700

5. 차종구분

구 분	대 상 차 량 제 원	차 종
소 형	2축, 율폭 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	1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6종

※ 해당차량은 편의상 분류한 것임

6. 시설물 명칭 : 서부간선지하도로

7.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 금천구 독산동(10.33km)
요금소 : 서부간선

8.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 대상 (종전과 같음)

가.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나. 감면대상

- 1)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차량
- 2) 별도의 식별표를 부착한 특별시도 유지관리 차량 및 제설차량

9. 통행료 수납방법 : 유인식(현금, 선·후불 교통카드), 무인식(하이패스)

및 영상 인식에 의한 후불 고지

10.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23.7.1.(토) 00:00부터 수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85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3. 6. 29. ~ 2023. 7. 13.(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간	출차일자	출차시간	부과금액	주차요금	기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45건																
1	20219310	16ㄴ16583	그랜저(GRA NDEUR)	000047339214201 20230525001062	사당노외	0004:07	2023-04-24	18:45	2023-04-24	22:52	10,000	10,000	0	강민	경기도안산시단원 구선부광장로113	수취인불명	2023-07-07
2	20219375	62오9709	쏘나타(SONATA)	000047339214201 20230525001481	영등포구청역	0002:14	2023-04-21	18:37	2023-04-21	20:51	7,000	7,000	0	구6인	서울특별시관악구 범원단지5길57	폐문부재	2023-07-07
3	20219419	62오9709	쏘나타(SONATA)	000047339214201 20230525001048	신대방역	0003:12	2023-04-28	17:59	2023-04-28	21:11	10,100	10,100	0	구6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원단지5길 57, 102호(신림동)	폐문부재	2023-07-07
4	20219269	20무7351	K3	000047339214201 20230525000701	종로	0002:31	2023-04-18	19:33	2023-04-18	22:04	12,400	12,400	0	김6남	서울특별시관악구 낙성대역6길14	폐문부재	2023-07-07
5	20219292	156부2739	디스커버리 D250	000047339214201 20230525001573	종로	0002:50	2023-04-24	17:03	2023-04-24	19:53	6,800	6,800	0	김6희	경기도하남시위례 순환로270	폐문부재	2023-07-07
6	20219563	24무7653	스파크 1.0 DOHC	000047339214201 20230525003906	구파발역	0000:44	2023-04-14	21:50	2023-04-14	22:34	700	700	0	김6자	서울특별시서대문 구포방터길	폐문부재	2023-07-07
7	20219564	24무7653	스파크 1.0 DOHC	000047339214201 20230525003500	구파발역	0001:25	2023-04-18	21:14	2023-04-18	22:39	1,400	1,400	0	김6자	서울특별시서대문 구포방터길	폐문부재	2023-07-07
8	20219537	49구1145	BMW 325d	000047339214201 20230525003036	천호역	0000:43	2023-04-09	20:27	2023-04-09	21:10	2,300	2,300	0	김6욱	서울특별시강남구 개포로264	폐문부재	2023-07-07
9	20219684	12도3514	모닝	000047339214201 20230525000619	사당노외	0005:29	2023-04-07	08:48	2023-04-07	14:17	13,200	13,200	0	김6륜	인천광역시미추홀 구원당대로780번길 22	폐문부재	2023-07-07
10	20219139	50서7795	렉서스 ES300h	000047339214201 20230525001055	신대방역	0006:29	2023-04-01	10:45	2023-04-01	17:14	10,100	10,100	0	김6숙	경기도파주시탄현 면시범로45	폐문부재	2023-07-07
11	20219650	48부2606	투싼(TUCS ON)	000047339214201 20230525002476	잠실역	0000:45	2023-04-07	18:16	2023-04-07	19:01	3,600	3,600	0	김6일	서울특별시강동구 성내로13길57-5	폐문부재	2023-07-07
12	20219634	56도2335	코나(KONA)	000047339214201 20230525002040	신천유수지	0003:12	2023-04-01	16:45	2023-04-01	19:57	5,000	5,000	0	김6원	경기도남양주시순 회로458-16	폐문부재	2023-07-07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간	출차일자	출차시간	부과금액	주차요금	기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13	20219358	313주2875	렉서스 CT200h	000047339214201 20230525002575	수서역	0001:53	2023-04-12	11:16	2023-04-12	13:09	3,600	3,600	0	남경	서울특별시서대문 구세곡로3길63	폐문부재	2023-07-07
14	20219609	29구8324	GLC220 d 4Matic	000047339214201 20230525000557	한강진역	0002:55	2023-04-23	13:48	2023-04-23	16:43	14,000	14,000	0	박0옥	서울특별시영등포 구신호로18길	폐문부재	2023-07-07
15	20219688	46도5654	BMW Active Tourer	000047339214201 20230525004099	장안1동	0000:13	2023-04-18	13:03	2023-04-18	13:16	300	300	0	박0담	서울특별시동대문 구정호로21길19-1 2	폐문부재	2023-07-07
16	20219656	67구7608	K5	000047339214201 20230525002010	잠실역	0001:02	2023-04-01	21:30	2023-04-01	22:32	5,200	5,200	0	배0우	경기도양주시백 봉로32	폐문부재	2023-07-07
17	20219342	46우2447	알라부 1.5 TURBO	000047339214201 20230525002995	호림원공원	0000:45	2023-04-27	12:50	2023-04-27	13:35	2,400	2,400	0	손0범	경상남도창원시진 해구중로67	폐문부재	2023-07-07
18	20219361	66라6395	모닝	000047339214201 20230525003967	수서역	0014:02	2023-04-25	18:42	2023-04-26	08:44	600	600	0	송0섭	서울특별시노원구 섬밭로265	폐문부재	2023-07-07
19	20219461	42주0669	제규아 XE 2.0D	000047339214201 20230525002133	종로	0000:57	2023-04-15	17:01	2023-04-15	17:58	4,800	4,800	0	신0호	서울특별시구로구 고척로30길	폐문부재	2023-07-07
20	20219254	21자2244	카렌스	000047339214201 20230525003165	학여울역	0000:36	2023-04-15	14:36	2023-04-15	15:12	2,000	2,000	0	양0철	전라북도진안군진 안읍상회1길	수취인불명	2023-07-07
21	20219243	57자8115	프라이트	000047339214201 20230525003349	구파발역	0000:49	2023-04-14	08:59	2023-04-14	09:48	1,700	1,700	0	유0열	서울특별시은평구 통일로88길	폐문부재	2023-07-07
22	20219098	34바2494	쏘렌토	000047339214201 20230525000877	천호역	0003:35	2023-04-05	19:41	2023-04-05	23:16	11,100	11,100	0	이0조	제주특별자치도제 주시번영로528	수취인불명	2023-07-07
23	20219385	18구6061	레이	000047339214201 20230525002872	동대문	0001:11	2023-04-30	21:33	2023-04-30	22:44	2,700	2,700	0	이0면	서울특별시영등포 구디지빌로70길	폐문부재	2023-07-07
24	20219357	27두2303	티볼리	000047339214201 20230525000465	수서역	0008:26	2023-04-03	09:24	2023-04-03	17:50	16,300	16,300	0	이0아	서울특별시영등포 구호창로17	폐문부재	2023-07-07
25	20219680	282서5822	GLC300 4Matic Coupe	000047339214201 20230525000732	기암리야품	0005:55	2023-04-03	14:06	2023-04-03	20:01	12,000	12,000	0	이0린	서울특별시동대문 구갑사리로66길89 -4	폐문부재	2023-07-07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간	출차일자	출차시간	부과금액	주차요금	기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26	20219681	282ㄱ5822	GLC300 4Matic Coupe	000047339214201 20230525000817	기양라이폼	0005:38	2023-04-10	14:18	2023-04-10	19:56	11,500	11,500	0	이0린	서울특별시동대문 구합성리로66길89 -4	폐문부재	2023-07-07
27	20219682	282ㄱ5822	GLC300 4Matic Coupe	000047339214201 20230525000884	기양라이폼	0005:25	2023-04-17	13:51	2023-04-17	19:16	11,000	11,000	0	이0린	서울특별시동대문 구합성리로66길89 -4	폐문부재	2023-07-07
28	20219683	282ㄱ5822	GLC300 4Matic Coupe	000047339214201 20230525000953	기양라이폼	0005:14	2023-04-24	13:58	2023-04-24	19:12	10,700	10,700	0	이0린	서울특별시동대문 구합성리로66길89 -4	폐문부재	2023-07-07
29	20219447	31루8822	BMW X1 xDrive18d	000047339214201 20230525000329	종도	0003:54	2023-04-02	12:54	2023-04-02	16:48	18,800	18,800	0	이0석	서울특별시양산구 원로40	폐문부재	2023-07-07
30	20219434	12무9976	벨로스터(V ELOSTER)	000047339214201 20230525002539	천호역	0001:10	2023-04-21	21:01	2023-04-21	22:11	3,600	3,600	0	이0성	서울특별시강동구 천호재12길	폐문부재	2023-07-07
31	20219435	12무9976	벨로스터(V ELOSTER)	000047339214201 20230525002034	천호역	0001:37	2023-04-22	14:44	2023-04-22	16:21	5,200	5,200	0	이0성	서울특별시강동구 천호재12길	폐문부재	2023-07-07
32	20219386	235ㄱ2947	티볼리 에어	000047339214201 20230525002070	동대문	0002:18	2023-04-21	08:35	2023-04-21	10:53	5,000	5,000	0	이0운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터널로13길25	수취인불명	2023-07-07
33	20219356	13ㄱ6550	SM5 LPi	000047339214201 20230525001345	훈원공원	0001:10	2023-04-12	13:00	2023-04-12	14:10	7,700	7,700	0	이0배	경기도남양주시화 도읍수레로1142-1 9	폐문부재	2023-07-07
34	20219499	13ㄱ6550	SM5 LPi	000047339214201 20230525003653	훈원공원	0001:10	2023-04-12	13:00	2023-04-12	14:10	1,100	1,100	0	이0배	경기도남양주시화 도읍수레로1142-1 9	폐문부재	2023-07-07
35	20219653	18소4927	쏘나타(SON ATA)	000047339214201 20230525003111	잠실역	0002:12	2023-04-13	17:46	2023-04-13	19:58	2,100	2,100	0	정0화	경기도구리시동구 릉로459번길	폐문부재	2023-07-07
36	20219632	186ㄱ1974	Mercedes- AMG GLC43 4MATIC Coupe	000047339214201 20230525000748	개화산역	0011:38	2023-04-28	06:50	2023-04-28	18:28	11,900	11,900	0	정0원	서울특별시서초구 동광로33길10-5	폐문부재	2023-07-07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간	출차일자	출차시간	부과금액	주차요금	기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37	20219560	20G6318	스파크 1.0 DOHC	000047339214201 20230525002713	구파발역	0011:01	2023-04-25	08:19	2023-04-25	19:20	3,200	3,200	0	채0영	경기도양주시일산 동구경원로519번길 18-8	폐 문부재	2023-07-07
38	20219398	343R7717	트레일블레 이지 1.35 TURBO FWD	000047339214201 20230525002064	동대문	0002:17	2023-04-25	22:30	2023-04-26	00:47	5,000	5,000	0	천0창	인천광역시부평구 원적로361	폐 문부재	2023-07-07
39	20219260	18O6282	스파크 1.0	000047339214201 20230525001451	구로디지털단지 역	0004:40	2023-04-06	23:08	2023-04-07	03:48	7,200	7,200	0	최0정	서울특별시광진구 독점로49길	폐 문부재	2023-07-07
40	20219449	25D40291	진 콤팩스	000047339214201 20230525001253	종로	0001:45	2023-04-04	11:54	2023-04-04	13:39	8,400	8,400	0	홍0근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2 2	폐 문부재	2023-07-07
41	20219470	25D40291	진 콤팩스	000047339214201 20230525001407	종로	0001:28	2023-04-21	12:15	2023-04-21	13:43	7,200	7,200	0	홍0근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2 2	폐 문부재	2023-07-07
42	20219302	289R8552	트레일블레 이지 1.35 TURBO FWD	000047339214201 20230525000946	종로	0004:27	2023-04-28	13:24	2023-04-28	17:51	10,800	10,800	0	홍0주	서울특별시노원구 동일로182길26	폐 문부재	2023-07-07
43	20219154	29S5024	모닝	000047339214201 20230525001993	개화산역	0005:14	2023-04-09	18:09	2023-04-09	23:23	5,300	5,300	0	황0선	경기도시흥시매화 로41	폐 문부재	2023-07-07
44	20219502	116S9151	투싼 하이브리드 (TUCSON HYBRID)	000047339214201 20230525002935	천호역	0001:38	2023-04-15	18:38	2023-04-15	20:16	2,600	2,600	0	황0하	서울특별시강북구 삼각산로143-1	폐 문부재	2023-07-07
45	20219140	273Z7455	G80	000047339214201 20230525003646	한강지역	0000:14	2023-04-01	21:32	2023-04-01	21:46	1,200	1,200	0	황0수	서울특별시성동구 매봉길50	폐 문부재	2023-07-0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86호

행당 도시개발구역(2단계)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 - 389호(2005.12.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 - 301호(2007.08.30.)로 개발계획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 - 270호(2008.07.3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 - 271(2009.07.0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 - 418(2010.1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346(2011.11.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 - 319(2012.1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 - 115(2014.03.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 - 175(2014.05.0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 - 244(2014.0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 - 186(2015.06.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 - 408(2015.12.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 - 398(2016.12.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 - 219(2017.06.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 - 419(2017.11.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 - 413(2018.12.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 206(2019.06.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 258(2019.08.0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561(2020.12.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451(2021.08.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679(2021.12.0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 398(2022.09.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 169(2023.05.1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행당 도시개발사업의 2단계 사업구간이 준공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사업의 명칭 : 행당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92 - 10번지 일원
4. 준공일자(2단계) : 2023.06.29.
5.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가. 면 적 : 전체 70,823.3㎡ 중 14,465.7㎡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계	1단계(기 준공)	2단계(금회 준공)	3단계	
계		70,823.3	42,568.3	14,465.7	13,789.3	100.0
주거 용지	소000 계	19,692.3	19,692.3	-	-	27.8
	주상복합용지	19,692.3	19,692.3	-	-	27.8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000 계	33,970.0	14,830.6	5,350.1	13,789.3	48.0
	방수설비	4,925.1	-	4,925.1	-	7.0
	공000 원	4,706.0	-	-	4,706.0	6.6
	녹000 지	4,742.0	-	-	4,742.0	6.7
	공공공지	911.1	911.1	-	-	1.3
	도000 로	18,260.8	13,919.5	-	4,341.3	25.8
	주 차 장	425.0	-	425.0	-	0.6
기타 시설 용지	소000 계	17,161.0	8,045.4	9,115.6	-	24.2
	자족기능시설1	3,308.2	-	3,308.2	-	4.7
	자족기능시설2	2,835.6	-	2,835.6	-	4.0
	공공용시설1	8,045.4	8,045.4	-	-	11.3
	공공용시설2	2,971.8	-	2,971.8	-	4.2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용지는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관리청에 무상귀속

구분	규격	전체		금회 공사완료구간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도로	6개소	1,054	18,244.5	-	-
광장	1개소	-	1,915.7	-	-
공공공지	1개소	-	911.1	-	-
상수시설 (관로)	D25~D300mm	1,157	-	-	-
하수시설 (우수관로)	D300~D1200mm	1,232	-	-	-
하수시설 (우수암거)	1@2.0×1.5 2@3.0×3.0 2@3.2×3.0 2@3.2×3.8	764	-	-	-
하수시설 (오수관로)	D300~D400	757	-	-	-
공원	1개소	-	4,706	-	-
녹지	2개소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각 1개소)	-	4,742	-	-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02 - 2133 - 8495)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89호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동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직인 폐기 및 등록 사유 : 본부 명칭변경(2023.7.1.字)

2.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본부 명칭변경 (2023.7.1.)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한강사업본부 수상시설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본부 명칭변경 (2023.7.1.)
	한강사업본부 수상시설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3.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본부 명칭변경 (2023.7.1.)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90호

청문조서 열람 ·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819호(2023.3.23.), 1106호(2023.4.13.)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 · 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단체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 확인 통지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 당 사 자: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사단법인 한국스포츠클럽연맹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29나길 101 (신내동, 라이프스타파트) 1041호	신시현	2018-08-08
2	서울시실버통일촉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714호	허운정	2017-07-11
3	박영석탐험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37 (하월곡동, 영원빌딩) 2층	이영균	2016-05-11
4	사람과 나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7길 58 (상계동) B1	한점복	2016-02-26
5	한국해양스포츠포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1길 45 (공랑동)	김명환	2015-01-20
6	(사)나우온 스포츠 문화 그리고 교육연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29 (공릉동) 2층	류태호	2014-02-13
7	(사)즐거운학교 스포츠사업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53 (면목동) 3층	한종우	2014-02-12
8	(사)다문화축구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0, 4층(대림동, 대림빌딩)	리상저 (이상철)	2014-02-12
9	(사)다문화스포츠총연합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뱃꽃로70길 32 (구로동)	츠타아린 (지태림)	2014-02-12
10	(사)다문화생활스포츠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4, 2층 2호(대림동, 청화빌딩)	이홍	2014-02-12
11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단학기공체조연합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9, 동일빌딩 8층 (수송동)	변동호	2001-03-29

- 처분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말소사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 근거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 열람·확인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체육정책과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3. 7. 13.(목) ~ 2023. 7. 19.(수)까지

4.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체육정책과(☎02-2133-26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9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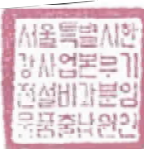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법 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2023.7.1.字)

2.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0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023.07.0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3.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기전설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0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023.07.0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기전설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94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하고 동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사유 : 미래한강본부 명칭변경(2023. 7. 1자)
2.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망원안내센터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망원안내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 7. 1.	미래한강본부 명칭 변경 (2023. 7. 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망원안내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 7. 1.	

3.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망원안내센터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망원안내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 7. 1.	미래한강본부 명칭 변경 (2023. 7. 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망원안내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 7. 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95호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12.14, 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49호로 주민 의견청취(2023.02.03.~ 2023.02.16.)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370,484.0	감) 370,484.0	-	-
폐지	②	신반포25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잠원동 61-1번지 일대	13,548.1	감) 13,548.1	-	
폐지	③	신반포16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잠원동 55-10번지 일대	12,977.2	감) 12,977.2	-	
폐지	④	신반포27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5,764.9	감) 5,764.9	-	
폐지	⑤	신반포12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17,712.2	감) 17,712.2	-	
폐지	⑥	잠원동 66-2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잠원동 66-2번지 일대	13,176.9	감) 13,176.9	-	
신설	①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	증) 2,821,097.5	2,821,097.5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3.06.30. ~ 2023.07.13.)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02 - 2133 - 7144)
-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02 - 2155 - 6793), 재건축사업과(☎02 - 2155 - 7305)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계획(시행)열람공고 에서도 확인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 - 2133 - 7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98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2023. 7. 1.자)

2.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난지안내센터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난지안내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 7.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023. 7. 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난지안내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 7. 1.	

3.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 7.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023. 7. 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 7. 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900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사유 : 본부명칭변경[한강사업본부→미래한강본부](2023.07.01.字)
2.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녹지 관리과일상경비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01.	본 부 명칭변경(2023.07. 0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녹지 관리과분임물품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01.	

3.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녹지 관리과분임물품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01.	본 부 명칭변경(2023.07. 0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녹지 관리과일상경비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0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90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를 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 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4. 대상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2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부서
1	한국인권재단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32, 4층(서교동)	고광현	2012. 2. 24.	인권담당관
2	지금여기에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 39, 2층(망원동)	이명춘	2015. 11. 6.	인권담당관

5. 처분(말소) 일자: 2023. 6. 29.
6. 공고 및 게시장소: 서울시보 및 서울시청 누리집
7. 기타 사항
 - 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담당: 박영진, ☎ 02 - 2133 - 638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904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형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44 7**호	위반일시: 2023-04-06 16:32 위반장소: 강변북로 일산방향 가양대교 아래 인근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8m, 초과값:0.28m 경기07고852*)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3-05-25 납기일: 2023-07-30
이강영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나길 8 지하*호	위반일시: 2023-04-18 05:46 위반장소: 강변북로 현대한강아파트 인근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5m, 초과값:0.25m 경북98사234*)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3-05-25 납기일: 2023-07-30
김광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331번길 12-20 B*호	위반일시: 2023-05-04 10:08 위반장소: 용산구 원효 145 옥천복개 인근 위반내용: 차량의 총하중 초과(실측값:11.3t, 초과값:1.3t 경기06코640*)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3-05-25 납기일: 2023-07-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24 9*1동 50*	위반일시: 2023.02.09. 15:10 위반장소: 용산구 한강로3가 현대한강아파트 인근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36.35t, 초과값:4.35t 서울06거676*)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3-03-27 납기일: 2023-05-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 - 300 - 8347, 팩스번호: 02 - 300 - 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906호

2023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공모 하오니 해당종목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승자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공모종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21호 서울잡가

2. 신청자격

○ 일반요건

- 서울시에 2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정관련요건

- 신청 종목의 기능에 대한 전승계보가 있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종목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 해당 종목 이수증 발급 이후 5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자
 - 선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
 - 일반전승자

◇ 일반전승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②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 ③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3. 6. 29. ~ 8. 28.(60일간)
- 접수기간 : 2023. 8. 29. ~ 9. 5.(7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방문접수는 토·일·공휴일 제외,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우편제출은 등기우편 접수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드시 접수 유무 확인 요망
- 접 수 처 : 서울시청 문화재정책과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 4층
 - 접수담당 : 박나운(2133-2616) 주무관
- 제출서류 : 보유자인정 신청서 및 붙임자료 각6부, 자료 활용 동의서 1부, 동영상 1편, 주민등록 초본 1부
 - 신청서 서식, 동의서 등은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홈페이지 ⇒ 서울무형문화재 ⇒ 관련 법령(http://www.seoulmaster.co.kr/bbs/board.php?bo_table=law)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유자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현장조사, 기량심사 등의 조사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함
- 원칙적으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심의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하되, 측정산식 및 배점은 전문가 조사단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문화재정책과(02-2133-2616)로 문의해주시기 바람.

붙임: 제출자료 1식. 끝.

<붙임>

서식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내용	종목명칭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생년월일 및 성별	(만 세)	성별()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 소	(※ 전승시설 주소 포함)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 부터 년 현재까지 (년 종사)	
	입문경위	<u>※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u>	
전수활동 경력	○ 이수자 : 년 월 ~ 년 월 ○ 전수교육조교 : 년 월 ~ 년 월		
주요 전승활동 실적	<u>※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u>		
공개행사 참여실적	"		
관련분야 입상실적	"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 자료(개인종목)

서식1의 붙임자료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개인종목)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주요 전승활동 실적

※ 최근 10년간 전수교육에 참여한 실적을 정리하여 기술

※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및 전시)을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3. 공개행사 참여실적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를 첨부함.

4. 관련분야 입상실적

※ 관련 분야의 입상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입상실적 증빙자료(상장)을 첨부함.

단, 감사패 등 공로상 등의 수상실적은 제외함.

5. 전승의지 및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의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을 기술함.

6. 공방 시설 및 장비 현황

※ 공예종목에 한하여 제출함

- 목록 및 사진자료 제출 ** <자료 활용 동의서> 첨부(별지 제3호 서식)

7. 해당종목에 대한 전수활동 기여도

※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의 경력을 정리하고 증빙자료(인정서, 이수증)를 제출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조사 중 서울시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서식 2 - 별지 제3호 서식

자료활용 동의서

자료제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료목록

연번	자료명칭	수량	규격	제작자 성명

상기 본인은 위 제출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서울시청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와 관련하여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선택)**

※ 상기 제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학술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전시, 공개, 복제, 촬영,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제공자: (서명 또는 인)

자료제공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 상의 제한사항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910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승인일자: 2023. 6. 23.
2.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주요내용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위 치	토지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연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육군 제6019부대 (국방부장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 12-494 일대	86,913.66	86,737.66	감) 176.00	45,556.50	45,468.50	감) 88.00	
고덕차량기지 (서울교통공사장)	서울 강동구 강일동 227-1 일대	262,926	262,926	-	52,444.69	52,444.69	-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02 - 2133 - 2015)
서초구 공원녹지과(02 - 2155 - 6887)
강동구 푸른도시과(02 - 3425 - 6475)
4. 열람기간: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911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경기로 등 418명
4. 공고기간 : 2023. 6. 29 ~ 2023. 7. 13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23. 6. 29 ~ 2023. 7. 13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 (<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
 - 전화번호 : 02 - 2133 - 4570~79 팩스번호 : 02 - 2133 - 4904
 -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치(<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사전통지서)명단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	123로2880	(주)경기로	경기도 수원시	2023-06-03 22:09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	101하4077	(주)그린카	경기도 부천시	2023-05-31 20:1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	117저3772	(주)꾸러기	서울특별시	2020-08-11 09:02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	65러9553	(주)남경코리아	서울특별시	2019-01-18 18:35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	104허3939	(주)대우건설	경기도 화성시	2023-05-29 20:4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	104허3939	(주)대우건설	경기도 화성시	2023-05-29 20:45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	172다9034	(주)동일테크	경기도 수원시	2023-06-06 17:3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	20가7751	(주)리즈	부산광역시	2023-06-02 20:3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9	86러8964	(주)마이보성	경기도 고양시	2023-06-05 15:10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	전용차로위반	50,000
10	81부1348	(주)밀리엠	서울특별시	2023-05-31 20: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	167호8878	(주)비엠에이	충청북도 청주시	2023-05-09 09:29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2	194하5080	(주)삼미기업	서울특별시	2023-05-09 18:5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	42나4651	(주)세비바	서울특별시	2023-05-31 20:33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4	18고1317	(주)스프링오브위즈덤	서울특별시	2023-06-05 11:4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5	194하4408	(주)쏘카	경기도 김포시	2023-06-01 18:4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	50구4133	(주)씨제이인터내셔널	인천광역시	2023-06-02 23:2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7	33호1206	(주)에듀포올	서울특별시	2019-01-30 20:04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	28다4595	(주)에프에이스포츠	서울특별시	2023-06-03 14:23	우이교~강북구청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19	127가5912	(주)익스트림코리아(ExtremeKoreaCo.,Ltd.)	서울특별시	2023-05-31 18:2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	39조5318	(주)일주마스타	서울특별시	2023-06-04 17:5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1	128하3490	(주)제일렌트카	인천광역시	2023-06-06 15:5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2	153하9680	(주)제일렌트카	인천광역시	2023-06-05 20:1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3	11버0788	(주)지홀딩스	경기도 시흥시	2023-06-01 09: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24	93누9179	(주)케이원산업	서울특별시	2023-06-05 07: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5	15거6835	(주)코아유통	서울특별시	2023-06-02 17:17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	전용차로위반	50,000
26	13호2117	(주)퀀터테인먼트	서울특별시	2018-10-02 14:20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7	67오6697	강남대치컨설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2023-06-01 19:5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	93소8453	금오송풍계주식회사	강원도 횡성군	2023-06-05 08:4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	104허6702	더드림AD	서울특별시	2023-05-18 13:52	망우사거리~상봉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0	83우3659	라이크프랜즈주식회사	서울특별시	2023-06-05 17:43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1	169호7641	버드라운지	서울특별시	2023-05-22 17:22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2	18허0101	복송아상점	경기도 고양시	2023-05-22 17:5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3	101호9936	봉찬문화원	서울특별시	2023-05-17 17: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4	37수1513	브리티쉬아메리칸토토바코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2018-10-02 09:39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5	53미6658	설성푸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2023-05-31 17:4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	서울33자6540	세원택시	서울특별시	2023-06-05 18:37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7	85버6765	시	서울특별시	2023-06-04 13:2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8	67호5964	에스엠전력주식회사	대구광역시	2019-01-29 17:17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	235소4970	연호음료(주)	서울특별시	2023-06-01 18:0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	170허5631	왕십리중앙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2023-05-18 15:4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1	81수1322	유한회사해성실업	전라북도 익산시	2023-06-01 19: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2	16허9977	제이스컴퍼니	서울특별시	2023-05-16 14:1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43	143구1437	주식회사강우건설	서울특별시	2023-06-05 17:36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	154호1302	주식회사그린카	경기도 평택시	2023-06-05 12:3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	346조3456	주식회사댕스코	경기도 김포시	2023-05-16 17: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6	73로1861	주식회사더에이치엔에이 치	서울특별시	2023-06-05 20:0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60,000
47	12저9155	주식회사드림자산	경기도 부천시	2023-06-04 23:5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8	67도1969	주식회사디에스피미디어	서울특별시	2023-06-01 10:5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49	146주9299	주식회사복토개발	경기도 용인시	2023-05-31 16:4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0	54보3930	주식회사세차왕	서울특별시	2019-01-23 19:14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1	54보3930	주식회사세차왕	서울특별시	2019-01-29 20:44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2	63하9968	주식회사스펙코어	경기도 광명시	2018-12-01 17:57	서초동 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3	11가1553	주식회사아시	경기도 안양시	2023-06-05 16:4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4	337우2023	주식회사아이원코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2023-06-01 19:5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	경기14노1333	주식회사에스피네이처	경기도 광주시	2023-06-02 17: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60,000
56	821라2390	주식회사엑스파워네트웍스	인천광역시	2023-06-02 12:12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전용차로위반	50,000
57	155호6010	주식회사위카	전라남도 화순군	2023-06-05 18:5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8	155호6010	주식회사위카	전라남도 화순군	2023-06-05 18:4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9	53조6947	주식회사이플랫폼	경기도 김포시	2023-06-02 18:18	올림픽회관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위반	50,000
60	63조4018	주식회사제이캡	서울특별시	2023-06-02 09:5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1	14로0216	주식회사칼라칠	서울특별시	2023-06-05 10:5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62	46주5901	주식회사코스모스랩	경기도 파주시	2023-06-02 08: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3	180너3718	주식회사태명에프엔티	서울특별시	2023-06-02 18: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4	34허9549	주식회사파스트렌트카	경기도 광주시	2023-06-01 12:5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	34허9549	주식회사파스트렌트카	경기도 광주시	2023-06-01 13:0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	36하1380	주식회사파스트렌트카	경기도 용인시	2023-06-04 20:3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7	36하1380	주식회사파스트렌트카	경기도 용인시	2023-06-02 07:3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	252소5770	주식회사포스트커피하우스	서울특별시	2023-06-01 12: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9	229고7189	주식회사하와옌나	경기도 성남시	2023-05-31 15:28	논현역~신사역	전용차로위반	50,000
70	160호1900	주식회사하이파킹	서울특별시	2023-05-18 17: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1	07라8027	주식회사하트피플	서울특별시	2023-06-02 08:00	반포역~논현역	전용차로위반	50,000
72	190하2637	주식회사현대백화점천호점	서울특별시	2023-05-23 08:01	종합운동장사거리~종합운동장역	전용차로위반	50,000
73	28저0465	주식회사현도디앤시	서울특별시	2023-06-05 09: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74	89누7280	주안산업(주)	경기도 고양시	2023-06-05 14:3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75	191노9383	관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2023-06-02 17: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6	경기92배2213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한회사	경기도 광주시	2023-06-01 11:53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77	03하9130	패스체대입시	경기도 하남시	2023-05-15 15:51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전용차로위반	50,000
78	58라7553	퍼스텝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3-06-02 10:4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9	58라7553	퍼스텝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3-06-02 10:4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0	169하8275	푸른솔관광(주)	인천광역시	2023-06-02 18:3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1	104호7196	푸른솔관광(주)	인천광역시	2023-06-04 09:4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82	29오7819	프리모케이앤에스(주)	서울특별시	2023-06-05 16:3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83	66구9273	피크플러스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2023-05-31 12:0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4	11두0277	A**	강원도 원주시	2023-06-05 19: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5	37가3273	B**	전라북도 부안군	2023-06-03 15:3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6	177고5676	B**	충청북도 충주시	2023-06-01 17:1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7	177고5676	B**	충청북도 충주시	2023-06-01 17:15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8	177고5676	B**	충청북도 충주시	2023-06-01 15:1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9	177고5676	B**	충청북도 충주시	2023-06-01 17:1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0	177고5676	B**	충청북도 충주시	2023-06-01 15:2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1	07구9995	C**	경기도 안산시	2023-06-03 16:3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2	40저1769	C**	경기도 시흥시	2023-06-05 16:30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93	385거8802	C**	서울특별시	2023-06-01 16:4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4	104누6781	C**	경기도 수원시	2023-06-05 19:36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95	104누6781	C**	경기도 수원시	2023-06-05 19:10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96	61더3872	E**	충청북도 청주시	2023-06-01 07:2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7	25수5835	E**	서울특별시	2023-06-05 07:4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8	59더2428	H**	서울특별시	2023-06-05 16:5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9	67호2762	H**	서울특별시	2018-09-27 20:38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금 액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00	399조7550	H**	경기도 안산시	2023-06-06 17:0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1	384버7737	J**	서울특별시	2023-05-31 11:2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2	191허1445	K**	경기도 용인시	2023-05-17 14:4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3	191허1445	K**	경기도 용인시	2023-05-29 15:1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4	191허1445	K**	경기도 용인시	2023-05-17 14:4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5	191허1445	K**	경기도 용인시	2023-05-29 15:1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6	70어4323	L**	서울특별시	2023-05-31 09:26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60,000
107	33루0362	L**	경기도 안산시	2023-06-03 17:2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8	60루8200	L**	서울특별시	2023-06-02 20:42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9	193하5827	M**	경기도 평택시	2023-05-19 11:3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0	193하5827	M**	경기도 평택시	2023-05-19 11:3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1	16하4228	P**	경상북도 경주시	2023-05-22 10:33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12	68호0131	P**	서울특별시	2023-03-18 15:2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3	165호4491	T**	서울특별시	2023-05-15 18:3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4	249너6067	T**	충청남도 아산시	2023-06-05 00:18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15	03우2772	V**	강원도 춘천시	2023-06-02 18: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6	03우2772	V**	강원도 춘천시	2023-06-02 18:1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7	03우2772	V**	강원도 춘천시	2023-06-02 18:2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8	134호6137	W**	강원도 원주시	2023-05-17 15:5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9	134호6137	W**	강원도 원주시	2023-05-17 16:0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0	111가3345	Z**	경기도 수원시	2023-05-31 13:2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1	101호1392	Z**	경기도 광주시	2023-05-16 11:2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2	101호1392	Z**	경기도 광주시	2023-05-16 11:3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3	101호1392	Z**	경기도 광주시	2023-05-16 11:3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4	238너5251	강**	서울특별시	2023-05-30 17: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5	15루4502	강**	서울특별시	2023-05-27 11:5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26	152하2394	강**	충청남도 논산시	2023-05-13 15:47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27	45머8035	강**	서울특별시	2023-05-25 10: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8	서울강북하7264	강**	서울특별시	2023-05-28 19:25	독산사거리~시흥IC	전용차로위반	40,000
129	170고5724	강**	경기도 양주시	2023-05-24 09:05	상계10동주민센터~운수골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130	48루2532	고**	서울특별시	2023-05-28 02:32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노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131	325버6148	고**	서울특별시	2023-05-30 12:28	연세대학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32	70거5360	곽**	서울특별시	2023-05-28 17: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60,000
133	서울31자3638	곽**	서울특별시	2023-05-25 17:2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4	172노4540	곽**	서울특별시	2023-05-26 19:0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35	서울31아5606	구**	경기도 양주시	2023-05-30 08:5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36	160머4993	권**	경기도 의정부시	2023-05-26 08:36	용화여고~노원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37	48두3425	권**	서울특별시	2023-05-25 11: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8	49어9773	권**	서울특별시	2023-05-26 18:3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39	25부9763	권**	서울특별시	2023-05-29 10:3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0	63보2003	김**	서울특별시	2023-05-25 19:5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41	서울86자3568	김**	서울특별시	2023-05-29 00:2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42	36보3101	김**	서울특별시	2023-05-29 09:4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43	서울32바8982	김**	경기도 구리시	2023-05-25 17:2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4	33보1516	김**	광주광역시	2023-05-26 18:4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45	40도7566	김**	경상북도 안동시	2023-05-27 18:2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6	서울31바6607	김**	서울특별시	2023-05-30 07:3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47	01주8294	김**	서울특별시	2023-05-26 17:2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48	96우0678	김**	서울특별시	2023-05-25 17: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9	101호1639	김**	경기도 남양주시	2023-05-03 20:04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50	08소5182	김**	인천광역시	2023-05-29 03:40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51	46수3716	김**	경기도 시흥시	2023-05-25 09:0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52	114오3017	김**	서울특별시	2023-05-14 15:13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53	56수9852	김**	서울특별시	2023-05-30 08:5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54	34부6738	김**	경기도 의정부시	2023-05-25 08:5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5	130러9495	김**	서울특별시	2023-05-27 19:26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56	18허9124	김**	서울특별시	2018-10-01 18:46	LG에클라트 정광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57	04더1849	김**	경기도 안산시	2023-05-26 17: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8	11보9485	김**	서울특별시	2023-05-26 09: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59	25무9210	김**	경기도 구리시	2023-05-26 20: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0	37라0792	김**	경기도 용인시	2023-05-14 22:27	수유역~미아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61	278구8640	김**	대전광역시	2023-05-30 15:4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2	157다5870	김**	서울특별시	2023-05-26 17:37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63	133주7506	김**	광주광역시	2023-05-29 14:2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4	82버2893	김**	서울특별시	2023-05-26 09:2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5	40부4707	김**	서울특별시	2023-05-30 09:10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66	18러0691	김**	경기도 광주시	2023-05-26 10:0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67	333오2115	김**	서울특별시	2023-05-26 09:0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8	333오2115	김**	서울특별시	2023-05-26 09: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9	100두7980	김**	경기도 의정부시	2023-05-18 09:35	도봉로 엘지베스트샵강북본점 인근	전용차로위반	50,000
170	84보8596	김**	경기도 가평군	2023-05-26 09:28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1	서울3204408	김**	서울특별시	2023-05-26 19:5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2	경기91바4631	김**	경기도 안산시	2023-05-27 12:00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73	18노9504	김**	서울특별시	2023-05-30 18:4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4	112루1056	김**	경기도 양주시	2023-05-25 10:5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75	35거2053	김**	서울특별시	2023-05-25 18:4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6	55노8259	김**	경기도 평택시	2023-05-26 18:3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77	50오3654	김**	경기도 남양주시	2023-05-30 09:3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8	32도7228	김**	경기도 남양주시	2023-05-27 13:17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79	24부0280	김**	경상북도 포항시	2023-05-26 18:2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80	서울32자5769	김**	서울특별시	2023-05-26 20: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81	02구6226	김**	서울특별시	2023-05-28 10:36	천호대교~천호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82	경기34바4782	김**	경기도 의정부시	2023-05-26 09:3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83	58보4087	김**	서울특별시	2023-05-25 15:2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84	65로6305	김**	서울특별시	2023-05-30 16:23	제기동역~경동시장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185	87리0889	김**	서울특별시	2023-05-25 09: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86	서울31아1717	김**	서울특별시	2023-05-27 17:36	잠원동 현대힐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87	02저8550	김**	서울특별시	2023-05-25 08:0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88	45노0963	김**	서울특별시	2023-05-28 14:26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189	01무0377	김**	전라남도 무안군	2023-05-27 16:1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0	51마4687	김**	서울특별시	2023-05-26 18:0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91	50모3134	김**	서울특별시	2023-05-25 17:50	을지구장~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192	87다7883	김**	경기도 남양주시	2023-05-26 18:5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93	서울91자7221	김**	서울특별시	2023-05-25 18:1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94	51가0734	김**	서울특별시	2023-05-30 18:1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95	52노9589	김**	서울특별시	2023-05-30 09:1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96	138고3175	김**	서울특별시	2023-05-26 07:4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97	52소7846	김**	인천광역시	2023-05-29 15:1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8	40다6442	김**	경기도 의정부시	2019-01-29 19:16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9	307너7618	나**	강원도 강릉시	2023-05-25 16:4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0	307너7618	나**	강원도 강릉시	2023-05-25 16:4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금 액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201	68마7133	노**	경기도 과천시	2023-05-26 08:51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02	09노0880	노**	서울특별시	2023-05-30 20:2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03	706구6311	노**	경기도 안양시	2023-05-27 12:47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60,000
204	207라4768	노**	광주광역시	2023-05-30 10: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5	207라4768	노**	광주광역시	2023-05-30 10:0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6	33구2354	노**	경기도 남양주시	2023-05-30 08:05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07	24노8280	문**	서울특별시	2023-05-30 08:53	몽촌토성역~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08	서울구로자8014	문**	서울특별시	2023-04-25 17:46	강서구청입구교차로~등촌사거리	전용차로위반	40,000
209	381더8014	문**	서울특별시	2023-05-30 14:13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10	60호1854	민**	서울특별시	2019-01-30 09:35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1	90마9833	민**	경기도 고양시	2023-05-25 09:0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12	서울32아4733	민**	서울특별시	2023-05-28 04:3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13	159수7381	민**	서울특별시	2023-05-26 19:39	신반포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14	서울31자8541	박**	서울특별시	2023-05-25 17:5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15	경기14모7200	박**	서울특별시	2023-05-25 12:24	은평소방서~연신내역	전용차로위반	60,000
216	19라7718	박**	광주광역시	2023-05-13 11:52	시흥사거리~기아대교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17	10더4404	박**	경기도 구리시	2023-05-26 16: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8	257누1785	박**	충청남도 천안시	2023-05-25 08:26	은평성모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19	서울31자6657	박**	서울특별시	2023-05-26 17:36	용화여고~노원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20	서울32자3839	박**	서울특별시	2023-05-25 17:5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21	87어0777	박**	경기도 안산시	2023-05-26 19:35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22	03머4457	박**	서울특별시	2023-05-25 18:2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3	19보1780	박**	서울특별시	2023-05-27 10:5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4	94우0608	박**	경기도 의왕시	2023-05-26 08:0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25	12수3013	박**	경기도 성남시	2023-05-27 16:4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6	서울31사2305	박**	경기도 광주시	2023-05-25 20:4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227	서울83자6199	박**	서울특별시	2023-05-26 08:06	서울공릉초등학교 주변	전용차로위반	50,000
228	15노6049	박**	인천광역시	2023-05-27 04:2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29	34오7300	박**	서울특별시	2023-05-26 17: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0	64가6496	박**	서울특별시	2023-05-25 17:59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31	45서1009	백**	강원도 횡성군	2023-05-27 14:50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232	서울31사7839	백**	서울특별시	2023-05-26 20: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33	56가4399	백**	대구광역시	2023-05-30 17:5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34	68가0956	변**	부산광역시	2023-05-26 17: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5	15라3682	변**	서울특별시	2023-05-28 21:1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36	138오2250	서**	서울특별시	2023-05-25 18:5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7	347주5866	선**	경상북도 포항시	2023-05-25 19:1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38	167보1608	성**	경기도 오산시	2023-05-25 16:18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39	240버3678	손**	서울특별시	2023-05-30 17:1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0	24고6187	손**	경기도 성남시	2023-05-27 07:5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1	62모9653	손**	인천광역시	2023-05-27 08:13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42	243부4223	송**	경기도 김포시	2023-05-26 17: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3	서울32아2017	송**	경기도 시흥시	2023-05-26 18:2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44	159구8818	송**	경기도 화성시	2023-05-25 17:08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245	388보6036	신**	경기도 수원시	2023-05-27 11:3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6	15소3517	신**	서울특별시	2023-05-26 17:5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7	28오1919	신**	서울특별시	2023-05-28 09:56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248	35주2195	신**	서울특별시	2023-05-26 20: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9	174마2555	심**	서울특별시	2023-05-29 11:09	온수골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250	20로5225	안**	서울특별시	2023-05-28 15:4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251	201머9848	안**	경기도 고양시	2023-05-26 08: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52	서울83라8248	안**	서울특별시	2023-05-25 09:2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253	389버2851	안**	경상북도 김천시	2023-05-27 11:2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4	81로7747	양**	전라북도 전주시	2023-05-25 16:38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255	05주1636	양**	서울특별시	2023-05-27 21:15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56	서울31사7751	양**	서울특별시	2023-05-26 17: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7	04모6435	여**	서울특별시	2023-05-26 20:1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8	11저6887	염**	경기도 의왕시	2023-05-30 20:2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59	144누7620	오**	경기도 남양주시	2023-05-25 08:22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60	277소1628	오**	인천광역시	2023-05-28 19:33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61	13저1497	오**	서울특별시	2023-05-26 19: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62	11보6821	오**	서울특별시	2023-05-30 16:3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3	11보6821	오**	서울특별시	2023-05-30 16:3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4	11보6821	오**	서울특별시	2023-05-30 16:3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5	26버7784	오**	경기도 성남시	2023-05-27 19:5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66	서울31자1357	오**	서울특별시	2023-05-26 19:4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67	18모6867	오**	경기도 화성시	2023-05-29 17:3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8	61하7226	오**	경상북도 경산시	2019-01-22 19:00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69	261구8618	왕**	경상남도 통영시	2023-05-30 09:0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0	143모9720	우**	서울특별시	2023-05-26 15:0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271	92두5902	원**	서울특별시	2023-05-26 18:00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72	53어7964	원**	서울특별시	2023-05-25 15:32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7	전용차로위반	50,000
273	34로7194	유**	경기도 부천시	2023-05-29 08:5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4	34로7194	유**	경기도 부천시	2023-05-29 09:0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5	34로7194	유**	경기도 부천시	2023-05-25 08:3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276	86무0944	유**	경기도 부천시	2023-05-30 13: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77	33어0505	유**	경기도 군포시	2023-05-26 17:11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278	38구4707	유**	서울특별시	2023-05-26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79	62보1205	유**	서울특별시	2023-05-29 10:2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0	56라2780	유**	서울특별시	2023-05-30 09:5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281	04너1017	윤**	경기도 양주시	2023-05-26 08:37	동일로 온수골사거리-용화여고	전용차로위반	50,000
282	260어9584	윤**	전라남도 나주시	2023-05-12 16:0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83	64너0675	윤**	서울특별시	2023-05-29 20:2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4	64너0675	윤**	서울특별시	2023-05-29 20:2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5	381다8993	윤**	경기도 연천군	2023-05-29 10:4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6	61백0742	윤**	대구광역시	2023-05-26 18:10	학여울역~휘문고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287	64조7957	윤**	인천광역시	2023-05-25 07:1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8	48루5609	윤**	서울특별시	2023-05-27 15:2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89	245저7621	은**	경기도 안산시	2023-05-30 01:5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90	서울80배3123	이**	서울특별시	2023-05-26 11:11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91	45도0371	이**	서울특별시	2023-05-29 01:3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92	250오7821	이**	서울특별시	2023-05-25 20: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3	02허7363	이**	경기도 구리시	2019-01-18 19:58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94	51수6435	이**	서울특별시	2023-05-26 18:29	방이동 올림피아공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95	164부7766	이**	부산광역시	2023-05-26 20:1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6	91라1964	이**	경기도 안산시	2023-05-28 23:0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97	844로4861	이**	서울특별시	2023-05-29 10:22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98	서울31바3231	이**	경기도 고양시	2023-05-25 14:4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299	30너5303	이**	경기도 고양시	2023-05-29 16:19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300	55루4069	이**	서울특별시	2023-05-26 20:4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01	11보2827	이**	경상북도 영양군	2023-05-25 09:5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2	11보2827	이**	경상북도 영양군	2023-05-25 19:0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3	11보2827	이**	경상북도 영양군	2023-05-25 19:0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4	11보2827	이**	경상북도 영양군	2023-05-25 10:0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5	15로6605	이**	경기도 성남시	2023-05-26 19:5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06	107버6806	이**	경기도 성남시	2023-05-25 17:2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7	145나3030	이**	서울특별시	2023-04-23 13:51	기아대교앞교차로 안양방면	전용차로위반	50,000
308	서울31사1328	이**	경기도 부천시	2023-05-25 20:2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09	234로1801	이**	서울특별시	2023-05-25 18:3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10	23소4984	이**	경기도 양주시	2023-05-27 00:1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11	13가3991	이**	경기도 고양시	2023-05-30 16:00	서울 송파구 잠실동 261	전용차로위반	50,000
312	07도8202	이**	서울특별시	2023-05-28 16:4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313	10루8437	이**	서울특별시	2023-05-25 15: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14	159더4979	이**	경기도 남양주시	2023-05-30 18:56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15	25루9206	이**	경기도 하남시	2023-05-29 19:1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316	서울38아5665	이**	서울특별시	2023-05-26 10:0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7	21구5933	이**	서울특별시	2023-05-25 17:5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18	307나2847	이**	경기도 광주시	2023-05-28 09:3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319	146거8140	이**	서울특별시	2023-05-25 18:5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320	29서1026	이**	인천광역시	2023-05-24 10:2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321	25두7805	이**	경기도 화성시	2023-05-30 10:0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2	67노5145	이**	서울특별시	2023-05-29 14:07	잠원로 신반포18차아파트 건너편 도로 세븐일레븐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23	122마8225	이**	서울특별시	2023-05-30 17:1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324	08가0680	이**	경기도 김포시	2023-05-26 07: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25	16너2422	이**	서울특별시	2023-05-26 19:0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26	35가0150	이**	경기도 김포시	2023-05-26 19:1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27	128주6064	이**	서울특별시	2023-05-28 09:5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8	128주6064	이**	서울특별시	2023-05-28 09:5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9	33로4082	이**	경상남도 창원시	2023-05-25 09:31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30	17러6593	이**	울산광역시	2023-05-15 16:58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31	81로3524	이**	서울특별시	2023-05-26 10:50	남현동 남태령교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332	327주1794	이**	경상북도 포항시	2023-05-27 20:5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333	267노5142	이**	경기도 성남시	2023-05-30 08:39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34	28거9462	이**	서울특별시	2023-05-26 17: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35	96도0289	이**	경기도 남양주시	2023-04-19 17:10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36	51러9978	이**	경기도 남양주시	2023-05-25 18:19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37	153어2443	이**	서울특별시	2023-05-28 19:21	천호IC~광나루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38	179서5173	이**	서울특별시	2023-05-27 12:59	연희IC~연세대	전용차로위반	50,000
339	30거7997	이**	경기도 시흥시	2023-05-27 09:54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340	14루5598	이**	경기도 동두천시	2023-05-30 22:1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41	389루4197	이**	경상남도 진주시	2023-05-26 12:1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2	63더1232	이**	인천광역시	2023-05-26 16:1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343	서울31바6156	이**	서울특별시	2023-05-30 08:27	개화교(개화사거리 방면)	전용차로위반	50,000
344	31서3171	임**	경기도 김포시	2023-05-26 08:52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45	25어5973	임**	경기도 성남시	2023-05-27 07:4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6	178고9625	임**	서울특별시	2023-05-26 08:00	육사야구장~삼육에코팜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47	15우0569	장**	전라북도 정읍시	2023-05-25 15:3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칼-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348	16수0186	장**	대구광역시	2023-05-30 10:06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349	30두1392	장**	서울특별시	2023-05-26 13:47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350	서울중차2050	장**	서울특별시	2023-05-25 18:46	신촌로 애오개역앞	전용차로위반	40,000
351	서울38아7029	장**	경기도 안양시	2023-05-30 17:1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52	55라9421	장**	서울특별시	2023-05-30 20: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53	14누5941	전**	서울특별시	2023-06-05 17: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4	36서4431	전**	경기도 남양주시	2023-05-25 14:59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노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355	258가8879	전**	서울특별시	2023-05-25 07:44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56	273저5275	전**	충청남도 당진시	2023-05-28 17:37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 시내	전용차로위반	50,000
357	120라7079	전**	전라북도 부안군	2023-05-25 18: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58	50버9858	전**	서울특별시	2023-05-27 11:4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노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359	165서8393	정**	서울특별시	2023-05-30 08:31	녹번역~홍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360	08모0650	정**	서울특별시	2023-05-30 16:17	남현동 남태령교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361	69누3002	정**	서울특별시	2023-05-30 07: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62	56구3097	정**	서울특별시	2023-05-25 17:52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63	서울32바5859	정**	경기도 고양시	2023-05-26 08: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4	134더8962	정**	경기도 화성시	2023-05-27 16:4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5	134더8962	정**	경기도 화성시	2023-05-27 14:0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6	134더8962	정**	경기도 화성시	2023-05-27 16:3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7	134더8962	정**	경기도 화성시	2023-05-27 14:0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8	32다5437	정**	인천광역시	2023-05-27 22:12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369	서울31아8114	정**	경기도 양주시	2023-05-30 20:1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70	162로4582	정**	경기도 고양시	2023-04-12 09:23	월드컵파크1단지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71	서울87자3697	정**	서울특별시	2023-05-25 09:4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72	356가5761	정**	서울특별시	2023-05-26 17:32	삼육에코팜센터~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373	91러4155	정**	서울특별시	2023-05-25 19:1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74	53다5350	정**	서울특별시	2023-05-25 17:33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75	37노0227	정**	경기도 용인시	2023-05-27 11:2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76	37노0227	정**	경기도 용인시	2023-05-27 11:3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77	81두8183	정**	경기도 의정부시	2023-05-25 14:20	계상초등학교~상계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78	146우6291	정**	경기도 성남시	2023-05-25 10:4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79	14어5518	조**	경기도 의정부시	2023-05-30 09: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0	83마8093	조**	경기도 광주시	2023-05-30 16:04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	전용차로위반	50,000
381	55구8367	조**	서울특별시	2023-05-27 11:5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82	22다0363	지**	서울특별시	2023-05-28 08:0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383	15우7055	지**	경기도 남양주시	2023-05-26 18:11	화랑대사거리~삼육예교팍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84	59라7245	지**	서울특별시	2023-05-26 20: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85	22수7625	지**	서울특별시	2023-05-26 07:49	의원회관앞교차로~국회의사당앞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86	91어9112	차**	서울특별시	2023-05-26 10:1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87	101보8490	차**	서울특별시	2023-05-11 16:3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388	04고2871	차**	서울특별시	2023-05-25 19:5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9	04하0845	최**	서울특별시	2020-07-16 09:06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0	29머4674	최**	경기도 광명시	2023-05-30 20:3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91	712하1051	최**	전라북도 임실군	2023-05-13 10:0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60,000
392	81거2056	최**	서울특별시	2023-05-26 18:4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93	11보5999	최**	서울특별시	2023-05-26 17:4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94	47고2590	최**	서울특별시	2023-05-26 20: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95	10호8079	최**	경기도 용인시	2020-07-15 20:15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6	28고4210	최**	인천광역시	2023-05-27 08:2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97	82소0824	최**	서울특별시	2023-05-30 19:5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98	177우8757	최**	서울특별시	2023-05-15 18:54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최초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399	서울32바2503	최**	서울특별시	2023-05-30 09:02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위반	50,000
400	01마7778	최**	경기도 성남시	2023-06-02 18:48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401	56구3518	최**	서울특별시	2023-05-26 17:30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02	48고7870	최**	서울특별시	2023-05-30 07: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3	서울38아4323	최**	서울특별시	2023-05-26 20: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4	724라8581	한**	서울특별시	2023-05-30 17:59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60,000
405	262버2040	한**	충청남도 당진시	2023-05-25 01:28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406	262버2040	한**	충청남도 당진시	2023-05-29 17:03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407	서울85자9994	한**	서울특별시	2023-05-30 08: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8	45조3496	한**	경기도 안산시	2023-05-27 18:04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409	64라0353	함**	경기도 하남시	2023-05-26 08:26	방이동 올림픽회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10	80저0448	허**	경기도 남양주시	2023-05-30 08: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11	33러1289	형**	경상북도 경산시	2023-05-28 20:32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412	서울32사5701	호**	경기도 양주시	2023-05-26 17:4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13	서울31사6821	홍**	서울특별시	2023-05-30 07:51	수색로 수색119안전센터~수색교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14	71호6312	홍**	서울특별시	2023-05-03 12: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60,000
415	70라8824	황**	서울특별시	2023-05-28 21:18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립점	전용차로위반	60,000
416	202우8735	황**	대전광역시	2023-05-28 13:08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417	22어3533	황**	서울특별시	2023-05-28 16:06	불광역~동명여고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18	65무1694	황**	경기도 남양주시	2023-05-30 09:1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91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를 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1.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2.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 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4. 대상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개 단체
-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주소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서대문주민참여예산모임	서대문구 통일로39길 70, 3층 305호 (홍제동, 현대상가)	오민조	2013-06-21

5. 처분(말소) 일자: 2023. 6. 29.
6. 공고 및 게시장소: 서울시보 및 서울시청 누리집
7. 기타 사항
 - 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재정담당관(담당: 구민표, ☎02-2133-685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917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공공측량 (03-001488)	쥬드림엔지니어링 (108-86-12371)	오진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0길 12(영등포동)	2023.6.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02-2133-7919) 또는 토지관리과(☎02-2133-4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919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법 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사유 : 명칭변경(23.7.1자) 및 조직개편(23.7.17자)

2.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잠실안내센터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잠실안내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명칭변경(23.7.1자) 및 조직개편 (23.7.17.)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잠실안내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3.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등록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잠실안내센터	서울특별시미려한강본부 잠실안내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명칭변경(23.7.1자) 및 조직개편 (23.7.17.)
	서울특별시미려한강본 부 잠실안내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5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부장 및 직속기관의 장 등을 보조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보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대변인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을 둔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서울교육 정책의 발표와 언론 브리핑
2. 교육정책과 관련된 보도 내용 분석 및 자료 관리
3. 언론매체의 보도 지원 및 취재 협조
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과 오보·왜곡 보도의 대응
5. 교육감·언론기관의 동정에 관한 사항
6.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 운영
7.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 총괄 및 조정
 9. 서울교육 홍보물 · 영상물 · 간행물 등 교육 홍보자료의 제작 · 보급
 10.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11. 홍보대사 · 홍보자문단 및 시민기자단 운영
 12. 민간웹사이트 · 소셜 미디어 활용 홍보
 13. 미디어 홍보전략 개발 및 관리
 14.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영상 콘텐츠 제작
 15. 주요 행사 사진 · 영상 촬영, 자료 관리 및 언론사 제공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홈페이지 운영
 17. 대시민 소통계획 수립 · 총괄 조정
 18. 실 · 국 · 과,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홍보지원 · 협력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3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감사계획 수립 및 조정
 2. 감사 ·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 · 처리
 3.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 · 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4.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6.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7.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8.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9. 적극행정 제도 운영
 10.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1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12.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총괄
 13.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14.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15.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 · 처리
 16. 공익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위원회 운영
 17.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18.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조한다.
1. 공인관리
 2. 보안, 당직 관리 및 청사 방호
 3. 회의 및 행사
 4.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 관리

5. 청사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직원식당 운영
 6. 교육감 선거사무의 협조 업무
 7. 지방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8.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지급 및 후생 관리
 9. 지방공무원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10. 연금(대부, 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11.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12.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정책 수립
 13. 민원 제도개선, 민원 접수·관리 및 민원콜센터 운영
 14.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기획·운영 및 학생 결원 관리
 15.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16. 청원제도 운영
 17. 기록관 운영(기록물의 생산·수집·활용 및 폐기 등)
 18. 외부기관 문서의 배부에 관한 사항
 19. 정보공개제도 운영
 20. 교육행정정보자료실 운영
 21. 충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2.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23. 비상·전시동원 업무
 24.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훈련
 25. 사회복무요원 총괄 관리
 26. 그 밖의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7조(안전총괄담당관) ① 안전총괄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안전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조정·지휘
 2. 지역사고수습본부 등 상황실 운영
 3. 국가안전관리 세부계획 및 학교안전관리 계획 수립
 4. 재난관리 협조기관과의 네트워크 유지·관리
 5. 서울특별시교육안전위원회 운영
 6.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
 7. 학교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등하굣길(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9.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 및 운영
 10. 국·공유재산 재해예방 및 대책 수립
 11. 교육시설재난공제 관련 업무
 12. 통학버스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학원 제외)
 13. 학교CCTV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산업·중대재해 예방 총괄
 15.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
 17. 산업안전 및 보건 지도·관리
 18. 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19.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20.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제8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3급 또는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참여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노사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의 총괄 기획·개발·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및 중기발전계획의 수립·관리
 3.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4. 국정과제 및 공약사업 관리 총괄
 5. 정책·사업의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정책연구 운영
 7.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운영 지도
 9. 교육정책 개발연구회 및 정책토론회 운영
 10. 성과평가(조직, 개인) 및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1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교육통계 관리 및 서울교육통계연보 발간
 13. 학교정보 공시제도(유·초·중·고·외국인학교) 운영
 14. 통계 개발·분석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15. 그 밖의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및 조정
 2. 주민참여·성인지·성과 예산제도
 3.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4.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수립·조정
 5. 교육재정 분석·평가
 6. 교부금 및 전입금 세입예산 관리
 7. 공무원 인건비 편성·관리
 8. 학교회계 지도 및 학교 재정실태 진단
 9. 학교발전기금 업무
 10. 공립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운용

11.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

⑤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교원 제외)
3.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도
5.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에 관한 사항
6. 사무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7.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식관리시스템 및 학습동아리 운영
9. 자치법규 정비 총괄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
10.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11. 교육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

12. 소송 총괄 및 수행(국가·행정·민사소송 등)

13. 행정심판위원회·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⑥ 참여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운영
3.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4. 지역연계학교 및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5. 지역사회 교육단체(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협력 및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7.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8. 학부모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
9.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2.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운영·지원
13. 교육복지 관련 지역기관 협력사업 운영
14. 교육격차 해소 관련 업무 총괄
1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16. 저소득층 가구 학생 교육비 통합서비스 지원
17.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학비 지원 업무 총괄
18.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급식비 지원 업무 총괄
19. 저소득층 가구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 그 밖의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업무 총괄
20. 교육급여에 관한 업무 총괄

21. 저소득층 가구 학생 외부 장학금 지원
 2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업무
 23. 그 밖의 교육복지 관련 업무에 속하는 사항
 - ⑦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단체총연합회 및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2.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3.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 교류, 전보, 복무, 상훈,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직원 중기 인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직원 정·현원 관리
 6.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및 인력관리협의회 운영
 7.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직원이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9.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운영
 10.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운영
 11. 생활임금 운영
 12.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사협의회 운영
 13.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에 관한 사항
 14. 노동 사건 및 소송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 ⑧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의회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3. 국회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정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교육 교류사업 기획 및 운영
 7. 재외동포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대외기관, 정당 등과의 소통·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제9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둔다.
- ② 국장,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및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 ③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미래교육 정책·기획
 2. 교육공무원 혁신역량 정책·기획
 3. 혁신학교 지정·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
 4.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기획·운영
 5.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기획 및 연수 지원
 6. 학교혁신지원센터 운영
 7. 교육정책국 사업 종합 총괄·조정

8.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9. 에듀테크 활용 및 디지털교수학습 활성화 지원
10.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교육 운영·지원
11.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지원
12. 정보교육 내실화 계획 수립·추진 및 교육과정 운영
13. 교육 교류 협력국 정보교육 지원
14. 원격교육 운영 지원
15.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계획 수립·추진 및 교육과정 운영
16.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운영 지도
17. 과학교육센터, 융합과학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18. 과학고, 과학중점고 운영
19.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
20. 영재교육 발전계획 수립·추진
2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영재교육 교육과정 운영
22.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및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23. 메이커·발명·지적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
24. 정보화 종합계획(중장기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25. 지능정보화 전략계획 수립(ISP)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6. 정보기술 아키텍처(범정부 EA) 관련 업무
27. 행정사무 자동화에 관한 사항
28. 정보화 교육 및 최신기술 전문인력 양성화 추진
29.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운영
30.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31.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 구축 추진
32. 각종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3.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및 관리 지원
34. 행정용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35. 클라우드 전환계획 수립 및 추진
36. 정보화 자산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7.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추진
38. 정보보호 감사 및 각급기관 실태점검
39.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추진
40. 망(유·무선 등) 인프라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41.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42. 학교 전산망 업무관리 및 지도
43. 무상교과서 구입·공급 총괄
44. 인정도서 개발 기획 및 관리
45. 검인정도서 전시·주문·공급 지원
46.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 총괄

47.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유아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유치원 장학 기본계획 수립
 3.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4. 유치원 교구 기준 조정·관리
 5.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아)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6.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
 7. 유치원 교육공무원 퇴직 및 면직
 8. 유치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9. 유치원 계약제 교원 운영
 10. 유치원 교육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11. 유치원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현원 관리
 12. 유치원 교원 정·현원 관리
 13. 유치원 교육공무원 평정, 성과급 지급 및 후생 관리
 14. 유치원 교육공무원 징계·소청·고충심사처리·행정심판
 15. 유치원 교육공무원 복무·겸직·파견
 16. 유치원 교육공무원 상훈 및 포상, 서울교육상
 17. 유치원 교육공무원 휴직 및 복직
 18. 유치원 교육공무원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19. 유치원 교육공무원 NEIS 인사기록
 20. 유치원 교육공무원 연수 관리
 21. 유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관리
 22. 유치원 교육공무원 교원능력개발 평가
 23. 유치원 교사 학습연구년제 운영
 24. 유치원 수석교사 선발 및 업적 평가
 25. 유치원 원장공모제 운영
 26. 유치원 교육공무원 호봉 관리
 27. 유치원 생활지도 관련 업무
 28. 유치원 안전교육 운영 지원
 29.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
 30. 유치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1. 유아 학비 지원
 32. 유치원비에 관한 사항
 33.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일반학급) 무상교육비 지원
 34.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및 학급운영비 지원 업무
 35. 그 밖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 ⑤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기획

2.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지원
3.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 업무
4. 초등학교 장학 기본계획 수립
5. 초등학교 학사운영 지원
6. 초등학교 교구 기준 조정·관리
7. 연구학교 총괄 및 조정
8. 초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9.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적 포함) 입력 및 관리
10.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등학교 교과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12. 인성교육 업무 총괄
13. 초등 수석교사 운영
14. 초등 교육실습 협력학교 기획 및 운영
15. 초등학교 교수학습 개선 업무
16. 초등학교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 업무
17. 초등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18. 초등 신설과목 승인 및 교과목 관리
19.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총괄
20.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21. 초등 교육공무원 퇴직 및 면직
22. 초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23. 초등 계약제 교원 임용관리
24. 초등 교육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25. 초등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현원 관리
26. 초등 교원 정·현원 관리 및 전보
27. 초등 교육공무원 평정, 성과급 지급
28. 초등 교육공무원 징계·소청·고충심사처리
29. 초등 교육공무원 복무·검직·파견
30. 초등 교육공무원 상훈, 포상 및 서울교육상
31. 초등 교육공무원 휴직 및 복직
32. 초등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33. 초등 교육공무원 NEIS 인사기록
34. 초등 교육공무원 연수 관리
35. 초등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관리
36. 초등 교육공무원 교원능력개발평가
37. 초등 교사 학습연구년제 운영
38. 초등 수석교사 선발 및 업적평가
39. 초등 교장공모제 운영
4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41. 초등 교육공무원 호봉 관리
42. 초등 교원 교권보호
43. 생태·환경·에너지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44. 생태전환교육 운영
45. 방과후학교 기획·총괄 및 조정
46.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47.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48.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획 및 총괄
49.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50. 그 밖의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
- ⑥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기획 및 총괄
 2.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3. 중등 신설과목 승인 및 교과목 관리
 4. 중·고등학교 교구 기준 조정·관리
 5. 중·고등학교 장학 기본계획 수립
 6.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7. 오디세이학교 운영
 8. 예술 중점학교 및 예술 거점학교 운영
 9.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관련 업무
 10. 중·고등학교 학사운영 지원
 11.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획·운영
 12. 국제중학교 입학 업무 등 총괄
 13. 고교학점제 기획 및 총괄
 14. 고등학교 교육과정 거점학교 기획 및 운영
 15.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16. 고교학점제 온라인 학교 운영
 17. 고교학점제 학교 밖 교육 운영
 18. 고등학교 교과교실제 업무 기획 및 운영
 19. 학교체제 개선 기획 및 총괄
 20. 자율학교 운영·지원
 21.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운영
 22. 학교장 선발고(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계고, 자사고 등) 입학전형 업무
 23. 대입 제도 및 관련 업무 총괄
 24. 전국연합학력평가 업무 관리
 25.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관리
 26.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27. 중등 교육공무원 퇴직 및 면직
 28. 중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29. 중등 공립 계약제 교원 임용관리
30. 중등 교육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31. 중등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현원 관리
32. 중등 공립 교원 정·현원 관리 및 전보
33. 중등 교육공무원 평정, 성과급 지급
34. 중등 교육공무원 징계·소청·고충심사처리
35. 중등 교육공무원 복무·겸직·파견
36. 중등 교육공무원 상훈 및 포상, 서울교육상
37. 중등 교육공무원 휴직 및 복직
38. 중등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39. 중등 교육공무원 NEIS 인사기록
40. 중등 교육공무원 연수 관리
41. 중등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관리
42. 중등 교육공무원 교원능력개발평가
43. 중등 교사 학습연구년제 운영
44. 중등 수석교사 선발 및 업적평가
45. 중등 공립 교장공모제 운영
46. 중등 교육공무원 호봉 관리
47.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48. 중등 교원 교권보호
49. 중등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운영
50.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 (재)발급 업무
51. 중등 사립 교원 정·현원 관리
52. 중등 사립 교원 임용 보고 및 인사위원회 운영 관리
53. 중등 사립 교원 복무·징계·포상 관리
54. 중등 사립 교원 인사기록 관리
55. 중등 사립 계약제 교원 임용관리
56.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운영·관리
57.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업무
58.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 업무 지원(제1차 시험)
59. 교육공무원 국내여비(이전비) 업무
60. 그 밖의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 ⑦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지원
 2.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추진 성과 관리
 3.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지원
 4. 서울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운영
 5.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운영
 6. 교육결손해소 업무 총괄

7.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총괄
 8.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9. 기초학력 보장 역량 강화 연수 지원
 10.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관리
 11. 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 지원 및 컨설팅
 12. 학습지원교육 자료 개발·보급
 13. 난독(산)·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14. 중·고등학교 교수학습·수업·평가 혁신 업무 총괄
 15.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16.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적 포함) 관리
 1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총괄
 18.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9. 독서교육 기획 및 총괄
 20. 인문학적 소양 함양 교육 업무
 21. 영어교육에 관한 정책 기획·조정
 22. 영어교사 역량 강화 지원
 23. 제2외국어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
 24.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연구·기획·운영
 25.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및 국제바칼로레아(IB) 운영 교원역량 강화 지원
 26. 국제바칼로레아(IB) 연구 및 탐색
 27.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8. 원어민 보조교사·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배치·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29.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
 30. 그 밖의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평생진로교육국) ①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예술평생교육과 및 특수교육과를 둔다.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및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예술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특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 ③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기획·운영
 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취소 및 이수자 학력 인정
 3.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지도·감독
 5.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도
 6.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7. 검정고시 관련 업무
 8.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관(지정평생학습관 포함) 및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지도

10. 평생학습 정보화사업 운영 지원
11.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12. 학점인정 신청 접수 및 상담
13.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원 지도·감독 기본계획 수립·운영
15.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포함) 운영 지원·지도
16. 통학버스 관리 및 안전교육(학원)
17.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설립허가·해산·취소 및 지도 감독
18.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처분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등 각종 인·허가
1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및 말소
20.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업무
 2. 관계가꿈 프로젝트 수립 및 추진
 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업무
 4.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5. 학교기숙사 업무 총괄
 6.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지원
 7.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8.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관련 업무
 9. 교육법률지원단 관련 업무
 10. 민주시민교육 기획·운영
 11.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12. 학교민주주의 관련 지표 개발·운영
 13. 학생자치활동 관련 업무
 14. 통일교육 관련 업무
 15. 동아시아 교육·협력 관련 업무
 16. 학생자살(생명존중) 관련 업무
 17. 학생상담 관련 업무
 18.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9. 대안교육기관 관련 업무
 20.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점검·지도 업무
 21.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업무
 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24. 성평등 관련 업무
 25. 성인권·성폭력·성교육 관련 업무
 26. 성 관련 사안에 관한 업무
 27. 세계시민·평화교육 관련 업무

28.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
29. 탈북학생교육 관련 업무
30. 학생인권교육 기획·운영
31. 학생노동인권교육 관련 업무
32.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업무
33. 교복 및 봉사활동 관련 업무
34. 그 밖의 민주시민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 ⑤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업무 총괄
 2.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도
 3. 진로교육 관련 컨설팅 장학
 4. 진로·적성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5. 진로·적성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직업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도
 7. 직업교육 체제 개편 및 중장기계획 수립·지원
 8.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 운영
 9.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
 10. 일반고 직업교육 운영 지원
 11.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컨설팅 장학
 12.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수학습 지원
 13. 전문교과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14. 직업교육에 관한 실험·실습시설, 설비의 확충 및 운영 지도
 15. 기술·가정(실과) 교육 운영 지원
 16. 단위학교 취업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17.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산·학·관 협력 지원
 18.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지원
 19. 직업계고 학생의 성장경로 지원
 20. 고등기술학교 관련 업무
 21. 그 밖의 진로·적성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 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체육에 관한 장학지도 및 체육고등학교 운영 지도
 2.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체육과 교육과정 및 체육행사 업무
 4. 학교스포츠클럽 및 자율체육활동 업무
 5. 학생선수 및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
 6. 학생건강체력평가 업무
 7. 체육 국제교류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8. 수련활동·소규모테마교육여행 운영 지도
 9. 체육·예술교육·보건·급식 연구 및 시범학교 운영 지도

10. 체육시설 운영 지도
11.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운영 지도
1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운영 지도
13. 청소년단체 교류 및 활성화 업무
14.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운영 지원
15. 학교예술교육 업무
16.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17. 학교예술교육 유관기관 협력사업
18. 악기공유 및 나눔 기획·운영
19.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관리
20. 학교보건(학생건강검사포함)·환경위생 기본계획 수립·지도
21. 학교 보건교육 및 보건실 운영계획 수립·지도
22. 학교보건 관련 위원회 운영
23. 학생 건강관리
24. 감염병 예방관리
25.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구역 관리 지도
26. 본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27.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운영 지도
28. 학교 및 유치원 급식 기본계획·기본방향(지침) 수립
29.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30. 학교급식 직영전환 지원 및 관리
31. 학교급식 중기발전계획 수립
32. 급식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업무
33. 친환경 학교급식비 편성 및 집행
- ⑦ 특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2. 특수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 업무
 5.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6. 특수학교(급) 수업·평가 혁신 업무
 7.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8. 개별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9.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10. 특수학교 교구 기준 조정·관리
 11.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지원
 12. 특수·통합교육 관련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13. 통합교육 기본계획 수립
 14.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운영

15. 긍정적행동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17.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1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총괄
19.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20.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지원

제11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및 청사이전추진단을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안전과장 및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청사이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폐지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배치계획, 학급편제 및 신·증설 사업계획 수립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4.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운영
5.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운영
6.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
7. 고입 전형 기본계획 수립
8.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9. 후기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신입생 배정 업무
10. 학교 이전적지 활용계획 수립
11.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도
12. 법인회계 지도 및 예·결산 관리
13. 제12호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14. 제12호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법인)회계 관리
15.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예산의 관리 및 결산
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4. 기채 및 상환
5. 교육금고에 관한 사항
6.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7.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8. 통합급여에 관한 사항
9.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0. 용역·공사·물품계약 업무

11. 물품 취득 및 관리
12. 국·공유재산의 관리(취득, 관리, 처분)
13. 신설학교 부지 조성 및 취득
14.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부지 조성 및 취득
15.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 매점·시설 개방 및 계약 관련 자료 총괄
- ⑤ 교육시설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사업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2. 시설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관리
 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운영 지도
 4.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5. 사립유치원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6. 학교 급식시설 공사계획 수립
 7. 각급학교 시설 복합화 계획 수립 및 총괄
 8.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기획·고시 및 협상
 9. 시설공사 평가
 10. 학교조경계획에 관한 사항
 11. 직속기관 도시 계획 업무
 12. 학교시설 개축 및 증축, 내진보강 계획 수립
 13. 각급학교 시설 현황 및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
 14.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사업 계획 수립
 15.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
 16. 석면 자료 관리, 석면 해소계획 수립 및 공사 집행
 17. 학교운동장 개선에 관한 사항
 18. 각급학교 시설공사의 표준화, 품질개선 관리
 19.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0.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21. 설계공모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 ⑥ 미래학교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학교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2. 미래학교 교육과정 연계 추진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미래학교 적용모델 개발
 4. 서울형 미래학교 공간개선·스마트교실·그린학교·학교복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미래학교 개축·리모델링 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래학교 모듈러 교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미래학교 BTL(민자시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미래학교 추진에 관한 사항
- ⑦ 청사이전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이전 계획 수립

2. 신청사 사무공간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치유·회복 연수원 건립에 관한 사항
4. 신청사 건립 시설·공사 집행·관리
5. 스마트오피스 및 청사출입 보안시스템 구축
6. 그 밖의 청사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제12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총무부, 교육정책연구소, 기획평가부, 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수학습정보부 및 교육정보화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 기획평가부장,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 및 교수학습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정보화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
4. 직장교육 및 직원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원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시설(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남산분관 시설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2.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내 전산관리 및 전산처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교육정책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2. 서울교육정책 정보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울교육시책 및 주요 현안과제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학교 교육활동 지원 관련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교육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제16조(기획평가부)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대회 및 연구교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구 및 수업방법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과교육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계간「서울교육」지 발간에 관한 사항
6.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유치원 제외)
7. 학교경영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8. 타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제17조(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2. 시·도 단위 지역화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 심사에 관한 사항
4. 교과서 조사·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5.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평가 연구에 관한 사항
6. 진로 및 진학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7.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대학진학지도 지원 및 상담에 관한 사항
9. 교육 및 진로·진학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수학습정보부) 교수학습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화 자료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정보통신기술 활용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 및 교원의 e-러닝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전문 연수에 관한 사항
6. 학교정보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정보시스템(DLS) 및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8.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이버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각급학교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사항

제19조(교육정보화부) ① 교육정보화부에 정보서비스운영과, 지능정보망운영과, 나이스운영과 및 인프라운영과를 둔다.

② 정보서비스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능정보망운영과장, 나이스운영과장 및 인프라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서비스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관리 및 정책 수립
2. 기관·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술 지원
3. K-에듀파인시스템 운영
4.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5. 클라우드 통합협업 플랫폼 운영

6.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지능정보망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침해사고대응 관제 운영
2. 스쿨넷서비스 운영(유치원 포함)
3. 학교 유·무선망 운영

⑤ 나이스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나이스(NEIS) 구축·운영 지원(유치원 포함)
2. 나이스(NEIS) 콜센터 운영(유치원 포함)
3. 공인인증서 발급(본청, 직속기관, 고등·특수학교)

⑥ 인프라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전산센터 및 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
2. 재해복구센터 및 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

제2절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제20조(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에 총무부, 기획운영부 및 교육연수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운영부장 및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2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계획·성과분석 및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4.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전시관 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학놀이체험장, 체험전시물, 자연관찰원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기획운영부)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관 교육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과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장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연구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과학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과학교육 관련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학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우수학생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전산관리 및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
9. 과학정보센터 운영 및 전시관의 홍보에 관한 사항
10. 사이버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교육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전시물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3.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탐구 전시동 건립에 관한 사항
16. 생물 실험재료의 채집·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전시관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제24조(교육연수부) 교육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사 자격연수·직무연수 및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2. 학생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3. 과학실험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천문대 및 천체망원경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과학놀이체험장, 체험전시물, 자연관찰원, 생태체험학습장 활용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6. 과학대중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명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
10.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제26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총무부, 기획평가부, 초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 및 교육행정연수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 및 교육행정연수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기획평가부장, 초등교원연수부장 및 중등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계획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직장교육 및 직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
6. 식당 운영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원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및 기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 시설 대여 및 용역관리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29조(기획평가부)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강사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연수결과 종합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연수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7. 교육과정, 연수기법, 교육자료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요람 제작 및 그 밖의 홍보에 관한 사항
9. 평가관리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

10.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11. 연수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12. 강사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과정보별 연수결과 보고 및 연수성적 통보에 관한 사항
14. 성적상황 통계에 관한 사항
15. 연수생 표창에 관한 사항
16. 강의실 운영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7. 교육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산실 운영 및 전산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9. 교육기자재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22. 원격 연수에 관한 사항
23. 특수분야 연수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초등교원연수부) 초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 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와 유치원·초등 교원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초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임용 전 연수 및 유치원·초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4. 연수과정별 연수 운영,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6. 특수학교(급) 교원 및 초등 보건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초등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수에 관한 사항

제31조(중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교원(중등학교 보건교사 포함)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와 중등 교원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3. 중등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
4.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및 중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연수 운영,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6.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7. 원어민 교사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어교사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교육행정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직원(교원 제외) 연수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신규임용예정자 임용 전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6. 연수과정별 연수 운영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8.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기본교육, 위탁교육, 다른 훈련기관 제외)

제4절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제33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에 총무부 및 교육기획운영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5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3.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4. 대부에 관한 사항
5. 직원 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사에 관한 사항
7.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원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 청사 및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전산장비, 홈페이지관리, 전산 보안업무)

제36조(교육기획운영부) 교육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기본 교육계획 총괄

3.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교육과정 개발·연구·지도 및 교육결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요원(위촉교사, 수련지도사) 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개발
 5. 국내외 인성·수련교육 관련 자료 수집·보급·관리
 6.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제작·관리
 7. 원내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외)
 8. 홍보에 관한 사항
 9. 특성화과정 및 특별과정, 교과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지도
 10.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컨설팅 및 맞춤형 수련교육 지원
 11. 교육생 선정·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12. 교육생 편성, 교육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관리
 13.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14. 교육생 평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15. 수료생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16.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지도
 17. 분원 및 야외교육장 운영 지원
- 제37조(분원장) ① 분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그 분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절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제38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3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행정지원과, 기획연구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고, 기획연구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5. 물품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6. 청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전산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8. 강의실 운영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연구·연수 기획, 조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연구·연수 자문, 검토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학부모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7. 강사 정보 관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8. 유아교육정보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멀티미디어제작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서울유아교육 발간에 관한 사항
11.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운영, 지원 및 결과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아체험교육시 설 및 전시물 개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아체험교육 활동 자료 개발·선정·검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연구 협력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재·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사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7. 새싹도우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절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제40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에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지원과 및 보건급식부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건급식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2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7. 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3조(산업안전보건지원과)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4.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지원 및 통계관리
 5.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 실시
 6.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제44조(보건급식부) ① 보건급식부에 보건지원과, 환경지원과, 급식품질위생과 및 식생활지원과를 둔다.
- ② 보건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 및 급식품질위생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식생활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3. 보건사업 조사·연구·평가·통계·홍보에 관한 사항
 4. 보건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 협력 연계와 관련한 사항
 5. 보건관련 교육·연수 및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예방 및 전문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생 건강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8. 학교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
 9.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사업
 10. 학교 흡연예방 지원 사업
 11. 보건교육센터 운영
- ④ 환경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분장한다.
1. 학교 환경위생 조사·연구·평가·통계·홍보·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 환경위생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실내 공기질 표본 및 특별 점검
 4. 대기오염 대응 및 교육·홍보
 5. 학교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 지원 사업
 6. 학교 먹는 물 표본 및 특별점검
 7.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지원 사업
 8. 학교 교실 청소용역 지원 사업
 9. 학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사업
- ⑤ 급식품질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급식 품질·위생에 관한 계획의 집행
 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중독 및 식재료 구매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지도·점검 협력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시설 위생·안전의 개선지도 및 기술 지원
 6.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
8. 각급학교 급식미생물 및 안전성검사, HACCP 검증검사 및 분석(표본조사 포함)
9. 노후 조리 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 지원 사업
- ⑥ 식생활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양 및 식생활 개선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관련 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4.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양교사 등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7. 비만·식품알레르기 등 예방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
 9.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바른 식생활 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절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제45조(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 행정지원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4. 세입세출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7.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기의 유치계획 및 체육관 홍보
 10. 체육관 사용에 관한 사항
 11. 분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기학생 훈련 지원
 2.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정보관리(체육자료·정보수집 및 신기술 도입·보급, 체육전시)
 3. 체육기능 향상 및 실기지도

4. 체력단련실 운영
5. 본관 및 분관 연간 운영계획 및 경기계획 수립
6. 체육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연구 및 보급
7. 체육과 실기 자율연수 운영 협조
8.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지원
9. 체육교사 직무연수
10. 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

제47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제48조(본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에 총무부 및 시설관리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0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및 재정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민원·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 후생 관리
3. 직원의 교육 및 연수
4. 청사 및 차량 관리
5.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조달·관리에 관한 사항
4.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
7.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관리

제51조(시설관리부) ① 시설관리부에 시설1과, 시설2과, 시설3과, 지원1과 및 지원2과를 둔다.

② 시설1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2과장, 시설3과장, 지원1과장 및 지원2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속기관의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직속기관의 시설실태조사 및 자료 구축
3. 친환경 자재 및 신기술 적용사업 관리 및 보급

4. 시설관리부 업무 중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
6.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학교 기술 지원
7. 시설관리부 업무 중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시설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학교 총괄 및 남부·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 지원(급식시설 포함)
 2. 남부·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 ⑤ 시설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광진·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 지원(급식시설 포함)
 2.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광진·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 ⑥ 지원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동반 업무 총괄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2. 기동반 운영 및 관리(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3. 학교시설개선 신고센터 운영
 4. 학교의 재활용 자재관리 및 운영
 5. 기동반 장비 및 자재관리 업무
 6. 그 밖의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지원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2. 사립학교 2·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업무

제9절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

제52조(관장)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에 행정지원과, 평생학습과 및 정보자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반행정, 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물품 및 용도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환경, 위생 포함)
 7. 청사·시설·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④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2.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3.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6. 문화행사 주관 및 지역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종사자에 대한 연수
 9.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 ⑤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운영 및 독서 상담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8. 특수서지의 편찬, 해제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1.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4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0절 서울특별시립도서관
- 제55조(관장)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 제5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에는 행정지원과, 정보자료과 및 독서문화진흥과(강서, 남산, 동대문, 송파, 양천, 서대문, 용산, 정독도서관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관장이 지방사서주사인 경우에는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정보자

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독서문화진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물품 및 용도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에 한한다)
7. 청사·시설·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독서문화진흥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정보자료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료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7. 정보봉사에 관한 사항
8. 독서지도에 관한 사항
9. 서지 발간 및 도서 해제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⑤ 독서문화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순회문고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산화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8. 독서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서진흥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장 교육지원청

제1절 하부조직

제57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8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학교통합지원센터,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및 교육협력복지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 및 교육협력복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활동·행정지원 업무 총괄·기획 및 통합지원 콜센터 운영
2. 교수학습 지원
3. 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
4. 보결담당 시간강사·행정대체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
5. 교원 호봉 재획정에 관한 사항
6. 생활교육·인권지원 업무 총괄·기획
7. 위기학생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성)폭력 사안 처리에 관한 사항
9.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교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11.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 업무 지원
12.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유치원·초등학교 특별활동 운영 지도
3. 유치원·초등학교 장학
4. 유치원·초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5. 유치원·초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초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초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8. 유치원·초등학교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9.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육 지도
10. 유치원·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초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2.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3.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
1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15. 초등학교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연수에 관한 사항

⑤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중학교 · 일반고등학교 장학
3. 중학교 · 일반고등학교 연구 · 시범 · 선도 · 중점학교 지도
4. 중학교 · 일반고등학교 특수교육 지도
5. 고입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6.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 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7. 중학교 · 일반고등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
8. 중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 · 연수 · 복무 · 국외여행 ·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중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0. 중학교 · 일반고등학교 특별활동 운영 지도
11. 중학교 · 일반고등학교 학예행사 · 학생 생활지도 · 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2. 중학교 · 일반고등학교 과학 · 환경 · 정보 ·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3. 중학교 · 일반고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4. 중학교 · 일반고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 · 학생야영 수련활동
15. 중학교 · 일반고등학교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연수에 관한 사항
16.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교육협력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운영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연계 지원
3.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5. 유 ·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유 · 초 · 중 · 고등학교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8. 교육 급여에 관한 업무
9. 지역사회 협력 · 연계 지원
10.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학비 지원
11.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급식비 지원
12. 저소득층 가구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 그 밖의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13. 방과후학교 지원
14. 돌봄교실 지원
15. 초 · 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16. 그 밖의 교육복지 관련 업무

제59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

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행사·당직·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교육훈련·상훈 및 징계
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청사 및 차량 관리
5. 비상업무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6.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7.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8.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 평가에 관한 사항
9. 공직기강(기강감사 포함) 확립 및 추진
10. 감사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1.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12. 행정관리 개선 및 자체 제안제도 운영
13. 홍보에 관한 사항
14. 학생배치계획 수립 및 학급편제
15.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
16. 의무취학·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중학교 학교군 관리
17.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18.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19.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 관리
20. 고등공민학교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1. 교육행정전산화 및 학교정보화에 관한 사항
22.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25.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처리에 관한 사항
26. 서울교육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유,초,중)
27. 정보공시 운영에 관한 사항(유,초,중)
2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9. 기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3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31.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예산 집행관리 및 업무 지원
32. 공인인증서 발급(유,초,중)
33.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 운영 및 지원
34. 그 밖의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2.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 회계의 운영 지도

3. 국·공유재산의 관리
4. 무허가 건물 철거
5. 유아학비 지원
6. 유치원 예·결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재난공제 관련 업무
9. 어린이 등하굣길(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10. 통학버스 운영지원 및 안전점검(학원 제외)
11. 학교 CCTV 관리 지원
12.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예방 업무지원
13.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신설학교 제외)
14.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관리 및 집행
15.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16. 용역·공사·물품계약 및 물품 취득·관리
17.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18. 급여에 관한 사항
19.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관리
- ⑤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제 구축
 2.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3.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4.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학교과정)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다만, 고등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병설된 경우는 제외
 6.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
 7. 학원의 등록·폐원 및 지도·감독
 8.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폐소(지) 및 지도·감독
 9.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10.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11. 학교보건·급식교육의 지도 및 연수
 12.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의 지도
 13.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14. 학교급식(유치원 포함) 기구관리 및 위생·안전지도 점검 및 평가(매점포함)
 15. 학교보건·환경위생관련 지도·점검
- ⑥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미래학교 추진 사업 포함)
 2.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미래학교 추진 사업 포함)
 3.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지원

4.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지도 등 업무지원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6.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7. 학교시설 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8.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시공관리, 평가,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복합화 사업
9.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급식시설사업(환기시설 통합 등) 집행
10. 사립유치원 시설안전점검
11. 그 밖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2절 소속기관

제60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1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이 겸임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특수교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본운영계획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3. 특수교육 연수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및 순회교육
5. 그 밖의 특수교육 업무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5항제16호의 사무에 관하여 동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11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별표1]

특수교육지원센터 명칭 · 위치

명칭	위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38길 27 (중화동)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6길 20 (응암동)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218 (가리봉동)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16길 42 (상계동)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70 (신당동)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6길 8 (송파동)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 (신월동)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28 (일원동)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길 14 (신대방동)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8길 6 (행당동)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08 (하월곡동)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2023. 7. 1.자 조직개편을 위한 과별 분장사무 이관·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변인 분장사무에 ‘ 주요 행사 사진·영상 촬영, 자료관리 및 언론사 제공 ’ 등을 신설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함 (제4조)
- 나. 감사관 분장사무 순서를 일부 조정함 (제5조)
- 다. 총무과 분장사무에 ‘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정책 수립 ’ 등을 신설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함 (제6조)
- 라. 안전총괄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배치하고 분장사무에 ‘ 국·공유재산 재해예방 및 대책 수립 ’ 등을 신설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함(제7조)
- 마.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을 두고,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8조)
- 바. 교육정책국에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두고,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9조)
- 사.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예술훈육과, 특수교육과를 두고,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안 제10조)
- 아.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청사이전추진단을 두고,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11조)
- 자. 교육연구정보원에 총무부, 교육정책연구소, 기획평가부, 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수학습정보부 및 교육정보화부를 두고, 교육정보화부에 정보서비스운영과, 지능정보망운영과, 나이스운영과 및 인프라운영과를 두며,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제12조 ~ 제19조)
- 차. 학교보건진흥원을 ‘ 보건안전진흥원 ’으로 명칭 변경하고, 보건안전진흥원에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과 및 보건급식부를 두며,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40조 ~ 제44조)
- 카.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분장사무 신설·이관·조정 등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57조 ~ 제59조)
- 타. 청사이전추진단 존속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파. 서부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강서양천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위치를 각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6길 20(응암동)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신월동) ’으로 변경(안 별표1)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6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작무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22	6	1,802	1,317	4,597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25	6	1,510	1,012	4,597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2	31	11	-
		서기관	37	27	10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4	1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39	150	55	133
		교육행정	249	88	41	119
		행정	6	6	-	-
		사서	30	30	-	-
		보건	1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2	-	-
		공업 또는 시설	20	9	11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6	-	-	6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	1	-	-
	6급	소계	1,898	491	284	1,118
		교육행정	1,221	211	160	845
		전산	48	26	22	-
		사서	131	120	11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작수·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 반 직		공업	11	-	9	-	2
		녹지	1	-	1	-	-
		보건	19	-	9	10	-
		식품위생	6	-	4	-	2
		간호	5	-	5	-	-
		시설	40	-	17	23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288	-	42	11	235
		운전	5	-	2	-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3	-	1	-	2
		열관리운영	10	-	8	-	2
		사무운영	55	-	20	12	23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7급	소계	2,685	-	573	449	1,663
		교육행정	1,616	-	243	306	1,067
		전산	57	-	46	11	-
		사서	173	-	173	-	-
		공업	20	-	8	12	-
		녹지	1	-	1	-	-
		보건	30	-	16	14	-
		간호	5	-	5	-	-
		시설	48	-	20	28	-
		시설관리	524	-	19	15	490
		운전	12	-	3	6	3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작수·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 반 직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7	-	2	-	5
		열관리운영	14	-	4	-	10
		사무운영	143	-	22	33	88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 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보건 또는 식품위생	2	-	2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8	-	1	7	-
	8급	소계	2,120	-	235	202	1,683
		교육행정	1,304	-	67	100	1,137
		전산	24	-	13	11	-
		사서	85	-	85	-	-
		공업	14	-	2	12	-
		보건	19	-	4	15	-
		시설	50	-	8	42	-
		시설관리	588	-	44	6	538
		운전	12	-	1	5	6
		전기운영	3	-	1	-	2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4	-	4	-	-
		교육행정 또는 사무 운영	5	-	5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 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숙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별 정 직	별정직 계		8	-	8	-	-
	4급상당(비서)		1	-	1	-	-
	5급상당(비서)		4	-	4	-	-
	6급상당(비서)		3	-	3	-	-
특 정 직	특정직 계		588	-	283	305	-
	장학관 · 교육 연구관	소계	123	-	67	56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2	-	38	34	-
	장학사 · 교육 연구사		465	-	216	249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2023. 7. 1.개정 예정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 나. 일반직공무원 정·현원 불일치를 해소하고,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일부 조정하며,
- 다. 2023년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고, 2023. 7. 1.자 조직개편을 위한 일반직·특정직공무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
- 라. 그 밖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직·특정직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 서기관 (증)2명, 6급 (증)1명, 7급 (증)4명, 8급 (감)5명, 계 (증)2명
- 교육지원청
: 4·5급 (감)2명, 7급 (증)22명, 8급 (증)2명, 계 (증)22명
- 각급학교
: 6급 (증)10명, 7급 (감)16명, 8급 (감)18명, 계 (감)24명

나. 일반직공무원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

- 6급: 교육행정6급 (증)11명, 계 (증)11명
- 7급: 교육행정7급 (증)12, 전기운영7급 (감)2명, 계 (증)10명
- 8급: 교육행정8급 (감)18명, 운전8급 (감)2명,
전기운영8급 (감)1명, 계 (감)21명

다. 특정직공무원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장학관·교육연구관 (증) 2명, 장학사·교육 연구사 (증) 1명
- 교육지원청: 장학관·교육연구관 (증) 1명, 장학사·교육연구사 (감) 4명

◆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 제106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만 5세 원아”를 “원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장에게”를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소속 원아의 보호자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원아 보호자에게 유치원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일 기준 소속 원아가 없는 경우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로 공립전환이 확정되어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유치원 폐쇄 시기를 2월 말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일 기준 소속 원아 중 동학년도 졸업 예정 원아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보호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
2. 유치원 폐쇄 시기를 학기 중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일 기준 전체 소속 원아의 보호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

제9조제2항 중 “폐쇄인가를”을 “폐쇄인가 신청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중 “접수기관의 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관련 법령 신설에 따른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 나.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에 대한 문구 정비로 자치법규 명확화

2. 주요내용

- 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졸업 예정 원아 나이 삭제함(제2조)
- 나. 보호자 동의 관련 문구 정비 및 각호를 신설하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제6조)
- 다. 폐쇄 전 이행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 반려 문구 추가함(제9조)

구 고 시

◆ 중랑구고시 제2023-6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82 - 50호(1982.2.3.)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 - 427호(1993.12.23.)로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 - 442호(2007.12.6.)로 건축범위 일괄결정된 면남초등학교(중랑구 면목동 583 - 1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중 랑 구 청 장

- 결정취지 : 도시계획시설(학교:서울면남초등학교)의 결정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상이하여 결정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정정하고, 현재 학교의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학교경계(담장) 밖은 학교에서 제척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초등학교 (면남초)	중랑구 면목동 583 - 15번지 일대	10,351	증) 3	10,354	1982.2.3. (서고50)	

☐ 건축물의 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조서 : 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 고
40 이하	150 이하	5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	◦ 면 적 - 10,351㎡ → 10,354㎡ (증)3㎡	◦ 결정면적(10,351㎡)과 공부상면적(10,400㎡)이 상이하여 현 공부상 면적으로 정정 : 증) 49㎡ ◦ 학교 경계(담장) 밖 면적 제척 : 감)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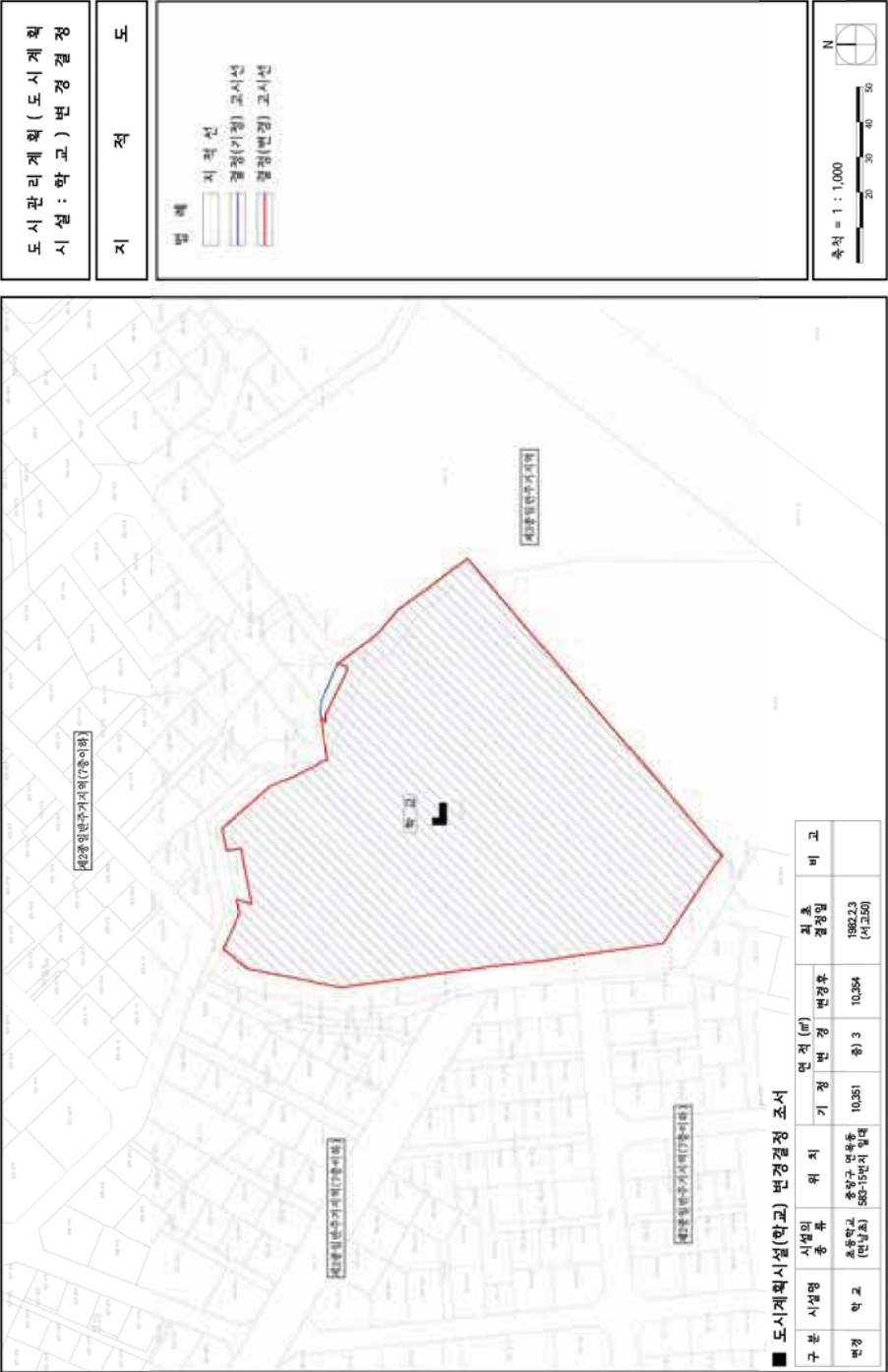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4.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과(☎2094 - 217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도



◆ 구로구고시 제2023-1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구로공단역1 완충녹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 - 208호(2001.6.25.)로 구로공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구로공단역1 완충녹지)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2 - 20(2022.2.17.)로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한 내용의 변경 인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3 - 1145호(2023.6.7.)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 및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10-8, 구로동 810-9

나.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 사업
- 2) 사업의 명칭 : 구로공단역1 완충녹지 조성사업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등

다. 사업의 면적 : 23m²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1) 사업시행자 ㄱ성명 : 구로구청장
 ㄴ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마. 사업 착수 · 준공 예정일

- 1)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2) 변경 :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일로부터 2년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공원녹지과, ☎860-3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관리명세	
계			23	23						
1	구로동 810-8	하천	15	15	동영주식회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1				
2	구로동 810-9	하천	8	8						

◆ 강남구고시 제2023-118호

도시계획시설(돌산체육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서울시고시 제2015 - 265호(2015.09.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654호(2021.02.0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근린→체육),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 77호(2022.02.24.)로 돌산체육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된 강남구 돌산체육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 - 68호(2023.4.13.)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돌산체육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3243 - 624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6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강남구 세곡동 산1 - 7번지 등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돌산체육공원 조성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43,968m²
- 내 용: 공원 조성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성 명: 강남구청장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마. 사업 준공예정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바. 열람 장소: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 - 3423 - 624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사항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종류 및 내용	
1	강남구 세곡동 산1-7번지	임	임	15,249	15,249	강남구	100/100	강남구 1126	-	-	-	
2	강남구 세곡동 93-5번지	전	임	10	10	강남구	100/100	강남구 1126	-	-	-	
3	강남구 율현동 산10-2번지	임	임	28,426	28,426	강남구	100/100	강남구 1126	-	-	-	
4	강남구 율현동 157-1	전	임	283	283	강남구	100/100	강남구 1126	-	-	-	

사업위치도 및 공원조성계획도

□ 돌산체육공원(강남구 세곡동 산1-7번지 일대)



사업 위치도



공원조성계획도

◆ 송파구고시 제2023-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5호(2013.2.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15-67호(2015.7.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송파구고시 제2016-44호(2016.4.28.), 송파구고시 제2017-168호(2017.12.14.), 송파구고시 제2018-156호(2018.12.27.), 송파구고시 제2019-114호(2019.9.26.), 송파구고시 제2021-59호(2021.3.25.), 송파구고시 제2021-214호(2021.10.28.), 송파구고시 제2022-158호(2022.9.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송파구고시 제2022-212호(2022.12.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송파구고시 제2023-52호(2023.3.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 송파구 마천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건설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2	106	30	주간선 도로	266	하남시 학암동	송파구 마천동	일반 도로	천마근린 공원	'13.2.21	-총 2,295m중 서울시 구간 266m에 한하여 인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기정 : 2015.07.30. ~ 2023.06.30.

○ 변경 : 2015.07.30. ~ 2023.12.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관련조서 생략(변경 없음)

사. 공공시설(도로)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 협약 등에 따라 대상 필지는 준공후 시설물 관리청(서울시 송파구, 하남시)에 무상귀속

아.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29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3-840호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 - 116호(2004.04.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종로구 고시 제2020 - 38호(2020.04.23.)로 공원조성계획(최초)이 결정된 부암1소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3 - 66호(2023.05.25.)로 실시계획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부암동 251 - 6 등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
- 2) 명 칭: 부암1소공원 조성사업
- 3) 사업내용: 공원 보상 및 조성

다. 사 업 면 적: 토지보상 661m²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불임참조

아.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종로구청 도시녹지과(☎02 - 2148 - 2835)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부암1소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기정	부암동 251-6	대지	188	188	오○○		부암동 251-6				
	변경	부암동 251-6	대지	188	188	오○○		송파구 **대로 1*1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압류	
2		부암동 251-10	대지	205	205	박○○		종로구 창*문로 *길 1				
3	기정	부암동 251-11	대지	155	155	나○○		부암동 251-11	이○○	부암동 251-11	근저당권	
	변경	부암동 251-11	대지	155	155	나○○		경기도 *리시 *골로*번길 3*	서초구	서초구 남부순환로 2548	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마포구 염리동 168-9	압류	
									국	세종시 국제청로 8-14	압류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압류	
									이○○	고양시 일산*구 **대로 6*2	근저당권	
4		부암동 251-12	대지	106	106	양○○		전라남도 *양군 *양읍 연*길 *-12	○○ 새마을금고	영등포구 신*로 9*	근저당권	
5		부암동 251-42	대지	7	7	문○○		서대문구 **시장길 6*-1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부암1소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기정	-	-	-	-	-	-	-	-				
	변경	부암동 251-6	수목	개나리 향나무	H1.0*W0.6 H7.0*R28	15㎡ 1주	오○○		송파구 **대로 1*18				
2	기정	부암동 251-10	일반건축물	세멘 벽돌조, 연와조	65.39	65.39	박○○		부암동 251-10				
	변경	부암동 251-10	일반건축물	세멘 벽돌조, 연와조	77	77	박○○		종로구 창*문로*길 1				
			창고	-	8	8							
			수목	단풍나무	H8.0* R18+R28	1주							
				수수꽃다리	H4.0*R8								
3	기정	-	-	-	-	-	-	-	-				
	변경	부암동 251-11	수목	잣나무	H9.0*R16	1주	나○○		경기도 *리시 *골로*번길 *0				
				잣나무	H11*R32	1주							
				아까시나무	H8.0*R10	3주							
					H8.0*R12	1주							
					H8.0*R14	1주							
					H8.0*R20	1주							
4	기정	부암동 251-12	일반건축물	세멘 부록조	41.32	41.32	양○○		부암동 251-12				
	변경	부암동 251-12	일반건축물	세멘 부록조	45	45	양○○		전라남도 *양군 *양읍 언*길 *.*2	○○ 새마을금 고	영등포구 신*로 9*	근저당권	
			창고	-	5	5							
			가건물	-	40	40							

◆ 관악구공고 제2023-1170호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 - 361호(2022.2.24.)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2023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4.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9일

관 악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2023.6.29. ~ 7.13.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02 - 879 - 6364)

다.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474 일대	126,260	증)32,433	158,693	서고시 제1998-79호 (1998.3.20.)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 기존 : 126,260㎡ - 변경 : 158,693㎡ ⇒ 증)32,433㎡	• 2030서울생활권계획(2018년)에서 제시한 난곡사거리 확장구역에 대하여 남부순환로변 공공복합개발, 향후 난곡선 개통시 난곡로 기능강화 예상 등 간선가로변 중심성 확대가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관련도서: 게재 생략(관악구청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 서초구공고 제2023-1432호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소공원(27·29·30호) 조성계획결정(최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 - 1685호(1995.5.20.)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128호(2022.6.16.)호로 변경 결정된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내 소공원(27·29·30호)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최초)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 초 구 청 장

1. 공원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9,162.7	
27호 소공원	잠원동 58-24 일원	5,033.50	
29호 소공원	잠원동 60-6 일원	1,600.00	
30호 소공원	잠원동 60-3 일원	2,529.20	

2. 조성계획(안)

구 분	27호 소공원	29호 소공원	30호 소공원
조성내용	▶ 도로 신설 : 522.00㎡ ▶ 휴양시설 신설 : 206.00㎡ ▶ 유희시설 신설 : 213.00㎡ ▶ 운동시설 신설 : 34.00㎡ ▶ 녹지 신설 : 4,058.50㎡	▶ 도로 신설 : 144.00㎡ ▶ 휴양시설 신설 : 142.00㎡ ▶ 녹지 신설 : 1,314.00㎡	▶ 도로 신설 : 303.00㎡ ▶ 광장 신설 : 59.00㎡ ▶ 휴양시설 신설 : 93.00㎡ ▶ 운동시설 신설 : 17.00㎡ ▶ 녹지 신설 : 2,056.20㎡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5.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

6.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공원(27,29,30호) 조성계획결정조서 및 조성계획도 각 1부. 끝.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27호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최초)

1. 총괄표(위치:서초구 잠원동 58 - 24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5,033.50	975.00				66	
근 우 원	소 계	975.00				66	
	기	522.00				-	
	반						
	시	522.00				-	
	설						
시 설	조경시설	-				3	
	휴양시설	206.00				34	
	유흥시설	213.00				3	
	운동시설	34.00				4	
	관리시설	-				22	
복 지 및 기 타	4,058.50	-				-	
시 설 율 (법정 20%)	$(975.00㎡ \div 5,033.50㎡) \times 100 = 19.37\%$						
건 폐 율 (법정 5%)	$(0.0㎡ \div 5,033.50㎡) \times 100 = 0.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기 관 시 설	합 계			5,033.50	975.00					66	
	계			522.00	522.00					-	
	도 로		잠원동 58-24일원	522.00	522.00					-	
조 경 시 설	계			-	-					3	
	안음벽	①	전지역	-	-					3	
	계			206.00	206.00					34	
한 양 시 설	휴게소	가	잠원동 58-24일원	206.00	206.00					-	
		가-1	"	82.00	82.00					-	
		가-2	"	95.00	95.00					-	
		가-3	"	29.00	29.00					-	
	파고라	②	휴게소내		-	-				3	
	시각의자	③	가-1		-	-				5	
	등의자	④	전지역		-	-				22	
	편의자	⑤	가-2		-	-				4	
합 계				213.00	213.00					3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다 면적	업 면적		
시 설	놀이터	나	잠원동 58-24일원	213.00	213.00					-	
	조형놀이대	⑥	나	-	-					1	
	흔들놀이대	⑦	나	-	-					2	
안 내 요 시 설	계			34.00	34.00					4	
	체력단련장	다	잠원동 58-24일원	34.00	34.00					-	
	생활체육시설	⑧	체력단련장내	-	-					4	
관 리 시 설	계			-	-					22	
	공원등	⑨	전지역	-	-					16	
	CCTV	⑩	전지역	-	-					2	
	문전함	⑪	잠원동 58-24일원	-	-					1	
	공원안내판	⑫	잠원동 58-24일원	-	-					2	
	음수전	⑬	잠원동 58-24일원	-	-					1	
복지 및 기타				4,058.50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234.60	522.0		-	-	
신설	산책로	3	1	2.5	130.8	332.0	산책로	남측 대지경계	북측 대지경계	
신설	산책로	3	2	1.5	17.1	26.0	진입로	동측 대지경계	산책로 - 1	
신설	산책로	3	3	1.5	25.0	38.0	진입로	남측 대지경계	산책로 - 1	
신설	산책로	3	4	2.0	26.8	56.0	연결로	가 - 2	산책로 - 1	
신설	산책로	3	5	2.0	34.9	70.0	연결로	가 - 2	산책로 - 1	

조성계획도

27호 소공원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29호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최초)

1. 총괄표(위치:서초구 잠원동 60 - 6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양 (㉮)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600.00	286.00				40	
다 원 시 설	소 계	286.00				40	
	기 반 시 설	144.00				-	
	소 계	144.00				-	
	도 로	144.00				-	
	조경시설	-				4	
다 원 시 설	휴양시설	142.00				26	
	관리시설	-				10	
	누 지 못 기 타	1,314.00				-	
시 설 을 (범정 20%)		$(286.00\text{㎡} \div 1,600.00\text{㎡}) \times 100 = 17.88\%$					
건 폐 을 (범정 5%)		$(0.0\text{㎡} \div 1,600.00\text{㎡}) \times 100 = 0.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기 반 시 설	합 계			1,600.00	286.00					40	
	계			144.00	144.00					-	
	도 로		잠원동 60-6일원	144.00	144.00					-	
조 경 시 설	계			-	-					4	
	안음벽	①	전지역	-	-					4	
	계			142.00	142.00					26	
휴 양 시 설	휴게소	가	잠원동 60-6일원	142.00	142.00					-	
		가-1	잠원동 60-6일원	79.00	79.00					-	
		가-2	잠원동 60-6일원	63.00	63.00					-	
	파고라	②	가-1	-	-					2	
	시각의자	③	가-2	-	-					6	
	등의자	④	전지역	-	-					8	
	편의자	⑤	가-1							4	
	조형벤치	⑥	전지역	-	-					6	
	계			-	-					10	
	관 리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비대면적	연면적		
시 설	공원등	㉑	전지역	-	-					6	
	CCTV	㉒	전지역	-	-					1	
	문진함	㉓	점원동 60-6일원	-	-					1	
	금왕안내관	㉔	점원동 60-6일원	-	-					2	
누계 및 기타				1,314.00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72.4	144.0		-	-	
신설	산책로	3	1	2.0	63.5	130.0	산책로	남측 대지경계	가-2	
신설	산책로	3	2	1.5	8.9	14.0	진입로	남측 대지경계	산책로-1	

너
희
계
수
너

29호 소다아염



연도	연간 총생산액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비중	건설업 비중	서비스업 비중
2010	1,000.00	280.00	100.00	620.00	28%	10%	62%
2011	1,140.00	310.00	110.00	720.00	27%	10%	63%
2012	1,300.00	350.00	120.00	830.00	27%	9%	64%
2013	1,450.00	380.00	130.00	940.00	26%	9%	65%
2014	1,600.00	410.00	140.00	1,050.00	26%	9%	65%
2015	1,750.00	440.00	150.00	1,160.00	25%	9%	66%
2016	1,900.00	470.00	160.00	1,270.00	25%	8%	67%
2017	2,050.00	500.00	170.00	1,380.00	24%	8%	68%
2018	2,200.00	530.00	180.00	1,490.00	24%	8%	68%
2019	2,350.00	560.00	190.00	1,600.00	24%	8%	68%
2020	2,500.00	590.00	200.00	1,710.00	24%	8%	68%
2021	2,650.00	620.00	210.00	1,820.00	23%	8%	69%
2022	2,800.00	650.00	220.00	1,930.00	23%	8%	69%
2023	2,950.00	680.00	230.00	2,040.00	23%	8%	69%
2024	3,100.00	710.00	240.00	2,150.00	23%	8%	69%
2025	3,250.00	740.00	250.00	2,260.00	23%	8%	69%
2026	3,400.00	770.00	260.00	2,370.00	23%	8%	69%
2027	3,550.00	800.00	270.00	2,480.00	23%	8%	69%
2028	3,700.00	830.00	280.00	2,590.00	22%	8%	70%
2029	3,850.00	860.00	290.00	2,700.00	22%	8%	70%
2030	4,000.00	890.00	300.00	2,810.00	22%	8%	70%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30호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최초)

1. 총괄표(위치:서초구 잠원동 60 - 3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529.20	473.00				46	
국공 원	소 계	473.00				46	
	기	363.00				-	
	반	304.00				-	
	시	59.00				-	
	설	-				3	
시 설	휴양시설	93.00				24	
	운동시설	17.00				3	
	관리시설	-				16	
	복지 및 기 타	2,056.20				-	
시 설 을 (범정 20%)	$(473.00㎡ \div 2,529.20㎡) \times 100 = 18.70\%$						
건 폐 을 (범정 5%)	$(0.0㎡ \div 2,529.20㎡) \times 100 = 0.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기 반 시 설	합 계			2,529.20	473.00					46	
	계			363.00	363.00					-	
	도 로		잠원동 60-3일원	304.00	304.00					-	
	광 장	가	잠원동 60-3일원	59.00	59.00					-	
	계			-	-					3	
조경 시설	있음벽	①	전지역	-	-					3	
	계			93.00	93.00					24	
후 양 시 설	휴게소	나	잠원동 60-3일원	93.00	93.00					-	
		나-1	잠원동 60-3일원	79.00	79.00					-	
		나-2	잠원동 60-3일원	7.00	7.00					-	
		나-3	잠원동 60-3일원	7.00	7.00					-	
	연식파고라	②	나-1	-	-					1	
	시각의자	③	나-1	-	-					5	
	등의자	④	전지역	-	-					16	
	평의자	⑤	전지역	-	-					2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안 내 요 시 설	계			17.00	17.00					3	
	체력단련장	다	잠원동 60-3일원	17.00	17.00					-	
	생활체육시설	⑥	다	-	-					3	
관 리 시 설	계			-	-					16	
	공원등	⑦	전지역	-	-					11	
	CCTV	⑧	전지역	-	-					1	
	문진함	⑨	잠원동 60-3일원	-	-					1	
	공원안내판	⑩	잠원동 60-3일원	-	-					2	
	음수전	⑪	잠원동 60-3일원	-	-					1	
복지 및 기타				2,046.20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155.6	304.0	산책로	-	-	
신설	산책로	3	1	2.0	18.1	45.0	진입로	북측 대지경계	나·1	
신설	산책로	3	2	2.0	21.6	55.0	진입로	북측 대지경계	광장	
신설	산책로	3	3	2.0	34.5	80.0	진입로	동측 대지경계	나·1	
신설	산책로	3	4	1.5	81.4	124.0	산책로	산책로 - 1	산책로 - 3	

나
하
계
성
K

30호 서지

[illegible]

◆ 송파구공고 제2023-1149호

**거여동 173-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73-3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9일

송 파 구 청 장

I. 열람기간 : 2023.6.29. ~ 2023.7.13.(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0)

III.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IV.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안)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거여동 173-3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거여동 173-3번지 일원	-	증) 12,047.2	12,047.2	-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V.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 진행(업무추진)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3-1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계내 한강 (청담대교)	선박2척 (476㎡)	2023년 청담대교 외 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 23.06.19. ~ ' 23.06.25.	' 23.6.1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3-19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계내 한강 (광진교)	선박2척 (361㎡)	한강대교 외 1개소(광진교) 정밀안전점검	' 23.06.26. ~ ' 23.06.30.	' 23.6.22.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3-191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계내 한강 (한강대교)	선박2척 (476㎡)	한강대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 23.06.26. ~ ' 23.06.30.	' 23.6.22.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3-192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계내 한강 (잠실철교)	선박2척 (361㎡)	잠실철교(도로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 23.07.03. ~ ' 23.07.09.	' 23.6.23.

정 정

◆ 마포구고시 제2023-11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수정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373호(2020.9.10.)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마포구공고 제2023 - 782 (2023.5.4.)로 열람공고하고, 마포구공고 제2023 - 805호(2023.5.11.)로 수정 공고한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 - 109호로 고시하였으나,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마 포 구 청 장

※ 수정사항

수정항목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연면적(㎡)	14,694.89㎡	34,022.12㎡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지상층 연면적) 에서 전체 연면적으로 변경 기재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55 - 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2) 명 칭: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 1) 사업시행 면적: 81,650㎡
- 2) 규 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규 모	비 고
7,737.04	34,022.12	9.4759	17.9974	지하2층, 지상6층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박보균)	한국중부발전(주) (대표: 김호빈)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당인동 1	대	62,182.0	51,462.0	한국 중부발전 (주)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60			
2	당인동 1-28	대	638.0	638.0					
3	당인동 1-29	대	2,673.0	2,673.0					
4	당인동 1-14	잡종지	282.0	145					
5	당인동 1-15	잡종지	11.0	11.0					
6	당인동 1-16	잡종지	152.0	152.0					
7	당인동 1-17	잡종지	2.0	2.0					
8	당인동 32-2	잡종지	2.0	2.0					
9	당인동 32-3	잡종지	65.0	65.0					
10	당인동 32-4	잡종지	19.0	19.0					
11	당인동 44-3	대	700.0	700.0					
12	합정동 50-2	도로	20.0	20.0					
13	합정동 50-3	도로	17.0	10.7					
14	합정동 50-4	전	570.0	292.4					
15	합정동 50-7	잡종지	710.0	710.0					
16	합정동 52-7	잡종지	34.0	34.0					
17	합정동 53-1	대	166.0	166.0					
18	합정동 53-2	도로	46.0	46.0					
19	합정동 53-3	구거	46.0	46.0					
20	합정동 53-4	잡종지	33.0	33.0					
21	합정동 53-5	대	288.0	288.0					
22	합정동 53-7	전	10.0	10.0					
23	합정동 54-1	구거	35.0	35.0					
24	합정동 54-2	잡종지	50.0	50.0					
25	합정동 55-1	대	42,625.0	20,195.3					
26	합정동 72-10	잡종지	296	188.0					
27	합정동 72-11	잡종지	12.0	12.0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28	합정동 72-12	잡종지	122.0	122.0					
29	합정동 72-13	잡종지	21.0	21.0					
30	당인동 74-2	철도	3,495.0	3,378.6					
31	당인동 74-9	철도	20.0	20.0					
32	당인동 75-5	대	103.0	103.0					
합 계			115,445.0	81,650.0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문화예술과(☎02 - 3153 - 8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